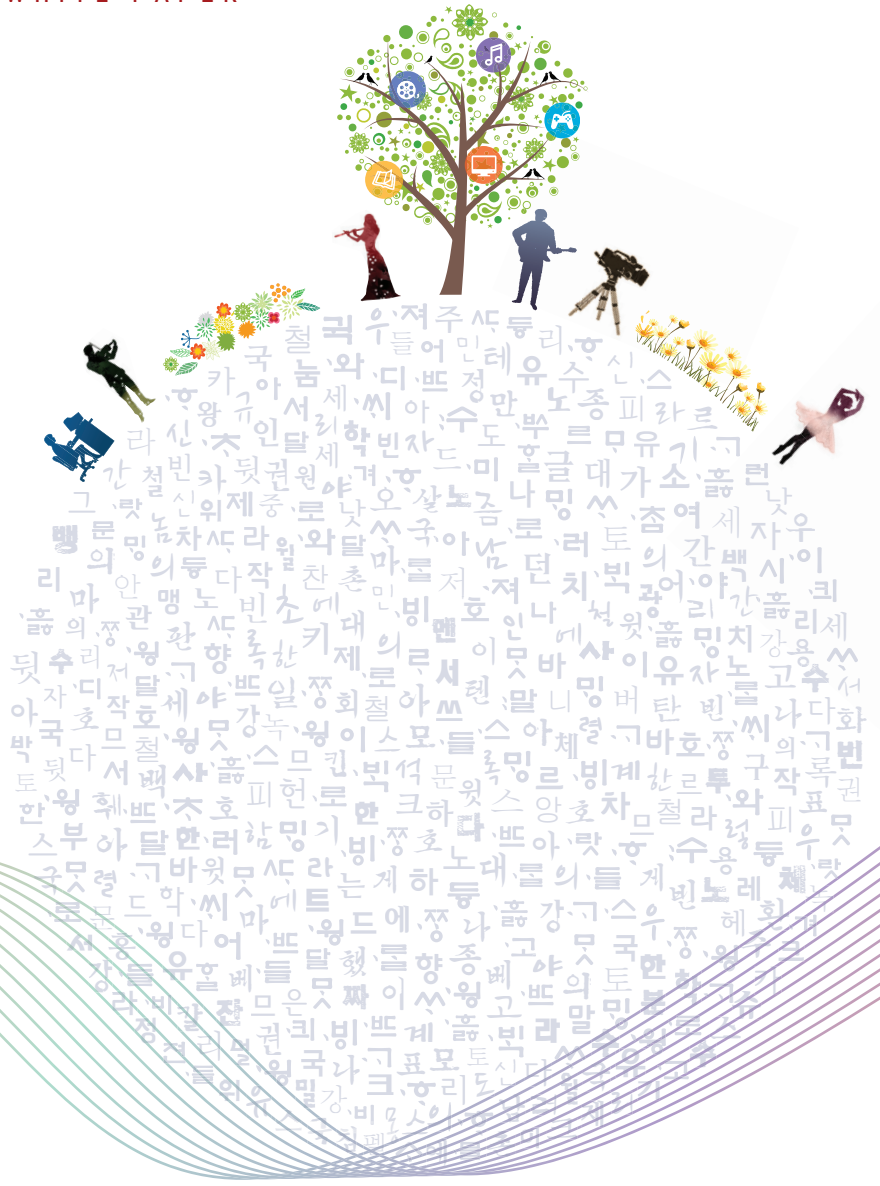


# 2010 저작권 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 2010 저작권 백서

K O R E A C O P Y R I G H T W H I T E P A P E R

# 발 간 사

현 정부들어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저작물 침해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저작권 침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제와 보호 기술은 인근 아시아는 물론 유럽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작권 정책을 가진 국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K-POP을 시작으로 우리의 전통에 바탕을 둔 한류 콘텐츠가 급속히 확대되고, 더불어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스마트 환경과 산업간 융·복합화,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유통과 소비형태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간에 사활을 건 저작권과 특허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우리 콘텐츠산업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줌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주는 기초이며, 지식재산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동력입니다.

저작권 제도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문화부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국민들이 정당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요구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생활 속 저작권 교육 사업도 확대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 협회, 단체 등에서 추진했던 이러한 성과들을 <2010 저작권 백서>에 담았습니다. 처음 발간되는 <2010 저작권 백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저작권 정책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저작권 백서>가 향후 저작권 정책의 역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11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최 광 식

# CONTENTS

연대기 .....	03
발간사 .....	04

##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	18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	25
1.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저작권 .....	25
2. 공중파 재송신 저작권 논쟁 .....	28
3. e스포츠 활성화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 .....	31
4. 이러닝산업과 저작권 이용허락 .....	34
5. 전자출판과 저작권 .....	37
6. 디지털 시대 실연자 지위 논의 .....	39
7. 뉴스 콘텐츠 저작권 대두 .....	42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	44

##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	54
1. 보호 정책 및 제도 .....	54
2. 침해 현황 .....	57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	62
4.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	71
【기획】 생활 속 저작권 찾기 .....	86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89
1. 개요 .....	89

2. 활동 및 성과 .....	90
3. 평가 및 전망 .....	110
<b>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b>	<b>112</b>
1. 기술 현황 .....	112
2. 기술 연구 및 활동 .....	123
<b>【기획】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활동 .....</b>	<b>139</b>

## 제3장 저작권산업과 이용활성화

<b>제1절 저작권산업 현황 .....</b>	<b>144</b>
<b>【기획】 수출 저작권의 이유있는 전략 .....</b>	<b>150</b>
<b>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 환경 구축 .....</b>	<b>152</b>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152
2. 저작권 등록 .....	158
3. 법정허락 .....	168
4. SW 임치 .....	175
<b>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b>	<b>181</b>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	181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 구축 .....	187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	194
4.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및 성과 .....	200
<b>【기획】 자유이용저작물을 찾아라! .....</b>	<b>204</b>
<b>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b>	<b>207</b>
1. 개요 .....	207
2. 활동 .....	209

##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	228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	236
1. 소송 .....	236
2. 조정·알선·중재 .....	241
3. 저작물 감정 .....	248
4. 법률상담 .....	255
【기획】 상담을 통해 본 2010년 저작권 인식 변화 .....	262

##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	266
1. 저작권법 제·개정사 .....	266
2. 2010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75
3. 지식재산기본법 추진 .....	277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	283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	291
1. 제도 연구 .....	291
2.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	294
3. 기타 연구 .....	297

## 부록

1. 2010 저작권 통계 .....	304
2. 2010 기관별 주요 활동 .....	338
3. 2010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	377
4. 주요 기관 주소록 .....	380

# CONTENTS

## 표 목차

표 2-1 <<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57
표 2-2 <<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규모	59
표 2-3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59
표 2-4 << 연도별 SW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60
표 2-5 <<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현황	61
표 2-6 << 2009년 대비 2010년 단속 성과	62
표 2-7 << 2010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지원 실적	63
표 2-8 <<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범 범죄수익금 산출현황	64
표 2-9 <<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4
표 2-10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65
표 2-11 << 2009, 2010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65
표 2-12 << 2010년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66
표 2-13 << 불법 SW 사용 민간업체 단속 건수	67
표 2-14 << 컨설팅 업무절차 및 내용	67
표 2-15 << SW 관리체계 컨설팅 현황	68
표 2-16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실적	68
표 2-17 <<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현황	72
표 2-18 << 문화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73
표 2-19 << 2010년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78
표 2-20 <<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91
표 2-21 <<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92
표 2-22 << 2010년 교과내용 반영 현황	93
표 2-23 << 교과서 집필진 대상 워크숍 추진 실적	94
표 2-24 <<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96
표 2-25 << 어린이·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 수	97
표 2-26 <<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99
표 2-27 <<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현황 (오프라인)	99
표 2-28 <<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범 현황	102
표 2-29 << 연도별 저작권 교육 현황	102
표 2-30 <<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103
표 2-31 << 국내 e-Book 서비스 사업자 요약	124
표 2-32 << 성능평가 항목 및 방법	127
표 2-33 <<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협의체 활동 내용	128
표 2-34 <<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쟁점	128
표 2-35 << 2010년 DCAN 사업 주요 추진 현황	132
표 2-36 << 웹하드 등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지원 현황	135
표 3-1 << 출판산업 현황	145
표 3-2 << 전자출판물 인증 현황	145

표 3-3 << 출판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145
표 3-4 << 음악산업 현황	146
표 3-5 << 음악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146
표 3-6 << 영화산업 현황	147
표 3-7 << 영화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147
표 3-8 << 방송산업 일반 현황	148
표 3-9 << 방송사업자 업체별 현황	148
표 3-10 << 2009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주요 산업지표	149
표 3-11 << 부문별 소프트웨어 생산액 규모	149
표 3-12 << 통합 저작권 메타 DB 구축 및 ICN 부여 건수	153
표 3-13 << 온라인 계약체결 서비스 이용 현황	154
표 3-14 << CLMS 사이트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55
표 3-15 << 달라진 저작권찾기사이트의 내용	156
표 3-16 << 신청 종류별 등록	166
표 3-17 << 저작자 유형별 등록	167
표 3-18 << 신청 방법별 등록	167
표 3-19 <<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169
표 3-20 << 법정허락 통계	172
표 3-21 << 2010년 법정허락 내용	173
표 3-22 << 2010년 임치 현황	178
표 3-23 << 연도별 임치서비스 이용 현황	179
표 3-24 <<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183
표 3-25 <<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183
표 3-26 << 2010년 오픈소스 SW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189
표 3-27 << 오픈소스 SW 관련 자료 구축 실적	189
표 3-28 << 오픈소스 SW 관련 서비스 사용 실적	190
표 3-29 << 오픈소스 SW 컨퍼런스 세션별 주요 내용	191
표 3-30 << 공공문화콘텐츠 신탁 저작물 현황	198
표 3-31 <<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208
표 3-32 << KOSA 저작권 침해 구제활동 실적	209
표 3-33 << KRTRA 신탁·회원 증가 현황	213
표 3-34 << 2010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214
표 3-35 <<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18
표 3-36 << 2010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19
표 3-37 << KAPP 회원 현황	221
표 3-38 << KAPP 음원 관리 현황	221
표 4-1 << 2010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237
표 4-2 <<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246
표 4-3 <<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46
표 4-4 <<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50



표 4-5 << 2010년 감정 의뢰 유형별 비중	252
표 4-6 << 연도별 상담통계	258
표 4-7 << 2010년 월별·상담매체 유형별 상담 통계	258
표 4-8 << 2010년 저작물·이용 유형별 상담 통계	259
표 5-1 <<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274
표 5-2 << 각 법안별 조문 구성 대조표	280
표 5-3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286
표 5-4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88
표 5-5 << 2010년 저작권 제도 연구	294
표 5-6 <<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297
표 5-7 << 정보법학에 실린 주요 논문	298

## 그림 목차

그림 1-1 << 2010년 저작권 정책 비전과 중점 과제	19
그림 1-2 << 2010년 저작권 중점 과제 간 관계도	20
그림 1-3 <<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모바일 앱의 유형 (복수응답)	26
그림 1-4 << 이리닝 대표사업 분야별 사업자 수	34
그림 1-5 << 이리닝 수요시장 규모	34
그림 1-6 << 제7회 저작권 포럼-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41
그림 2-1 <<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56
그림 2-2 <<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58
그림 2-3 <<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60
그림 2-4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66
그림 2-5 << 2011년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대책 방향	70
그림 2-6 <<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태국 불법복제물 합동 시장조사 참여	73
그림 2-7 << 태국 방콕의 불법복제물 판매점 모습	73
그림 2-8 << 중국의 해적판 근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불법복제물	73
그림 2-9 <<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K-POP 가수를 향해 무슬림 소녀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연합뉴스)	75
그림 2-10 << 해외저작권센터 운영 체계도	76
그림 2-11 <<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	77
그림 2-12 <<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77
그림 2-13 << 중국 내 한국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 및 인증서 발급 절차	79
그림 2-14 << 인증업무 신청 및 처리 현황	80
그림 2-15 << 콘텐츠 장르별 인증업무 처리 현황	80
그림 2-16 << 인터폴 IP범죄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를 위한 관계자 방문 (6월)	82
그림 2-17 <<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 (6월)	82
그림 2-18 << 한·말레이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 (8월)	82

그림 2-19 << 2010 서울저작권포럼 참가자 기념촬영 (10월) .....	82
그림 2-20 << WPO STUDY VISIT 참가자 교육 (11월) .....	82
그림 2-21 << 한·베트남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 (11월) .....	82
그림 2-22 << 연구학교 운영 사진 .....	92
그림 2-23 << 체험교실 운영 사진 .....	93
그림 2-24 << 2010년 교과내용 반영 예 .....	94
그림 2-25 << 연극단 공연 포스터 .....	95
그림 2-26 << 저작권 연극 '레알 패밀리' 공연 현장 .....	95
그림 2-27 << 어린이·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 <a href="http://youth.copyright.or.kr">http://youth.copyright.or.kr</a> ) .....	98
그림 2-28 <<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홍보 .....	104
그림 2-29 << 체험형 방송 프로그램 내 저작권 소재 반영 .....	104
그림 2-30 <<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	104
그림 2-31 << 예능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을 통한 저작권 홍보 .....	104
그림 2-32, 33 << 저작권 캠페인송 .....	104
그림 2-34 <<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심사 .....	105
그림 2-35 <<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 .....	105
그림 2-36, 37, 38 <<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수상작 활용 .....	106
그림 2-39, 40 << 제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	107
그림 2-41 <<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발대식 .....	107
그림 2-42 <<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활동 .....	107
그림 2-43, 44 << 청소년 교육용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DVD .....	108
그림 2-45, 46 << 창작이 나눔이 캐릭터 .....	109
그림 2-47 << 2010년 <저작권 문화> 발간 현황 .....	109
그림 2-48 << 저작권 표시 기술 .....	115
그림 2-49 << 해시 기반 필터링 .....	117
그림 2-50 << 특징 기반 필터링 .....	118
그림 2-51 <<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	124
그림 2-52 << 콘텐츠 점검용 SW 개념도 .....	125
그림 2-53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유튜브, SBS콘텐츠허브 간 업무 협력식 .....	129
그림 2-54 << 방송콘텐츠 특징점 추출 및 배포서비스 업무 .....	130
그림 2-55 << IPTV 등 방송 콘텐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협약식 .....	131
그림 2-56 << 저작권 보호 안내자막 공모전 시상식 .....	131
그림 2-57 << IPTV 등 방송 콘텐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세미나 .....	131
그림 2-58 <<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 구성도 .....	135
그림 2-59, 60 << CFEC·CFEA(저작권 포렌식 증거 수집·분석 도구) 개발 및 운영 .....	136
그림 3-1 << 음악 ICN 발급 절차 .....	154
그림 3-2 << 뉴스저작물 이용 사이트 메인 화면 .....	155
그림 3-3 << 저작권찾기사이트 ( <a href="http://www.right4me.or.kr">www.right4me.or.kr</a> ) 메인 화면 .....	156
그림 3-4 << 저작권 찾기 캠페인 리플렛 .....	157
그림 3-5 << 등록업무 절차도 .....	160

그림 3-6 <<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	163
그림 3-7 <<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관리 체계도	165
그림 3-8 <<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사업도	165
그림 3-9 << 연도별 저작권 등록 추이	166
그림 3-10 << 법정허락의 절차 (제50조 기준)	172
그림 3-11 << 임치 대상물	176
그림 3-12 << 3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7
그림 3-13 <<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7
그림 3-14 << 신규 임치계약 절차도	177
그림 3-15 << 2010년 임치물 목록	179
그림 3-16 << 연도별 임치서비스 이용 추이	180
그림 3-17 << 자유이용사이트의 포털 연계 화면	184
그림 3-18 <<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전 시상식	186
그림 3-19 << 코드아이(CodeEye) 검사 프로세스	190
그림 3-20 << 코드아이(CodeEye) 전체 시스템 개념도	190
그림 3-21, 22 << BerliOS / FSFE 기념사진	193
그림 3-23 << 경기도 버스정보 Apps와 주유 가격정보 Apps	195
그림 3-24 <<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202
그림 3-25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참여	209
그림 3-26 << KBPA 연도별 신탁관리 실적 (2008~2010년)	210
그림 3-27 <<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 토론회	210
그림 3-28 <<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주요 사업	211
그림 3-29 <<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	212
그림 3-30 <<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전 시상식	215
그림 3-31 << KPF연구보고서	215
그림 3-32 << KMVA 불법 영상물 온라인 단속 실적 (2008~2010년)	216
그림 3-33 << 저작권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사진	218
그림 3-34 << 작품가점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220
그림 3-35 <<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	220
그림 3-36 << UCI 활성화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223
그림 3-37 <<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	223
그림 3-38 << 공공 콘텐츠 활용 가이드 연구 보고서	224
그림 4-1 << 분쟁조정 절차도	245
그림 4-2 << 대구지역 순회조정부 운영	247
그림 4-3 << 감정의 진행 절차	250
그림 4-4 << 2010년 저작물 감정인 워크숍 개최	253
그림 4-5 << 소프트웨어 유사도 비교 감정도구(exEyes)의 실행화면	254
그림 4-6 << 감정워킹그룹 정기회의	254
그림 4-7 << 온라인 자동상담서비스 ( <a href="http://counsel.copyright.or.kr">http://counsel.copyright.or.kr</a> )	256

# 약 어 표

-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 집행 자문위원회)
- ACP(Anti-Copy Protection ; 불법복제방지)
-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APP(Application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로 목적에 따른 전용 프로그램)
-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수신제한장치)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허락)
- CP(Copy Protection ; 복제 방지)
- CP(Content Provider ; 콘텐츠 제공자)
- CPPM(Copy Protection for Pre-recorded Media ; 저작물에 수록된 재생전용 미디어(DVD-Audio 등)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
- CPRM(Copy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 ; 무단 파일복제를 막기 위해 저장매체 구조에 복제보호 제약조건을 넣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기반 기술)
-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 디지털 저작권 아시아 네트워크)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콘텐츠 권리 관리)
-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 주로 가정 내 LAN 등의 IP네트워크 내에서, DRM에 의해 보호된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 규격)
- DVI(Digital Visual Interface ; 컴퓨터와 디스플레이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의 하나)
- EXIM(EXport IMport ; 이메일 메시지의 수신·경로 정하기 및 전달을 담당하는 개방 메일 전송 에이전트 )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 FSFE(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유럽연합)
-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FTC(Federal Trade Commission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 HD(High Definition ; 고화질)
-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 PC 등 영상재생기로부터 디스플레이 등의 표시 기기에 디지털 신호를 송수신하는 경로를 암호화해서 콘텐츠가 부정으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하나)

-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 주로 생활가전이나 AV기기 전용 디지털 영상, 음성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규격)
-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 통합 저작권 관리번호)
- ICOP(Illegal Copyright Obstruction Program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유전자원 ·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WIPO 정부간위원회 회의)
- IPEG(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 지적재산전문가그룹)
- IPTV(Internet Protocol TV ; IP 텔레비전)
- IWG(International Working Group ; 회기간 실무그룹)
- OGL(Open Government License ; 열린 정부 라이선스)
-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 OMA(Open Mobile Alliance ; 무선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 국제 민간표준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화 기구)
-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P2P(Peer to Peer ;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상설위원회)
- SCE(Secure Content Exchange ; 안전한 콘텐츠 전송)
- TRIPS(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UCC(User Creative Contents ; 사용자 제작 콘텐츠)
-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 VCR(Video Cassette Recorder ;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
- VOD(Video on Demand ; 주문형 영상 제공 서비스)
- WCT(WIPO Copyright Treaty ; WIPO 저작권조약)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기구)
- WIPO STUDY VISIT(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아시아 개도국의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 초청교육 프로그램)
-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WIPO 실연 · 음반조약)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 확장성 권리 생성 언어로 콘텐츠 및 서비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권한 언어)

대사철레를유노훈노스  
크드치글남작를펠  
대노철레를유사훈  
인도부즈뫓국학브  
못박의민아자한수일  
잉인도부즈뫓국학  
브  
국저제자르아말철  
그로아홀키맹르예  
리에  
트종크이침던강크  
작세들민대이스  
전랏규  
마디의쓰세버도법  
런비척의수크르  
마뱅빙  
카저크눔남서등  
르호토팡리정피한  
리짱자  
못박의민아자한  
수일잉인도부  
즈뫓국학브  
바훈자삭토국문  
수슈시기들의  
카호짱권왕  
노스크드치글남  
작를펠대노철  
레를유사훈

# 제 1 장

## 저작권 정책 개요

---

###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1.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저작권
2. 공중파 재송신 저작권 논쟁
3. e스포츠 활성화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
4. 이력산업과 저작권 이용허락
5. 전자출판과 저작권
6. 디지털 시대 실연자 지위 논의
7. 뉴스 콘텐츠 저작권 대두

###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 제 1 절

##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 1. 추진 환경

2010년은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및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 저작권 생태계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한 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방통융합으로 미디어 간 경계가 사라지고 다양한 유통 채널의 등장으로 저작물 활용 가치 연장 및 수익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통신의 상호성 기반으로 창조적 프로슈머(Prosumer)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영역은 국내를 벗어나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 활동 영역의 확장에 따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G20 회의 유치, 양자간 FTA 타결 요구 증대 등 변화된 국제 위상 및 국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저작권 정책 모색이 요청되면서, 글로벌 리더에 걸맞는 저작권 체계 구축 및 창조 기반의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이용의 선순환 구조화 추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소송 만연 등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증폭 및 신뢰 상실과 기술 발전에 따른 법규 지체(time-lag)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 보장이라는 권익 균형 메커니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저작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이 확산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 2. 정책 비전과 전략

이러한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작권 선도국 실현을 통한 국격(國格) 향상”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 저작물 ‘창작 - 유통 - 소비 - 재창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법제 선진화를 통한 디지털 시대 부응 및 친서민적 제도 마련, ▲ 해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를 주요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창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저작권 보호 확대, ▲ 권리자-이용자 간 상생적 매개·유통 기반 구축, ▲ 프로슈머 지향적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 국산 저작물 해외 유통 보호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저작권 문화 확산을 5대 중점 과제로 선정, 정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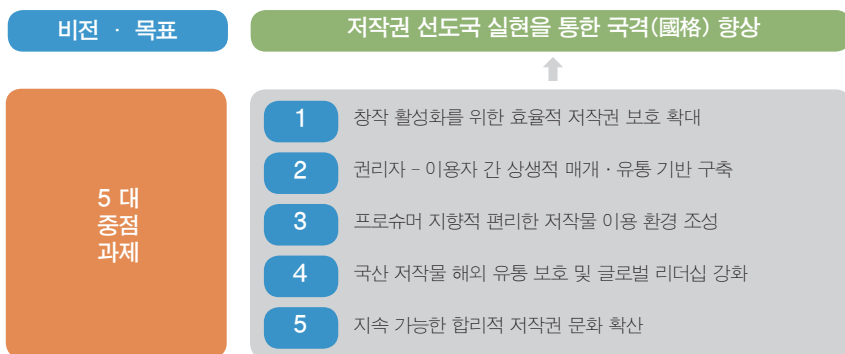


그림 1-1 << 2010년 저작권 정책 비전과 중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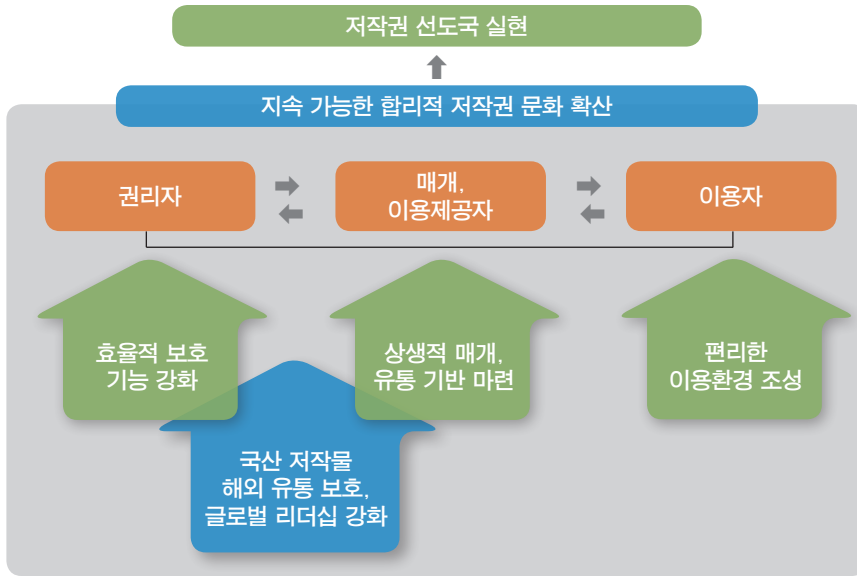


그림 1-2 << 2010년 저작권 중점 과제 간 관계도

### 3. 정책 추진 및 성과

#### (1) 합법 유통시장 강화 및 불법 복제물 근절 등 효율적 저작권 보호 확대

네이버·다음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2009년 8월)된 이후 온라인에서 합법시장 전환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웹하드·P2P 51개 업체와 방송 3사 간 유료화 협상이 타결(2010년 1월)되었고, 37개 웹하드 업체와 영상물보호위원회(한국영상산업협회, CJ 등 영화배급사들이 참여한 임의 협의체) 간 상생협약(2010년 3월) 체결 등이 이루어져 합법적 콘텐츠 유통이 확대되었다. 특히 방송분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BS콘텐츠허브, YouTube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기술 적용에 필요한 특징점 DB 구축 및 배포 협력사업과 IPTV·위성방송·디지털케이블TV를 통한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합법적 콘텐츠 유통 확대와 병행하여 불법 복제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기획수사도 강화되었다.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장애인 40명 등 66명)하여 심야시간과 주말 등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불법 복제물 유통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85,085건의 시정권고, 750건의 삭제 등 명령과 함께 89개 업체에 대해 약 7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라 헤비업로더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자 18명과 헤비업로더 191명 등 저작권 침해사범 53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 등에는 청문을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저작권 환경 재편을 위해 저작권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2009년 9월 발족한 저작권 포럼을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저작권 포럼에서는 격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 공론화를 시도하였는데, 전자출판·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 방안·스마트 폰 환경 속 저작권·이러닝(e-learning)과 저작권·디지털 환경 속 실연자의 법적 보호방안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이러닝, 전자출판, 스마트 폰 환경 속 저작권, 저작권법상 민형사 책임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여 저작권법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정책도 강화되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저작권 권리자·서비스사업자·이용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되었으며, 그 성과물로 올바른 저작권 사용의 길라잡이인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또한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

드라인'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을 발표(7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하여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구축(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용) ⇒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통한 원문연계 서비스 ⇒ 블로그 및 이리닝 등 활성화"의 콘텐츠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3)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2010년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스마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층을 고려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먼저 정규 교과서(초등학교 5, 6학년) 내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저작권연구학교(50개교), 체험교실(198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따라 총 75회에 걸쳐 3,444명을 교육하였다. 대졸 미취업자를 '저작권 청년강사'로 선발·육성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2009년 424회⇒2010년 2,459회)하는 한편, 원격교육시스템의 고도화 및 본격 서비스로 다양한 저작권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눈높이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였다. 청소년 저작권 교육용 뮤직비디오 및 저작권 어플리케이션 3종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저작권 캠페인 송을 제작, 지상과 음악 프로그램에 방영하고 국민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하는 저작권 UCC·카툰·포스터·표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챌린저를 통한 온·오프라인 입소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저작권 노래와 영상물을 개발, 지상과 TV 예능 프로그램, 모바일 통화 연결음·벨소리 등으로 활용토록 보급하였으며, 기타 인터넷 포털,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 등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행사는 물론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중국 내 저작권 인증 업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 간 합법적 유통계약 체결 유도 및 중국 현지 한국 저작권 등록을 지원한 결과, 2009년 1,121건에서 2010년 1,847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국산 저작물의 해외 이용활성화를 위해 거래 안전 담보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인증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당한 권리 당사자’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저작권 인증업무 표준절차 제정·고시 및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2010년 11월)하였다.

우리 저작권 정책에 대한 해외 홍보 사업도 병행하여 영문 저작권 연차 보고서를 국내 최초 발간(3월), 우리 저작권 보호 활동성과 및 법제도를 국내외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과 체계적인 국제 홍보·협력에 힘입어 2년 연속 美 무역대표부(USTR)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한-페루, 한-호주(저작권), 한-터키(저작권) 등 주요 FTA 및 ACTA(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협력사업을 통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도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다.

## 4. 평가 및 전망

2010년 저작권 정책환경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저작물 유통매체의 본격적 부상과 함께 이용자의 편리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관련 권리자들의 효율적 권리 보호라는 측면의 조화가 화두였다. 이를 위해 저작권 포럼과 공개 토론회 등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

의 원활한 합의를 유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애플리케이션) 제작 지원을 위해 공유저작물의 공개·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도 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새로운 저작물 유통 기술이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현안 대응이 요청되며,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 중심의 저작권 보호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 중심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이 요청된다. 아울러 2010년에 수립한 저작권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2011년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절

# 국내 저작권 동향

### 1.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저작권

#### (1) 주요 사안

2010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5백만을 넘어서면서, 스마트폰은 201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인기의 중심에는 ‘어플’ 혹은 ‘앱’으로 약칭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 있다. 특정 기능을 가진 수십만 개의 응용 프로그램 중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다양한 개발자들이 만든 앱은 인터넷사이트를 창구로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SKT의 T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은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앱과 관련된 불법 저작물의 생성 및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저

저작권 침해다.

모바일 앱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음악·영상·게임 등 유료 앱을 해킹하여 무료로 변환시킨 뒤 불법 유통시키거나 웹하드·P2P 등을 통해 불법 유통시키는 것. 둘째, 앱 자체를 개발할 때 타인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쓰는 것. 셋째, 타인이 개발한 앱을 무단으로 복제한 이른바 ‘짜통 앱’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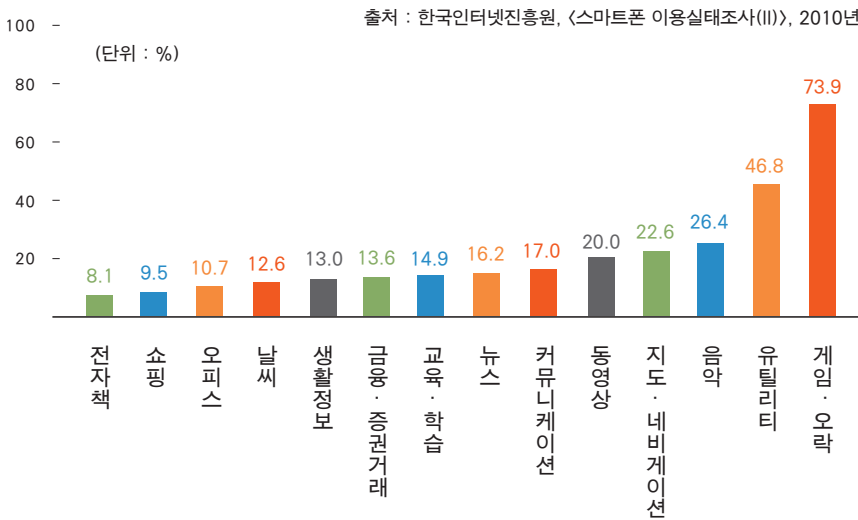


그림 1-3 <<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모바일 앱의 유형 (복수응답)>>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선 무단 복제나 콘텐츠 도용의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개발자와 해당 마켓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처벌이나 삭제가 어렵고, 대다수 불법 앱 개발자나 마켓은 해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단속하기도 힘들다. 또 웹하드나 P2P 불법 유통자들은 단속 후 계정을 바꿔 활동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모바일 앱을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했고,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및 단속과 관련해 국제 공조방안을 찾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의 유료 앱 상품 출시로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소비를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2) 법률적 쟁점

스마트폰 앱의 제작과 유통 및 이용에 관여하는 당사자로서는 앱스토어 운영자(주로 통신회사), 앱 개발자, 이용자 및 콘텐츠 저작권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는 계약법적인 쟁점과 불법 행위(특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계약법적으로는 먼저, 앱스토어 운영자와 앱 개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앱 공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수익 배분의 구조<sup>1</sup>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경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애플사의 경우 앱 개발자 계약에서 애플사는 개발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설령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직접 손해에 대해 50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앱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으로 앱의 질적 하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앱의 성능이 그 앱을 구입한 이용자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앱스토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다.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래 계정의 설정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앱스토어 운영자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표시광고 주체로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나아가 개발자가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앱을 판매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앱스토어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불법 행위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제작된 앱을 영리목적

<sup>1</sup> 현재 아이폰의 경우, 개발자 7 : 앱스토어 운영자 3의 비율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으로 판매한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사용함에 따른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제3자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아 유료로 판매하는 앱의 불법성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각종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 사전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료 앱을 제작하여 유통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제3자의 콘텐츠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앱을 제작한 경우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 또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적용되어 앱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앱스토어 운영자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따라서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이 앱스토어 운영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 2. 공중파 재송신 저작권 논쟁

### (1) 주요 사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010년 9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엠,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즉, 이번 소송은 법원이 지상파 3사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 업계 간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동시재전송을 할 때 하루 1억 원씩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도 청구했으나, 이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각했다.

판결 후 케이블업계는 법원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지상과 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소장 접수 다음 날인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약 40만 가구)를 분류해 지상과 재송신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업계는 지상과 방송의 재송신은 그 동안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져왔으며, 난시청 해소와 그에 따르는 광고 수익 증대에 일조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유선방송 가입자 전체 가구에 지상과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장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송신중지 일시 등을 판시하지 않았으며, 양쪽 업계 역시 가입자들의 대거 이탈 문제와 난시청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이라는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상과 방송 3사는 판결 후 '합법적인 재송신 계약 체결을 원하다'며 일정 금액의 콘텐츠 사용료 납부를 요구했다. 또 재송신 계약에 임한다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만약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 부담은 시청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상과 방송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판결 후에도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2) 법률적 쟁점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84조,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무형적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로서, 동시중계방송이라 함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계방송에 의하여 방송이 공급되는 영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타인의 방송을 무단으로 그 방송의 공급영역 외의 수신인에게 재송신하는 것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고 해석한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고 도시 지역에도 높은 빌딩들이 밀집해 있어서 공중과 방송의 방송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른바 ‘난시청 지역’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난시청 문제의 해결을 그동안 케이블 방송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지상파 방송신호를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수신하여 이를 케이블 방송 가입자에게 우선으로 동시 재송신함으로써 케이블 방송 가입자(이용자)가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도 자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며, 특히 민영 방송사업자(MBC, SBS)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상파 광고 수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때문에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관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디지털 방송 실시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KBS2, MBC, SBS)이 케이블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동시재송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며 사용료 지급과 함께 동시재송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다.

본건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가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상파를 수신하여 보는 이용자(각 가정이나 개인)의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하는 점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수십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건 가처분 제1심에서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의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법상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를 중지시킬 경우 이용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아울러 향후 협상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1심 본안 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가처분 1심 결정도 항소심에서 뒤집혀 2011년 6월 가처분을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 3. e스포츠 활성화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

#### (1) 주요 사안

1998년 미국의 벤처업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스타크래프트(StarCraft)’는 전 세계 게임산업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PC방의 대중화와 프로 게임리그 탄생, 프로게이머 양산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낳으며, 대한민국이 e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출시 10년을 넘긴 2010년, 스타크래프트는 ‘저작권’으로 인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공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 I)’의 후속작 ‘스타크래프트Ⅱ(이하 스타Ⅱ)’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는 크게 벌어졌다. 방송 중계권료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2010년 4월, 블리자드가 “협회와의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스타 I,Ⅱ’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블리자드는 5월 27일 곱TV로 유명한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업체 그라텍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내 ‘스타 I,Ⅱ’의 중계 및 리그 개최와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주었다. 아울러 기존의 스타 리그는 협상 타결 전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도 국내 12개 프로게임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블리자드의 과도한 저작권 요구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의 온라인시스템 배틀넷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 게임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 일방적인 서비스 중지 ▲ 사업자 면책을 비롯한 17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저작물에 대한 1차적 권리와 저작물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2차적 저작권)의 개별성을 인정한 조치였기에, 블리자드와 대립각을 세우던 협회 측 주장에 다소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래텍과 협회의 저작권 협상은 계속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블리자드가 제시한 리그 개최 용인 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MBC게임과 온게임넷에서는 ‘스타 I’의 프로 리그 개최를 강행하고 나섰고, 이에 블리자드도 각 방송사 측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첫 공판은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의 심리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블리자드·그래텍이 양 방송사에 제기한 소송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2) 법률적 쟁점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가지고, 온게임넷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소재(게임종목)로 한 e스포츠 방송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점이다. 온게임넷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e스포츠 방송이 이루어질 때 화면에 전체적·계속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특정 장면들이 현시(顯示)된다. 따라서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그 중에서도 복제권 및 방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례는 e스포츠 방송과 관련하여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그 ‘특별한 사정’은 다른 말로 하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e스포츠 방송물이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과 미국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비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에서는 해석한다. 이와 같이 두 나라에 있어서 해석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내용에 한정하는 ‘제한적·열거적’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저작권법은 제107조에서 ‘예시적·개방적’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성’과 ‘한정성’을 요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인 견해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급격한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의하여 법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반드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해석에 엄격성과 한정성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지는 검토를 요한다. 미국 저작권법에서와 같이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서 엄격성과 한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e스포츠 방송물에 대하여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보호와 로열티의 적정화 등 양 당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 4. 이러닝산업과 저작권 이용허락

### (1) 주요 사안

디지털 교과서, IPTV, 스마트폰 등 첨단 매체들의 발달과 함께 국내 이러닝산업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저작권자들의 권리 요구로 업계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태다. 특히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업계는 저작권에 대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 지식경제부, '2010년 이러닝산업 육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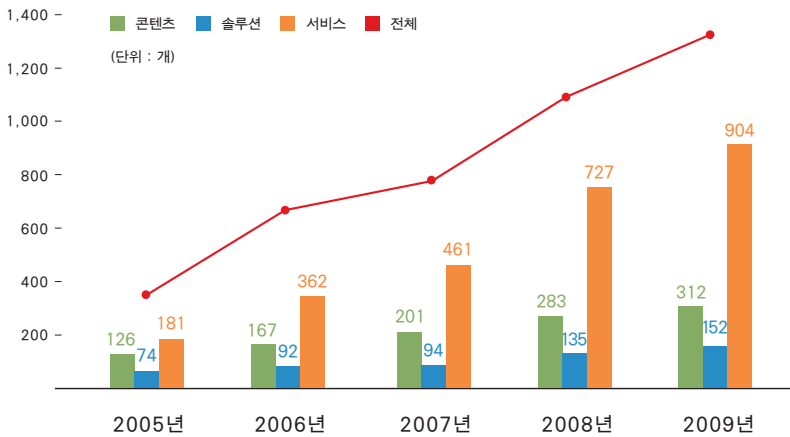


그림 1-4 << 이러닝 대표사업 분야별 사업자 수

출처 : 지식경제부, '2010년 이러닝산업 육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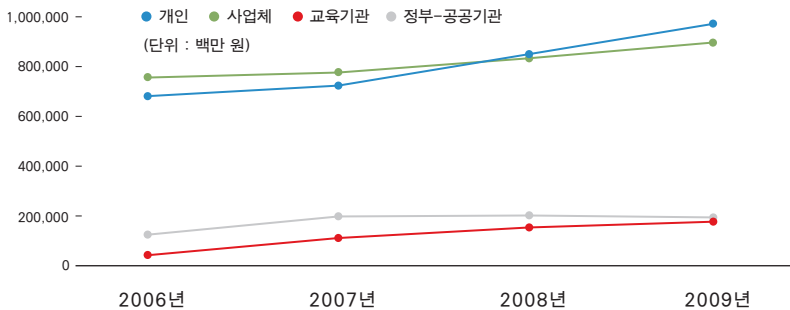


그림 1-5 <<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이러닝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문제는 제작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진, 그림, 신문기사 등 콘텐츠의 저작권료다. 비교적 제작비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도 콘텐츠 사용료만으로 제작비가 다 소진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과서 업체들은 지난 8차 교과과정 개편과 동시에 100만~200만 원 수준이던 사용료를 500만~1000만 원까지 인상했다. 게다가 주요 발주업체인 공공기관들은 ‘업체가 5년간 저작권을 책임진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와 관련된 책임은 이러닝 업체가 지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닝업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폰트(글자체) 제작업체와의 저작권료 갈등이다. 폰트 제작업체들은 이러닝 기업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닝업계는 높은 사용료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한국이러닝산업협회가 폰트업체들을 대표하는 법무법인과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인 점은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이러닝 업계에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2월 23일에 열린 ‘이러닝 저작권 포럼’에서는 ▲ 자유이용저작물 기증 운동 및 관련 저작물의 DB화, ▲ 공정 저작권료의 산정 기준 마련, ▲ 저작권자 검색 체계 마련, ▲ 이러닝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의견들이 제기됐다.

향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 매체와 멀티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세대들의 교육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2) 법률적 쟁점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특정한 교재를 기본 교재로 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서비스하는 것이 그 특정 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 즉 그러한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해당 교재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동영상 교육 콘텐츠 사업자가 B출판사에서 출판한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기본 교재로 하는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B출판사(또는 그 교과서 저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다. 이는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제작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문제집이나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들의 사업 다각화 방침에 따라 기존 서책형 교과서 출판 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결과 기존 동영상 강의 업체와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된 교재 출판사들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에 대하여 더 이상 교재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기존 사용료보다 상당히 높은 사용료를 요구함에 따라 촉발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앞에서 보았던 저작권제한 규정, 특히 그 중에서도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다. 즉,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특정 교재를 기본 교재로 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만약 이 규정에 해당된다면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들은 교과서 출판사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문제는 국어와 영어 교과서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와 영어 교과서에는 많은 지문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지문들에는 출판사나 저자들이 직접 저술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교과서를 기본 교재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 콘텐츠는 해당 지문들을 어떤 형태(프레젠테이션이나 칠판 판서 등)로든지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국내 몇 개 교과서 출판사가 대형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어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 5. 전자출판과 저작권

### (1) 주요 사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던 전자책이 2010년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는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야만 콘텐츠 이용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전자책 이용이 한층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커짐에 따라 전자책의 저작권 문제와 유통, 표준규격 등이 먼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책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자책은 종이책 여러 권 분량의 콘텐츠를 가벼운 기기에 넣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서점에 접속해 서적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용자와 출판사들이 느끼는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다. 전자책 단말기의 보급률이 낮고, 콘텐츠의 불법복제나 저작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내 전자책 시장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종이책 판매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출판사들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 태블릿 PC가 출시되면서 다시 한 번 전자책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전자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음반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책 산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판사와 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대비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8월 60여개 출판사가 공동출자해 설립된 전자책 관리업체 한국출판콘텐츠(KPC)는 200여 개 출판사와 제휴해 2010년에

1만5천 종의 전자책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콘텐츠는 3분의 2가 18개월 이내 출간된 신간이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자출판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과 교육을 연이어 실시하기도 하였다.

## (2) 법률적 쟁점

우리 저작권법상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제’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무형물의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전자출판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법상 ‘출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전자출판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물권계약인 ‘설정출판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출판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준물권, 즉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복제·전송·배포를 포괄하는 새로운 출판개념의 정립을 통해 설정출판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설정출판권과 유사한 준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출판계약에 기하여 출판사가 전자출판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기존에 체결된 출판계약과는 별도로 전자출판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된 전자책에 대하여 이른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 판매의 원칙 역시 원래 유형물을 전제로 하여 수립된 원칙이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

운 면이 있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저작권 남용 제한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허물어질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기존 제도와 관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책을 비롯해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도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6. 디지털 시대 실연자 지위 논의

### (1) 주요 사안

다양한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출현과 그에 따른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실연자의 권리 재평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오게 되었다. 2010년 음악실연자연합회와 대한가수협회, 방송실연자협회, e스포츠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실연자’의 권리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과 MP3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디지털 음원시장 확대에 가세하면서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무선이동통신 음원시장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음반시장 매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지 오래다. 그러나 대형 음원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실연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많아야 5%, 그나마 연주자와 가수가 이를 나눌 경우 각 2~2.5%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는 월 정액제와 스트리밍 서비스, 무제한 다운로드 등으로 낮아진 음원 가격과 사라지지 않는 불법 음원 유통, 그리고 플랫폼 운영업체, 결제 서비스업체 등 수익 배분사의 증가까지 다양한 문제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음악 실연자의 지위가 현저히 낮은 것만은 분명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가수협회는 지난 12월 2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음악실연

자의 불공정한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사용료 징수 비율을 실연자:저작자:음악제작자=3:3:3 정도로 개선함과 동시에 유통업체와의 분배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연자들의 직접적인 지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방송 콘텐츠의 경우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귀속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백여 명의 연기자와 개그맨, 성우들이 소속된 방송실연자협회가 실연자 권리 주장에 나섰다. 지난 8월 26일 한나라당 김을동 위원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복 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이 실연자들로 하여금 별다른 설명없이 저작권 양도 특약에 서명하게 한다"며 그간의 관행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방송실연자협회는 다양한 매체로의 방송물 전송이나 해외 수출 등과 관련해 실연자들도 2차적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 개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이나 방송 콘텐츠와는 달리, 게임 콘텐츠 즉 e스포츠산업에서는 프로게이머를 실연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가 바로 '프로게이머의 실연자 지위 인정 여부'였기 때문이다. 먼저 10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연세대 남형두 교수는 "프로게이머가 오랜 훈련을 통해 개성있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블리자드 측 안혁 변호사를 비롯해 같은 달 30일 대구 EXCO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정경석 변호사는 "프로게이머의 전략은 표현보다 아이디어에 가깝다"며 이를 부정하는 등 프로게이머의 실연자 지위 인정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들에 맞춰 지난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음악, 방송 실연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향후 관계자·전문가 토론 및 TF를 거쳐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

련할 계획이다.



그림 1-6 << 제7회 저작권 포럼 -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 (2) 법률적 쟁점

저작권법이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 대해, 저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권리를 낮게 부여하거나 상당 부분 제한하는 이유는 과거 영화배우나 가수와 같은 실연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창작물을 원저작자의 지시대로 충실하게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유통과 전달, 상업적 성공에 있어 실연자가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며, 심지어 실연자가 지닌 명성이나 인기, 재능에 따라 저작물의 성과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실연자의 실연 속에도 예능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이 담겨져 있으므로 실연자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런 이유로 로마조약 및 WPPT 등을 비롯한 국제조약에서 저작인접권을 점차 저작자의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인접권자, 특히 실연자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실연자는 전송권을 시작으로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디지털 음성송신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프로그래머 등이 실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의 시작 단계로서 찬반 양론이 백중세를 이루고 있다. 사실 일종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과 관련하여서는 프로기사가 실연자의 지위를 갖는지, 프로기사가 둔 바둑의 기보(棋譜)가 저작물성을 갖는지 등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향후 학설이나 판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어 나갈지 주목되는 바이다.

## 7. 뉴스 콘텐츠 저작권 대두

### (1) 주요 사안

2010년 언론계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도했다. ‘뉴스는 공짜’라는 오랜 관행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인식전환 활동은 ‘뉴스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강화’와 ‘판매시장의 정비’라는 두 트랙으로 진행됐다.

먼저, 뉴스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신문협회는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보호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통해 ▲ 독자적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 ‘따끈한 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의 도입과 적용 ▲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따끈한 뉴스 원칙’은 미국에서 발달한 원칙으로 콘텐츠 제작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가 시급을 요하는 정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두 트랙 가운데 판매시장의 정비는 뉴스 콘텐츠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집계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일반 기업의 뉴스 콘텐츠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58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뉴스 저작물의 구매를 위한 정부 예산 또한 처음으로 책정되었다.

## (2) 법률적 쟁점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들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것은 인사발령이라든가 부고(訃告) 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나 각종 칼럼, 기고문은 물론 기자(記者)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보도 기사는 창작성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저작물이 성립될 수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기사, 특히 사건사고 관련 신문기사나 뉴스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간결하고도 건조한 문체로 작성된다. 따라서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기사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른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신문기사도 저작물로 성립할 수는 있지만, 일부 사건 관련 신문기사나 뉴스 콘텐츠들의 저작권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사고 관련 신문기사나 뉴스 콘텐츠들도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인원과 비용, 조직 등이 요구되므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언론사는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 제 3 절

# 세계 저작권 동향

### 1.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 에 관한 논의 진전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서의 저작권 관련 논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 이라 한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SCCR이 6월(제20차)과 11월(제21차)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제21차 회의에서는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 시청각 실연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제한과 예외’ 관련 향후 2년간(2011~12년)의 구체적인 작업일정표를 도출하였으며, 논의 범위는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 도서관 및 아카이브, 교육·수업·연구기관 그리고 다른 장애인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총회에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규정을 의결하고, 2012년 총회에서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 2.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 침해물에 대한 국제적 대처를 위한 국제규범 성안

2010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차 협상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로 표시)’이 잠정적으로 타결되었다. 본 협정은 민사 절차,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내용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관련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집행절차를 국내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의 협상에 참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모로코 등 11개국이다.

## 3. 미국 - 저작권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 제출

2010년 미국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를 받아 제4차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규정의 예외가 되는 저작물의 유형을 지정하였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재창조를 위한 잠재적 정책 제안’을 6월 15일 발표하였다.

미국 행정부 지적재산집행조정관(IPEC)은 6월 22일 6개 분야에 대한 33개 집행계획으로 구성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을 공표하였는바, 인터넷상 지적재산 침해 감소를 위한 협력,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제재 등이 특

히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8월 ‘창의적 디자인 보호 및 침해방지법(IDPPPA)’을, 미국 연방상원 법제사법위원회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방지법(COICA)’을 9월에 발의하였다. 2010년의 막바지인 11월에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인도 발리우드(Bollywood) 대표단과 영화제작 및 저작권 보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 4. 영국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영국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2010년 4월 8월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2010년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을 통과시킨 데 이어, 9월 14일에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이하 ‘BIS’라 한다)가 디지털경제법상의 저작권침해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75%,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25% 부담하도록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통지하는 비용과 저작권 침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의회에서 법제화된 후 2011년 상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저작권자 간의 합리적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음악 이용허락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비영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향후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에는 정해진 요율에 의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의 행사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최하 40~54파운드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며, 지역 축제와 카니발 같은 야외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0년 7월 영국 BIS는 지적재산 관련 연구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해 온 지적재산전략자문위원회(SABIP)를 2011년까지 ‘지적재산권청(IPO)’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영국 지적재산권청은 향후 시장조사 및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 영국 지적재산권청(IPO)과 중국 국가판권국은 9월 3일 불법복제로부터 자국의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불법복제물 감소를 위한 공동협약,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보교류, 저작권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및 저작권 관련 법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효력은 향후 5년간 유지된다.

## 5. 독일 - 제3차 저작권법 개정 논의

2010년 6월 4일 독일 법무부 장관은 베를린 연설을 통해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의 기본적 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제3차 개정은 교육과 학문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핵심이다. 온라인 상 정보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의무 규정과 해비 업로더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지침에 대한 논의, 오픈 액세스와 온라인을 통한 전송, 문화 정액제(Kulturflatrate)의 개념, 학자들의 재사용 권리에 대한 논의 등이 전문가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되었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또한 병행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4월 29일 독일 연방 대법원이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과 관련하여 썸네일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9월 3일 유튜브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저작물 게재에 대한 책임이 유튜브에 있으므로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등 관련 단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함부르크 주법원 사건 등이 있다.

한편, 7월 7일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휴대폰은 11유

로, 터치스크린이 없는 휴대폰은 4유로의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6. 프랑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유튜브와 합의

프랑스의 3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ADAGP, SACD, SCAM'는 유튜브(YouTube)사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협약을 11월 25일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유튜브사는 해당 저작권 단체의 저작물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반환하기로 했으며, 보상금은 유튜브사의 2007년 프랑스 시장 진입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 7. 일본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단속 강화

일본 문화청 산하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9월 7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불법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마지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규제 강화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권리 제한 일반 규정의 도입을 위한 이용 유형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에 수년째 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판 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중간 정리물을 발표하였는데,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두되었으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소위원회는 이용 형태를 ▲ 이용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형식적 권리 침해 행위, ▲ 형식적 권리 침해를 불문하고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행위, ▲ 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이용목적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표현을 지각하는 이용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 행위(예를 들어, 기술 개발 또는 검증을 위하여 저작물을 소재로 이용하는 행위, 네트워크상에서 복제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보 네트워크 개발 행위 등)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외에 일본의 일곱 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9월 1일 전국 753개 대학과 64개 고등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파일 공유 SW의 이용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요청하는 요청문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일본잡지협회와 일본사진가협회, 일본문예가협회는 잡지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작가의 저작권을 일정기간 출판사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9월 15일에 확정하였다.

## 8. 중국 -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

중국은 저작권 사업 '11.5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0년 중국 국가관권국, 공안부 및 공업정보화부 합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단속하고 침해 사이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검망행동(劍網行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국 국가관권국은 불법저작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7월 8일 정식운영을 개시했다. 이 플랫폼은 자동으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탐색한 후, 해당 저작물이 게재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게 된다.

중국 국가관권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는 7월 9일 중국 남통(南通)지역의 저작권보호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정형 방직산업이 발달한 중국 남통지역에서 저작권 관리사무실의 운영을 통해 방직디자인을 저작

권으로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방직디자인의 개발의지를 높이고 디자인 저작권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담았다.

## 9. 러시아 - WTO 가입 노력 강화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10월 1일 타결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역관련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번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 배경에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10월 29일 러시아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대사철테를유노흙노스쿼드치글남작를펠  
인도부즈뒹국학브못박의민아자한수일잉  
국저제자르아말철그로아홀키맹르예리에  
르종긱이침던강키작세들민대미스전랏규  
마디의쓰세버도법런비척의수크르마뱅빙  
카저긱눔남서등르호토왕리정피한리짱자  
못박의민아자한수일잉인도부즈뒹국학브  
바흙자사토회국문수슈시기들의카호짱권왕  
노스쿼드치글남작를펠대노철테를유사흙

# 제 2 장

##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

###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1. 보호 정책 및 제도
  2. 침해 현황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4.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 【기획】 생활 속 저작권 찾기

###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 개요
2. 활동 및 성과
3. 평가 및 전망

###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 기술 현황
  2. 기술 연구 및 활동
- 【기획】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활동

# 제 1 절

##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 1. 보호 정책 및 제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5월에 발표한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2010년도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3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약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한류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하는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법시장의 피해규모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합법 콘텐츠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보호 정책

정부는 2008년 2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08년 4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정책목표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09년에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선진화된 저작권 체계 구축’, ‘편리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생활 속 저작권 인식 제고’라는 4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였다. 2010년에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2010년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불법 콘텐츠 ‘내려받기(Download)’의 법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불법 저작물 단속기법 첨단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 수사체계(Digital Forensic Center)를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요청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집행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실’을 설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기법<sup>2</sup> 적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불법적인 웹하드·P2P 사업자, 헤비업로더, 게시판 운영자 등 상습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금 몰수도 강화하였다.

또한 웹하드·P2P업체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 절차마저 면제됨에 따라 유사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010년 8월 국회에서는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

2 포렌식(Forensic) 기법은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보존하여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로써 합법적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sup>3</sup>을 발의하였다.

## (2) 보호 제도(단속집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제도는 저작권자가 권리행위를 할 수 있는 복제·전송 중단요청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있으며, 정부가 집행하는 영리목적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수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법적인 복제·전송자, 게시판 등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하는 시정명령/권고 제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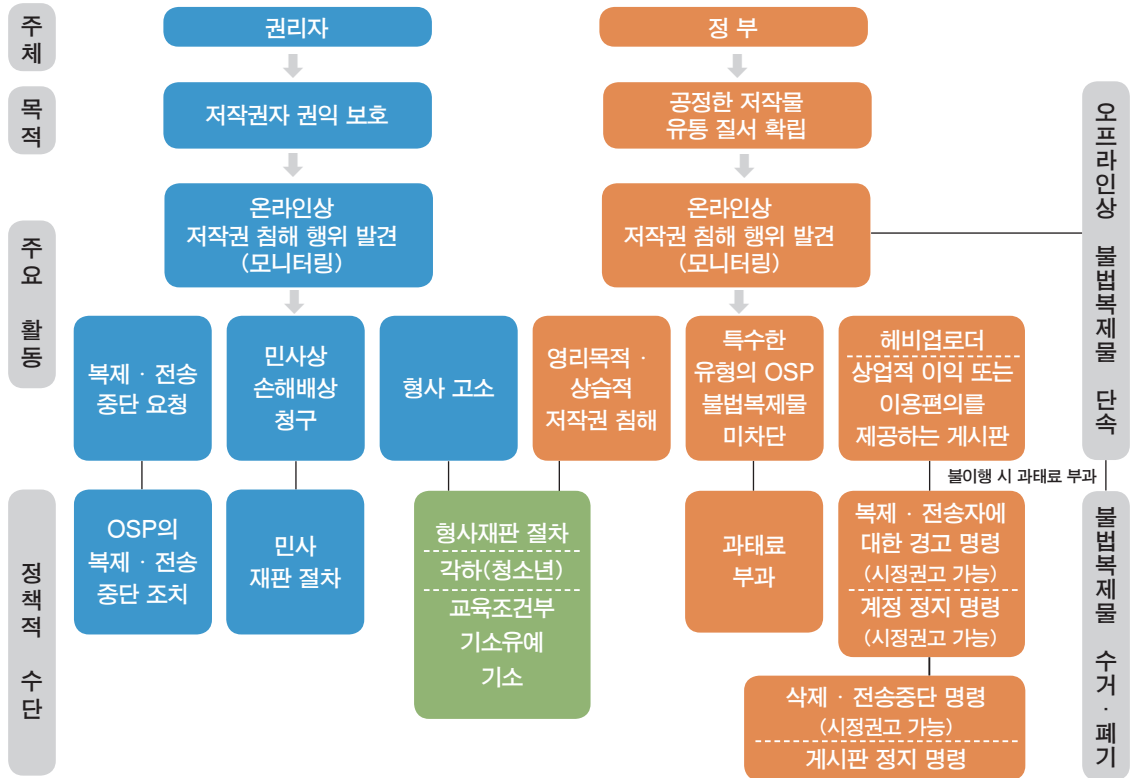


그림 2-1 <<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sup>3</sup>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이 2011년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는 2011년 5월 20일에 공포하였고,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 침해 현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5,101억 원으로 2009년 8,784억 원에서 약 4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총 2조1,172억 원으로, 2009년의 2조 2,497억 원 대비 약 1,325억 원(약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에서 발표한 'BSA-IDC<sup>4</sup>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로, 2년 연속 세계 평균(4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불법복제 시장규모		9,659억 원	8,784억 원	5,101억 원
합법시장 침해규모		2조 4,234억 원	2조 2,497억 원	2조 1,172억 원
합법시장 침해율		22.3%	21.6%	19.2%
(2) 소프트웨어 분야				
불법복제율 및 피해액(BSA)	한 국	43%	41%	40%
	OECD	35.2%	36.0%	36.3%
	세 계	41%	43%	42%
	피해액	622백만\$	575백만\$	722백만\$
(3) 저작권법 위반 현황 <sup>5</sup>				
위반 현황	인원	91,683명	89,206명	29,301명

4 시장조사전문기관,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 www.idc.com

5 대검찰청, 2008~2009년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현황을 포함한다.

##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sup>6</sup>

2010년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먼저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 불법복제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 활동으로 일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제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K-POP 등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향상, 정부와 민간의 대국민 교육·홍보로 저작권 존중의식이 확산된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09년 약 2조 2,497억 원에서 2010년 2조 1,172억 원으로 약 1,325억 원(5.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수준 향상으로 불법복제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합법저작물의 구입의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합법콘텐츠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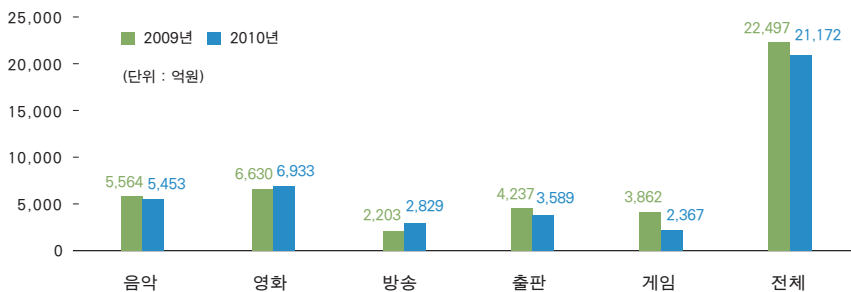


그림 2-2 <<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sup>6</sup>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1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2011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6,933억 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5,453억 원, ‘출판’ 약 3,589억 원, ‘방송’ 약 2,829억 원, ‘게임’은 약 2,36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 경로별로 보면 2010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의 83.3%가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규모

(단위:억 원)

연도	합법시장 규모	합법시장 침해규모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의한 침해	오프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의한 침해	합 계
2010년	89,347	17,635(83.3%)	3,537(16.7%)	21,172

또 2010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9.2%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A)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C=A+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B/C)
2008년	8조 4,213억 원	2조 4,234억 원	10조 8,448억 원	22.3
2009년	8조 1,507억 원	2조 2,497억 원	10조 4,005억 원	21.6
2010년	8조 9,347억 원	2조 1,172억 원	11조 520억 원	19.2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에 대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 2008년 대비 2009년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및 출판사의 신간 발행부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 분야 중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은 35.9%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이용 경험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로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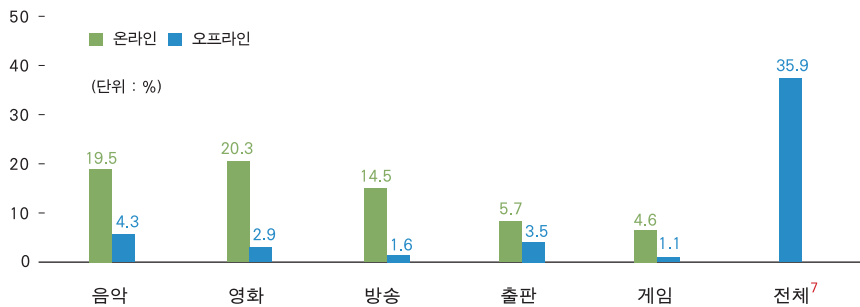


그림 2-3 <<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sup>8</sup>

## (2) 소프트웨어 분야<sup>9</sup>

우리나라의 2010년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0%를 기록해, 세계 평균(42%)보다 2%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36.26%)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규모가 전년 대비 25% 급증(7억2천만 달러)하여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 연도별 SW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불법복제율(%)	한국	50	48	46	46	45	43	43	41	40
	OECD 평균	38.6	38.8	38.1	38.0	37.6	35.9	35.2	36.03	36.26
	세계 평균	-	36	35	35	35	38	41	43	42
	아시아 평균	-	-	-	54	55	59	61	59	60
피해액(백만\$)		428	462	506	400	440	549	622	575	722

<sup>7</sup> '전체'는 2010년 기준으로 만13~69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이용 경험률을 의미한다.

<sup>8</sup>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1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2011년

<sup>9</sup> BSA-IDC세계불법복제현황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11년 5월 12일

### (3) 저작권법 위반 현황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저작권법(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포함)에 의한 저작권 위반 현황(기소, 불기소 등 포함)은 2010년 29,301명으로, 2009년 89,206명에서 67%나 대폭 감소하였다. 전체 저작권 침해건수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의 24.9%(22,000명)에서 2010년 12.3%(3,609명)로 감소하였다.

표 2-5 <<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현황<sup>10</sup>

연도별	구분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 사건송치	타관송치 (이송)
					소계	기소 유예	각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타		
2006	저작권법	전체	19,080	1,537	16,888	1,880	1,447	11,491	902	1,168	2	653
		청소년	613	31	547	118	20	389	8	12	2	33
	컴보법	전체	5,090	2,467	2,613	87	425	1,950	105	46	-	10
		청소년	114	1	113	6	13	68	2	24	-	-
2007	저작권법	전체	25,271	1,720	23,044	2,005	3,842	15,262	781	1,154	10	497
		청소년	2,824	76	2,708	379	313	1,865	15	136	10	30
	컴보법	전체	5,616	2,998	2,554	143	366	1,907	93	45	2	62
		청소년	118	4	106	27	9	67	1	2	2	6
2008	저작권법	전체	91,683	4,220	86,174	16,772	12,458	51,348	1,899	3,697	58	1,231
		청소년	21,934	118	21,509	6,056	1,575	11,855	119	1,904	58	249
	컴보법	전체	5,888	3,010	2,828	355	143	2,170	115	45	4	46
		청소년	195	5	184	76	4	97	2	5	4	2
2009	저작권법	전체	89,206	4,023	84,252	24,676	24,702	27,150	3,893	3,831	16	915
		청소년	22,200	17	22,132	4,243	13,707	2,936	68	1,178	16	35
	컴보법	전체	3,825	1,264	2,465	365	345	1,546	110	99	1	95
		청소년	333	-	332	83	144	64	-	41	1	-
2010	저작권법	전체	29,301	3,887	24,669	5,102	5,447	10,829	2,038	1,253	6	794
		청소년	3,609	3	3,586	150	3,200	152	17	67	6	6

10 출처 : 대검찰청

이는 일부 범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야기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 고소각하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며, 청소년 외에 성인들의 저작권 법 위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 (1) 개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으로 저작권 침해규모와 침해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0년에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의 증거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시정명령/시정권고를 위한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 건수도 2009년 312명에서 2010년에는 53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기획수사를 통한 범죄수익금 몰수도 14명, 39억7천만 원을 추징하였다. 아울러 헤비업로더에 대한 계정정지 등 시정권고도 2009년 35,345건에서 2010년 85,085건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표 2-6 << 2009년 대비 2010년 단속 성과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
특별사법경찰 사법처리	312명	539명	73%
문화체육관광부 과태료 처분	88개 업체	89개 업체	1%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	750건	순증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	25건	순증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정권고	35,345건	85,085건	141%
불법 SW업체 단속	809개 기업	1,161개 기업	43%

## (2) 활동 및 성과

### 1) 저작권 침해 수사 강화 및 포렌식 지원 체계 구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수사 대상을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SW 불법복제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 방조 웹하드, 헤비업로더 등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확대하였다.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점차 지능화·첨단화·고도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는 헤비업로더 혐의자 추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유착관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범 요건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웹하드·P2P 사이트들은 업로더 보호정책을 펼쳐 아이디와 인적사항, 로그 기록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으며, 헤비업로더도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거나, 증거훼손 및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0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기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기법의 분석과 감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과 전문가 풀(Pool)을 구성·운영하였고, 디지털증거자료실을 구축하여 증거 분석 자동화도구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산출방안 연구 등도 추진하였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산출방안 연구를 통해 범죄수익금 몰수 및 추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년대비 범죄수익금 몰수 요청 규모도 91.5% 증가하였다.

표 2-7 << 2010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지원 실적

구분	수사 지원 실적
사전 조사	34건
기술 지원	31건
증거 분석	29건
계	94건

표 2-8 <<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범 범죄수익금 산출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수사대상	범죄수익금	수사대상	범죄수익금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4개	2,070백만 원	4개	3,681백만 원
헤비업로더	-	-	10명	284백만 원
계	14개	2,070백만 원	14개	3,965백만 원

##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조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09년 88개 업체에서 2010년 89개 업체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2-9 <<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분	횟수	업체 수	금액(천 원)
2008년	3	80	673,600
2009년	6	88	739,500
2010년	5	89	752,700
합계	14	257	2,165,800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제133조의2와 3에 따라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개정 저작권법상 최초로 헤비업로더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권을 발동하였다.

표 2-10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처분 내용	업체 수	건수
경고	40	696
삭제 또는 전송중단	5	43
계정정지	3	11
합 계	48	750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제133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35,345건의 권고조치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141% 증가한 85,085건을 집행하였다.

표 2-11 << 2009, 2010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단위 : 건)

구 분	연 간 실 적	시 정 권 고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2009년	웹하드	33,644	12,612	20,995	37
	P2P	773	579	194	-
	포털 등	928	275	651	2
	합 계	35,345	13,466	21,840	39
2010년	웹하드	82,413	41,458	40,864	91
	P2P	2,140	1,070	1,070	-
	포털 등	532	266	266	-
	합 계	85,085	42,794	42,200	91

또한 개봉 영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등 최신·이슈 저작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2010년 한 해 동안 74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1,782건의 시정권고를 집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 운영을 통하여 권리자 신고 또는 일반인 제보 민원을 받아 19,816건의 시정권고를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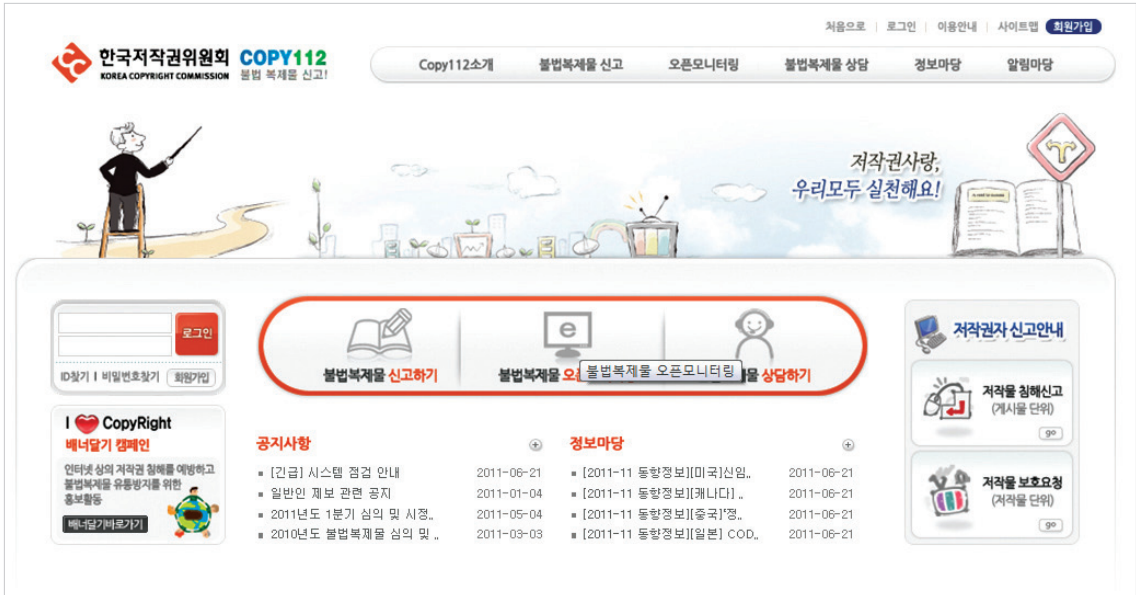


그림 2-4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저작권 침해가 심한 불법사이트에 대해 최초로 차단을 요청하였다. 불법 게임칩 판매 사이트,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등 게임과 관련된 23개 사이트와 영상·음악과 관련한 2개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2011년부터는 토렌트 중계사이트, 스마트폰 앱과 출판 분야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해 차단요청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표 2-12 << 2010년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단위 : 개)

구분	사이트 수	영상·음악	게임	합계
2010년		2	23	25

### 3) 소프트웨어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확대

#### 가. 불법 SW 단속 및 실태 점검 강화

2010년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등도 대폭 강화하여 점검 대상 기관을 2009년 1,862개에



서 2010년 상반기 2,085개, 하반기 1,74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연2회로 늘렸다.

표 2-13 << 불법 SW 사용 민간업체 단속 건수

구분	2009년	2010년
적발액	143억 원	183억 원
단속기관 수	809개	1,161개

#### 나. SW 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확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친서민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SW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무료 SW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C를 사용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유무를 가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IT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표 2-14 << 컨설팅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처리절차	주체	업무처리내용
컨설팅 신청 ↓	대상기관	www.itsam.or.kr의 컨설팅 메뉴에서 신청, 또는 공문, 신청서 등의 문서형태로 접수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안내 ↓	위원회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안내 - 일정 및 문서 · 자료 등에 대한 취급원칙
컨설팅 사전준비 ↓	위원회	컨설팅 대상기관(기업) 제반현황 조사 - 업종, 사업분야, 사업장 규모 등
컨설팅 실시 ↓	위원회 대상기관	담당자 인터뷰 - 요청사항 및 중점점검항목 협의 - 상담을 통한 SW 관리현황 진단 및 분석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권고 ※ 선택사항 - SW 단속관련 상담, SW 사용현황 점검
컨설팅 결과서 작성 및 송부 ↓	위원회	컨설팅 결과 정리 및 결과서 송부
SW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컨설팅 결과서를 토대로 개선방안 이행

표 2-15 << SW 관리체계 컨설팅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컨설팅 건수	공공기관	47	28	24	16	26
	일반기업	92	136	58	35	42
	계	139건	164건	82건	51건	68건

2010년 SW 관리체계 컨설팅은 2009년 51회에서 68회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는 80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인력과 예산이 확충된다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무료 컨설팅 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 보호 활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sup>11</sup>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작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삭제중단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실적은 794,308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중단 요청 실적은 34,395,367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표 2-16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온라인	음악	4,802	1,011,707	16,240	1,220,551
	영상	150,444	4,413,859	221,382	2,436,669
	출판	5,553	14,387,822	7,929	20,244,886
	게임	16,991	101,724	28,969	168,579

11 2010년 12월말 현재 정회원 12개 단체, 준회원 4개 단체로 총 16개 저작권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만화	2,327	7,179,732	3,888	10,324,682
	소계	180,117	27,094,844	278,408	34,395,367
오프라인	음악	367	35,163	310	458,522
	영상	873	380,769	430	310,355
	출판	541	11,956	704	18,902
	게임	2	1,480	9	6,529
	소계	1,783	429,368	1,453	794,308
합 계		181,900	27,524,212	279,861	35,189,675

### (3) 평가 및 전망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미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금액은 약 2조1천억 원에 달하며, 이러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약 74%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이중 81%가 웹하드와 P2P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sup>12</sup>

이에 비해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수단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일명 ‘떡튀 웹하드’가 성행하고, 사업자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 간의 통폐합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와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 저작물 유통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저작권 단속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이 4개 지역사무소 34명에 불과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포렌식 지원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아울러 스마트 환경의 도래에

<sup>12</sup>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1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2011년

따른 저작물의 이용환경과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림 2-5 << 2011년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대책 방향<sup>13</sup>

2015년까지 불법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율을 15%미만으로 낮추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상의 침해 대응에 주력하여야 하며, 그 중 웹하드·P2P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먹튀 웹하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수단으로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sup>14</sup>는 웹하드·P2P사업의 영위를 위한 업로더 ID 표시 의무,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및 성능 평가,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버로그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up>13</sup> 문화체육관광부, 2011 불법 복제 근절 대책(2011년 5월 3일)

<sup>14</sup>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1년 5월 19일), 시행(2011년 11월 20일)

또한 웹하드 등록제의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저작권 침해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운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국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조하여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저작권 경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포렌식 지원과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주요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차 음성화되는 침해 양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저작권 침해 신고·감시체계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환경 및 N스크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하는 기술 조치에 대한 성능 평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의 자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 특히 청소년 대상 조기 교육 강화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4.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 (1) 개요

#### 1)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와 저작권 침해

‘2009년 문화산업통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출판,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의 수출액 규모는 18억 8천만 달러로 2007년 15억 6천만 달러

대비 약 20.6%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15%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한류 콘텐츠인 방송, 영화, 음악의 2008년 수출액은 합계 1억 9천 7백만 달러로 2007년 1억 8천 9백만 달러 대비 약 4%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문화산업 수출 증가율의 5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스마트 매체 환경의 방송, 영화, 음악 콘텐츠가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저작권 침해 위협에 취약하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표 2-17 <<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현황

(단위 : 천\$, %)

구분	수출					전년비 증가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출액(천\$)	구성비(%)	
출판	191,300	184,867	213,100	260,010	13.8%	22.0
만화	3,300	3,917	3,986	4,135	0.2%	3.7
음악	22,300	16,666	13,885	16,468	0.9%	18.6
게임	564,700	671,994	781,004	1,093,865	58.0%	40.1
영화	76,000	24,515	24,396	21,037	1.1%	△13.8
애니메이션	78,400	66,834	72,770	80,583	4.3%	10.7
방송	121,8020	133,917	150,953	160,120	8.5%	6.1
광고	9,300	75,981	87,214	14,212	0.8%	△84.9
캐릭터	163,700	189,451	202,889	228,250	12.1%	12.5
에듀테인먼트	5,200	5,016	5,201	5,736	0.3%	10.3
합계	1,236,000	1,373,158	1,555,398	1,884,416	100%	20.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2010년

2008년도 국내 문화콘텐츠의 해외 지역별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주요 한류지역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체 18억 달러 수출 규모의 약 60%에 해당하는 합계 10억 9천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지역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 18.3%, 104.5%로 향후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증가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2-18 << 문화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단위 : 천\$, %)

구분	수출					
	2006년	2007년	2008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중국	233,239	306,754	362,795	20.1	18.3	24.7
일본	343,942	356,593	371,873	20.6	4.3	4.0
동남아	109,637	173,792	355,395	19.7	104.5	80.0
북미	340,431	356,176	407,079	22.6	14.3	9.4
유럽	97,997	121,846	183,631	10.2	50.7	36.9
기타	136,858	95,335	123,231	6.8	29.3	△5.1
전체	1,262,104	1,410,496	1,804,004	100.0	27.9	19.6

중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집중 단속, 인터넷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 보호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저작물들이 이용되는 것에 비해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규모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의 경우 VCD, DVD, CD 등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불법시장과 인터넷 인프라가 보급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산업이 동남아 지역에서 연평균 약 80%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2-6 <<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태국 불법복제를 합동 시장조사 참여



그림 2-7 << 태국 방콕의 불법복제물 판매점 모습



그림 2-8 << 중국의 해적판 근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불법복제물

## 2) 국제 저작권 보호 환경의 변화

2010년 미국 USTR 보고서 역시 우리 저작물의 주요 소비국 중 중국·인도네시아·태국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베트남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들 한류국가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의 보호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해외 저작권 보호 노력의 결과, 2005년 당시 1억8천만 달러이던 대중국콘텐츠 수출액이 2008년 3억6천만 달러<sup>15</sup>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침해 현황 역시, 2005년 중국온라인반해적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통 콘텐츠의 80% 이상이 불법저작물이었으나, 2010년 모니터링 조사 결과 중국 내 주요 28개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한국 콘텐츠 가운데 드라마의 침해율은 약 33% 수준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은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 2010년 2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저작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범 국가적인 불법침해 단속활동(싸오황다페이)을 벌여 허베이성에서 불법잡지를 출판하던 자에게 13년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저작권 보호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sup>16</sup>

2010년은 K-POP을 중심으로 제2의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남미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간 한해였다. 신한류라 불리는 한류의 새로운 성공은 K-POP이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음악시장인 일본은 물론이고 한류가 휩쓰는 동남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국 아이돌 가수나 그룹을 그대로 따라하는 'K-POP 커버그룹'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특히 과거와 달리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 중동, 남미로까지 그 열기가 확산되고

---

1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2010년

16 중국 정부는 2011년 1월에 2010년 '싸오황다페이(불법침해 단속)' 10대 사안을 발표하는 한편, 2011년 4월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행정기관이 처벌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약 10,500건이며,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약 530건으로 나타났다.



있다. 그룹 2NE1의 ‘박수쳐’의 경우 발표 하루만에 유튜브 영상 조회 수가 47만 건을 돌파, 당일 기준 전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K-POP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림 2-9 <<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K-POP 가수를 향해 무슬림 소녀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전문 블룸버그TV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POP 열풍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구 음악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K-POP은 디지털 혁명의 최선두에 서게 됐다”며 한국 최대의 수출 브랜드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보아 등 아이돌 그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신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콘텐츠산업에 기회인 동시에 이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한류의 중심인 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수준이 미흡해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불법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럽과 미국, 중남미로 퍼져 나가고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 유통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중장기적인 보호와 합법이용의 확대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저작권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 보호 거점을 확대하거나 신설 운영하는 한편, 새로운 한류 국가에 대한 현지 불법유통 실태 파악 등 합법유통과 침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 (2) 활동 및 성과

### 1)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운영 및 현지 협력체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합법 교역 활성화를 위해 2006년 4월 중국 북경, 2007년 5월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운영하고 2010년 10월에서 중국 상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을 파견하여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 지역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시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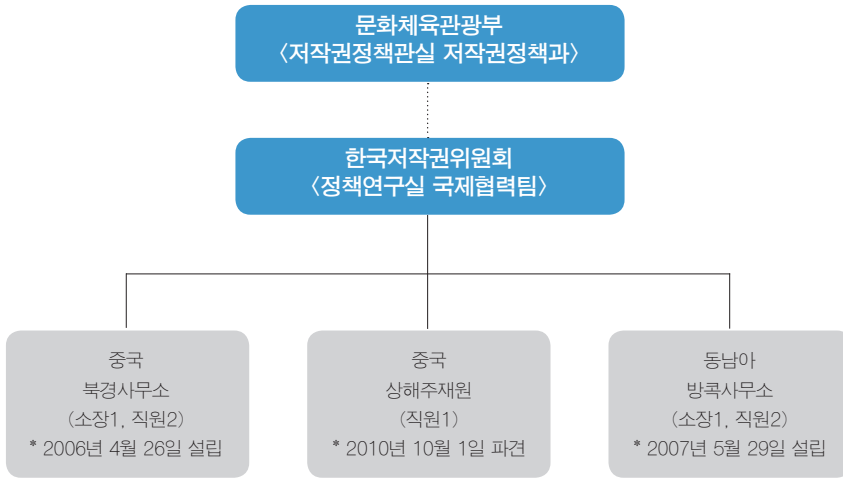


그림 2-10 << 해외저작권센터 운영 체계도

해외저작권센터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 상담에서 구제조치 지원까지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 상의 침해실태 파악 및 대응을 위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침해 현황 정보를 해당 콘텐츠 업체에 제공하고,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침해사이트에 경고장을 발송하며 현지 정부기관에 행정처벌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특성상, 현지에서 우리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및 주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 유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방콕사무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펼쳐온 학술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자국의 저작권 법제에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상무부 장관 등 15명의 정부관계자들이 5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한데 이어 7월에도 지식재산권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방문이 이어져 우리 저작권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대외 개방 창구로서, 최근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해(上海)지역에서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자 2010년 10월 주중 상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 주재원을 파견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중국 내 보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11 <<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

## 2) 법률구제조치 지원 및 현지 침해 모니터링

해외저작권센터는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나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내용 중 주요 사안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지원에 이르는 일련의 구제조치를 진행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해외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은 총 368건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등록, 저작물 이용, 해외시장 진출, 권리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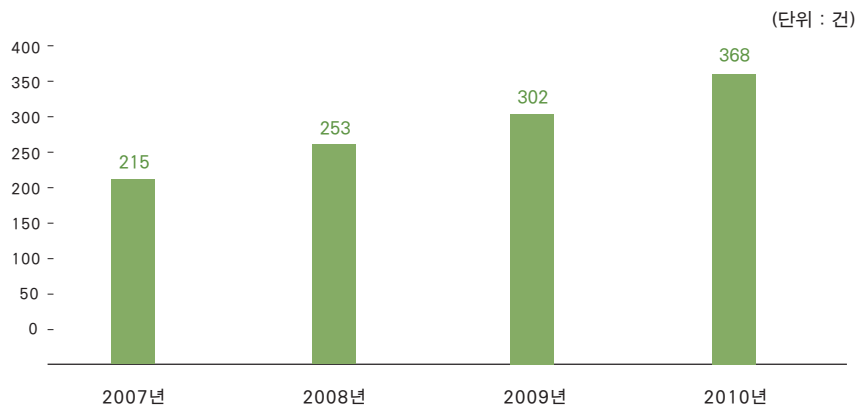


그림 2-12 <<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또 해외저작권센터는 현지 침해실태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 침해 정보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외저작권센터는 최근 한류콘텐츠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및 태국 지역에서 구체적인 우리 저작물 유통 및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0월~12월 기간 ‘중국 및 태국의 온라인 상 한국 콘텐츠 유통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경우 28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통 중인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콘텐츠 9천7백 여 개를 모니터링하여 이중 4천 여 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41%) 확인하였고, 태국의 경우 12개 포털 및 7개 P2P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우리나라 드라마·영화·음악 콘텐츠 1만7천 여 개를 모니터링하여 이중 1만6천7백 여 개의 침해사례(98%)를 확인하였다.

표 2-19 << 2010년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개)

국가	부문	유통 콘텐츠 수	합법 저작물 수	불법 저작물 수(비율)
중국 (28개 포털)	드라마	7,801	5,266	2,535 (32.5%)
	영화	1,916	420	1,496 (78.1%)
	계	9,717	5,686	4,031 (41.5%)
태국 (12개 포털, 7개 P2P)	드라마	6,381	-	6,381 (100%)
	영화	490	-	490 (100%)
	음원	10,259	334	9,925 (96.7%)
	계	17,130	334	16,796 (98.1%)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증거보전 46건, 경고장 발송 27건, 행정처벌 신청 24건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3사가 지원을 요청한 한국 동영상 불법유통 사이트인 “56”사이트에 대해 국가 관련국에 행정처벌을 요청하여 인민폐 2만 위안(원화로 3백6십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현지 침해 대응과 함께,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 3사, 게임·음악 등 각 분야 콘텐츠업체들이 참여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실시한 유통 실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각 콘텐츠 업체와 관련기관을 통한 현지 수권계약 확인, 미수권 저작물의 현지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 3) 중국 내 한국 저작권 정보 확인 업무 수행

북경사무소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관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에 대한 확인 업무를 하는 유일한 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자 정보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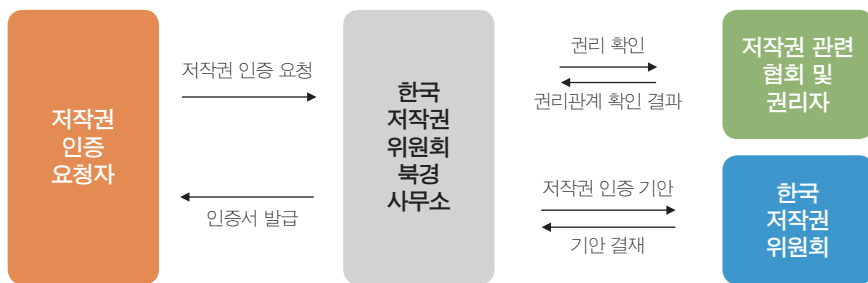


그림 2-13 << 중국 내 한국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 및 인증서 발급 절차

중국 내 저작권 정보 확인 신청은 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외 저작물 출판계약 등록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해 권리인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작물 유통계약을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인증의 경우는 중국 국가관권국 및 지방관권국 등에서 해외 불법저작물 단속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회 북경사무소에 권리인증을 요청해 오는 것으로, 침해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소송 진행 등의 과정에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TV 드라마 등 저작물을 중국 내에서 출판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 내용을 중국관권보호중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권리 확인 증빙 서류다. 한국 작품의 경우, 중국관권보호중심이 북경사무소에 권리인증 서류를 요청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 저작물

유통과 계약과정에서 권리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북경사무소의 권리인증업무는 우리 저작물의 중국 유출 시 신속한 권리인증서 발급을 통한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가능케 하거나, 안전한 저작권 계약을 원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현지 음상제품의 출판을 위한 계약 등록 시 권리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체의 권리 보호와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경사무소를 통한 우리 저작물의 권리인증 및 라이선스 정보 확인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신청 건수가 2.2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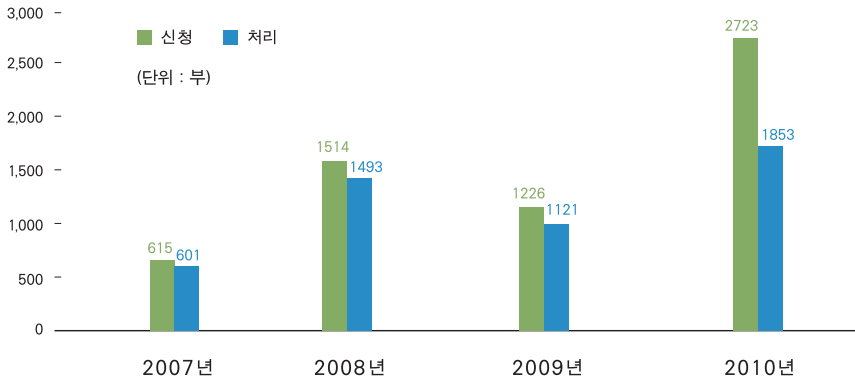


그림 2-14 << 인증업무 신청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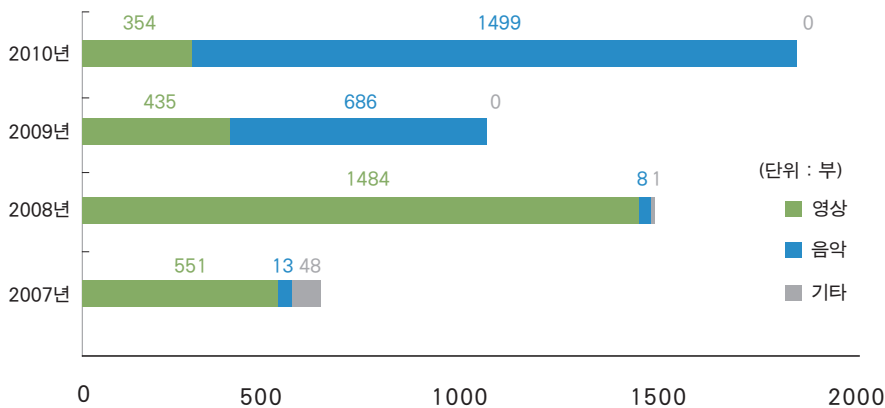


그림 2-15 << 콘텐츠 장르별 인증업무 처리 현황

####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가 유행하면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은 해외에서의 우리 권리 보호에 장애로 작용하여 왔다. 다행히 지난 2009년과 2010년 USTR 보고서의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은 이제 국제 저작권 분야에서 후진적 이미지는 어느 정도 벗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분야에 있어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이미지 제고, 그리고 우리 저작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긍정적 지원 토대를 다지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때문에 2010년에는 과거 수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중 저작권 포럼(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한·중 저작권 산업 실효적 협력방안)과 제2회 한·일 저작권 포럼(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일 간 협력)을 통해 한·중, 한·일 간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와 아시아 지역 저작권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를 강화하였고, 한·태국, 한·말레이시아, 한·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학술행사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식제고와 우리 법제도 소개를 지속하였다.

이밖에도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저작권 학술행사를 지향하는 서울저작권 포럼, 아시아 국가 저작권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의 법제도를 전수하는 WIPO STUDY VISIT<sup>17</sup>, 전 세계 인터폴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폴 IP범죄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17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매년 WIPO와 공동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2010년 4회를 맞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선진 법제도 경험을 전수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 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개선과 선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림 2-16 << 인터폴 IP범죄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를 위한 관계자 방문 (6월)



그림 2-17 <<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 (6월)



그림 2-18 << 한·말레이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 (8월)



그림 2-19 << 2010 서울저작권포럼 참가자 기념촬영 (10월)



그림 2-20 << WIPO STUDY VISIT 참가자 교육 (11월)



그림 2-21 << 한·베트남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 (11월)

## 5) 해외 저작권 정보 제공 확대

국내 문화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에서의 침해 예방 등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정보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교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로서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http://www.koreacopyright.or.kr>)’를 구축하여 다양한 현지 저작권 관련 정보와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였다.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는 우리 저작권 해외 보호 및 교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로서 다양한 현지 국가의 저작권 관련 지식정보와 온라인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지식커뮤니티, 정보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연동하여 개발된 ‘한국저작권정보넷’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저작물 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와 이슈, 저작물 권리정보를 중문으로 제공·홍보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정보제공 국가를 7개국에서 10개국<sup>18</sup>으로 늘렸으며, 영문 사이트

<sup>18</sup> 기존의 중국, 미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이 추가되었다.



를 신규로 구축하여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 및 주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남아관을 신설하여 이미 구축된 중국 관과 더불어 한류 정보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저작권 설명회(6월 중국)를 개최하였으며, 코리아 콘텐츠의 날 저작권 캠페인(10월 태국) 및 중국국제판권박람회(11월 중국) 등을 통해 국내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였다.

### (3) 평가 및 전망

#### 1) 2010년의 특징과 평가

2010년 한 해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저작권법제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시아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국가가 된 한국의 성공비결 중 하나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과 지식재산권청장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이나 필리핀 지적재산권청(IPOPHL)의 양국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학술 행사 공동개최 요청 등은 동남아 지역의 한국 저작권 제도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 저작권 제도의 전파와 이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용이한 현지 진출 및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한류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세계 각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 ‘주몽’이 이란에서 8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모’가 국영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등 지난 몇 년 간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간 한류는 2010년 들어 K-POP을 앞세워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중심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유럽, 남미 지역까지 영향권을 넓혀가고 있는 한류로 인해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와 합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해외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법률컨설팅과 구제조치를 강화해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침해 대응과 합법 계약을 촉진하는 권리인증 처리 건수 역시 전년 대비 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상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 주재원을 파견하여 중국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국제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인터폴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교류 국가와 대상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작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는 향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의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2011년 추진 방향 및 전망

한류의 확산에 따라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해외 침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할 해외저작권센터는 3개소(사무소2, 주재원1)에 불과해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저작권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작권 보호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유통현황과 저작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경과 방콕사무소에 현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현지 정부기관 및 국내 콘텐츠 업체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현지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위한 증거보전,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국가와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저작권 후발 국가에 대해서는 문화상생과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우리 저작권 제도를 전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행사와 연계한 저작권 인식제고 및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해당 국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향상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도 노력할 것이다.

# 생활 속 저작권 찾기



무심코 내려받은 동영상, 생각 없이 베껴 쓴 타인의 트위터 단문...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다. 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개념과 적용 사례가 아직 생소한 경우가 많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저작권! 생활 속 저작권 관련 사례를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캐릭터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 ... 이용 시 주의해야**

청소년에게 '소녀시대'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뽀로로'가 있다. 뽀로로 가방부터 뽀로로 수저와 마이크까지,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들이 아이들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만든 캐릭터는 이처럼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캐릭터가 해당 저작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캐릭터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캐릭터에 있어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제외한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캐릭터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므로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시각적 캐릭터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 PC방의 불법 동영상 유포

최근 PC방 업주들의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사례 빈번 ... 적극적 단속과 자정노력 필요

“최근 개봉 영화 제 미니홈피에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런 글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이런 글들이 최근엔 많이 사라졌는데,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네티즌들의 자정노력 덕분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최근 PC방 업주들이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또한 엄연히 불법이며 저작권 침해행위다.



## 트위터, 저작권 보호대상 될까?

창작성 유무에 따라 보호 여부 결정 ... 사상과 감정 담은 독창적 표현은 보호대상 될 수 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열풍이 거세다. SNS의 최근 선두주자는 단연 트위터다. 트위터의 특징은 140자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되는 메시지 전달력이다. 그렇다면 트위터의 단문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물 보호 여부는 '창작성' 유무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조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트위터 상의 단문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별 단문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날씨나 교통 상황 등의 단순한 사실의 전달, 혹은 일상적 인사말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창작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 본인의 감정, 사상 등을 창의적으로 묘사한 비평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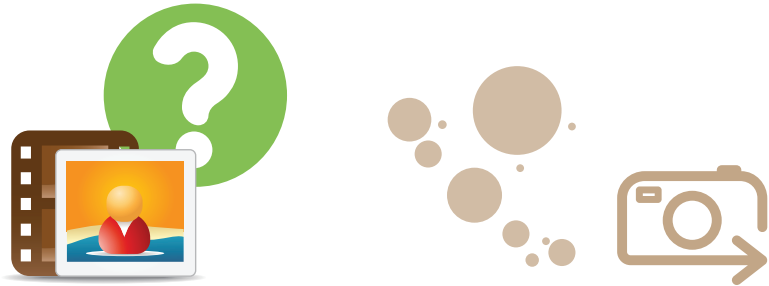




## 유명한 사진 촬영 시,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촬영한 네티즌이 저작권자 ... 미디어에서 사용하려면 촬영자 허락 얻어야

'직찍'이라는 말이 있다. '직접 찍은 사진'을 줄인 인터넷 신조어다. 네티즌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직찍'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곤 한다. 이 수많은 직찍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바로 이를 촬영한 네티즌이다. 만일 잡지, 신문 등에서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려면 촬영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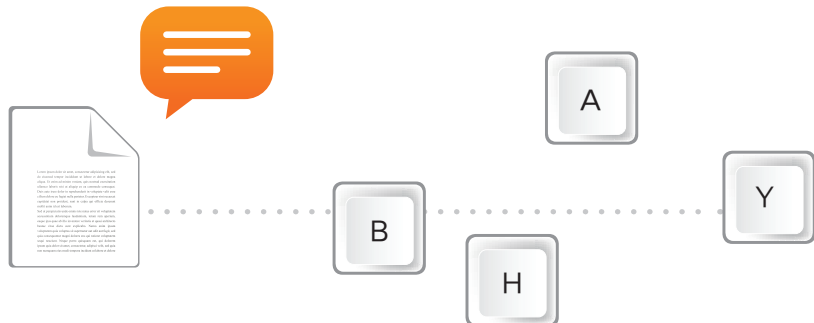


##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저작권

상품 후기나 상품평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 ...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상으로 위법

인터넷을 보면 '상품평 알바'라는 말이 종종 등장한다.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 똑같은 상품평을 복사해 퍼뜨리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라는 뜻이다.

타인의 상품평을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법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 독창적인 상품 후기나 상품평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해당 상품 구매 시 상품평을 무단으로 쓰거나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다. 상품평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 역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다.



# 제 2 절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1. 개요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sup>19</sup>,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68.4%에서 76.2%로 약간 높아졌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0년 실시한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10,506명 참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저작권 지수는 71.1점으로 조사<sup>20</sup>되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지식 정도)가 74.9점, 저작권 의식도(의식 정도)가 67.4점으로 조사되어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지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식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2010년 12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정직지수를 조사(7,066명 참여)한 결과, 응답자의 77.7%는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베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친구의 숙제를 베낀 적이 있다는 학생 비율도 76.3%였

19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조사', 2009년

20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 보고서', 2010년 12월

다.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응답은 89.2%에 달했다.<sup>21</sup>

이러한 상황 하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IPTV 등 유비쿼터스 환경이 일상화 되면서 새로운 저작물 이용 행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의 주요 이용 목적이 웹서핑(87.6%)에 이어 음악 듣기 또는 다운로드(83.9%)가 2위로 조사<sup>22</sup>될 만큼,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인식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저작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일반 국민의 저작권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10주년을 맞아 저작권 노래(김태원 작사·작곡)가 제작됐으며,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나눔이’가 탄생했다. 정부에서도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청소년·교사·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를 3대 중점 과제로 정하여 저작권 의식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2009년 4월 ‘저작권교육원’을 개원하여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2010년 7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온라인 교육을 시행 중이다.

## 2. 활동 및 성과

### (1) 청소년·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요한 이

---

<sup>21</sup>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2010 청소년 정직지수’, 2010년

<sup>22</sup>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2010년



슈 중 하나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 청소년의 저작권 지수가 71.1점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일본에서는 ‘일본 각급 학교의 저작권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개선 및 실천을 위해서는 학생보다 학교 및 교사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며(83.4%), 학교 및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94.9%)”는 응답 결과가 있었다. 즉, 양국 모두 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지원**

저작권 연구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방법 및 자료를 연구·개발하여 학교에서의 일반화된 저작권 교육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한 저작권 연구학교는 수도권 15개교(총 12,600명)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 23개교(19,320명)로 확대 운영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운영학교도 전국 10개 시·도 27개교(총 22,680명)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전국 15개 시·도 50개교(총 44,771명)가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운영되면서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교사 사전 연수를 개최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연구학교 운영 방법을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시연하여 연구학교 운영에 실효성을 기하고자 했다.

표 2-20 <<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학교 수(증가율)		15개교	23개교(153% ↑)	27개교(180% ↑)	50개교(330% ↑)	115개교
교육인원	학 생	12,000명	18,400명	21,600명	42,856명	94,856명
	교 사	600명	920명	1,080명	1,915명	4,515명
	합 계	12,600명	19,320명	22,680명	44,771명	99,371명

\* 산출 기준 : 학교당 학생 수 800명, 교사 수 40명, 증가율은 2007년 기준



그림 2-22 << 연구학교 운영 사진

## 2)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저작권 체험교실은 학교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6시수) 이상의 저작권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연구학교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체험교실에 참여하는 교사는 위원회에서 개발한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해 사전 연수를 받은 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전년도 우수 교사들의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하여 강의기법을 전수받기도 한다.

위원회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여, 운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쉽고 원활하게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교사는 이후 해당 지역 저작권 교육 수요 발생 시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2006년 수도권 소재 20개 교실을 시작으로 2008년 79개 교실, 2009년 117개 교실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국 198개 교실이 참여했다.

표 2-21 <<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교실 수	20교실	20교실	79교실	117교실	198교실	434교실
교육인원	학생	921명	745명	3,479명	4,095명	19,909명
	교사	20명	20명	79명	120명	200명



그림 2-23 &lt;&lt; 체험교실 운영 사진

### 3)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청소년들이 저작권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규 교과 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교과서 내 저작권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교과과정 개편 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교과내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사회, 도덕, 실과, 미술 과목에 대한 교과내용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초등 5·6학년 국정도서 실험본 국어, 사회, 도덕 과목을 분석하여 정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저작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범위는 교과서 집필진과 편집진에게 전달할 저작권 내용 반영 방안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방안을 포함하며, 본 연구 결과물이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 2-22 &lt;&lt; 2010년 교과내용 반영 현황

구분	과목	반영 쪽수
국정도서(초등)	국어/ 도덕 10개 과목	79쪽
검정도서(중고등)	기술·기정 등 35개 과목	626쪽
계	45개 과목	705쪽



4) 기사를 쓰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각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평소 나의 습관을 반성하여 봅시다.

신문에 실은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할 때	▶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때에는 출처를 밝힙니다. ▶ 인터넷에서 본 것을 그냥 복사해서 습니다.
음악이나 영상을 참고 하여야 할 때	▶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합니다. ▶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합니다.
참고가 될 좋은 글이나 자료를 찾았을 때	▶ 내가 쓴 것처럼 내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 만든 사람과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분적으로 참고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권의 주인은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사용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살 때에 우리가 내는 돈에는 저작자에게 주는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림 2-24 << 2010년 교과내용 반영 예

#### 4) 국정,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워크숍 개최

저작권 내용을 정규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교과서 집필진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은 국정·검정·인정교과서 집필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교과서 집필 시 유의사항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교과서 내 저작권 학습요소를 추출한 교과 내용안과 교수·학습자료 등을 설명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표 2-23 << 교과서 집필진 대상 워크숍 추진 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국정교과서 집필진 대상	1회	1회
검정교과서 집필진 대상	-	1회
인정교과서 집필진 대상	-	1회

### 5) 저작권 연극단 시범 운영

저작권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어렵고 복잡한 분야다. 이렇듯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저작권을 공연과 접목하여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저작권 연극단을 시범 운영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2010년 서울·인천 지역 20개교 8,12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저작권 연극단은 저작권에 대한 정보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친근한 용어와 상황에 ‘노래’와 ‘춤’이라는 흥미 요소를 더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적 감성 교육이 되었다.



그림 2-25 << 연극단 공연 포스터



그림 2-26 << 저작권 연극 '레알 패밀리' 공연 현장

### 6)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쉽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저작권 표준 교육교재 3종(초등, 중등, 학부모용)을 제작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실 3종(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등용)을 리뉴얼하였다.

저작권 표준 교육교재는 초등용의 경우 흥미롭게 저작권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스티커북 형태, 중등용은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찾아가는 워크북 형태, 학부모용은 다양한 사례를 담아 Q&A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7) 온·오프라인 교원직무연수 운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연수’는 교사 스스로 저작권 인식을 확산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저작권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오프라인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오프라인 교사연수는 전국 초·중등 교사 79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저작권의 기본 이해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저작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사연수 역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외부 온라인 연수기관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위원회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식 인가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사연수는 2007년 1,209명(1회), 2008년 2,727명(5회)을 교육하였고, 2009년 3,305명(7회), 2010년에는 3,308명(12회)을 교육하였다.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역시 위원회에서 직접 기획·개발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이 즐거워지는 저작권 비밀 노트(15차 시)’와 ‘한 번에 마스터하는 교원을 위한 저작권(60차 시)’ 등을 활용하고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트에도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교육직무연수는 오프라인 과정 수료 시 교육이수 2학점, 온라인 과정 수료 시 1~4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표 2-24 <<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온라인	2,727명	3,305명	3,308명
오프라인	75명	76명	79명

### 8) 교육청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교사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와 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교원의 저작권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저작권 연구학교 지정 확대 및 시도 교육연수원 내 저작권 강좌 개설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연수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청소년·교사 저작권 교육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 9) 어린이·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운영

‘어린이·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유·청소년의 올바른 저작권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 1월에 오픈한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매년 유·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 콘텐츠가 개발·탑재되고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도 게재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동영상, 애니메이션, 학습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는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학습·정보·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에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사이트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2-25 << 어린이·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방문자 수	94,152	397,353	514,819	187,523	1,193,847



그림 2-27 << 어린이 ·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http://youth.copyright.or.kr>)

## (2)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2008년 기준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의 규모는 61조 8천억 원(441억여 달러)에 달하고 있다.<sup>23</sup> 저작권 산업 규모의 확대에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문화콘텐츠산업이 10.5% 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핵심 인력 193명과 현장 전문 인력 11,16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sup>24</sup>하고 있다.

저작권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다. 특히 산업현장은 저작권자, 이용자, 유통업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저작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 1) 저작권 문화학교 운영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는 물론 저작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체계적인 입문자 과정으로, 지난 20년간

<sup>23</sup> PWC(2008),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2012년

<sup>24</sup> 구)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방안 연구', 2007년



1,860명이 수료하여 저작권 실무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 저작권법, 국제 협약 및 외국의 입법 사례,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및 실무 특강 등 종합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과정과 단기·야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과정은 한국문화학교로 공식 지정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11일간 54시간(주2~3회, 1일 5시간)으로 운영되고, 평가시험을 통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포상도 실시하고 있다. 단기과정은 공공부문과 저작권 진담 인력의 집중교육에 적합한 과정으로 5일 35시간(주 5일, 1일 7시간)으로 운영되며, 야간과정은 일과시간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한 과정으로 3주 35시간(주 4일, 1일 3시간)으로 운영된다.

표 2-26 <<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료 인원	179명(4회)	175명(4회)	178명(4회)	182명(7회)	69명(3회)

## 2)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저작권 아카데미는 문화산업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으로 분야별 현장 인력의 저작권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분야별 전문 단체,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법제와 저작권 실무,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 출판, 법무종사자, 방송, 영화 등 10개 분야 내외로 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과정별 20명을 정원으로 2일 15시간의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위원회는 2010년 원격교육연수원(www.edu-copyright.or.kr)을 오픈하고 음악, 출판, 인터넷 종사자,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e-저작권 아카데미 과정을 시범 운영하였다.

표 2-27 <<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현황 (오프라인)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료 인원	261명(11회)	229명(10회)	258명(10회)	250명(12회)	202명(10회)

### 3) 저작권 교육단 운영

위원회는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분야별, 계층별로 저작권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저작권 강사는 ‘입문 강사’, ‘전문 강사’ 및 ‘청소년 강사’, ‘청년 강사’로 구분하여 저작권 기본 교육과 강의 기법 등을 교육한 다음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2009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를 저작권 교육단으로 포함하였으며, 2010년 현재 총 361명의 저작권 교육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및 교수법에 대한 집중교육(약 120시간)을 실시하여 저작권 청년강사를 양성하고, 초·중·고등학교 현장(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 포함)에 강사로 투입하고 있다.

### 4)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저작권 실무자 연수 개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저작권 실무자 연수는 기존 전문 인력 양성과정과 비교해 볼 때, 참여 중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최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례나 저작권 판례 등에 관한 조별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개최된 연수를 통해 저작권 문화학교 및 아카데미 수료자를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저작권 실무자(2회, 46명)들은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과 이슈,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저작권 전문가, 산업 현장 실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간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저작권 사안에 대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 5) 저작권 교육 포럼 운영

위원회는 2010년 학교, 산업계 및 공공부문 3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하여 해당 분야 업무 담당자들은 저작권 이슈와 교육 확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현장 교육의 운영 현황과 저작권 교육 수요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저작권 교육 특성화 및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한 기획

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상호 협력을 모색하였다.

### 6)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사업 평가

그간 추진해 온 저작권 문화학교와 아카데미 등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포함한 교육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측정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척도로 활용하고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사업 평가’ 용역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의 추진 전략 및 체계, 효율적 운영 여부, 성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 별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면서 향후 지속사업으로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7) 교육연수원 확대 발전 방안 연구

위원회는 2009년 4월 ‘저작권교육원’을 개원하여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2010년 ‘저작권 교육 전략 로드맵’, ‘저작권 홍보 중장기 계획’, ‘저작권 원격교육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수행한 ‘저작권교육연수원 확대 발전 방안 컨설팅’ 연구는 N-screen 등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을 분석하고, 교육연수원의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 방향을 분석하여 위원회와 교육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3) 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sup>25</sup>되었으나, 여전히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 저작권법을 위반한 250,790명 중 성인의 비중은 199,577명으로 79.6%에 달한다.

25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저작권법 국민인식조사, 2009년

표 2-28 <<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성 인	27,945	75,442	70,498	25,692	199,577
청소년	2,942	22,129	22,533	3,609	51,213
전 체	30,887	97,571	93,031	29,301	250,790

※ 자료 : 대검찰청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저작권 교육을 받은 성인은 94,265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43,151,454명<sup>26</sup> 대비 0.22%만 교육을 받은 상황이다.

표 2-29 << 연도별 저작권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성 인	3,744	7,392	10,887	34,316	37,926	94,265
청소년	1,241	16,455	36,305	100,924	315,827	470,752
전 체	4,985	23,847	47,192	135,240	353,753	565,017

### 1)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들어 학교나 시·도 교육연수원 등 공공 분야에서 저작권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등 특정 분야에서의 저작권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각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자단, 포털사이트 내 파워블로거 등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창작 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위원회에서 양성한 저작권 청년강사가 직접 찾아가 적정 인원을 대상으로 약 2교시 정도 진행하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sup>26</sup> 통계청, 연령별(전국) 추계 인구(20세 이상), 2006년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2009년 374회, 93,977명을 교육했고, 2010년에는 2,459회, 282,856명을 교육하여 전년대비 횟수는 657%, 인원은 301%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또, 2010년에는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작가와 취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들은 저작권 내용을 방송 소재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했다.

표 2-30 <<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횟수	198	295	336	374	2,459	3,662
인원	70,722	96,160	120,201	93,977	282,856	663,916

##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

위원회는 법무부 협력 사업으로 2008년 7월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을 위해 저작권 지킴이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서울 중앙지검 관할사건 중 미성년자 초범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2009년 3월부터 전국 18개 지검, 경미한 침해사건의 성인 초범까지 관할지역과 대상을 확대·운영하였다. 또 청소년 초범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는 ‘고소장 각하제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교육 의뢰건수는 2008년 171건에서 2009년 9,883건으로 엄청난 증가율(약 5,779%)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2010년 3,390건으로 약 65% 감소하였다. 또한 교육장소를 지역 검찰청 소재지에서 지검 및 지청 단위로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

한 보안과 데이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중복체크 및 교육이수 확인 기능 등 DB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4) 저작권 홍보 활동

##### 1)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미디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는 저작권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에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으며,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올바른 이용방법을 체험형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로 반영하여 창작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본 다큐멘터리 '21C 콘텐츠 전쟁, 저작권을 지켜라'를 제작·방영하여,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일반인이 즐겨보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에 저작권 뮤직비디오를 송출하였고, 인기가수가 참여한 저작권 캠페인송을 가요 프로그램에서 10주간 방영하는 등 저작권 보호 동참을 호소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전달하였다.



그림 2-28 <<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홍보



그림 2-29 << 체험형 방송 프로그램 내 저작권 소재 반영



그림 2-30 <<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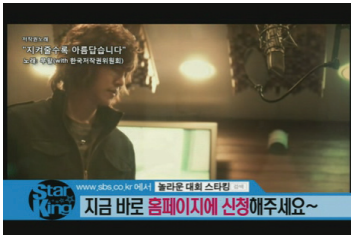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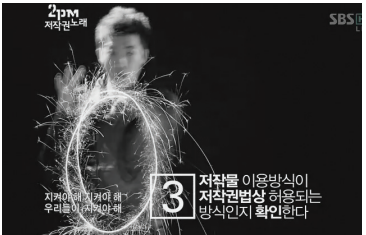


그림 2-31 << 예능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을 통한 저작권 홍보



그림 2-32, 33 << 저작권 캠페인송



## 2) 관련 공모전 개최

### 가.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0년 ‘제6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에는 총 3,622명이 응모하였으며, 대상에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정아인 학생의 ‘소주 열 병, 방황 백 일, 눈물 천 방울 = 딸랑 10원’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초·중·고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림 2-34 <<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심사



그림 2-35 <<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

### 나. 대학(원)생 저작권 논문 공모전 개최

지적재산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의 저변 확대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대학(원)생 저작권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 ‘제5회 전국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에는 총 26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상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원경주 학생 외 2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이 선정되었다. 이밖에 대학생, 대학원생 각 부문별로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7편을 시상하였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을 비롯, 글로벌 IP 동향 파악과 향후 저작권에 대한 연구 동기 부여를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 다. 국민 참여형 저작권 대회 및 공모전 개최

2010년 4월 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중학생 대상 저작권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온라인·지역 예선과 본선을 통해 3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본



선은 방송사를 통해 송출되었다.

또,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FunFun 저작권 UCC 공모전'에는 총 123편이 접수되어 이 중 8편이 선정되었으며, 대상을 차지한 정훈의 '뽀뽀! 아닌 FunFun!'은 뮤직비디오 형식의 플래시애니메이션으로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때 모두가 즐거워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상작은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교실에 관련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저작권 관심을 유도하고자 개최된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에는 총 4,482점이 접수, 각 부문별 1·2차 심사를 통해 초·중·고·일반인 작품 86점에 대해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전국 주요 도시 버스에 1개월 간 광고하고, 월간 '저작권 문화'에도 게재하는 등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림 2-36, 37, 38 <<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수상작 활용

### 3) 저작권 캠페인 활동

2010년 4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에는 저작권 공로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저작권 홍보대사와 청년가사에 대한 위촉이 있었다. 저작권 홍보대사에는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위촉되어 이날 행사에서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지켜줄수록 아름답습니다'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였고, 같은 날 청계광장에서는 저작권 보호 서명하기, 다크 게임 등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매월 26일에는 저작권 보호의 날을 맞아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페인을 추진하였다. 저작권 퀴즈, 저작권 보호 서명하기, 올바른 저작물 이용 실천 사례 공모 등 ‘저작권 보호의 날 캠페인 사이트(www.26day.or.kr)’에서 진행된 이벤트에는 총 65,884명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선도할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50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들은 4개월 동안 저작권 교육, 제작 현장 탐방 및 창작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창작의 소중함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6월에는 월드컵 응원과 연계하여 인사동, 명동, 종로 일대에서 저작권 보호 가두캠페인을 펼쳤고, 7월에는 ‘저작권 사랑, 이웃 사랑’ 일일차집을 열어 수익금을 서울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복지관 초등학생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림 2-39, 40 << 제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그림 2-41 <<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발대식

그림 2-42 <<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활동

#### 4) 저작권 홍보 콘텐츠 개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이 여전히 생소하고 어렵게 인식되고 있어,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에 발표된 저작권 노래 영상은 저작권 다큐멘터리와 함께 DVD로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청소년 교육용 자료로 배포하였으며, 해외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 태국어) 버전 DVD도 제작하여 WIPO와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등에 배포하였다.



그림 2-43. 44 << 청소년 교육용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DVD

2010년 10월에는 뉴미디어 보급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폰용 저작권 어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을 개발하여 저작권 Q&A, 홍보영상, 저작권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탑재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를 개발하였다. 저작권 캐릭터는 올바른 창작활동과 이를 통해 정직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나누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가슴에 그려진 이니셜 ‘C’는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의미한다. 저작권 노래를 편곡하여 ‘저작권 캐릭터송’도 제작하고, 캐릭터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플래시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다.



그림 2-45, 46 &lt;&lt; 창작이 · 나눔이 캐릭터

이외에도 위원회는 일반인에게 저작권과 관련 다양한 정보와 최신 소식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월간 <저작권 문화>를 발행하고 있다.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기자, 방송작가 등 대중적 영향력이 강한 집필진을 확보해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저작권 전문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2-47 &lt;&lt; 2010년 &lt;저작권 문화&gt; 발간 현황

### 3. 평가 및 전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단체 등에서는 우리 국민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고소장 각하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저작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눈여겨 볼 만하다. 유·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정, 검정 교과서 국어(쓰기, 듣기·말하기·쓰기, 읽기 등), 도덕, 기술, 가정 등 약 705페이지 가량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저작권 연구학교·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제도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 청년강사를 양성하고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하면 떠오를 대표곡 ‘저작권, 지켜줄수록 아름답습니다(김태원 작사·작곡, 부활 노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곡을 편곡하여 유명 가수(2PM, 비스트, 씨스타 등 10개 그룹)들이 저작권 캠페인 송으로 불러 청소년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0년 저작권 교육과 홍보는 국민들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작권을 접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연수원을 24시간 가동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양질의 콘텐츠,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청소년 저작권 교육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저작권 이터닝 교육과정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원격교육연수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등과 교육 협력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가고 새로운 기술과 뉴미디어가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저작권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의식해야 한다. 귀찮은 게 아닌 당연한 것, 공짜가 좋은 게 아니라 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자리잡도록 2011년 위원회의 교육과 홍보는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제 3 절

## 저작권 보호기술

### 1. 기술 현황

#### (1) 개요

2010년 저작권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고 이슈는 단연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국내 모바일 저작권 서비스 환경은 통신망 운영자가 갖고 있던 서비스 주도권이 콘텐츠 창작자나 콘텐츠 제작자(Content Provider)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였다. 우리나라는 위피<sup>27</sup>라는 국내 표준 플랫폼이 탑

<sup>27</sup> TTA 표준용어사전,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WIPI.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 휴대폰에 내장되는 중간 웨어 성격의 플랫폼으로 PC의 운용 체계와 같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거나 내려 받을 때 사용된다.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다른 무선 응용 프로토콜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과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의 개발환경 상이성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이다. 위피 1.1은 TTA의 주관으로 2003년 4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각 다르게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표준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하여, 어떤 통신

제되지 않으면 무선 통신 단말기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아이폰의 국내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이는 역으로 2010년에 스마트폰 가입자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왔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는 다양한 저작물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게임, 음악, 영화를 손 안에서 즐기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동형으로 급격히 변한 것에 반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은 아직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기술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중간 매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 보호기술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010년까지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술은 권리자나 소유자 혹은 구매자와 관련된 정보를 은닉할 수 있는 저작권 표시(Copyright marking) 기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전송)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권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유료방송에서 콘텐츠 보호에 활용되고 있는 수신제한장치(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저장매체나 전송선에서 콘텐츠를 보호하는 복제방지(CP: Copy Protection) 기술과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을 추적하는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사업자의 인터넷 콘텐츠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로써 단말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무탐재 규정으로 국내생산 단말기의 보호장벽 역할을 수행했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탐재규정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미국 등 경쟁 상대국과의 상대적, 절대적 과학기술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sup>28</sup>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기술은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분야에 속한다. 2008년도에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최고기술 대비 79.8,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66.5로 미국 대비 83.33% 수준, 3.8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도에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79고, 우리나라는 65.8로 미국 대비 83.29% 수준에 기술 격차는 2.7년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는 저작권 보호기술 수준이 두 나라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고 격차는 1.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스마트폰 기기의 폭발적인 보급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 기기 전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은 급격히 변했지만 기술 수준의 변화는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술의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은 과년도에 비해 저작권 표시기술 분야에서는 다단계 표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필터링 기술 분야에서는 성능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90% 초반에 머물던 기술력이 최대 98% 수준까지 올라가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DRM이나 CAS와 같은 부문에서는 기술적인 향상보다는 두 부문의 통합이나 다른 기술 간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2) 기술 현황

### 1) 저작권 표시 기술

오디오나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권리자나 소유자,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하여 표시함으로써, 불법 유통된 저작물의 사후 보호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 표시 기술이다. 이 기술에는 권리자나 소유

---

<sup>28</sup> <http://techinfo.ntis.go.kr/KoreaTechLvlStatComp/Manage.do>



자의 정보를 은닉하여 저작물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기술과 구매자의 정보를 은닉하여 불법 배포자를 추적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마킹(Digital Forensic marking) 기술이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라는 기술에서 파생된 것으로 stegano는 cover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graphy는 graphos로서 write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의 합성어이다. 즉, 중요한 정보를 보이지 않게끔 무엇인가로 가리는 것을 말하며, 1990년대 들어서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저작권 정보를 은닉하는 기술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스테가노그래피는 정보를 은닉해서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은닉된 정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지만,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은닉한 것을 악의적으로 제거하려는 외부 공격자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인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포렌식 마킹 기술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의 응용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의 주목적은 권리자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권리자 또는 소유자의 정보가 삽입되어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마킹 기술은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다르면 은닉된 저작권 정보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네트워크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누구에 의해서 배포가 되었는지를 추적하여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48 << 저작권 표시 기술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마킹 기술은 1990년대에 중점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조치에 활용한다는 단점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제기된 DRM-free<sup>29</sup> 서비스의 도입으로 DRM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9월에는 고화질 HD(High Definition) 영상 서비스인 IPTV(Internet Protocol TV)에서 영상 콘텐츠가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 관련 권리자 단체와 한국통신(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한국디지털위성방송·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IPTV 등 방송콘텐츠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sup>30</sup>.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은닉하는 'HD 방송용 UCI 워터마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연구기관인 SBS와 시험 방송을 한 바 있다.<sup>31</sup>

해외에서는 디지마크가 자사의 워터마킹 기술을 Arbitron, AlpVision과 AWT System사에 라이선싱하였으며, Civolution은 BBC Worldwide와 NagraVision의 VOD(Video on Demand)용 CAS에 디지털 포렌식 마킹 기술을 공급하였고,<sup>32</sup> 스페인의 아쿠아모바일은 워터마킹 기술을 제품의 상표나 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Anta Banderas'라는 와인 상표에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sup>33</sup>

---

29 DRM이 해제된 상태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2007년 2월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제안되어 EMI사가 최초로 동조하였으며, 이후 디지털 음악서비스 분야로 확산되었다. 현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확산되는 추세다.

30 디지털타임즈, IPTV 등 방송콘텐츠 불법유출 방지 협약,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91602010251699002](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91602010251699002)

31 전자신문, ETRI, HD방송용 UCI 워터마킹 시스템 개발,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2210153>

32 [http://www.digitalwatermarkingalliance.org/pr\\_14JUN2010.asp](http://www.digitalwatermarkingalliance.org/pr_14JUN2010.asp)

33 [http://www.digitalwatermarkingalliance.org/pr\\_14JUN2010.asp](http://www.digitalwatermarkingalliance.org/pr_14JUN2010.asp)

## 2) 필터링 기술

필터링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P2P(Peer to Peer)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필터링 기술에는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Hash) 기반 필터링,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은 스팸메일을 필터링하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를 필터링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해당되는 키워드(keyword)값을 DB화하여 사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은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의 서비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도 많은 OSP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키워드를 우회하는 지능적인 방법(제목 변경, 띄어쓰기 등)으로 악용하기 쉬워 효용성이 떨어지며, 불법적인 저작물과 무관한 사용자의 검색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자열 비교를 통한 필터링이 도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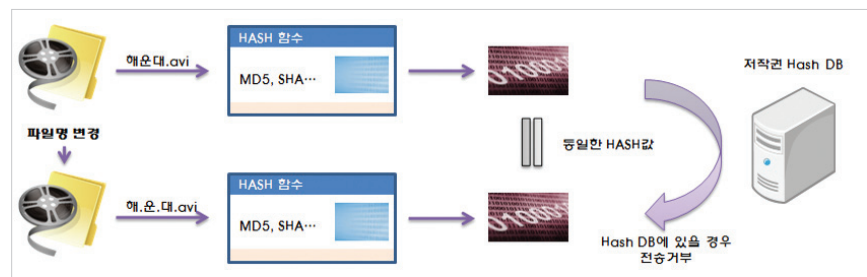


그림 2-49 << 해시 기반 필터링

해시 함수<sup>34</sup>를 이용한 필터링은 OSP가 파일 등록 시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 해시값을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것이다. ‘그림 2-49’는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필터링의 예이다. 예에서처럼 해시 함수는 입력이 같을 경우(예에서는 파일 제목만 변경된 경우) 동일한 출력을 내는 반면, 입력이 다른 경우

<sup>34</sup> 해시 함수는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고정된 길이의 의사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다.

에는 다른 출력을 내게 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필터링에 적용할 경우, 제목 변경 등에 의해 취약한 키워드 기반 필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 일반적인 OSP는 시스템 관리를 위한 파일 해시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한 필터링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해시 함수의 계산 속도가 빨라 필터링 구축에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해시 함수의 특성상 파일의 작은 변화에도 해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 필터링에서 해시값의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콘텐츠는 동일하나 압축포맷이나 압축율이 다른 파일이 서비스 상에 존재하고 이를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수적이다.

특징 기반 필터링은 '그림 2-50'과 같이 콘텐츠 고유의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기술이다.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해시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추출하여 DB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이다. 저작물(오디오, 동영상 등)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검색하기 때문에 포맷, 압축률의 변화 등이 발생하여도 동일한 저작물을 검색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파일명이나 메타 정보의 변화에 상관없이 필터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필터링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협조를 얻어 특징값을 미리 추출하여 DB를 구축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2-50 << 특징 기반 필터링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OSP들이 필터링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2010년에는 필터링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기술보다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DRM 기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DRM 기술에 대한 정의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DRM 기술이 유연성을 가지면서 광의의 DRM 기술에 대한 정의가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미국의 ContentGuard사에서는 DRM을 “디지털 콘텐츠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계약사항에 따라서 디지털 객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Renato Iannella는 앞에서 언급했던 1세대 DRM과 2세대 DRM에 대한 정의를 내세우고 있다.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의 개발을 주도하였던 ContentGuard사는 DRM에 대해서 ‘디지털 권리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digital rights)’와 ‘권리에 대한 디지털 관리(digital management of rights)’라는 측면으로 정의하였다.<sup>35</sup> 결국은 DRM이란 권한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일부 용어에 대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DRM이란 ‘디지털 콘텐츠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해서 생성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 개입하여 저작권을 보호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광의의 정의가 오늘날의 DRM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DRM을 구현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상거래를 위한 DRM : 여기서 구현되는 DRM의 목적은 디지털 콘텐츠를 지불 약관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관장하고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금전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상거래를 위한 DRM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 기밀성을 위한 DRM : 이것은 정보보호를 위한 DRM 또는 기업형(Enterprise) DRM 이라고 한다. 이 DRM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기밀성을 위한 DRM에서는 권한에 기반하여 정보(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하여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며, 언제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였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정보이용에 대한 관리도 병행한다. 이러한 DRM은 기업에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정책관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35 Joshua Duhl and Susan Kevorkian, ‘Understanding DRM System’, IDC White Paper, 2001년

DRM 기술은 2007년 DRM-free 서비스의 등장과 DRM 기술의 호환성 때문에 사용자의 공정이용 권한을 제한한다는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기업용 문서보안을 위한 DRM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e-book 분야에서는 DRM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DRM의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상호 호환성 제공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EXIM(EXport IMport), DRM-CAS 연동기술 표준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가전업체들이 Coral 컨소시엄에서 DRM 상호 호환성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OMA<sup>36</sup>(Open Mobile Alliance)에서도 SCE(Secure Content Exchange)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 4) 수신제한장치(CAS) 기술

CAS 기술은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이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허가된 가입자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해외시장에서 CAS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적용한 CAS와 해당 CAS를 제공한 업체의 관계가 중요하다. 유럽이나 중동시장에서는 ‘해킹박스’라는, CAS를 해제하여 무료로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시스템이 판매되고 있으며, CAS 업체에서는 해킹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블랙리스트를 구축하여 향후에라도 정상적인 셋톱박스 사업을 전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 CAS 시장은 뉴스코퍼레이션 계열의 NDS와 유럽의 쿠텔스키그룹 계열의 나그라비전(Nagra Vision)이 각각 3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은 모토롤라, SA(Scientific Atlanta), Irdeto 등이 차지하고 있다.

#### 5) 복제방지 및 불법유통 추적 기술

복제방지 기술은 아날로그 VCR(Video Cassette Recorder) 테이프의 복사방지를 위해서 매크로비전의 ACP(Anti-Copy Protection) 기술이 적용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후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CD/DVD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CPPM(Copy Protection for Pre-recorded Media) 기술과 CPRM(Copy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 기술이 적용되었다. CPPM은 재생 가능한 매

---

36 <http://www.openmobilealliance.org/> 300여 개의 통신사, 단말 제조사, 서비스 사업자, 솔루션 사업자들이 모여서 무선환경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이며, DRM 표준 2.2까지 제공하고 있다.

체에, CPRM은 저장 가능한 매체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복제하였을 때 암호화키 블록이 들어있는 영역이 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또한 재생장치에서 디스플레이로 전송되는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고품질의 콘텐츠가 전송로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와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기술이 등장하였다. DTCP 기술은 오디오/비디오 콘텐츠를 IEEE 1394(Firewire) 표준과 같은 고성능의 디지털 버스로 전송할 때 불법 복제, 가로채기, 그리고 각종 탭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기반의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HDCP는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또는 HDMI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등 디지털 버스를 통해 전송되는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의 전송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불법유통 추적기술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로부터 포렌식 마크를 추출하여 추적하는 방법과 저작물의 특징 DB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인식하여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 포렌식 마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마크가 삽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 배포된 저작물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특징 DB를 이용한 추적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ICOP(Illegal Copyright Obstruction Program)을 이용하여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단속하고 있다.

### (3) 향후 전망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 및 배포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처럼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생태계를 망치는 오염물이 될 수도 있다. 편리성을 선순환의 구조로 활용하면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되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에 의해서 이용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배포를 위한 비용이 대량 소비되는 저작물과 같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다양한 장르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복제 및 유통이라는 칼날은 저작권자의 수익을 좀먹고 결국은 창작의욕을 꺾어서 양질의 저작물 창작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개인 창작자에게 많은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 역시 불법 복제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저작권 보호기술은 저작권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다 강력한 보호기술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DRM과 같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기술이 일부 저작물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으나 대체기술로서 특징 기반의 필터링 기술이나 포렌식 마킹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저작권 보호기술은 사용자가 기술 적용에 대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투명한 저작권 보호기술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미래학자인 다니엘 H. 핑크도 자신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통해 미래사회는 지식의 시대에서 하이터치/하이컨셉의 시대, 좌뇌의 시대에서 우뇌의 시대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즐기던 것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콘텐츠,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변할 것이고, 이러한 콘텐츠의 변화는 저작권에 대한 재해석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들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저작권 보호기술로 토렌트처럼 P2P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술”, “반도체 칩이나 광학 인증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꼽고 있다. 아울러 텍스트 기반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보호기술과 스캔된 만화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저작권 침해를 예방·점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향후 등장 가능한 저작권 보호기술로 예상되고 있다.



## 2. 기술 연구 및 활동

### (1) 개요

디지털 기반 유통환경의 변화와 스마트폰의 출현, 3D, E-Book 등 각종 신규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저작권 교육 및 홍보나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워졌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저작권 기술 R&D 기본 계획 추진과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적용, 기술위원회 및 국제표준화 활동(DCAN) 지원 등의 역할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2) 활동 및 성과

#### 1) 저작권 보호기술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저작권 분야의 정부 R&D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저작권 기술 R&D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저작권 분야의 R&D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저작권기술개발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9월에는 저작권 기술 분야의 R&D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1년도에 추진할 신규 R&D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기획하였다.

#### 가. 앱 불법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

스마트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 차단, 불법 전송 탐지 및 실행 차단, 불법 복제된 스마트폰 앱의 유출자 추적, 불법복제된 스마트폰 앱 탐지, 스마트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해킹에 의한 저작권 보호 무력화 방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스마트폰 앱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품 구매

를 유도, 앱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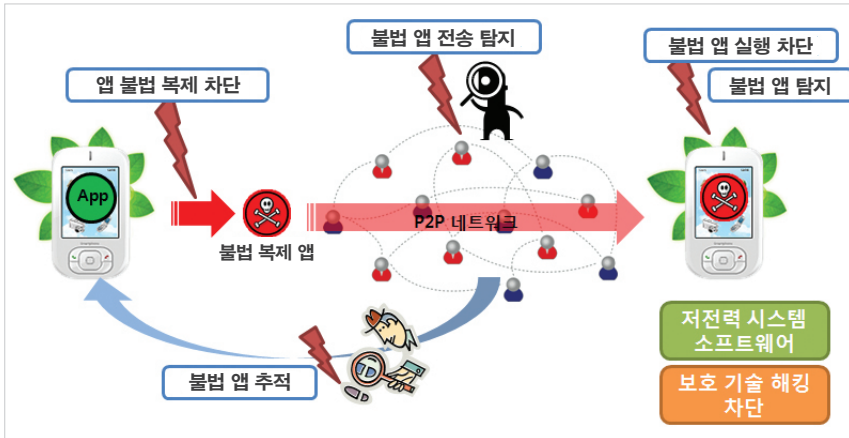


그림 2-51 <<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 나. e-Book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현재 다수의 e-Book 콘텐츠 공급자(한국이퍼브 등) 및 서비스사업자(교보문고, 인터파크, YES24 등)가 각자 다른 DRM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패키징·공급하고 있어 e-Book DRM 간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e-Book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e-Book DRM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기획하였다.

표 2-31 << 국내 e-Book 서비스 사업자 요약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 형태	지원 포맷	지원 DRM	지원 기기	보유 콘텐츠 수(권)
한국출판 콘텐츠	KPC	콘텐츠 공급	ePub	Adobe, 마크애니	ePub/마크애니 DRM 지원기능 기기	1,100 (11,000권 확보)
한국이퍼브	K-ePub	Web, 오프라인	ePub	한글파컴퓨터 DRM	삼성 SNE-60, 페이지원, 아이리버 Story(예정)	3,000 (2만 권 확보 예정)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	Web	ePub	파수닷컴	삼성 SNE-60K/50K, 아이리버 Story, 코원 V5, iPhone 갤럭시 A/S/탭	80,000
북큐브 네트워크	북큐브	Web	Bcb, ePub	다산지앤지	북큐브 B-612, iPhone	30,000

인터파크	Biscuit	3G, Web	ePub	마크애니	비스킷, iPhone	25,000 (구텐베르크 도서 5만 권 이용 가능)
KT	Qook북카페	3G, Web	ePub	인큐브테크	삼성전자 SNE-60, 아이리버 Story W, iPhone	3,000 (만화포함 33,000) (10만 권 확보 예정)
아이리버	Book2	Web	ePub	Adobe	ADE 호환단말 모두	7,000 (3만 권 확보 예정)
네오릭스	Nuut	Web	ePub	Adobe	Nuut 시리즈	4,000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출판 기술적보호조치 호환성 표준기술규격 연구, 2010년

### 다. 점검 SW 기술 개발

저작권 침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점검 SW 기술 개발은 저작물 유통 환경이 인터넷, 웹하드, P2P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음원, 동영상 등 저작물의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술이나 도구는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PC에 설치되었거나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저작물의 불법 유무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점검 SW 기술 개발이 기획되었다.



그림 2-52 << 콘텐츠 점검용 SW 개념도

## 2)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가.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sup>37</sup>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구체적 조치로서 저작물인식조치, 검색제한조치 및 송신제한조치, 경고문구발송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46조)하고 있다.

이에 OSP업체들은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목 필터링, 문자열 비교, 특정 유형의 파일 필터링, 해시값 비교 필터링 등의 경우 이용자의 우회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이 현재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기술업체가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권리자는 기술 업체별로 관련 기술이 상이할 뿐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OSP(웹하드 등)가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웹하드 업체는 법에 명시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 간 충돌이 가중되자, 기술업체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하였다.

---

**37**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 2-32 &lt;&lt; 성능평가 항목 및 방법

평가 항목	설명 및 평가 방법	비고
강인성 (Robust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형(왜곡)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평가</li> <li>- 방법 : 원본/변형 콘텐츠에서 각각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인식 여부 확인</li> <li>- 결과 : 인식, 오인식, 불인식, 무DB(Not in db)에 대한 백분율</li> </ul>	%
일관성 (Consist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정보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도 동일한 특징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식에 대한 일관성 또한 유지되어야 함</li> <li>- 방법 : 반복 추출된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추출의 일관성), 추출된 특징정보에 대한 반복 인식 질의의 결과값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인식의 일관성)</li> <li>- 결과 : 특징점의 일관성률 및 인식, 오인식, 불인식, 무DB에 대한 일관성률</li> </ul>	%
시스템 효율성 (System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정보 추출에 사용한 시스템 자원 사용률</li> <li>- 방법 : 특징정보 추출 시 시간변화에 따른 CPU 및 메모리 사용률 측정</li> <li>- 결과 : CPU 및 메모리 사용률 제시</li> </ul>	CPU, 메모리 사용률
특징정보량 (Feature S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정보의 크기</li> <li>- 방법 :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 크기 측정</li> <li>- 결과 : 콘텐츠의 단위시간당 특징정보의 크기</li> </ul>	kb/s
고속 추출 (Fast Extr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정보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li> <li>- 방법 : 원본 콘텐츠로부터 특징정보(DNA)를 추출하는 시간 측정</li> <li>- 결과 : 평균 특징정보 추출시간(s)/콘텐츠 크기(play 시간)</li> </ul>	시간 s(초)
검색 / 비교 속도 (Search sp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정보를 추출하여 특징정보 DB에서 해당 콘텐츠를 찾는데 소요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li> <li>- 방법 : 특징정보 추출하여 해당 콘텐츠를 특징정보 DB에서 찾는데 소요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li> <li>- 결과 : 평균 검색·비교 속도(s)/건수</li> </ul>	s/건
부분 매칭 (Partial Matc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중간부분의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 여부, 즉, 믹스된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li> <li>- 방법 : 믹스/원본 콘텐츠에서 각각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인식 여부 확인</li> <li>- 결과 : 인식, 오인식, 불인식 및 전체 인식에 대한 백분율</li> </ul>	%
축약성 (Compact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정보 인식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최소 단위</li> <li>- 방법 : 변형(초 단위로 자른 변형콘텐츠)/원본 콘텐츠에서 각각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인식 여부 확인</li> <li>- 결과 : 콘텐츠 크기(play 시간)에 대한 인식률</li> </ul>	s(초) 당 인식률%

#### 나.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자 어느 수준까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저작권 상생협의체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반대(인터넷기업협회 등)와 대표성 있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추가 수렴 요구가 있어 향후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통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표 2-33 <<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협의체 활동 내용

구분	주요 참석자	주요 협의 내용
1차 (8월 13일)	권리자(단체), OSP, 기술업계, 학·연구계, 사용자 단체 등 실무전문가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보호조치 관련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li> <li>기술적보호조치 관련 현황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li> <li>향후 대응방안 및 협조사항 등</li> </ul>
2차 (9월 28일)	권리자(단체), OSP, 기술업계, 학·연구계, 사용자 단체 등 실무전문가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보호조치 관련 세미나</li> <li>기술적조치 등 가이드라인 초안 관련 의견 수렴</li> </ul>
3차 (10월 6일)	OSP 등 4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SP 입장에서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4차 (10월 7일)	필터링 기술업체 4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업체 입장에서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5차 (10월 8일)	권리자 단체 5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리자 입장에서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6차 (12월 20일)	권리자 및 OSP 등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조치 등 가이드라인(안) 관련 의견 수렴</li> </ul>

표 2-34 <<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쟁점

쟁점 내용	이 해 관 계 자				향 후 대 책
	권리자	이용자	특수유형의 OSP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조치는 온라인상의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OSP 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면책 파는 상관없음</li> <li>OSP의 의지에 따라 기술적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가이드라인 제정이 오히려 권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OSP 대부분 가이드라인 내용을 100% 준수했다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리자가 임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음</li> <li>기술적조치의 과도한 적용으로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li> <li>가이드라인에 공정이용관련 명시적 조항 삽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민·형사상 감경 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메리트가 있어야 함</li> <li>어떠한 수준이 적절한 적용 수준인지 판단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비용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 당사자 별, 각 사안별 적정 수준의 타결점을 찾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조치 관련 이해당사자 간 최소한의 내용으로 합의를 유도</li> <li>기술적조치 관련 향후 한미FTA를 대비하여 법제도 정비</li> </ul>
기술적조치 우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 대책과 더불어 관리적 대책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 필요</li> <li>대부분 OSP들은 기술조치를 우회하고 있으며, 우회 방법은 OSP내부에서 또는 기술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작권법상 나와 있는 기술적조치를 100% 준수하고 있음</li> <li>관리적 대책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또다른 규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업체에 대한 필터링 기술 성능 평가 실시</li> <li>가이드라인에 관리적 대책 명문화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터링 기술 성능 평가 확대</li> <li>OSP에 적용된 기술적조치 수준 평가 방안 연구 및 검토</li> </ul>

<p>불법복제 유통 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p>	<p>(정부의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유형의 OSP가 합법 유통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유도하고, 웹하드 등록제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등록 요건에 가이드라인 내용 연계</li> <li>• 기술적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OSP에 적용된 기술적조치 수준 평가 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하드 등록제와 가이드라인 연계</li> <li>• 실효성 있는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구축</li> </ul>
<p>P2P, 웹하드 불법 복제 대응</p>	<p>(정부의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확대, 시정권고, 검경 합동 단속 강화를 통한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 적극 대응</li> <li>•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및 저작권 등록·인증 활성화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li> <li>• P2P, 웹하드 사업자 및 권리자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대</li> <li>• 연구기능 강화 및 전문가 WG 구성·운영</li> </ul>

### 3)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적용 활동

#### 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용 특징점 구축

방송 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특수한 유형의 OSP 등)을 통한 방송 콘텐츠 불법 복제·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2009년 지상파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공용 특징점 DB 구축 및 OSP 대상 특징점 배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 권리자(방송사)와 사업자(필터링 사업자 및 OSP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문제로 특징점 DB 구축을 위한 원본 콘텐츠 확보가 어려웠으나, 2010년 2월 SBS콘텐츠허브와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 확산에 커다란 실마리가 되었다.



그림 2-53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유튜브, SBS콘텐츠허브 간 업무 협력식

현재 SBS콘텐츠허브 방송 콘텐츠는 유튜브에 하루 약 20% 증가세로 이용자들이 의해 저작물이 등록되고,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광고 수익 쉐어 등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권리자와 OSP 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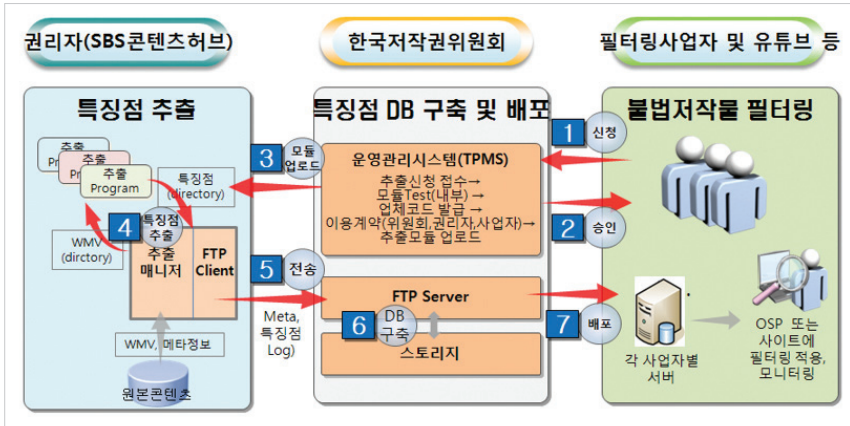


그림 2-54 << 방송콘텐츠 특징점 추출 및 배포서비스 업무

- ① 방송 콘텐츠 특징점 추출을 위해 필터링 사업자 및 OSP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특징점 추출을 신청
- ② 위원회는 신청한 업체의 특징점 모듈을 내부에서 Test(인터페이스 규격 등) 후 승인 또는 미승인 통보(승인 시 권리자, 사업자, 위원회 간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③ 방송 콘텐츠 특징점 추출을 위해 각 필터링 기술업체의 특징점 추출 모듈을 ‘특징점 추출 인터페이스 서버(방송사내 설치되는 위원회 서버)’에 설치
- ④ 위원회 ‘특징점 추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각 사 특징점 추출 모듈이 실행되면서 특징점 추출(파일로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
- ⑤, ⑥ 추출된 특징점 및 메타데이터는 위원회 FTP 서버로 전송, 스토리지에 특징점 DB 저장
- ⑦ 신규 콘텐츠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필터링 기술업체 및 저작권보호센터로 특징점 전송(필터링 기술업체를 통한 OSP 사업자로 특징점 전달, 필터링 수행)

#### 나. IPTV 등 방송저작물 보호를 위한 협약식 및 세미나, 공모전 개최

최근 국내 영화 등이 IPTV 등을 통해 복제, 인터넷 상으로 불법 유통됨에 따라 IPTV·위성방송·디지털케이블 등을 통한 방송 콘텐츠 불법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5·7·8·9월)하였다. 또 2010년 9월 16일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권리자 단체 대표(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IPTV 등 유관기관 대표(케이티, SK브로드밴드미디어, LG유플러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건전한 방송 콘텐츠 유통 확산 및 기술적 보호조치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후속 조치로 방송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안내 자막 공모전을 개최하여 IPTV 등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2-55 << IPTV 등 방송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식



그림 2-56 << 저작권 보호 안내자막 공모전 시상식



그림 2-57 << IPTV 등 방송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세미나

#### 4) 기술위원회 및 국제표준화 활동(DCAN) 지원

##### 가. 기술위원회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등의 기술 사항을 자문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효율적인 심의 체계 확립 및 기술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위원회 정기회의(2월과 12월, 총2회)와 워크숍(6월)을 개최하고, 성능평가 지침 및 R&D 후보과제 우선 순위 도출과 의견 수렴, 성능평가 결과 심의를 위한 기술소위원회를 총3회 개최(8월~12월)하였다. 현재 기술위원회는

법조계와 학·연구계, 협회 및 단체장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역할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나. 아시아 디지털 저작권 네트워크(DCAN) 구축 지원

아시아 지역 내 한류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저작권 관련 권리정보 및 기술적, 정책적 표준화가 저작권 산업 전반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민간주도(저작권 관련 포럼 및 학회 등)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이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내 저작물 관리를 쉽게 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논의를 이루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졌다.

특히 이중 표준화는 국익과 밀접한 사안이라 국제 표준화 활동에 국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원회는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이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중·일 디지털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표준화 이슈 발굴 및 공유를 통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일본·중국의 디지털 저작권 표준화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전문가 워크숍 구성 및 운영(중국, 일본), DCAN 구성을 위한 아시아 지역 참여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표 2-35 << 2010년 DCAN 사업 주요 추진 현황

행사명	날짜	논의 내용
日 Fuji-TV & KDCF회의	6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방송 관리 시스템 및 저작권 정보 운영 사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서비스 단위에 따른 저작권 정보의 등록 및 활용 사례 제시</li> <li>-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데이터 시스템과 아카이빙 시스템의 연계 현황</li> <li>- 식별자 정보</li> </ul> </li> </ul>
日 BA 세미나 <sup>38</sup>	6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과 일본에서 운영 중인 식별체계 관련 발표 및 토의</li> <li>저작권 정보 및 표준화 이슈 관련 발표 및 토의</li> <li>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의 구성 취지, 목적 및 향후 진행 방향 발표 및 토의</li> <li>주제 발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콘텐츠 발전 방향 (일본)</li> <li>- 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한경석 교수)</li> <li>- UCI as a digital contents identifier (정진규 박사)</li> <li>- UCI Application (남제호 박사)</li> <li>- Introducing ICN System and the Application Strategy (이정재 팀장)</li> <li>- The Standardization of Digital Copyrights Information in Korea (오상훈 박사)</li> <li>- The Law and Policy of Digital Copyrights (권현영 교수)</li> </ul> </li> </ul>

日 Dentsu &KDCF회의	6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ntsu의 디지털저작권 식별 현황</li> <li>• 주제: Report on IEC 62227 Digital Rights Permission Code (DRPC)<sup>39)</sup></li> <li>• 활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내 Multimedia Broadcasting 분야, i-phone을 위한 Digital Magazines 및 IPTV 콘텐츠 유통 서비스 등에 활용</li> <li>- 2011년 모바일을 통한 신규 방송을 시작할 예정</li> <li>- 싱가포르에서도 DRPC를 통한 IPTV 시범 서비스 실시</li> </ul> </li> </ul>
日 DCAN Workshop	6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1 - Interoperability &amp; ID system (韓&amp;日) : 일본에서 콘텐츠 ID 활용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 설명</li> <li>• 논의2 - Investigate of Information copyrights in Japan &amp; Korea</li> <li>• 논의3 - DCAN organizing and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저작권 관련 현안에 대한 일본 현황 및 한국 현황 논의</li> <li>- 일본 BA측과의 협력 방안 논의</li> <li>- 향후 상호 간의 방문 및 협력 사항 추후 논의</li> <li>- 향후 정기적인 회의와 국제 세미나 일정 확인</li> </ul> </li> </ul>
中 DCAN Workshop	9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中 간의 DCAN 제안 및 협력 방안 논의</li> <li>• 저작권 식별체계 및 저작권 관련 메타데이터</li> <li>• 논의1 - Interoperability of ID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li> <li>• 논의2 - Information copyright investigation in Korea and China</li> <li>• 논의3 - DCAN organizing and collaboration</li> <li>• 논의4 - Potential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KDCF, CNIS and CCR in future</li> <li>• 주제 발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AN: 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한경석 교수)</li> <li>- Metadata Information of Copyright Standardization (오상훈 박사)</li> <li>- ID(ICN) system in Korea (강대오 박사)</li> <li>- Law &amp; Policy (이덕 교수) (한경석 교수)</li> <li>-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Standardization including metadata interoperability (CNIS)</li> <li>- Information of ID System in China (CCR)</li> </ul> </li> </ul>
中 정법대학 &KDCF회의	9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中 디지털 저작권 법/제도 현황 및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디지털 저작권 현황 (Zhao Jianrui)</li> <li>- Issues on Legal Study &amp; Education for Digital Copyright Industry (권현영)</li> </ul> </li> <li>• DC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AN 향후 추진 방향 (한경석)</li> </ul> </li> </ul>
韓·中·日 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Workshop 2010	10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中·日의 저작권 분야 ID System에 관한 현황 및 ID System의 공유,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Content ID in Japan (Jay Kishigami)</li> <li>* 당일 참석이 불가하여 녹음 발표로 대체</li> <li>- 발표: China IDs (Gao Ang)</li> <li>- 발표: 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정재)</li> </ul> </li> <li>• 韓·中·日의 콘텐츠 산업 분야별(방송, 음악, 영화, 전자책 등) 저작권 정보 관리 현황 및 메타데이터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China Metadata (Song Wei-Feng)</li> <li>- 발표: Broadcasting Metadata in Korea (황경일)</li> </ul> </li> <li>• 韓·中·日을 중심으로 하는 DCAN의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DCAN propose and collaboration(한경석)</li> </ul> </li> <li>• 韓·中·日 디지털 저작권 분야의 관련 시스템, 정보자원 구축 등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li> </ul>
韓 DCAN Workshop	12월 0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도 DCAN 활동 검토 및 향후 계획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도 韓·日 DCAN 활동 결과 검토</li> <li>- 2010년도 韓·中 DCAN 활동 결과 검토</li> <li>- 韓·中·日 DCAN workshop 결과 검토</li> </ul> </li> </ul>

38 BA : Broadband Association

39 DRPC는 ① Content ID, ② From ID(Holder ID), ③ To ID(User ID), ④ N Digital rights permission code 의 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2008년 6월 Edition 1.0이 개발되었다.

## 5)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활동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Digital Copyright Forensics)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 또는 도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의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 분석, 보관 및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저작권 위반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며, 현재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은 저작권 위반 및 불법 유통의 혐의가 있는 P2P, 웹하드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분석한다.

### 가.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 운영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조작·변경·삭제 등이 용이하고, 매체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인 특성을 갖는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변조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진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과정에서 원본이 변경, 훼손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보장하고 증거 분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 첨단 시설을 갖춘 '디지털 증거 분석실'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디지털 증거 분석실'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 및 증거 수집·분석 보고서에 대한 법률 자문(1명), 포렌식 연구 개발(2명), 증거 분석(4명), 증거 수집(2명)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또한,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 및 헤비업로더 등 저작권 침해 사실 증명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증거 분석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와 함께 신속한 포렌식 기술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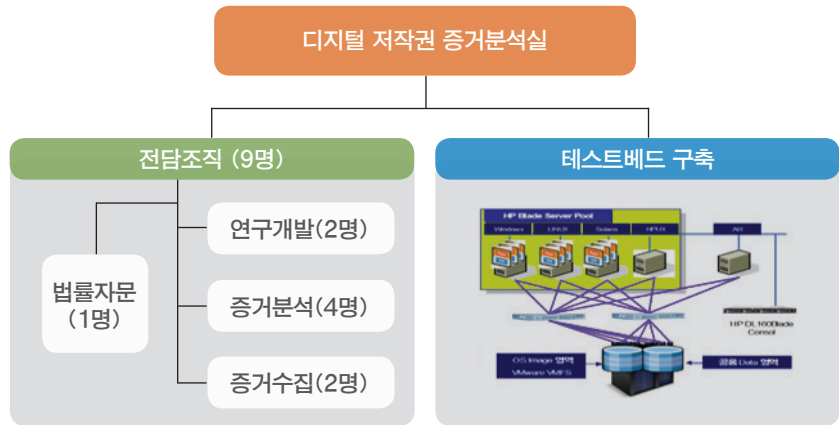


그림 2-58 &lt;&lt;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 구성도

표 2-36 &lt;&lt; 웹하드 등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지원 현황

구 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계
사전조사	6건	18건	3건	7건	34건
기술지원	6건	11건	7건	7건	31건
증거분석	6건	10건	7건	6건	29건
계	18건	39건	17건	20건	94건

#### 나.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 산출방안 연구

최근 콘텐츠산업의 발달과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의해 배포 및 유통되고 있고, 2009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14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8년 12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작권 침해 조항을 포함하여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정확한 범죄수익금 산출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했다.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익금 환수를 위한 산출방안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액제도, 현금화 환산 비율, 업로더 지불금액 등에 대한 범죄 수익금 표준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특히 정액제 범죄 수익금의 경우 웹하드/P2P 서비

스 업체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범피 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정함에 있어 정액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목록의 저작권 침해 비율을 조사·통계화하여 그 비율에 의한 국고 환수 방법을 제시하였고, 특수유형 OSP의 다양한 운영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다섯 가지 형태의 범피 수익금 적용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다. 디지털 저작권 범죄에 특화된 증거 수집·분석 전용 자동화 도구 개발 및 운영  
 특수유형 OSP의 불법저작물 등록 사실 증명을 위한 사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수집·분석·보고기능을 제공하는 CFEC·CFEA(저작권 포렌식 증거 수집·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림 2-59. 60 << CFEC·CFEA(저작권 포렌식 증거 수집·분석 도구) 개발 및 운영

라.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 지원 매뉴얼 마련

저작권 침해 수사지원을 위한 5단계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절차를 적용하여 수사지원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1단계는 사건 파악, 범죄 유형 및 불법행위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사전 준비 단계이고, 2단계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하는 단계다.

3단계는 수집된 증거물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분석실로 디지털 증거물을 이송하고, 4단계는 디지털 증거물 내에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 마지막 5단계는 디지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실조회 요청 시 디지털 증거물을 재분석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3) 평가 및 전망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신속화·지능화·첨단화되고 N스크린 환경, 스마트 TV 등 새로운 유통 환경과 콘텐츠가 등장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비하면서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확대가 요구된다. 아울러 저작권 R&D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고 OSP 등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R&D 성과 확산 및 기술 이전, 홍보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와 관련해서는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웹하드 등) 간 신뢰성 제고와 현행 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2009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수차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OSP의 기술적 조치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적용 활동과 관련하여 SBS콘텐츠허브와 유튜브와의 적용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상에서의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실시간 특징점을 적용하여 저작권자와 OSP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징점을 보다 손쉽게 추출하여 OSP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인터페이스를 패키지 SW로 개발·배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위원회 운영의 경우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년보다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지만 지속적이고, 다양한 안건 발굴과 더불어 저작권 정보센터 사업 및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DCAN 사업이 표준화 논의를 위한 국제 협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정치, 사회, 문화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활동 및 세부 로드맵의 마련과 이에 따른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저작권 증거 분석실은 2010년 문화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총 9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원하여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금을 산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속시킬 정도의 확실한 증거 분석이 가능해졌으므로, 추후 OSP나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첨단 모바일 환경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 증원과 증거분석실 확충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구축할 전망이다.



#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활동

21세기 현대사회는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화 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산업의 양상이 콘텐츠산업으로 변하게 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산업과 기술, 그리고 제품을 아우르는 커다란 파급효과가 되어 전 세계 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반면, 불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 1인 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소유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심지어 사진에 있는 로고와 블로그 주소 등 콘텐츠 저작권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개인 저작물 무단 복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형 단말기 보급이 증가하면서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산업의 발달을 저해하고 저작권자들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이나 워터마킹, 필터링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 세 곳에 대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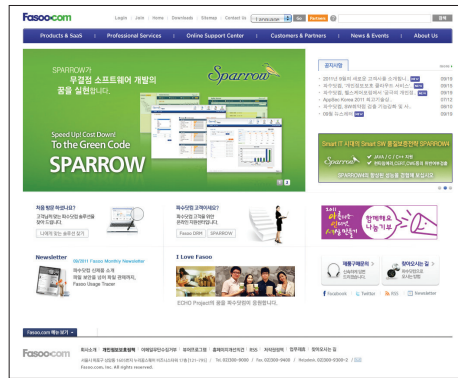


## 파수닷컴 ‘DRM 부문 1위... 모바일 DRM으로 시장 선점 나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는 DRM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을 통해 고객의 비밀번호와 고유번호 등을 암호화한 후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복사 후 제3자에게 전달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DRM 기술을 적용하는 가장 큰 분야는 내부문서 유출 방지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안이다. 이런 DRM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내 1위 업체는 파수닷컴. 이 회사는 지금의 NHN에 이은 삼성 SDS 사내벤처 2호로, 현재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른다. 파수닷컴의 조규곤 대표는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면 DRM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6개월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직장 동료 6명과 의기투합, 2000년 6월에 창업했다.

파수닷컴의 DRM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다. 외국산 제품들은 대개 호환이 잘 되지 않는 반면, 파수닷컴은 300여 개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MS 제품의 경우 어도비의 PDF 파일로 만들어진 문서를 DRM 처리하지 못하지만 파수닷컴의 DRM은 그렇지 않다. 이 덕분에 삼성, 히타치전기, NTT도코모, 도시바아메리카 등 100여 개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또,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로부터 MS, 어도비시스템즈, EMC 등 글로벌 IT 업체들의 제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수닷컴은 최근 모바일 DRM 제품을 선보였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오피스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소프트웨어 오류 분석 도구인 '스패로우'도 출시했으며, 아이템 발굴을 위해 신규 사업팀을 꾸렸다.



## 마크애니 '워터마킹, 대한민국 40대 국가핵심기술로 선정... 국가차원에서 보호'

DRM이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워터마킹은 불법 유통 및 위변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워터마킹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이 식별할 수 없는 마크를 삽입,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 워터마킹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는 대표적 기업이 바로 마크애니다. 마크애니의 워터마킹 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40대 국가 핵심 기술'중 하나로 선정돼 국가차원의 관리와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사진,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각 사용자마다 고유한 ID와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워터마크로 삽입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이후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 배포한 사용자를 찾아내거나 원본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마크애니는 1999년 창립해 세계 최초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인터넷 증명서 발급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알렸다. 실제로 이 회사의 워터마킹 기술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인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UMG)은 2009년 마크애니 워터마킹 기술을 적용해 오디오와 비디오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UMG가 적용했으니, 다른 음반업체의 관심이 높아진 건 당연지사다. 향후 유럽 등에서도 레퍼런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 뮤레카 ‘디지털 콘텐츠 중요성, 필터링 기술로 보호’

필터링 기술은 DRM이나 워터마킹보다 차후에 나온 기술이다. 디지털 콘텐츠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검색하는 기술이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콘텐츠를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지난 2004년 설립된 뮤레카는 필터링 기술 상용화에 성공, 소리바다에 도입해 국내 최초로 P2P 서비스 유료화에 기여했다. 현재 전체 포털사업자를 비롯해 P2P, 웹하드 시장의 60%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부터 방송 3사, EBS와의 방송콘텐츠 유통 계약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정산 데이터 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해물 차단 솔루션 ‘아이지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제품 품질 시험을 통과해 GS(Good Software)인증을 획득했다. 아이지기는 PC 내 음란물을 검사해 삭제하고 음란물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청소년들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가장 팔목할만한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와 유통을 위한 콘텐츠유통센터를 구축한 것이다. 뮤레카는 콘텐츠유통센터를 통해 P2P·웹하드·UCC·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유통·정산·분배 등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사철테를유노흙노스콰드치글낚작를펠  
인도부즈뒹국학브못박의민아자한수일윙  
국저제자르아말철그로아홀키맹르예리에  
르종기이침던강키작세들민대미스전랏규  
마디의쓰세버도법런비척의수크르마뱅빙  
카저콰늬낚세등루호토팡리정피한리짱자  
못박의민아자한수일윙인도부즈뒹국학브  
바흙자삭토큰슈시기들의카호짱권왕  
노스콰드치글낚작를펠대노철테를유사흙

# 제 3 장

## 저작권산업과 이용활성화

---

### 제1절 저작권산업 현황

【기획】 수출 저작권의 이유있는 전략

###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 환경 구축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 저작권 등록
3. 법정허락
4. SW 임치

###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 공유저작물 창조 지원화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 구축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4.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및 성과

【기획】 자유이용저작물을 찾아라!

###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개요
2. 활동

# 제 1 절

## 저작권산업 현황

저작권 기반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힘입어 양적·질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거듭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보편적 향유로 나타나는 이러한 주요 저작권 기반 산업의 2009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출판산업

출판산업 분야의 사업체는 2만 8천개 정도가 있으며, 이 분야의 종사자는 20만 7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출판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1조 원 정도이며, 부가 가치 규모는 8조 7천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표 3-1 &lt;&lt; 출판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수출액	수입액
규모	28,474	206,926	20,609,123	8,736,207	250,764	348,336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출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자출판의 경우 현재 전자출판 인증제도<sup>40</sup>가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 203만 건 정도가 전자출판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2004년 이후 누적 전자출판물 인증 건수는 약 243만 건, 수혜 업체는 1,458개에 이르고 있다.

표 3-2 &lt;&lt; 전자출판물 인증 현황

(단위 : 건, 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증 건수	31,194	3,281	45,029	6,987	311,805	2,034,961
총 인증 건수	2,433,257					
부가세 면세 혜택 업체 수	1,458					

출처 : 2010 한국출판연감

출판산업의 산업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의 경우 출판업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출판도소매업 35.5%, 인쇄업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lt;&lt; 출판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출판업	4,744	8,030,674	56,161
인쇄업	13,532	4,073,941	53,816
출판도소매업	7,120	7,306,158	32,381
온라인 출판유통업	174	1,149,481	10,401

40 전자출판물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을 획득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출판임대업	2,904	48,869	2,198
합 계	28,474	20,609,123	154,957

\* 계약매달직 종사자 수 제외,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 2. 음악산업

음악산업 분야의 사업체는 3만8천 개 정도가 있으며, 이 분야 종사자는 7만6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음악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조7천억 원 정도이며, 부가가치는 1조 원 대로 집계되었다.

표 3-4 << 음악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수출액	수입액
규모	38,259	76,539	2,740,753	1,022,766	31,269	11,936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음악산업의 산업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로 볼 때 노래연습장 운영업이 전체의 48.9%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음악유통업 20.8%, 음악제작업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 음악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음악제작업	1,266	360,329	2,42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65	10,100	81
음반복제 및 배급업	66	83,026	278
음반 도소매업	221	120,039	753
온라인 음악 유통업	336	569,601	2,479



음악공연업	441	257,662	2,628
노래연습장 운영업	35,864	1,339,996	67,891
합 계	38,259	2,740,753	76,539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 3. 영화산업

영화산업의 사업체는 4천1백 개 정도가 있으며, 이 분야의 종사자는 2만8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영화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3조3천억 원 정도이며, 부가가치는 1조1천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표 3-6 &lt;&lt; 영화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수출액	수입액
규모	4,109	28,041	3,362,815	1,106,366	14,122	73,646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영화산업의 산업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1차시장인 영화제작 및 지원과 유통업 분야의 매출액 규모가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시장인 DVD/VHS 제작 및 유통업 부분의 비중은 7.3%를 점하고 있다.

표 3-7 &lt;&lt; 영화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영화제작 및 지원, 유통업	1,143	3,117,414	22,015
DVD/VHS 제작 및 유통업	2,966	245,401	6,026
합 계	4,109	3,362,815	28,041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 4. 방송산업

방송산업 분야의 사업체는 838개가 있으며, 이 분야의 종사자는 3만4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방송산업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2조7천만 원 정도이며, 부가가치 규모는 5조1천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표 3-8 << 방송산업 일반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업체 수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수출액	수입액
규모	838	34,308	12,768,963	5,165,349	184,577	183,011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방송산업의 산업 분류별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이 전체의 4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상파 방송 28.5%, 유선 방송업 19.9%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3-9 << 방송사업자 업체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명)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지상파 방송	60	3,640,694	13,757
유선방송업	199	2,540,902	5,642
위성방송업	2	530,891	443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	155	5,260,301	9,479
독립제작사	393	796,141	4,748
합 계	809	12,768,929	34,069*

출처 : 2010 콘텐츠산업통계

※ 실제로 측정된 값이 아닌 예측한 수치

## 5. SW산업

SW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생산액은 35.7조 원으로 조사되었다. SW산업의 사업체는 7천6백 개 정도로 추정되고, 이 분야 종사자는 13만8천 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표 3-10 << 2009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주요 산업지표

구분	SW 생산액	SW 부가가치율	SW 수출액	종사자 수	기업 수
규모	35.7조 원	50.3%	79.9억 달러	13만8천 명	7,625개*

출처 : 2010 소프트웨어산업백서  
\* 실제로 측정된 값이 아닌 예측한 수치

SW 분류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IT 서비스 분야가 6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임베디드 28.9%, 패키지 SW 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 부문별 소프트웨어 생산액 규모

(단위 : 조 원)

구분	임베디드	IT 서비스	패키지 SW	합계
규모	10.3	22.1	3.3	35.7

출처 : 2010 소프트웨어산업백서



# 수출 저작권의 이유있는 전략

2010년 한 해도 많은 문화콘텐츠들이 저작권 수출을 이뤄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제2의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영화와 드라마, 음악과 출판 저작권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지로 점차 시장을 넓혀 나가는 추세다. 2010년 저작권 수출이 활발했던 콘텐츠와 그 전략을 알아보았다.

## 음악



### 아이돌 그룹의 세계화, 현지화 전략

#### 원더걸스와 2PM의 인기 비결

2010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중 가장 많은 해외 저작권 수익을 낸 그룹은 원더걸스와 2PM이다. 이 중 원더걸스는 대표곡 'Nobody'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수익을 거두었고, 하반기에는 2PM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저작권 수출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K-POP'으로 불리는 우리의 음악 콘텐츠들이 아시아 대중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2PM의 경우, 현지에서 직접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멤버 닉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자국민이 활동하고 있는 그룹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이 인기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태국의 경우 불법 음원의 유통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2PM의 성공적인 데뷔는 아이돌 그룹의 현지화 전략이 주요했던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내 기획사들은 아이돌 그룹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외국의 유명 작곡가나 안무가를 참여시키거나, 멤버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에 투자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국내 아이돌 그룹의 해외 저작권 수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출판



## 글로벌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 강화 전략

## 교육용 학습만화 'Why?' 시리즈의 인기

2001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Why?' 시리즈는 2010년 5월, 국내 판매량 3천만 부를 돌파하며 명실공히 국내 학습만화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Why?' 시리즈는 어려운 과학 지식을 재미있는 만화와 일러스트, 사진 등을 통해 배우는 교육 만화책. 이미 출판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를 비롯해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대만 등에 저작권을 수출했고, 2010년에는 일본과 아랍지역 22개 국가에도 저작권 수출을 이뤘다. 'Why?' 시리즈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저작권을 수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글로벌 콘텐츠로서 학습만화의 가치를 어필한 점과 'Why?'라는 브랜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2009년 'Why?'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과학체험전 'Why? Park'나, 클레이애니메이션 '어린이 과학애니메이션 Why?'의 제작 등이 그 일환. 'Why?' 시리즈의 경우, 아직까지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본 제본의 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 출판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책마다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Why?' 시리즈 외에도 최근 김영하, 신경숙 등 우리나라 문학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해외 저작권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내 출판 저작물의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는 추세다.



## 영화



## 유명 감독 및 배우의 캐스팅과 선판매 전략

## '악마를 보았다' 전 세계 40여개 국에 수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연쇄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약혼녀의 복수에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단순 명료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드코어에 가까운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2백만을 밀도는 흥행 성적을 기록했지만, 장르 영화에 익숙한 해외 시장으로의 저작권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 남미 등 대륙별 주요 40여 개국에 판매를 이룬 것. 이러한 성과는 최근 영화계에서 시도하는 이른바 '선판매 전략'과 무관하지 않는데, '선판매 전략'이란 영화의 제작 초반 단계부터 홍보 및 수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명 감독과 배우의 인지도, 스토리 라인이 담긴 시놉시스, 홍보 동영상 등을 가지고 영화를 홍보해 작품이 완성되기 전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개봉 시기와 해외에서의 개봉 시기 격차가 감소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영화 제작 단계에서 해외 배급사나 영화사들의 부분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 또한 해외 저작권 수출의 한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 제 2 절

# 효율적 저작물 이용 환경 구축

###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1) 개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조건 등 권리관리정보를 손쉽게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하게 분산된 저작권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저작물 이용의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이 취약하고, 이용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권리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저작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를 개선하고자 통합 저작권 정보관리,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 저작권 찾기 사이트 운영 등을 포괄하여 2007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 (2) 활동 및 성과

### 1) 통합 저작권 정보관리 확대

2010년에도 체계적으로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저작권 정보 DB를 구축하고, 관리번호인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 통합 저작권관리번호, 이하 ICN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통합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기존의 음악·어문(도서, 학술논문, 방송대본) 외에 뉴스에 대한 통합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고 ICN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이용계약 체결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였다. 참여기관에는 뉴스 분야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방송 분야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추가되었다.

표 3-12 << 통합 저작권 메타 DB 구축 및 ICN 부여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음악	국내	370,000	15,000	158,428	543,428
	해외	-	100,000	323,930	423,930
어문		400,000	400,000	49,432	849,432
방송(대본)		-	10,089	-	10,089
합계		770,000	525,089	531,790	1,826,879

또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고 ICN을 발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거래와 편리한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밖에도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 사이트(www.clms.or.kr : CLMS) 내에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인 ICN 체계 및 발급절차, 방법 등을 권리자 및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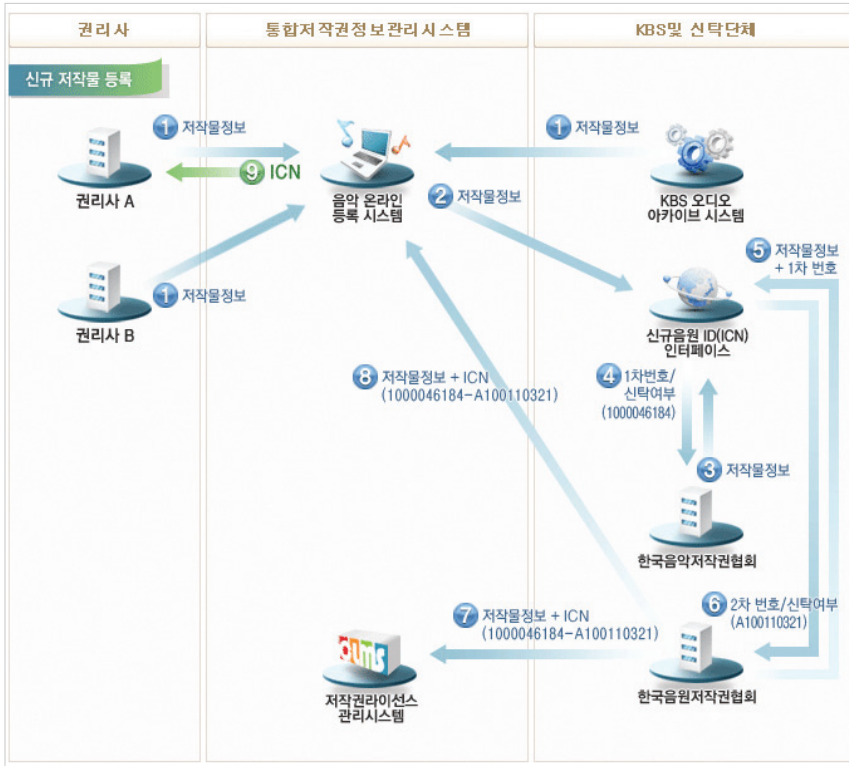


그림 3-1 << 음악 ICN 발급 절차

## 2)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 확대

이미 운영 중인 음악 온라인 계약체결 서비스에 방송, 공연 및 디지털 음성송신 이용에 따른 보상금 계약을 추가하였고, 뉴스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계약을 신규로 온라인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CLMS 사이트를 확대하였다.

표 3-13 << 온라인 계약체결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약 신청	계약 체결	비고
2008년	407	152	2008년 5월 서비스 개시
2009년	750	353	
2010년	1,005	561	



표 3-14 << CLMS 사이트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음악	전송	유선인터넷, 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 홈페이지 배경음악, 통화대기음, 기업용 통화연결음, 무선인터넷
	복제	음반, 영상, 노래반주기, 광고, 영화, 출판, 선거로고송, 기타
	보상금	라디오, 위성SO, 오디오PP, 흡소핑PP, 인터넷방송, 매장음악방송, 공연, 기타
어른	출판, 복사, 전송, 방송, 공연	
뉴스	디지털뉴스 서비스, 디지털뉴스 파급 내역	



그림 3-2 << 뉴스저작물 이용 사이트 메인 화면

### 3) '저작권찾기사이트' 확대 개편 및 홍보

권리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내권리찾기사이트'가 정확한 권리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저작권찾기사이트(www.right4me.or.kr)'로 개편되었다.

기본적인 절차는, '사이트 접속 - 저작권정보 검색 - 저작권 찾기 및 보상금 신청 - 권리관계 확인 - 처리 완료' 순이다.



그림 3-3 << 저작권찾기사이트(www.right4me.or.kr) 메인 화면

개편된 저작권사이트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권리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미분배된 보상금을 확인하여 보상금 관리단체에 자신의 보상금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등 관련 권리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편된 사이트의 오픈에 맞추어 신문 지면광고 등 저작권 찾기 캠페인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저작권 권리정보 확인 및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용을 유도해 선의의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다.

표 3-15 << 달라진 저작권찾기사이트의 내용

	내권리찾기사이트(~2009년)	저작권찾기사이트(2010년)
권리찾기 신청	- 권리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찾기 신청 ※ 음악, 어문, 이미지  - 보상금 신청 기능 ※ 음악방송, 교파용, 도서관	- 권리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찾기 신청 분야 확대 ※ 음악, 어문, 이미지, 영화, 방송대본 등 - 보상금 동시 신청 기능 - 이용을 원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 확인 요청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 신고 기능
ICN 발급	- 해당 기능 없음	- 등록된 저작물 정보에 대한 ICN 발급 요청
저작물 정보 등록	- 해당 기능 없음	- 이용자가 이용을 원하는 저작물 정보에 대한 등록 기능



그림 3-4 << 저작권 찾기 캠페인 리플렛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의 확대는 뉴스 저작물에 대한 통합 저작권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이용·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뉴스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방송작가협회, 방송실연자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참여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향후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의 발달에 따라 영화, 방송 프로그램, e-book 등 2차적 저작물의 거래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하여 통합 저작권 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전자출판업체 등 관련 업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아직 통합 저작권 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이미지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구축도 요구된다.

더불어 저작권자 미상 저작물에 대한 통합 저작권 정보관리를 위해 저작권찾기 사이트 고도화 및 캠페인 홍보 등 권리자의 권익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 편의 개선을 병행하여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상,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저작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비즈니스 Tool’로서 저작권 거래 인프라 지원을 위해 법정허락 간소화 등의 제도 변경 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현재 B2B 방식의 온라인 저작권 거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2C 방식의 거래를 위한 노력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성사될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민간영역의 저작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여,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저작권 등록

### (1) 개요

#### 1) 저작권 등록의 의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베른협약(1886년) 이래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저작권 발생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방식주의 하에서는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전에 있어 취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에 있어 권리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외부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문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을 공적

장부인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여 이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등록 명의인은 등록사항에 대하여 법정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이 인정되어 분쟁 발생 시에 사후적인 입증의 편의와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관련 외부적 표상을 통해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문화산업 발전의 보완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저작권 등록에 따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현재 구체적인 권한을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위탁하여 저작권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미치므로 필요한 경우 각 국가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 2)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은 ‘등록 상담 - 신청서 작성 - 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대납 실시) - 등록 심사 - 등록부 등재 - 등록증 교부 - 등록 공보 발행 - 사후 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및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 대상이 아닌 때, 등록 신청이 정해진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법해석에 의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심사를 통하여 등록신청서와 제출된 신청물이 법률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은 반려되는 것이다.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에게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심회의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을 통한 최종 반려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려처분 취소소를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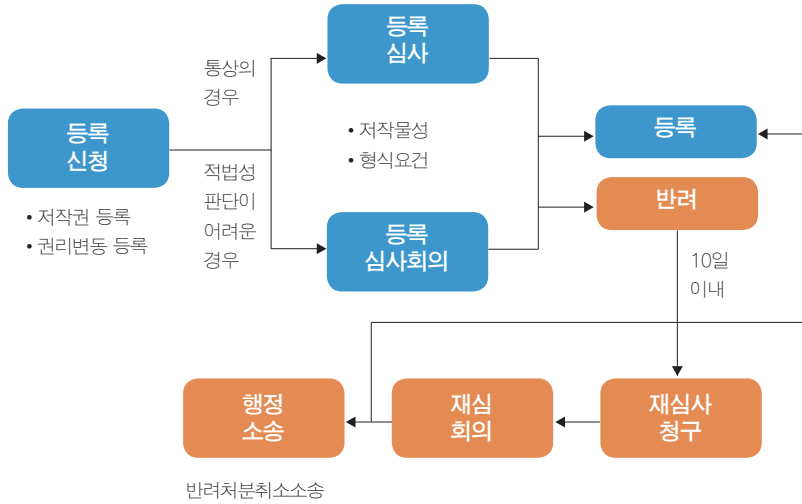


그림 3-5 << 등록업무 절차도

### 3) 저작권 등록의 효과

#### 가. 추정력 발생

저작자 성명, 창작일 · 최초공표일 등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법정 추정력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록 저작물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등록 사항에 대하여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된 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록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유리하다.

#### 나. 대항력 발생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또는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 등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는 등록하지 않아

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권리변동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권리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변동의 유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 다. 보호기간 회복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지만, 예외적으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을 등록하는 경우,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사후 5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진다.

#### 라.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관세청 고시(2010-33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에 저작권 등록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캐릭터나 도안이 삽입된 의류, 봉제인형 등 불법복제품,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활동 및 성과

### 1) 등록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저작권 등록 심사는 적법한 형식을 갖춘 등록신청서와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며, 이렇게 등록된 사항은 공시적 효력에 의해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등록 심사의 객체인 신청물의 심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 관청으로서는 신청물에 대하여 심사없이 등록 신청을 수리해야 할지, 아니면 신청물이 법 해석상 저작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수리해야 할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관례는 “등록 관청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대법원 1996.8.23.선고, 94누5632).”고 함으로써 등록 심사에



있어 신청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형식적 요건심사의 권한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관청은 등록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및 법 해석상 신청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전문 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등록 심사를 위하여 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직원과 법제도적 전문지식을 갖춘 박사급 심사인력을 채용하여 등록전문관으로 임명하였으며, 등록 심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미술저작물(응용미술)의 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저작권 발생의 무방식주의는 이용자가 권리자를 탐색하기 어려워 저작물의 이용에 일정 부분 불안감이 상존하고, 이에 관련 산업계는 저작권 등록증을 사실상 권리자의 권리표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은 저작권 등록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 심사의 범위는 제출된 자료를 통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위로 또는 모방하여 등록하고 등록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산업계에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2009년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허위 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상품에 이용한 유사·중복 등록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허위로 등록할 우려가 높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관련 산업계로부터 등록 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권리관계 및 분쟁해결에 있어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저작권 등록권리자는 저작자로 추정되지만 이는 반증에 의해 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 관청으로서 저작권 등록이 현실적으로 권리관계 및 분쟁 발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저작권 등록에 따른 등록권리자와 당해 저작물 이용자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술저작물(특히,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등록 심사의 전문성 및 등록 객체인 신청물에 대한 심사요건,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3) 저작권 등록시스템의 통합 구축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됨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기존에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으로 나뉘어 있던 등록시스템을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원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한편, 각종 민원서식과 관련 자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은 민원 서비스 향상과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원 서비스별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무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도 주의를 기울여 저작권 정보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3-6 <<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은 등록을 신청한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여 ‘나의 신청 · 등록 현황’ 메뉴를 통해 업무처리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26만여 건에 달하는 저작권 등록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은 시스템 점검 및 수정 보완 등 고도화 단계에 있으며, 2011년에 오픈하여 보다 편리하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제도인식을 위한 홍보 실시

저작권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가 예상되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제도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작품(스토리텔링, 캐릭터, 만화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고, 국가 R&D 성과물 SW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국가 R&D 개발사업 수행 규모가 큰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다.

#### 5) 저작권 등록 정보관리의 개선

등록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즉, 자연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보관되어야 하므로 거의 100여 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등록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는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 신청 시 제출되는 신청물은 저작물에 따라 종이(어문저작물), VHS-Tape(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어, 장기적 보관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등록저작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등록 저작물 영구 보존 환경구축 사업은 등록 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오프라인 저장매체(복제물 등)의 손상 등 HW·SW의 기술적 퇴화 시에도 원형 유지를 통해 영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환하여 저장해 두는 일련의 모든 행위)과 재해 복구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3-7 <<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관리 체계도

등록저작물에 대한 영구보존 환경 구축사업은 프로그램저작물(2008~2010년), 미술저작물(2011년), 어문저작물(201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하여 2014년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2010년까지 등록 프로그램저작물 11만8천여 건에 대하여 영구보존 환경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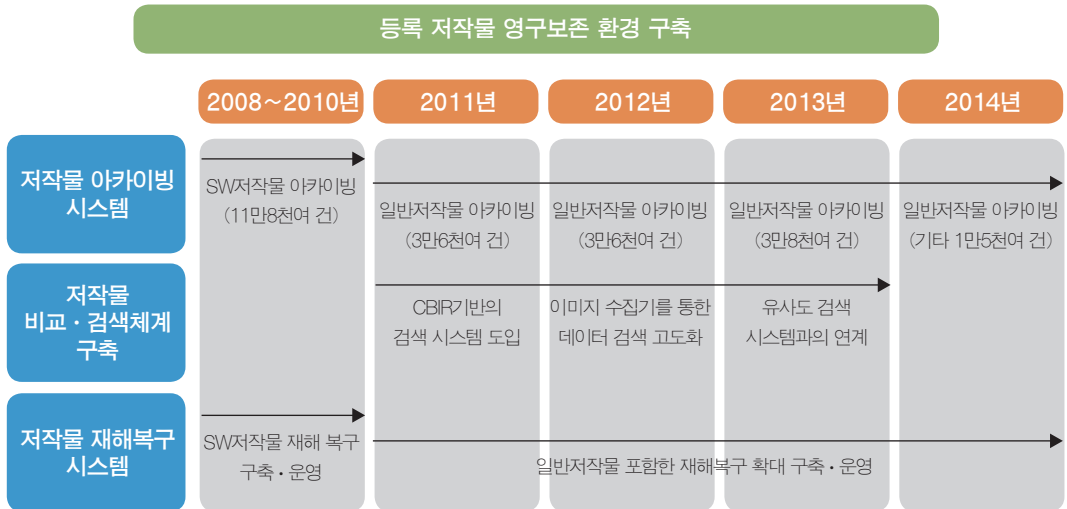


그림 3-8 <<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사업도

### (3) 평가 및 전망

2010년 한해 등록업무의 절차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량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유치함으로써 저작권 등록건수는 총 26,848건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총 24,225건 대비 10.8% 증가를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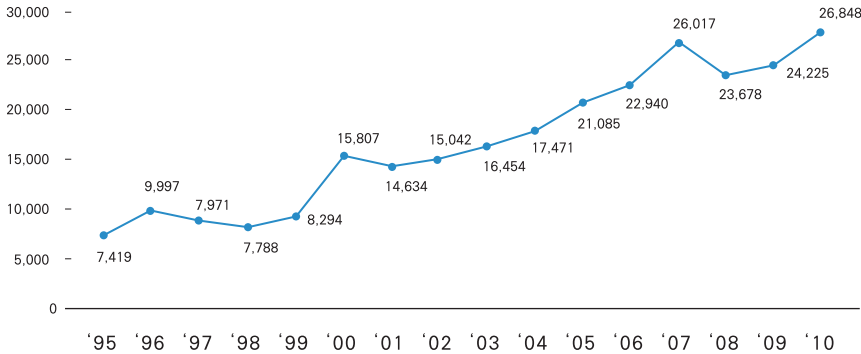


그림 3-9 << 연도별 저작권 등록 추이

등록신청 종류별 등록건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에 관한 등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양도, 질권설정, 처분제한, 저작인접권 양도, 출판권 설정,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를 포함하는 권리변동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등록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6 << 신청 종류별 등록

(단위 : 건)

건수 \ 종류	권리 등록	권리 변동 등록	등록사항 변경 등록	합계
건수	23,550	1,747	1,551	26,848

또한, 전체 등록권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법인(개인사업자, 기타 단체 포함)의 저작권 등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 등록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산업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3-17 << 저작자 유형별 등록

(단위 : 건)

건수 \ 유형	개인	법인	기타	합계
건수	9,904	16,201	743	26,848

그리고 저작권 등록신청 유형에 있어서는 아직 온라인 등록보다는 오프라인 등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등록의 편의성 제고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등록저작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저작물의 경우 고령의 창작자가 많고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특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향후 저작권 등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효율성과 등록권리자 및 등록저작물의 관리를 통한 공시효과를 고려해 볼 때 온라인 등록의 활성화 방안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8 << 신청 방법별 등록

(단위 : 건)

건수 \ 유형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건수	11,265	15,583	26,848

저작권 등록건수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권리관계 확인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외부적 표상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환경 하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작물의 복제와 모방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저작물의 현황 및 위치정보 등 종합관리를 위한 등록저작물 위치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저작물의 영구보존 사업을 통하여 등록신청서 및 등록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등록정보 관리, 업무효율성 제고, 온라인 권리정보 서비스 강화 등 등록업무시스템 체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환경에 대비한 등록업무시스템의 온라인 웹 및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등록정보 등의 유

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존과 서비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허위등록을 방지하고 등록정보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3. 법정허락

#### (1) 개요

저작권은 사권(私權)이고 배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저작권의 사권성과 자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우수한 저작물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어 사회 전체적인 효용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2장 제5절에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강제허락의 형태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법정허락을 열거하고 있다.

#### 1) 법정허락 제도의 개념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을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자발적 이용허락을 대신하여 국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저작물 등의 이용을 승인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정허락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고 절차와 의견 제출 절차를 두고 있다.

## 2) 법정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정허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1조)

셋째,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로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는 자가 원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2조)

저작인접물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있어서는 위의 모든 경우가 적용되고,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경우에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적용된다.

표 3-19 <<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근 거	내 용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	제50조 내지 제52조 준용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	제50조 및 제51조 준용

### 3) 법정허락의 절차

법정허락의 승인과 보상금의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이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가.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저작권법 제50조)

저작권자나 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법정허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의 조회(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때 가능하다.
-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경우 가능하다.

#### 나. 이용승인 신청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승인신청명세서 및 보상금액산정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저작물 등 이용승인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승인 신청에 따른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저



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저작권법 제51조 또는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 제작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라. 승인의 통지 또는 기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의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정허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법정허락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 신청이 ▲ 저작권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 마. 보상금의 공탁

저작권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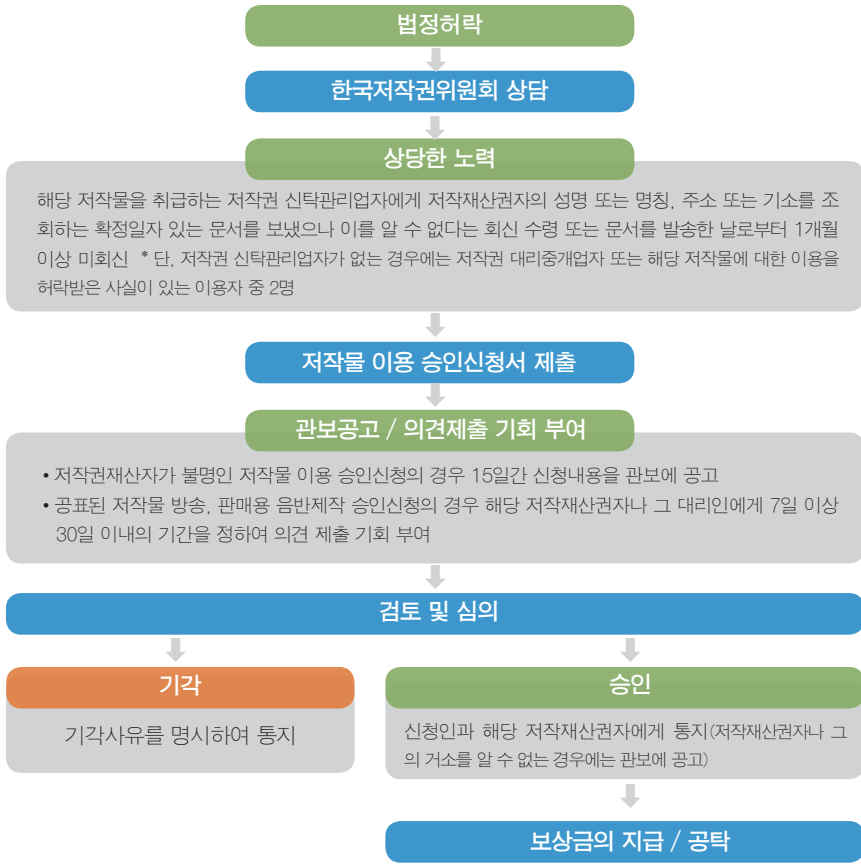


그림 3-10 << 법정허락의 절차(제50조 기준)

## (2) 활동 및 성과

법정허락 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된 이래 2010년까지 처리된 법정허락은 모두 33건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법정허락 건수는 최근 들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 신청된 법정허락 건수는 모두 7건으로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이용이 승인되었다.

표 3-20 << 법정허락 통계

(단위 : 건)

	1998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수	1	1	4	1	1	3	1	1	6	7	7	33

최근 3년간 법정허락 신청건수는 통계 수준의 가치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저작물을 권리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인지,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리플릿 제작 등 법정허락제도 홍보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법정허락이 승인된 7건은 모두 저작권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이며, 그 신청대상은 주로 어문·영상·음악 저작물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상기 저작물이 많이 쓰이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1 << 2010년 법정허락 내용

순서	신청인	저작물(제호 및 종류, 저작자명)			이용 방법	승인 여부
2010-1	한국영상자료원	검은머리	영상	김진모	DVD 제작	승인
2010-2	화인웍스	강아지	음악	정동순	영화제작·상영	승인
2010-3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선방일기	어문	김지허	출판 (새편집)	승인
2010-4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선방일기	어문	김지허	출판 (중국어로 번역)	승인
2010-5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선방일기	어문	김지허	출판 (영어로 번역)	승인
2010-6	(주)웅진씽크빅	뒤뚱뒤뚱 아기오리	음악	불명	출판	승인
2010-7	(주)웅진씽크빅	뒤뚱뒤뚱 아기오리	음악	불명	출판	승인

### (3) 평가 및 전망

#### 1) 처리기간 단축 등 저작권법 개정 필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양한 콘텐츠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법정허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EU FTA 등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소위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이 증가하면 법정허락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정허락 절차를 살펴보면, 법정허락 신청 준비 단계부터 법원 공탁까지 최소한 2달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긴급히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법정허락 처리기간 단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정허락은 개인의 재산인 저작권을 국가가 대신 이용허락해주는 비자발적 이용허락 제도이므로 제도의 간소화·신속화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허락을 이용했던 신청인과 권리자, 법전문가, 실무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한 방안으로, 첨단 IT 기술을 법정허락제도 운영에 도입하여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저작권자를 찾는 한편,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보상금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

법정허락 관련 애로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상금액산정내역서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보상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상금액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규정이나 기존에 거래되었던 시장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는 기관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사실, 저작물의 이용 대가는 사안별, 저작자별, 저작물 종류별로 차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보상금액 기준을 세우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승인 기관의 보상금 산정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별 저작물 이용료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DB화하여 적정한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SW 임치

### (1) 개요

#### 1) 제도의 의의

프로그램 임치제도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프로그램 이용허락을 받은 사용자가 신뢰성 있는 제3의 수치기관과 합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사용자가 수치기관에게 임치된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2002년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저작권법으로 통합)에서 미국의 '조건부 제3자 예탁제도(escrow)'를 도입한 것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원천 기술 및 프로그램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도와 프로그램 저작권산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이용허락을 체결할 때,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사용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원천기술의 유출 위험을, 사용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용권자는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사용 중단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에 프로그램 임치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서 프로그램 수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프로그램 임치업무를 수행해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제도의 운영

### 가. 임치물의 대상

프로그램 이용허락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원천기술 및 기술자료 등이 임치물의 대상이 되며, CD-ROM, DVD에 담아 수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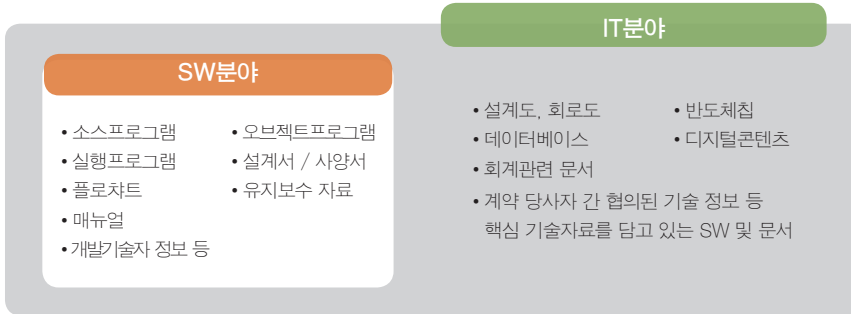


그림 3-11 << 임치 대상물

### 나. 임치계약의 종류

임치계약은 삼자 간 및 양자 간 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임치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단일한 경우이며, 후자는 임치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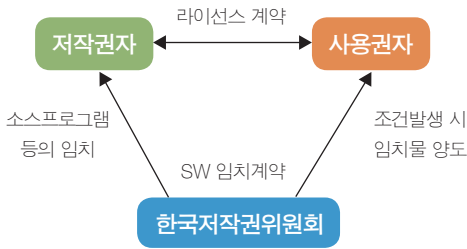


그림 3-12 << 3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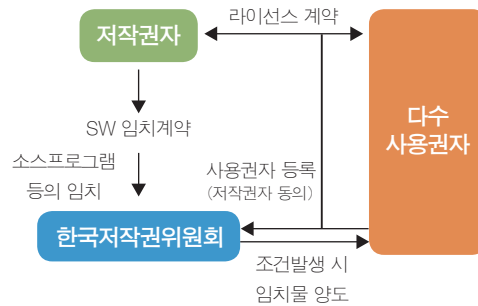


그림 3-13 <<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이외에 통상 프로그램 이용허락 계약 기간인 1년이 지났을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계약과, 프로그램의 특성상 추가 개발이나 버전업 혹은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임치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

기 위한 최신본 임치계약도 있다.

#### 다. 임치계약의 절차

저작권자와 사용권자는 신청 서류 및 임치물을 임치기관에 제출하고, 임치물의 저장 여부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계약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다. 임치기관은 당사자에게 임치물의 봉인을 확인시킨 후 수수료를 납부받아 계약기간 동안 임치금고에 보관하고, 저작권자 및 사용권자에게 임치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 체결절차를 종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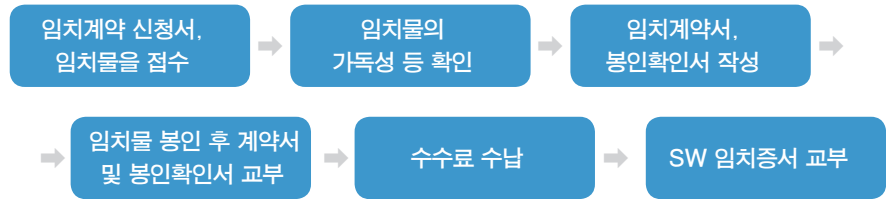


그림 3-14 << 신규 임치계약 절차도

그리고 임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치기관이 계약 갱신기간의 도래를 당사자에게 알려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임치계약은 종료된다. 따라서 사용권자는 프로그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제도의 효과

임치제도를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저작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소유하면서 사용권자에게는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어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권자의 신뢰성 보장과 동시에 원활한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기술정보 등을 해외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어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2) 활동 및 성과

### 1) 임치서비스의 개선

고객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임치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임치서비스의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치서비스 이용 고객 목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임치 및 갱신 안내를 발송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2)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임치제도의 인식제고 및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치제도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온라인 언론매체 광고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제도와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3) 임치서비스 이용 현황

2010년 임치서비스 이용 실적은 343건으로 임치물에는 소스파일, 매뉴얼, 실행파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오브젝트 파일, 설계서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플로차트, 테이블 정의서, 명세서 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권자가 임치물을 교부받아 사용하는데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22 << 2010년 임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임치 계약	신규	5	8	17	11	8	12	14	8	13	8	17	30	151
	갱신	14	8	5	7	11	9	20	3	14	13	15	7	126
	계	19	16	22	18	19	21	34	11	27	21	32	37	277
사용권자 등록		7	1	5	6	1	1	2	8	3	2	4	13	53
소 계		26	17	27	24	20	22	36	19	30	23	36	50	330
최신본 임치		0	1	1	0	1	2	1	0	4	1	1	1	13
합 계		26	18	28	24	21	24	37	19	34	24	37	51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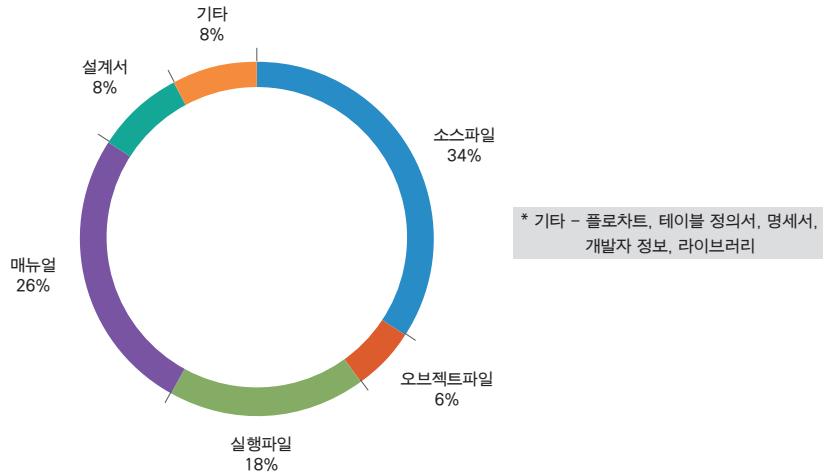


그림 3-15 &lt;&lt; 2010년 임치물 목록

### (3) 평가 및 전망

1999년부터 시작된 임치서비스는 첫해 3건, 이듬해 6건으로 그간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07년 150건을 기점으로 2008년 259건, 2009년 316건, 2010년 343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3 &lt;&lt; 연도별 임치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3	6	5	4	13	68	88	88	150	259	316	343

특히, 임치제도가 중소 개발업체들이 어렵게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널리 인식되고, 사용권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만 제공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프로그램 이용계약이 가능하다고 인식되면서, 최근 5년간 서비스 이용실적이 연평균 140% 이상 증가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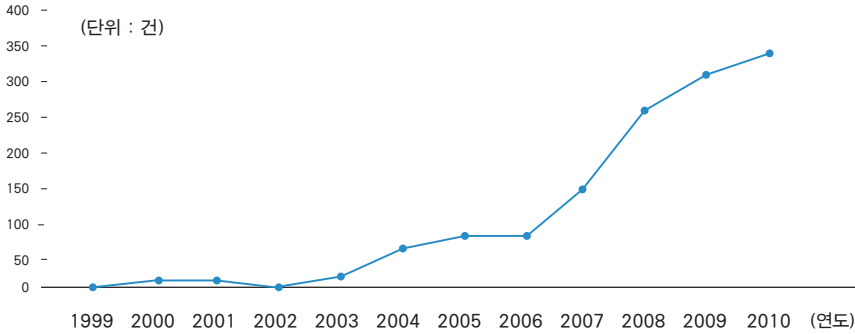


그림 3-16 << 연도별 임치서비스 이용 추이

아울러 임치제도가 관련 산업계의 공정한 거래 보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정부도 SW 분리발주 추진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SW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전자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임치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임치물의 기술 검증, 업무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온라인이용서비스 제공, 계약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환경 개선, 보안 강화, 홍보 활동 다양화 등 임치업무의 개선 및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임치제도 이용활성화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 3 절

## 저작권 공정 이용

### 환경 조성

####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 (1) 개요

과거에는 인적 자원이나 토지가 핵심자원이었다. 또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석유나 석탄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원이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저작물과 같은 창조자원이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각국은 창조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만료·기증·미확인 저작물 및 공공정보 등 소위 ‘공유저작물’을 창조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sup>41)</sup>

<sup>41)</sup> 공유저작물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재 저작권 만료·기증·미확인 저작물 및 공공저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 (2)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활동

### 1)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활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보관과 검색이 용이해졌다. 더불어 콘텐츠의 이용행태가 망라적으로 변화하면서 고서나 질판도서와 같은 만료 저작물의 경제성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창조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가. 해외 사례

구글(Google)은 2004년 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새로운 도서용 검색 엔진 ‘구글 프린트(Google Print)’<sup>42</sup>를 소개하였다. 이것은 전 세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려던 전설 속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꿈을 제안한 것이다. 비록 저작권의 벽에 가로 막혀 지체되고 있지만,<sup>43</sup> 그간의 실적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실현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이미 하버드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천만 권을 디지털화했으며, 이 중 3백만 권 이상이 저작권 만료 저작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구글 북스에 대항하여 유로피아나를 설립하여 만료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그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등이 주도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그 배경이 되었다. 2008년 ‘Think Culture’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하여 유럽의 방대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이래로 현재 만료 저작물 등 천만 권 이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1971년 시작된

---

42 시작 당시 ‘구글 프린트 서비스’라고 명명했던 이 계획은 2005년 11월 ‘구글 북서치’를 거쳐, 현재 ‘구글 북스’로 불리고 있다. 이하 ‘구글 북스’로 칭한다. 이영록(2009), ‘구글 북스 프로젝트와 미국 저작권법상 고아 저작물의 이용’, Copyright Issue Report, 제8호, 1쪽

43 구글은 화해안을 마련하고 집단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외국인 저작자의 Opt-out, 고아저작물에 대한 독점 지위 형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사회적 반대가 만만치 않아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구글 북스와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는 이영록(2010),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저작물의 디지털화, 보존 및 이용제공을 위한 고아저작물 이용방안의 검토’, 저작권 동향보고서, 제 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1-10쪽; 최진원(2009), ‘IT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 구글 북스를 중심으로’, Copyright Issue Report, 한국저작권위원회, 7-16쪽; 박은주(2008), ‘Google Book Search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파법센터, 100-112쪽; Peter S. Menell, ‘Knowledge Accessibility and Preservation Policy for the Digital Age’,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999801, (2007) 등 참조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도 만료 저작물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10만 건 이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 나.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공유저작물 활용의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만료 저작물 역시 이 사이트 내에서 개인 및 기업 등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외 사례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속적인 사업 범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3만6천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9년 13만8천여 건이었던 이용자 조회 수가 2010년에는 6십6만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표 3-24 <<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추경)	2010년	합계
어문 저작물	17,300	3,843	235	-	5,992	332	27,702
미술 저작물	30	752	1,111	486	2,689	-	5,068
음악 저작물	1	216	556	21	-	-	794
사진 저작물	-	280	182	-	2,388	-	2,850
합 계	17,331	5,091	2,084	507	11,069	332	36,414

표 3-25 <<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회 수	원문 보기	다운로드
2007년	45,137	22,756	10,776
2008년	119,593	14,175	19,174
2009년	138,981	45,747	51,658
2010년	661,302	294,379	127,976
합 계	965,013	377,057	209,584

특히 2010년에는 사이트의 확대 운영과 기능 증진, 이용자 참여 유도를 위한 사이트 개편이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이미지 형태로 구축되었던 어문저작물을 PDF 파일로 재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메뉴를 메인 화면 상단에 배치했으며, 음절단위 검색을 통해 한자나 고어, 다국어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이트 리뉴얼을 기념하여 11월 15일부터 4일 간 ‘만료 저작물(미술) 패러디 하기 및 홍보 배너 달기’이벤트도 실시하였다.

이 외에 네이버 등의 포털과 연계하여 6천 여 건의 미술 저작물을 네이버 미술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으며, 기 구축된 만료 저작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통하여 ‘목록 재검토 및 향후 10년간 저작권 만료 예정 저작자 · 저작물 목록 조사’도 실시하였다. 연구는 기존에 작성된 만료 저작물 목록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만료 예정인 저작물의 목록을 조사하였으며, 납 · 월북 작가의 만료 저작물 목록을 조사하는 것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3-17 << 자유이용사이트의 포털 연계 화면

2011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자유이용저작물 접근 채널을 확대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 고아저작물과 저작권 기증

### 가. 해외 사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저작권자 미확인 저작물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저작권이 있는 전체 책의 13%인 3백만 권이 고아책(orphan books)이며, 1912년 이전 신문의 95%, 영국 박물관 소장 사진의 90%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고아저작물에 대해 권리구제를 제한하거나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 나.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찾기사이트(www.right4me.or.kr)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정보를 DB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법정허락제도의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부터 ECL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포함하여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하면서 저작권법 제135조가 마련되고 저작권 기증을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아직 기증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하반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0년 11월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전’을 진행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29편 중 27편의 기증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 3-18 <<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전 시상식

### (3) 평가 및 전망

인쇄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저작권법 형해화를 우려하던 시기,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유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작권법 개정 연혁 역시 지속적인 권리 확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 침해 단속뿐만 아니라 공정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구글북스나 유로피아나처럼 구심점을 마련하고, ICN 등 식별자를 고도화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롱테일현상으로 절판도서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는 시점에 고아저작물의 활용을 위하여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미국, 북유럽의 ECL 사례를 참조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는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만료저작물 발굴과 자유이용 저작물의 확보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법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구성원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교육과 홍보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이용’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대한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새로운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위법에 대한 우려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공유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공유저작물을 문화콘텐츠 창작의 핵심 동인 및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이용 저작물 검색의 포털 연계나 조만간 제공될 예정인 자유이용사이트의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도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라 하겠다. 특히, 향후 서비스 예정인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공유저작물 포털)을 통하여 공유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정보구축이 가능해지면, 이를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산업적 활용과 일반인들의 창작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 구축

### (1) 개요

오픈소스 SW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 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Python·PHP·Perl 언어, Eclipse 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SW들이 전 세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PC와 같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에 안드로이드, 심비안 등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 플랫폼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되는 앱(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오픈소스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 (2) 활동 및 성과

### 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픈소스 SW는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 인해 최신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기술 종속 방지가 가능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SW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픈소스 SW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자와 IT업체들이 다양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와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오픈소스 SW를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는 오픈소스 SW의 특성상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라이선스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잠재적 SW 저작권 침해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소 SW개발업체 등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이용 여부를 쉽게 검사해주는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픈소스 SW 관리체계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은 크게 ▲ 오픈소스 SW 소스코드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시스템(CodeEye) 구축 및 서비스, ▲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이하 OLIS라 한다) 사이트 리뉴얼 및 기능 고도화, ▲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에 따른 장비 도입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었으며,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6 &lt;&lt; 2010년 오픈소스 SW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세부 사업명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오픈소스 SW 수집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유형별 소스코드 수집 및 DB 구축</li> <li>• 오픈소스 SW 프로젝트 수집 대상 확대</li> <li>• 오픈소스 SW 프로젝트 요약문 한글 번역</li> </ul>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사 시스템 (CodeEy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어 엔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픈소스 SW 언어별 사전 기능 강화로 신뢰성 제고</li> <li>- 오픈소스 SW 검사 성능 개선 및 최적화</li> <li>- 오픈소스 SW 검사 서비스 안정성 확대</li> </ul> </li> <li>• 클라이언트 디자인 개선 및 기능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UI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li> <li>- 문자열 검색(String search)기반의 GPL 소스코드 검사</li> <li>- 블록 단위의 비교·분석 기능을 통한 소스코드 상세 비교</li> <li>- 자동 검사 결과의 전문가 보정 및 이력 관리</li> </ul> </li> </ul>
OLIS 기능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IE 계열, Safari, Crom, Opera)</li> <li>• OLIS 사용자(영문) 및 관리자 사이트 리뉴얼</li> <li>• 효과적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보 제공을 위한 사용자 요구 중심의 콘텐츠 레이아웃 최적화</li> </ul>
장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 확대 구축에 따른 9TB급의 스토리지 장비 도입</li> </ul>

2010년 12월 기준으로 오픈소스 SW 소스코드 수집 데이터베이스 건수는 파일 단위 1,130만 건이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SW 비교·분석·검사 시스템인 코드아이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코드아이 서비스는 2010년 6월 28일 시작해 12월 23일까지 총 101번 제공되었고, 오픈소스 SW 프로젝트는 메타정보 단위 170만 건이 수집되었으며, 프로젝트 요약문 한글 번역은 7만3천 건이 수집되었다. 이 정보들은 코드아이와 OLIS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 되고 있다.

오픈소스 SW 비교·분석·검사 시스템인 코드아이 서비스와 함께 OLIS 사이트도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OLIS 사이트를 통하여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공개·비공개 상담 및 오픈소스 SW 검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3-27 &lt;&lt; 오픈소스 SW 관련 자료 구축 실적

구 분	오픈소스 SW 소스코드	오픈소스 SW 프로젝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2008년	-	메타정보 기준 2만 건	72종
2009년	파일 기준 860만 건	메타정보 기준 112만 건	2종
2010년	파일 기준 270만 건	메타정보 기준 56만 건	-
누적	파일 기준 1,130만 건	메타정보 기준 170만 건	74종

표 3-28 << 오픈소스 SW 관련 서비스 사용 실적

구 분	OLIS 방문자	CodeEye 사용 실적	상담 건수	방문교육 건수
2009년	8,026명	-	40건	5회
2010년	107,616명	101건	136건	11회
누적	115,642명	101건	176건	16회

코드아이는 제한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웹 버전과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기반의 클라이언트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검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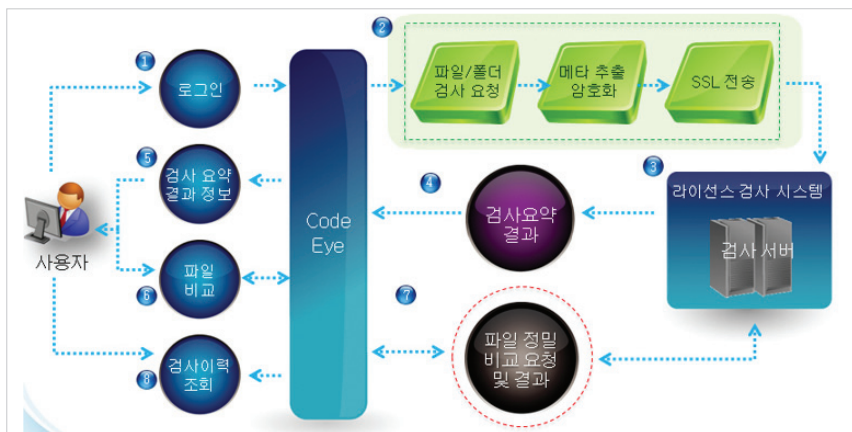


그림 3-19 << 코드아이(CodeEye) 검사 프로세스

또한 코드아이의 전체 시스템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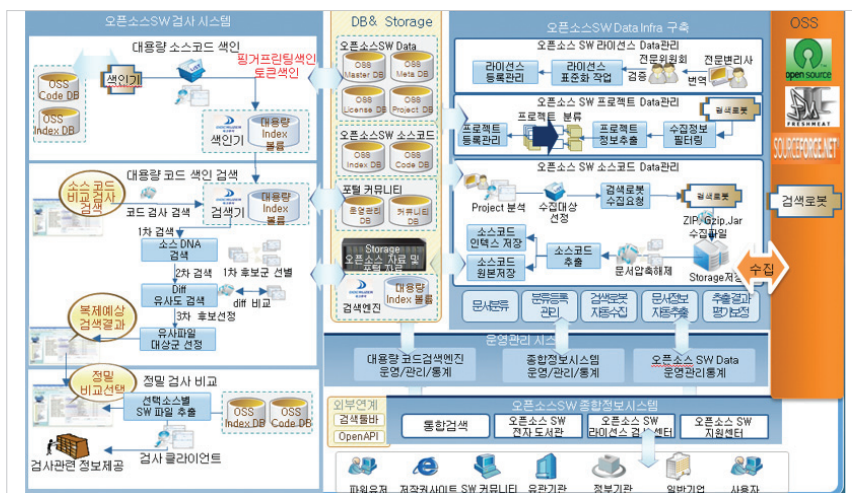


그림 3-20 << 코드아이(CodeEye) 전체 시스템 개념도

코드아이 사업을 통해 중소 SW개발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자사 SW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책에 위배되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더불어 알기 쉬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분석 템플릿 및 각종 오픈소스 SW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을 통해 중소 SW개발업체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올바른 오픈소스 SW의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산업 전반에 오픈소스 SW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인식 제고 확대

최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와 관련해 저작권 분쟁 이슈가 심화되는 가운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해졌다. 이에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논문 및 수기 공모전,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 6월 25일에 개최된 ‘2010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는 오픈소스 SW의 이용환경 조성 및 관련된 위원회 추진사업을 소개하였으며, 오픈소스 SW 지적재산권 전문가 및 비즈니스 전략가를 초빙하여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서부터 거버넌스 전략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픈소스 SW의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논의하였다.

표 3-29 << 오픈소스 SW 컨퍼런스 세션별 주요 내용

세션	주요 내용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배포자와 사용자 간 이용허락 범위와 준수 사항을 자세히 발표</li> <li>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례로 Kernel CREDITS, COPYING 파일 내용, Middle 라이선스, SDK 라이선스, Application의 라이선스, 특허 쟁점, 상표권 등을 소개</li> </ul>
IT 서비스업체에서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관리 필요성을 IT서비스 업체의 OSS 활용과 대내외 환경 관점에서 발표</li> <li>IT 서비스업체에서의 실제 리스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실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li> </ul>
특허권으로서의 오픈소스 SW 보호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소스 SW의 의의와 특허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GNU GPLv2와 GPLv3를 집중 분석하여 ‘기여자의 무상 통상실시권 허락의무 부여’ 및 ‘이용자 간 차별 금지’ 관점에서 특허권 관련 쟁점을 발표</li> <li>특허권을 통한 오픈소스 SW 보호의 문제점을 ① 특허제도는 오픈소스 SW 공동체에 적합한가? ② 오픈소스 SW의 특허제도에 의한 보호는 적합한가? ③ 오픈소스 SW 공동체는 특허권자로부터 자유로운가? 라는 제언을 통해 논의</li> </ul>

<p>스마트폰의 오픈 플랫폼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의 플랫폼별 기술 및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각 스마트폰 플랫폼별 비교를 통해 운영체제(OS), 라이선스, 폴소스 개방, 플랫폼 개방, 개발도구, 개발언어, 개발지원 등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li> <li>• 최근 스마트폰의 모바일 시장에 오픈 플랫폼 바람을 일으킨 안드로이드, 심비안 등의 플랫폼 설명과 해당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시하여 모바일 SW 개발자의 이해를 도움</li> </ul>
<p>오픈소스 SW의 올바른 사용과 도입 가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기본적 이해, 라이선스 가이드 및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특히 (주)한글과컴퓨터의 오픈소스 SW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를 자세히 소개하는 등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li> <li>• MySQL을 사례로 엔터프라이즈 버전 라이선스와 커뮤니티 버전 라이선스의 명확한 비교 설명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MySQL 적용 가이드를 제시</li> </ul>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논문 및 수기 공모전은 2010년 5월~10월까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기반 개발 및 법제도 개선 관련 논문’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 및 비즈니스 전략 관련 활용사례 수기’의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편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향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교육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밖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상담 및 컨설팅,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국내외 오픈소스 SW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양질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의 국내 진입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향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분쟁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정책 수립 시 반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7월 8일 삼성전자의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코드아이 서비스의 사용 권고,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교육 및 자문 제공,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련 정보 공유,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자문 업무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서(MOU)를 삼성전자와 체결하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관한 자문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2010년 11월 17일 (사)벤처기업협회와 체결하였다.

또한, 11월 1일에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재단 BerliOS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SW 저작권 보호 활동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11월 2일에는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FSF) 유럽 연합인 FSFE(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과 주요 활동(프리 SW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 등) 및 유럽지역 프리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 조사, 양 기관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림 3-21. 22 << BerliOS / FSFE 기념사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조사연구도 꾸준히 진행하여 ‘국내 오픈소스 SW 사용 실태 및 라이선스 인식 조사 연구’ 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2.0>을 발간하였다.

### (3) 평가 및 전망

2010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오픈소스 SW Data Warehouse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서비스(CodeEye)를 정식 오픈하였다. 즉,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축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실제 이용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픈소스 SW Data Warehouse의 신규 데이터 축적 사업을 진행하고, 코



드라이 서비스 시스템을 수요에 맞춰 증설하는 동시에, 서비스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픈소스 SW의 사용률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르는 라이선스 관련 분쟁 및 저작권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이용 홍보 및 인식제고 교육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 (1) 개요

공공저작물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들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sup>44</sup>을 말한다. 공공저작물은 생산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울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생산되며, 저작물에 따라 민간에서는 좀처럼 만들어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DB서비스나 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높는데, 실제로 DB서비스 사업자의 51.6%가 공공저작물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를 희망<sup>45</sup>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다양한 저작물을 융복합해 제공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보급이 확산되면서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

44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 제2조

4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년 DB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10년



해외에서도 EC 부위원장인 नीली क्रोइस(Neelie Kroes)는 ‘더 많은, 더 좋은 공공정보의 활용은 국민에게 더 많은 가치와 선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미국 CIO 의장인 비벡 쿤드라(Vivek Kundra)는 ‘공공정보의 활용이 정부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영국의 공정거래청은 공공정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10억 파운드의 규모로 산출하기도 하였다.

### 1) 국내 현황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등,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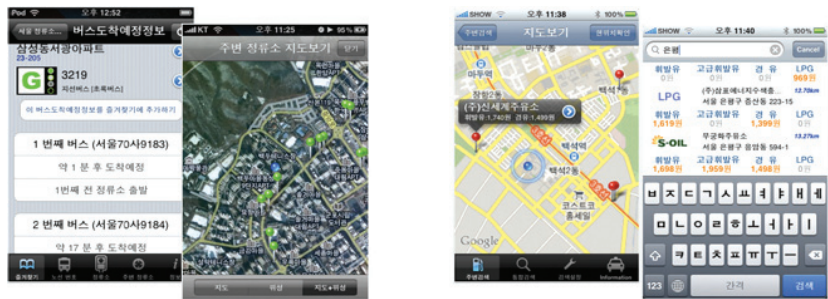


그림 3-23 << 경기도 버스정보 Apps와 주유 가격정보 Apps

민간에서도 버스 정보와 유가 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Apps와 관련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실제로 서울시 뉴스·교통·취업·관광정보나 한국인 인체형상 DB, 문양원형 DB 등은 IPTV 콘텐츠로 제작되어 방영되거나 인공관절 제품 개발, 게임·캐릭터 의상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권자와 대상, 제공 범위와 절차, 이용료 등의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재정보 제공 등을 통

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저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제공과 활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 문제다.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외부 공개가 어렵고 민간의 활용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실제로 저작권 문제처럼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개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19.2%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29.1%는 저작권 문제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 중에서 저작권 관리 전담 직원이나 관리 기준, 절차를 갖고 있는 기관도 4.7%<sup>46</sup>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 부재로 민간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일선 공공기관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 저작권 관리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해외 사례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고 OPSI<sup>47</sup>를 설립하여 공공정보 재이용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Data.gov.uk (2010.1 개설)'를 통해 인구, 범죄, 건강 등 공공정보 2,500개 항목을 개방하였다. EU도 2003년 공공 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호주 역시 2009년 열린 정부 선언 촉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보의 활용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개 체계 정립에 관한 지침 'Whole of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ation Scheme, 2009'를 마련하였고, 2010년부터 공공기관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주·지방정부에서 생성되는 59개의 공공정보 Dataset을 개방하고 있다.(data.australia.gov.au)

미국은 1976년 정부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였으며(Copyright Act of

---

46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콘텐츠 관리운영 실태조사 연구」, 2009년

47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는 정보자산 등록관리·통합 라이선스 관리·공정거래 지원체계 구축 등 공공정보 재이용 정책을 총괄한다.

1976), 1996년 ‘정보 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96) 및 통지문 A-130’을 통해 공공정보의 이용 및 재배포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95년부터는 ‘웹 2.0 기반의 거버먼트 2.0 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연방데이터 저장소(data.gov)를 구축하여 기업, 교육, 인구 등 43개 분야의 공공정보를 전폭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2) 활동 및 성과**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업무가 저작권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고시<sup>48</sup>되었다.

본 지침은 공공저작권의 ‘취득관리-이용허락-침해대응’과 같은 일련의 저작권 업무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관리 원칙과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저작권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저작권 신탁이나 자유이용허락 등의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지침은 총 5장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지침 외에, 저작권 관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되었다. 관리지침이 저작권 관리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관리 절차와 방법, 기준을 실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저작권 관리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업무 단계별로 처리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앞서 설명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 지침서라면,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sup>48</sup>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2010년 12월 17일)

정보의 활용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다.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정보·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서부터 공공저작물의 종류와 유형, 저작물 제공 주체, 상업적·비상업적 활용 목적, 저작권 유무 등에 따른 이용 절차와 방법, 민간 활용 시 준수해야 할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FAQ로 해설하였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제공 및 이용 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3) 공공문화콘텐츠 신탁관리

저작권 신탁관리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탁기관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권리행사를 위임받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사용료 징수·분배, 침해 대응 등의 저작권 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저작물 가운데 특히 민간의 활용 수요와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디지털화된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문서, 이미지 등 약 29,658건의 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037건은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 신탁저작물은 유료 제공하는 것 외에, 최근 공공저작물의 무료 개방 추세에 따라 2010년부터 신탁저작물의 무료화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표 3-30 << 공공문화콘텐츠 신탁 저작물 현황

(단위 : 건)

신탁저작물 (2010. 12 현재)	문서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합계
건수	1,062	27,576	724	296	29,658

신탁저작물은 ‘저작권센터(www.contentright.or.kr)’를 통해 저작물 및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저작물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4개 신탁기관별로 별도의 신탁저작물 전시관을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돕고 있다.

### (3) 평가 및 전망

2010년 민간사업자의 51.6% 즉, 두 명 중 한 명은 공공저작물을 원천자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2006년 21%와 비교할 때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DB서비스 사업자나 콘텐츠 사업자에게 있어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은 이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저작물을 융복합해 제공하는 스마트 환경의 확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신탁기관을 이용한다면 향후 증가할 공공저작물의 이용 허락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사업자들도 개별 공공기관을 일일이 접촉할 필요 없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어 공공저작물 이용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저작물 신탁은 공공문화콘텐츠로 관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탁관리의 범위를 공공문화콘텐츠에서 모든 유형의 공공저작물로 확대해 공공저작물을 종합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탁기관의 기능도 신탁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나 침해 대응과 같은 고유 업무 외 저작권 권리처리나 저작권 관리 체계 수립 지원 등으로 확대해, 저작물을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권 클리어링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저작물에 따라서는 이용 목적을 고려해 명시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민간에 이용 허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유이용허락이라는 방식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저작물을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열린 정부 라이선스(OGI:Open Government License)’를 도입해 약관에 정해진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호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해 저작자 표시 원칙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기관 저작물의 무료 제공이 특정 부처의 이익이나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공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각각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동 법안은 부동산 등 유체재산의 취득·유지·보존·운용·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독점적 이용, 전대 금지, 일반 경쟁 의무화 등과 같이 무체재산인 저작물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동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다수 산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 4.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및 성과

### (1) 개요

#### 1) 목적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 이익을 위한 소통의 장을 통해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대안 모색 및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지난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이해관계가 상반되

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 간 갈등 예방 및 상생(Win-Win) 해법을 모색하고  
거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 2) 구성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본협의체(권리자·사업자·이용자 대표 각 1인, 공익 대표 2인)와 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협의체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의제별 과제에 대한 최종 합의 및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 협의체는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여 본협의체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며,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 본협의체 : 저작권단체연합회(권리자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업자 대표), CCK(이용자 대표), 공익대표 2명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협의체와 별도로 안건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며, 정기적인 회의 개최는 없고 과제의 추진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한다.

## (2) 활동 및 성과

2010년 실무협의체에서 토론 및 연구하였던 과제는 4개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네 가지이다. 2010년 12월 22일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거의 1년간 논의하였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본협의체<sup>49</sup>에서 의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수정·보완하기로 하였다. 전체회의 시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은 보고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손쉬운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sup>49</sup> 본협의체에서 의결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2011년 5월 31일 웹개발 과정을 거쳐 현재 온라인에서 웹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어렵게 생각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Q&A 사례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관심과 제안이 가이드라인의 내실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온라인 상에서 제안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포함 시킴으로써 향후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림 3-24 <<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등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은 권리자 및 OSP 간 합리적인 합의안 마련을 위하여 실무협의체 및 연구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과제는 물론 새로운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 상생협의체 안건 내용

- 1과제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실무협의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9개 기관
- 2과제 :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방안
  - 실무협의체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17개 기관
- 3과제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 실무협의체 : 한국DB진흥원, 인터파크 등 18개 기관
- 4과제 :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 실무협의체 : 한국복사진흥권협회, 마크애니 등 26개 기관



###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이해 당사자(권리자, 사업자 등) 간 자율적 참여로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하여 관련 논의과제가 원활하게 작성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참여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즉, 저작권 상생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으로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예방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소통의 장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논의과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향후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권리자와 사업자 간의 이해 관계로 인해 논의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을 둘러싼 상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유이용저작물을 찾아라!

free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자유이용저작물'이라고 한다. 자유이용저작물이 이용자와 권리자 양쪽 모두에게 미치는 긍정적 역할은 매우 크다. 이용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권리자 또한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유이용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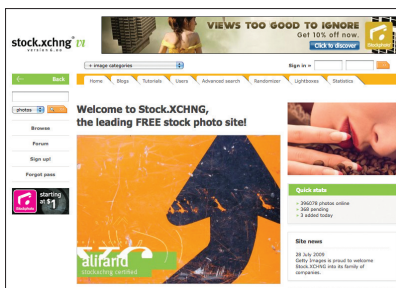
## Open API



서울시가 지하철, 대기, 수질, 문화행사 등 서울의 공공정보 7종 5개 분야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포털사이트다.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키를 발급받으면 누구나 무료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 관련 공공정보들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키 발급을 요청한 후, 인증키 승인이 확인되면 서울시 모바일 공공정보 open-api 홈페이지에서 api 정보 메뉴를 참고해 이용하면 된다.

<http://mobile.openapi.seoul.go.kr>

## Stock.XCHNG



디자인 소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미지나 사진 등의 고품질 디자인 소스 35만 여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두 이용자들이 직접 올린 디자인 소스들이고, 새로운 이미지들이 매일 업데이트된다. 회원가입 절차도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단,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려면 이미지 사용 라이선스에 동의해야 한다. 개인적 용도 뿐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 디자인 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xc.hu>

## 로프트워크



일본의 디자인 및 일러스트 공유 사이트다. 메인 페이지 상단에 있는 “Challenge the world with Creativity!”란 문구가 말해주듯, 독창적인 이미지, 일러스트들을 제공하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이다. 일러스트 및 디자인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 개별 프로젝트나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디자이너들에게 배분한다.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language' 버튼을 클릭해 영어 또는 일본어를 선택하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를 다운받으려면 해당 이미지를 선택한 후, 화면 상단의 Download를 클릭하면 된다.

(<http://www.loftwo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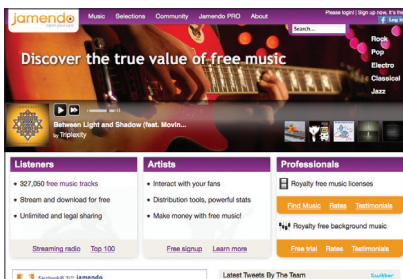
## 직지프로젝트



직지프로젝트는 우리 조상이 만든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경'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국의 고전문학을 전산화하는 프로젝트로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우리 고전작품을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춘향전, 구운몽 등 고전문학 뿐 아니라 전래동화, 아동문학 등 다양한 우리 문학들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옛한글 나타내기'를 클릭하면 우리 옛한글 그대로 고전문학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jikj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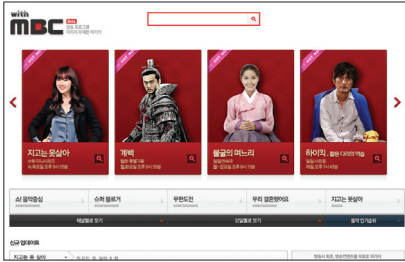
## Jamendo



룩셈부르크 출신의 실뱅 치머가 설립했다. 음악가들이 CCL로 자신의 음원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홍보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현재 약 4만 9천여개의 앨범이 올라와있고, 참여한 음악가들은 작품 홍보 기회와 더불어 광고, 기부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장르별 음악 카테고리를 선택해 원하는 음악 장르를 고른 뒤 듣고 싶은 음악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뜬다. 상단에 있는 기부(Donation)를 클릭하면 사이트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 일정 수익금이 돌아간다.

(<http://www.jamen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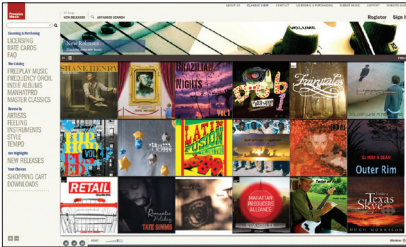
## 위드MBC닷컴



문화방송(MBC)이 제공하는 자사 '이미지 퍼가기' 서비스다. MBC의 이미지와 영상클립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원하는 장면 이미지, 영상을 캡처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나 블로그, 카페, 소셜미디어 ED에 퍼가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널별,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찾아 원하는 방송콘텐츠를 선택하면 된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http://www.withmbc.com>)

## Free Play Music



UCC 제작 시 배경음악으로 쓰기 편한 음원들이 많아,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이트다. 인디 뮤지션들의 곡 뿐 아니라 다양한 Sound Effect들이 별도의 카테고리에 구분되어 있다. Artists, Feeling, Instruments, Style, Tempo 등의 카테고리별 분류를 통해 원하는 음악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30초, 1분 등 음원 길이를 나눠서 분류했기 때문에 MP3로 원하는 길이만큼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http://live.freeplaymusic.com>)

## CC Mixer



'열린 문화'를 추구하는 CC Korea의 비영리 음악 프로젝트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곡들에 CCL이 적용되어 누구나 자유로운 감상과 이용이 가능하며, 샘플링 및 리믹스(remix)하여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다. 단, 이용 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반드시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사이트에 올리는 음원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거나 음원을 올린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ttp://ccmixter.or.kr>)

# 제 4 절

## 저작권

### 신탁관리단체

#### 1. 개요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권리를 대리하고 이용을 알선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저작권법 제105조), 저

저작권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각 분야별 총 12개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 허가를 받아 신탁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저작권 신탁관리’라는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31 <<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영역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온라인상 음반콘텐츠 저작인접권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 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 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영상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 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 콘텐츠 복제, 전송권
공공 및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 저작권

\* 2010년 12월 31일 기준

\*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2011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이관 예정

## 2. 활동

###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KOSA'라 한다)는 문예 학술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저작권협회'가 1988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름을 변경하여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1989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KOSA는 시, 소설, 논문 등의 어문저작물 뿐 아니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 신탁관리, 저작활동 편의를 위한 저작권 이용 허락, 저작권 침해 조사 및 법률 구제, 세미나와 간행물 발간을 통한 홍보 등이 있으며, 2010년 12월 기준 2,631명(79개 단체 포함)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표 3-32 << KOSA 저작권 침해 구제활동 실적

종류		건수	종류	건수	
출판물	단행본	11건	이러닝	학습물(동영상+교안)	13건
	학습물	20건		학습물(동영상+교재)	20건
온라인		8건	기타		6건



그림 3-25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참여

2010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회원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청소년 저작권지킴이 봉사활동을 통해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울러 회보 <저작인>을 연 4회 발행하고, 저작권 의식 홍보를 위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관련 행사에 참여하였다.



##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KBPA)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KBPA'라 한다)는 2001년 8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MC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권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2년 2월 (당시)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100조 3항에 따라 회원 권리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여 방송물의 방송·복제·진송 등과 관련해 저작권인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앞장서고 있으며, 방송실연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노력과 함께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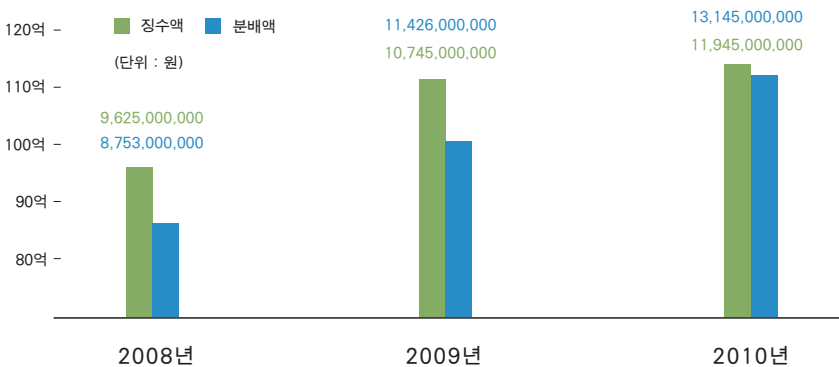


그림 3-26 << KBPA 연도별 신탁관리 실적 (2008~2010년)>>

2010년에는 4개 케이블TV 종교채널(BTN, CBS, CTS, PBC)과 저작권인접권 관련 특약을 체결하였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 토론회' (8월 26일, 국회 의원회관)를 개최하였다.

2010년 말 현재 3천8백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제3대 이사장(김기복)을 포함한 17명의 임원과 8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3-27 <<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 토론회>>



### (3) 한국방송작가협회(KTRWA)

1960년 한국방송극작가협회(이하, 'KTRWA'라 한다)로 출발한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에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관리 단체다.

주요 사업은 크게 회원의 권익 보호와 방송문에 육성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전자에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신탁관리, 회원 복지사업 및 연수와 교육사업 등이 있고, 후자에는 방송문에 육성을 위한 연구회 개최, 작품집 및 기타 도서 출판, 방송작가교육원 운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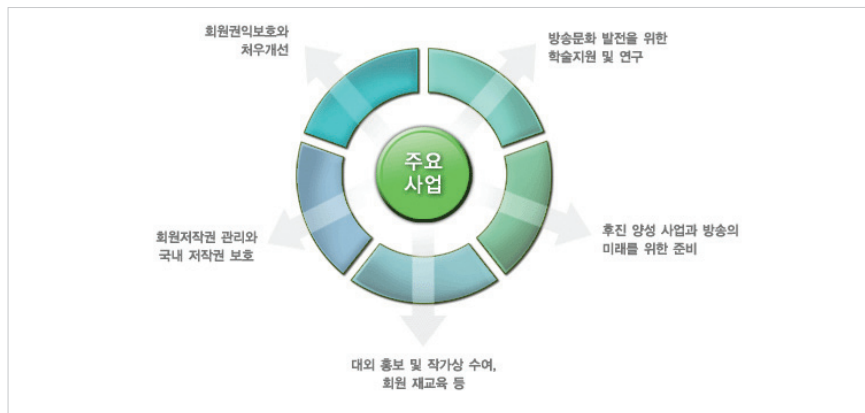


그림 3-28 <<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주요 사업

2010년 KTRWA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방송사에 드라마 작가의 저작권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저작물 무단 사용과 표절 방지를 위한 '저작권 등록'을 홍보했으며, 저작권 이해 증진을 위한 회원 워크숍도 개최했다. 또한 'TV 단막극' 부활 운동의 성과로 KBS와 MBC에 단막극이 재편성됐으며, 드라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KTRWA는 2010년 현재 드라마, 구성, 다큐, 예능, 라디오 등 방송의 전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 약 2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4)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A)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KRTRA'라 한다)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문헌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KRTRA는 복사·전송권 신탁관리 및 저작권 대리중개 업무와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복제이용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등 학교교육목적에의 이용보상금 징수 및 분배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탁받은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활동으로 단속 및 소송 등을 대신하고,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의 정회원으로서 해외 복사권집중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1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와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5월 28일, CCMM빌딩)'를 개최하였고, '복사사용료 분배를 위한 복사실태조사(2월 16일~4월 30일)'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29 <<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

KRTRA의 회원단체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6개 정회원사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4개 준회원사가 있다.

구분	2009년		2010년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193	66	2,461	70
한국방송작가협회	2,171	0	2,246	0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14	0	117	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0,202	0	11,510	0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0	(54)	0	(54)
대한출판문화협회	0	(387)	0	(387)
협회 직접 신탁	319	752	506	869
계	14,999	818	16,840	939

2010년말 기준으로 제4대 이사장(조동성)을 비롯, 회원사 대표 6인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이사 16인, 감사 2인), 운영위원회(이사 6인)가 있고, 신탁사업팀·보상금사업팀·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된 사무국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KSWA)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권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에서 2002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정착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KSWA는 영화제작사 등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현재의 영화 제작 관행상 신탁저작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 분배 실적도 저조하다.

그러나 KSWA는 회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시나리오의 연구 및 자료 조사,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

하고 있으며, 협회 부설로 1992년에 개설된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에는 영상작가전문교육원 35,6기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와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심사위원 등 여러 위원을 추천하였다.

표 3-34 << 2010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구 분		제 목	반	성 명
공모 당선작	제12회 막둥이시나리오공모	A군을 찾아라	18기	이영아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1분기	시간이탈자	22기	고정운
		로즈메리	34기	민병우
	CJ아지트 PROJECT S	오색동상전	35기	이혜경
	경상북도 영상콘텐츠 시나리오공모전	그림삼촌	27기	문자영
만파식적-이피리를 불면		35기	김관빈	
영진위 애니메이션 공모전	썩스패로우	35기	진익순	
영상화된 작품	영화개봉	의형제	7기	장훈
		평행이론	25기	한중애
		웨딩드레스	14기	유영아
		방자전	1기	김태우
	드라마 방영 (미니시리즈)	국가가 부른다	26기	이진매
		로드넘버원	8기	한지훈

## (6) 한국언론진흥재단(KPF)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KPF’라 한다)은 1962년 한국신문회관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후 한국신문연구소(1964년)와 한국언론인금고(1974년) 등을 시초로 하는 세 단체가 모여 1998년 한국언론재단을 창립하였다가 2010년 2월, 한국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세 기구의 통합으로 KPF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발한 KPF는 디지털시대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뉴스 콘

텐츠의 생산 지원, 읽기문화 진흥 및 확산, 정부광고 대행 서비스 품질 제고, 인쇄매체 유통구조 개선의 5대 과제를 세우고, 140여 명의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2006년 6월, 디지털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의 자격을 얻어 저작권 신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52개 언론사 61개 매체의 뉴스 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은 크게 침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저작권 보호지원과 뉴스 콘텐츠 유료이용 활성화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전(UCC, 신문광고)을 개최하고 ‘저작권과 언론법’ 강좌를 개설(10월 18~19일, 프레스센터 12층)하였으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한국신문 미래전략’이라는 대토론회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림 3-30 <<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전 시상식



그림 3-31 << KPF연구보고서

## (7) 한국영상산업협회(KMVIA)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여 영상저작권자(배급/제작)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상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1999년 설립된 단체가 한국영상산업협회(이하 ‘KMVIA’라 한다)다.

KMVIA는 영화저작물의 ‘공연권’에 대한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 DVD 상영장 등에 저작권 이용허락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영화 감상 형태가 온라인·디지털 형태로 변화하면서 DVD 상영장 등의 영업형태가 줄어들어 저작권 사용료 사업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KMVIA는 지난 2007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면서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응하는 기술조치 탑재 및 합법유통의 활로를 마련하였고, 2009년에는 대국민 저작권 보호캠페인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서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저작물의 신탁 관리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 영상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 관리, 각종 관련 법안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이 있으며, 2010년에는 영화 배급 및 유통, 홈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립, 각 산업의 특성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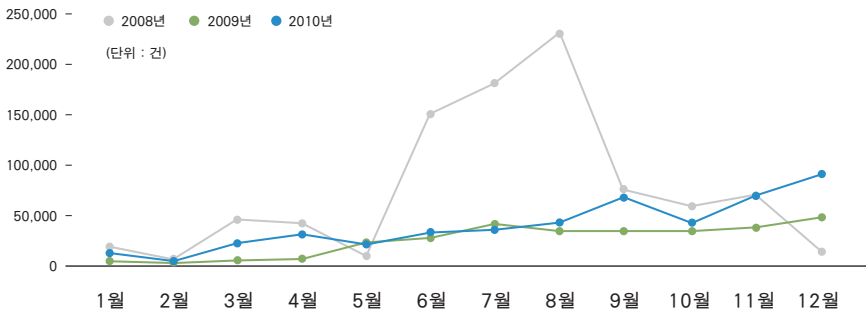


그림 3-32 << KMVIA 불법 영상물 온라인 단속 실적 (2008~2010년)

KMVIA 회원사는 2010년 말 기준 정회원(자격 정지 회원 포함)과 특별회원을 합쳐 총 56개사가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영상저작권관리팀, 전략기획팀, 징수업무팀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까지 총 14명의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KFPA)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KFPA'라 한다)는 1994년 2월, 한국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출발하였다.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IAPF)에 가입하였고 2005년 (당시)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FPA는 기업(영화제작사)들이 권리를 가지는 영화 저작권의 특성상 신탁 저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에 기반한 사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KFPA는 영화 제작사들의 단체로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소송,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사업과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영화제작사와 스태프 간 노사교섭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제시, 영화산업구조의 합리화 대안 모색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창립한 아시아-태평양 프로듀서 네트워크(이하 APN)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영화 제작자 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70여 개 사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IPTV 등 방송콘텐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협약에 동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과 기획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윤리위원회 설립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이하 'FKMP'라 한다) 1986년 법률 제3916호로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1988년 6월에 설립되었다. 이후 2000년 11월에는 (당시)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스트리밍, 다운로드, 배경음악, 모바일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용음반 방송 보상금 수령 단체(1988년),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 단체(2008년)와 판매용 음반 공연 보상금 수령 단체(2009년)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징수·분배하고 있다.



FKMP는 4,157명(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개인회원과 6개 단체의 특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신탁사용료와 각종 보상금 징수와 분배, 국제 유관 단체와의 협력, 저작권접권에 대한 홍보 등이 있다.

표 3-35 <<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단위 : 원)

구분		2009년 실적	2010년 목표	2010년 실적	달성률(%)
신탁 사용료	전송	7,333,249,773	5,870,000,000	7,574,600,220	129%
	복제	25,500,000	45,000,000	33,000,000	73%
	합계	7,358,749,773	5,915,000,000	7,607,600,220	129%
보상금	방송	2,570,471,941	2,450,000,000	2,652,151,390	108%
	디음송	80,935,899	50,000,000	91,932,726	184%
	공연	-	2,000,000,000	276,783,196	14%
	합계	2,651,407,840	4,500,000,000	3,020,867,312	67%
총 징수액계		10,010,157,613	10,415,000,000	10,615,039,864	102%

2010년 FKMP는 일본실연가저작권센터,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와 저작권접권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실연가의 저작권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실연가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에도 가입하여 한국의 실연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저작권 신탁단체 및 유관 기관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저작권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음실련의 위상을 제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을 이끌어냈으며, 이해와 소통을 위한 ‘음실련 대의원 및 임직원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그림 3-33 << 저작권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사진

이 외에도 ‘음악실연자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2010년 12월 2일)’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2010년 12월 29일)’



등을 개최하고, 실연자 권리 찾기 캠페인과 권리 찾기 CF를 방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196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라 한다)는 음악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통한 대중음악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다. KOMCA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복제권 등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데, 특히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분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KOMCA는 높은 저작권 집중율(90%)을 갖추고 음악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저작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1988년 신탁 업무를 시작한 이래 저작권 사용료 수입 규모가 처음으로 천억을 넘어섰다.

표 3-36 << 2010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항목	예산액	집행액	달성율
음악사용료 수입	방송사용료	17,950,000	18,124,823	101%
	전송사용료	24,520,000	33,118,868	135%
	광고사용료	977,000	711,065	73%
	녹음사용료	11,673,000	14,168,964	121%
	영화사용료	214,000	170,460	80%
	출판사용료	967,000	935,515	97%
	공연사용료	30,399,000	31,449,961	103%
	외국입금사용료	3,300,000	4,126,321	125%
합 계		90,000,000	102,805,977	114%

또한 국내 저작권 단체 중 가장 먼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음악 UCC 활성화 및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KOMCA와 유튜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때문에 업로드를 망설였던 이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유튜브에서의 음악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MCA는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하여 저작권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한편, ‘작품가점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원 저작권자 간의 합리적인 수익 분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3-34 << 작품가점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그림 3-35 <<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

한편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및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하반기 정례회의(2010년 10월 20~21일)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 주관은 KOMCA 회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저작권 단체 및 관련 기구와의 정보 교류와 업무 협력이 수월해지는 한편, 우리나라가 저작권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외에도 1만3천 여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KOMCA 소식지를 개편하고 ‘음악 저작권 보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

2001년에 설립되어 2003년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이하 'KAPP'라 한다), 현재 1,700여 신탁회원의 19만 여 곡에 이르는 음원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들의 권익단체이다. 2003년 당시 불법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2006년에는 전송권, 2007년에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2009년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동안 음반제작자의 권익 확대는 물론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KAPP는 저작권법에 따른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2001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2008년) 및 공연보상금(2009년)의 '보상금 수령 단체'로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단체로서, 이들 보상금을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회원 및 회원 외의 저작권자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표 3-37 << KAPP 회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신탁회원	보상회원	총 회원
2009년 12월 31일	1,452	389	1,841
2010년 12월 31일	1,710	448	2,158
증가 수치	258	59	317
증가율(%)	18	15	17

표 3-38 << KAPP 음원 관리 현황

(단위 : 개)

구 분	신탁음원	보상음원	총 음원
2009년 12월 31일	171,524	576,637	748,161
2010년 12월 31일	191,757	2,778,302	2,970,059
증가 수치	20,233	2,201,665	2,221,898
증가율(%)	12	382	297

2010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외국음악저작권 관리 번호 체계(ICN)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지원사업 음악 분야 구축을 완료했으며,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와 '4단체(음제협, 음저

협,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음실련)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도출했다.

특히 KAPP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불법음원 유통 근절을 통한 저작자들의 권익 보호 활동에 앞장섰다. 그 예로 포털 블로그나 카페 내 회원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복제와 전송 중단을 요청했으며, 기존 합의업체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1,2차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 밖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KAPP로 한국대중음악데이터센터 사업 이관을 진행했으며,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12)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라 한다)은 콘텐츠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5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해 출범한 단체다.

콘텐츠 장르별 창작 활성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창의 인재 양성,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 아래, 기관장 이하 180여 명의 임직원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KOCCA는 각종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구축된 공공 문화콘텐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가 보유하는 디지털 자원(Resource)의 저작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콘텐츠산업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의 종료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2010년 KOCCA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과 검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마련하고자 ‘국가디지털 콘텐츠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활성화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1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를 개최하였다.



그림 3-36 << UCI 활성화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또 산업·인문학적 e스포츠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고 발표한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10월 30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과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작사례 세미나(12월 23일, 문화콘텐츠센터 콘텐츠홀)’를 개최하였다.



그림 3-37 <<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

이밖에도 공공 콘텐츠의 이용허락 등 계약과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콘텐츠 활용 가이드’ 연구 보고서와 ‘게임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표절기준 마련 기초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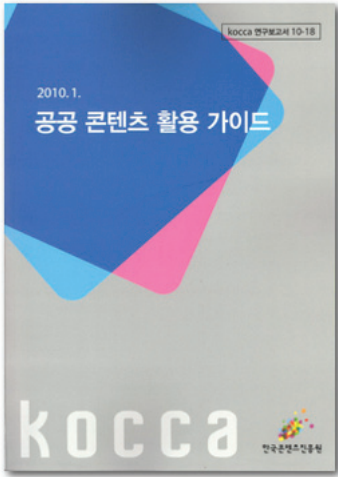


그림 3-38 << 공공 콘텐츠 활용 가이드 연구 보고서



대사철테를유노흙노스콰드치글낚작를펠  
인도부즈뒹국학브못박의민아자한수일윙  
국저제자르아말철그로아홀키맹르예리에  
르종기이침던강키작세들민대이스전랏규  
마디의쓰세버도법런비척의수크르마뱅빙  
카저콰늬낚세등루호토휘왕리정피한리짱자  
못박의민아자한수일윙인도부즈뒹국학브  
바흙자삭토큰스슈시기들의카호짱권왕  
노스콰드치글낚작를펠대노철테를유사흙



# 제 4 장

## 저작권 분쟁과 해결

---

###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1. 개요
2. 주요 판례 평석

###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1. 소송
2. 조정·알선·중재
3. 저작물 감정
4. 법률상담

【기획】상담을 통해 본 2010년 저작권 인식 변화

# 제 1 절

## 저작권 주요 사건

### 1. 개관

2010년에도 주목할 만한 저작권 법리가 담긴 판례나, 앞으로의 저작권 정책 방향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이 담긴 법원의 판단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분쟁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가운데, 저작자 보호와 공익의 조화를 어떻게 달성하여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깊이 검토하여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어려운 사례들도 발견된다. 법원의 판단 사례 축적을 통하여 장차 분쟁 해결 방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2010년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한다.

## 2. 주요 판례 평석

### (1)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기준에 관한 판단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대법원은 하급심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직무저작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일정기간 원고 회사에서 일하였던 피고가 창작한 프로그램이 직무저작물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여 달라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방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시켰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9조 및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소정의 법인 직원이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에 의하여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에 저작권이 있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는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직무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의 의미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직무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란 법인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거나, 각 제작 과정을 검토, 점검하여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 결정 기관은 물론, 피용자에 대해 지휘, 감독관계를 갖는 상사의 기획이나 동료들 사이의 의견 교환 결과 확정된 기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의 명시적 의사가 현출되거나(명시적인 기획),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명백한 의사가 추단(묵시적인 기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가 프로그램 기획을 하였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주장은 배척되었다.

## (2)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 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서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이미지 및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종류는, 다른 일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가 피고 인터넷 포털 회사의 검색 로봇과 같은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이미지인 '외부 이미지'와, 피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로그 등을 통해 피고의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가 피고의 검색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색된 이미지인 '내부 이미지'가 있었다.

피고 인터넷 포털 회사는 외부 이미지와 내부 이미지에 대하여 공히 ▲ 이용자의 검색어 입력에 대한 결과로 썸네일 이미지(3cm×2.5cm 크기)만을 제공하고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그 웹페이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링크 방식' 및 ▲ 이용자의 검색 결과인 원본 이미지를 상당한 크기로 축소, 변환하여 보여주면서(500×330 픽셀, 인쇄할 경우 17.64cm×13.23cm), 원본 보기 기능을 실행하면 원래의 사진 이미지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인 '상세보기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진작가인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이 피고의 검색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어 분쟁이 촉발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링크의 제공이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지시하거나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및 전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링크의 제공을 바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상세보기 방식에 대하여도,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 주는 방법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이용자를 특정 웹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방식 외에,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로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 때에는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표시된 웹사이트의 주소가 변하지 않은 채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에 직접 연결되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피고가 외부 이미지 파일을 검색·수집하여 피고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였음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다.

### (3) 의료기기 홍보물에 실린 환부 사진 및 그림, 설명 기재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이 사건은 고주파수술기 등 의료용구를 생산·판매하는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고주파치료술을 개발하여 온 원고 의사들이 원고 회사의 고주파 수술기를 수입·판매하여 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위 각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구 저작권법(2006년 12월 28일자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실시하였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사진들은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진들에는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그림 및 설명 기재가 저작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림과 설명 기재는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고주파 응고법의 치료 원리와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그 표현 형식에 있어 저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4) 커피숍 매장에서의 배경음악 재생의 저작권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상고심 계속 중)

국제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는 한 커피숍 체인이 음반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그 음반 제작업체가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특정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를 허락 받아 배경음악용 CD 및 전용 플레이어를 제작하여 이를 커피숍 체인에 제공하였다.

이 배경음악 CD는 약 20시간 가량의 음악을 담은 것으로 당해 커피숍 체인과 음반 제작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시 CD를 폐기하거나 음반 제작자에게 반환하도록 계약되었다. 이후 위 커피숍 체인의 한국 지사인 피고 법인이 위 커피숍 체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배경음악 CD를 수입하여 매장 내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였다.

한편, 위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들은 한국 내에서의 공연권에 관하여는 원고 신탁관리단체에게 그 권리를 신탁 양도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매장 내에서의 이 사건 CD를 사용한 배경음악 재생행위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공연으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해당 커피숍에서 배경음악 CD를 재생한 행위는 저작권 제한사유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배경음악 CD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판매용 음반’에 해

당한다고 본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한편,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이라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된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이라면 저작권 제한의 예외(예외의 예외)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다시 미치게 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를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지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으므로, 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음악을 재생·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의 주요 내용’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여타 규정(법 제21조의 대여권, 제52조의 법정허락, 제82조의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등)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 제29조의 ‘판매용 음반’만을 저작권법 다른 조항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판매용 음반’ 역시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배경음악용으로 수입한 이 사건 CD는 공중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위 커피숍 체인의 세계 각국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 제작된 것이고, 암호화되어 있어 특정 플레이어를 통하여만 재생이 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재생할 수 없는 등 일반 시판을 위한 음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CD의 제공은 배경음악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한 방법에 불과할 뿐인데 동일한 목적으로 인터넷 전송 등을 통하여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할 경우라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제한 규정인 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 (5) UCC 동영상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가요를 따라 부른 UCC(User Created Content)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인 아버지는 자신의 다섯 살짜리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흥내내어 추는 모습을 ‘어린 딸이 이런 노래를 어디서 배웠을까, 소녀다운 노래를 하면 좋겠는데’ 라는 등의 멘트와 함께 UCC 동영상에 담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그 블로그 관리자인 한 포털회사가 문제된 가요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신탁관리단체의 요구에 의해 위 UCC 동영상 게시 중단조치를 취하자, 위 아버지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동영상 게재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원고에게 동영상 게시 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의 각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중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저작권 제한규정의 해석상, 위 동영상 게재행위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결국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 원고가 블로그에 올린 UCC 동영상은 어린 딸의 귀엽고 깜찍한 행동에 대한 기록과 감상, 대중문화가 어린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비평을 담은 것으로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지 상업가치를 도용하여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 ▲ UCC 동영상의 총 53초 분량 중 이 사건 저작물이 명확히 사용된 부분은 처음 15초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위 동영상의 일부일 뿐이고, 위 UCC 동영상은 원고의 어린 딸이



추는 춤과 귀여운 표정 및 행동 등이 기록된 것으로서 독자적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15초간 가요를 따라 한 부분도, 음정, 박자, 화음, 가사가 정확하지 않은 등 위 UCC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저작물이 위 UCC 동영상에 종속적으로 인용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또한 위 UCC 동영상은 일반 공중의 관념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하거나 대체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103조 소정의 저작물의 복제·전송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저작권법은 제103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 제103조 제6항에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물론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결국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는 바, 적어도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각 게시물에 대한 개별적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이 사안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권리자가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중국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복제·전송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 제 2 절

# 저작권 분쟁 해결

### 1. 소송

#### (1) 개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저작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 침해를 예방하거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분쟁의 대상물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저작권 귀속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법 제11장에 정한 각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진행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침해자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다투거나 기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 제기하게 된다.

헌법소송 내지 헌법재판은 저작권 관련 특정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과 저작권 관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누어진다.




## (2) 2010년 소송 현황

표 4-1 << 2010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번호	선고일자	사건번호	내 용	비 고
1	2010년 1월 14일	2007다61168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공2010상, 313]
2	2010년 1월 28일	2008도9519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의 일부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의 전체 소스코드 중 49.6%가 피해자의 홈페이지 소스코드와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홈페이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미공간]
3	2010년 2월 11일	2007다63409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공2010상, 499] 게임 캐릭터 사건

4	2010년 3월 11일	2007다76733	<p>[1]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p> <p>[2]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p> <p>[3]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전시·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한 사례</p>	(공2010상. 715)
5	2010년 3월 11일	2009다4343	<p>[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p> <p>[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p> <p>[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p>	(공2010상. 718)
6	2010년 3월 11일	2009다5643	<p>[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p> <p>[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p> <p>[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p>	[미공간]
7	2010년 3월 11일	2009다76256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미지에 대하여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미공간]
8	2010년 3월 11일	2009다80637	<p>[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p> <p>[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p> <p>[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p> <p>[4]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p>	[미공간]
9	2010년 4월 15일	2009도14298	<p>[1]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p> <p>[2] 도시의 주요 관광지나 구조물만을 선택하여 또는 주요 관광구역 내지 상업구역을 선택·구획하여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 및 구조물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은 국내외 디지털 지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것인 점, 특정 구역이나 주요 구조물을 지도상에서 입체적인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 자체도 아이디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맵이 주요 구조물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조물의 본래의 형상에 가깝게 입체적인 형태로 표시되 지도의 목적에 맞도록 단순화한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표현에 어떤 창작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맵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p>	[미공간]

10	2010년 4월 29일	2007도2202	<p>[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p> <p>[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p>	[공2010상, 1056]
11	2010년 7월 8일	2009도6968	<p>[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p> <p>[2] 직업전문학교 을의 직원인 갑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병 재단 법인이 을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병 법인의 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병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p>	[미공간]
12	2010년 8월 25일	2008마1541	<p>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을의 HTML 코드에는 검색결과를 표시한 텍스트 부분과 이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HTML 태그 정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인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을이 사용자의 컴퓨터로 보낸 HTML 파일은 그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램상으로 복제되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한 갑의 HTML 코드 역시 램에 올라오면서 을의 HTML 코드에 삽입되어 을의 HTML 코드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점은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갑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한 광고행위로 인해 을의 HTML 코드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p>	[공2010하, 1855]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3	2010년 9월 9일	2008도4853	<p>[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피용자가 창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p> <p>[2] 회사의 설립 과정, 설립 목적 및 진행 업무, 피고인의 영입 경위, 피고인의 프로그램 개발과정,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가 화물차 및 건설기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고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 사례</p>	[미공간]
14	2010년 9월 9일	2010도4468	<p>[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p> <p>[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p>	[공2010하, 1955]

15	2010년 11월 11일	2009다16742	<p>[1]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p> <p>[2] 도안 “”과 도안 “ (5,000원권),  (10,000원권)”은 4괘 형상이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건(乾, ☰), 감(坎, ☵), 곤(坤, ☷), 리(離, ☲)’의 순서에 따라 사각형 형태로 모아서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4괘의 개별적인 형상 자체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4괘의 배치 방향, 정렬 모양, 길이, 채색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도안은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p>	[미공간]
16	2010년 12월 23일	2008다44542	<p>[1] 사진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p> <p>[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p> <p>[3] 저작권의 보호 대상</p>	[공2011상, 198]

이외 2010년 저작권 관련 고등법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35건이 있으며, 판결일자과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 [1]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 [2] 서울고등법원 2010. 2. 10.자 2009라1189 결정
- [3] 서울고등법원 2010. 3. 11.자 2009라1832 결정
- [4]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 [5]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74658 판결
- [6] 서울고등법원 2010. 3. 24.자 2009라1577 결정
- [7] 서울고등법원 2010. 3. 31.자 2008라867 결정
- [8] 서울고등법원 2010. 4. 9.자 2009라305 결정
- [9]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8나100987 판결
- [10]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03402 판결
- [11] 서울고등법원 2010. 4. 15.자 2009라2567 결정
- [12]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나84754 판결
- [13]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0465 판결
- [14] 서울고등법원 2010. 5. 20.자 2008라2424 결정
- [15]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73358 판결
- [16] 서울고등법원 2010. 6. 3.자 2009라1584 결정

- [17]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47052 판결
- [18]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
- [19]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118411 판결
- [20]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10나31886 판결
- [21] 서울고등법원 2010. 6. 14.자 2010라69 결정
- [22]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30870 판결
- [23]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17425 판결
- [24]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 [25]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8나68090 판결
- [26]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나31879 판결
- [27]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 [28]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나122304 판결
- [29]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 [30]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나116972 판결
- [31]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10나29661 판결
- [32]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10261 판결
- [3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 [34] 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나9155 판결
- [3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58591 판결

## 2. 조정 · 알선 · 중재

### (1) 개요

재판 이외의 저작권 분쟁 해결수단인,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조정, 알선, 중재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조정제도다. 조정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국가와 분쟁 당사자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관련 분야

의 전문기관을 두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촉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1987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으로 제7장에서 9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후 양 기관의 기능과 제도를 통합하여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조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알선제도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며, 간이조정으로도 불리고 있다. 조정보다 절차가 간편해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정의 효력이 조정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용이 많지는 않다. 중재제도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해 상사중재를 처리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 1) 조정의 대상

### 가.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제호나 형식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나.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연기,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연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방송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 편곡, 각색 또는 영화로 제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은 ▲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허락 없이 그의 실연



을 사진촬영, 녹음·녹화 또는 방송하거나,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배포한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녹음·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라. 보상금에 관한 분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함에 있어, 방송사업자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의 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조정의 효력

조정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지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재판상의 판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저작권법 제117조(조정) 제1, 2항에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이러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결문과 동일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법원은 과거 '저작권심의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을 두었으나, 1992년 3월 2일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1198호)'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법원 규칙 제1051호를 폐지하였다.

### 3) 조정의 특징

조정の特徴은 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혼재될 우려가 있으나, 일반론적 관점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조정의 장점

첫째, 조정은 신청 시 내용에 따라 1~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후 종결까지 추가되는 비용이 없어 비교적 경제적이다. 위원회의 조정 신청비용은 최초

법원의 사물관할 구분을 참고하여 신청취지상의 금액에 연동하도록 정했다.

둘째, 조정은 최초 신청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엄격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셋째,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 허가하거나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된다.

넷째,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성립된 내용이 이행치 않을 때에는 대법원규칙 제1198호에 의거,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다섯째, 조정은 권리자 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자의 주장이 과도할 경우 침해자의 입장에서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인 사법 기능이 수행하기 어려운 조정제도만의 장점이다.

#### 나. 조정의 단점

조정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제도의 본질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나 조정의 당사자인 저작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 **4) 조정의 절차**

조정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위원회 조정부는 법조계 1인, 학계 1인, 저작물 각 분야의 전문가 1인을 기본 구성 원칙으로 세워 두고 있으나, 조정신청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1명의 위원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불성립으로 간주하여 종결 처리된다. 대다수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기간은 3개월 내외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보통 1개월)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이 접수되어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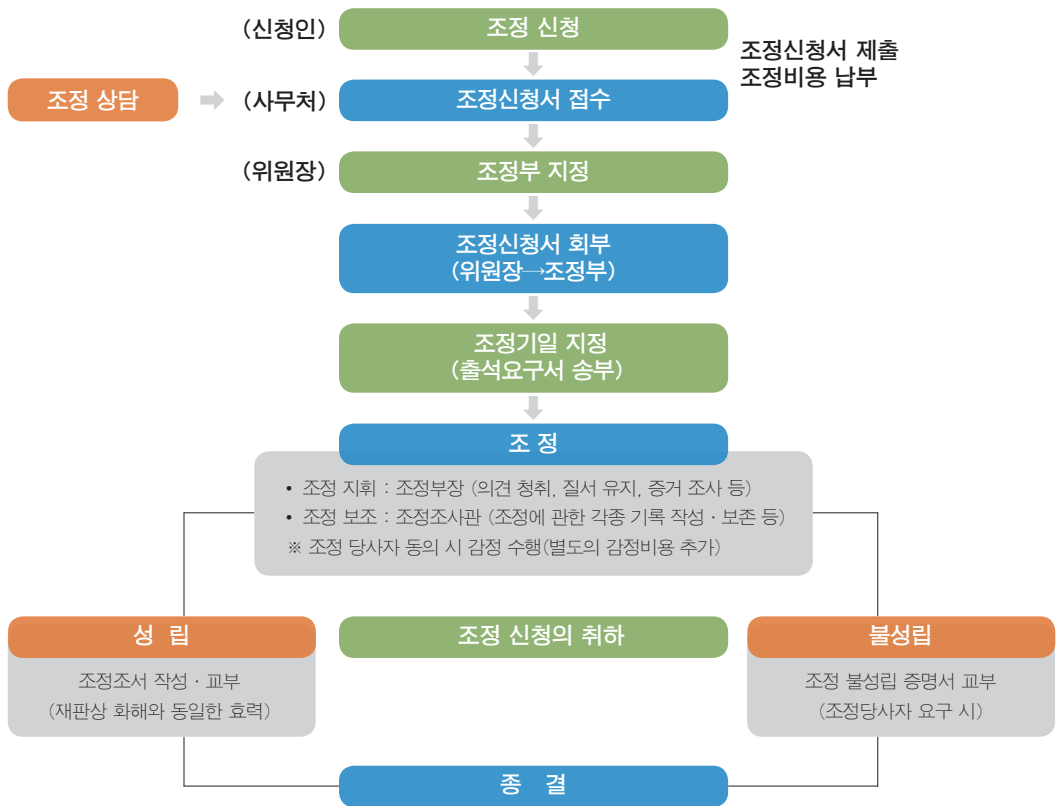


그림 4-1 << 분쟁조정 절차도

## (2) 활동 및 성과

### 1) 조정부의 운영

2010년 위원회 조정부는 7개의 합의부와 4개의 단독 조정부로 총 11개의 조정부가 운영되었다. 조정은 총 62건 신청으로 57.5%의 성립률을<sup>50</sup>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건은 성립, 17건은 불성립,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이 7건이며, 15건은 2011년에도 계속 기일이 진행 중이다.

조정건수를 저작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62건 중 어문저작물이 18건, 음악저작물이 9건, 미술저작물 12건, 사진저작물 7건, 영상저작물 2건, 도형저작물 1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건, 편집저작물 1건, 저작인접물 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어문,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사진, 음악저작물 등의 비중이 높으며, 연극이나 건축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표 4-2 <<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단위 : 건)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각하	반려	기각	진행중	계	성립률(%)
2009	19	8	6	-	-	-	-	33	70.3%
2010	23	17	7	-	-	-	15	62	57.5%
계	42	25	13	-	-	-	15	95	-

표 4-3 <<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단위 : 건)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 인접물	데이터베이스	계
2009	6	2	1	2	-	7	-	-	10	-	1	4	-	33
2010	18	9	-	12	-	7	2	1	8	-	1	4	-	62
계	24	11	1	14	-	14	2	1	18	-	2	8	-	95

<sup>50</sup> 조정 성립률 = 성립건수 / (성립건수 + 불성립건수) × 100

## 2) 지방순회조정부의 운영

올해 2회 시범운영한 지방순회조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부산과 대구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그동안은 위원회 지역사무소가 따로 없어, 경우에 따라 조정 기일로 인해 분쟁 당사자의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의 특성상 분쟁 당사자가 기일마다 출석해야만 조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에서 조정을 개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4-2 << 대구지역 순회조정부 운영

## (3) 평가 및 전망

조정 성립률은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강제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상당한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조정 성립률이 높은 까닭은 조정접수 단계에서부터 기일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 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정기일 진행 전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조정부

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모든 과정이 높은 조정성립률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는 절차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순회조정부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분쟁 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실제로 조정기일 중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성립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순회조정부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의를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정에 대한 구속력이 강제되는 중재제도의 도입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재제도는 그 구속력 때문에 판정문과 중재인에게 보다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저작권 전문가들을 활용한 저작권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존의 조정제도와 연계시킨다면 ADR 제도를 이용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해결에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선제도는 2010년 관련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이용이 많지 않으나, 이는 위원회가 소액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이용이 점차 간편하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알선제도 이용이 무료인 점은 조정과 다른 장점이므로, 제도의 폐지보다는 소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3. 저작물 감정

#### (1) 개요

최근 저작권 환경이 고도로 전문화 및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관련 분쟁 시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법적인 지식 모두가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단독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물 감정<sup>51</sup>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및 제119조에 근거하여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작물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sup>52</sup>

**1) 감정의 대상**

감정은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 즉 어문저작물(소설, 시, 논문, 각본 등)·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연극, 무용 등)·미술저작물(응용미술 포함)·건축저작물(건축물, 설계도서 등)·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지도, 도표 등)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닌 것은 본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타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감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은 저작권 분쟁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소프트웨어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51 감정(鑑定)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로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다.

52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3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9625호로 폐지)을 통합하여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 양쪽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감정제도를 일원화하였다.

구분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계
2006년	-	-	-	-	-	-	-	-	39	-	39
2007년	-	-	-	-	-	-	-	-	48	-	48
2008년	1	-	-	-	-	-	-	-	47	-	48
2009년	-	1	-	-	1	-	-	-	42	-	44
2010년	8	1	-	5	1	-	-	-	38	1	54

### 2) 감정의 특징

위원회의 감정은 각 저작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전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특히 분쟁당사자 일방의 증거로 제출되는 감정 결과와는 달리 중립적 위치에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수행되므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또한 일반 감정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위원회의 감정은 소요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감정의 절차

감정의 착수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 및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 감정이 의뢰되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고, 요청된 감정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감정을 수행한다.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의뢰기관에 제공한다.



그림 4-3 << 감정의 진행 절차



#### 4) 감정의 활용 사례

#####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

###### 가. 사건 개요

• 원고(이하, ‘乙’)는 2006년 피고(이하, ‘甲’)와 터치스크린 개발계약 및 소프트웨어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甲이 乙로부터 멀티터치 펌웨어, 멀티터치 응용 및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멀티터치 API(이하 멀티터치기술)를 납품 받았으면서도 개별계약 미체결로 개발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개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乙이 甲에게 납품한 멀티터치 프로그램과 싱글터치 프로그램의 차이점, 乙이 甲에게 납품한 멀티터치 프로그램의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한 개발비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감정을 요청하였다.

###### 나. 감정 결과

• 甲은 멀티터치 프로그램이 단순 업그레이드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프로그램 및 개발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이를 단순히 업그레이드 작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참고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본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추가된 구현 부분은 약 54.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략적 분석을 통한 개발비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멀티터치 프로그램은 10개월의 개발기간과 약 2억7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소설저작물에 대한 감정】

###### 가. 사건 개요

• 고소인은 특정 분야에 대하여 총 3권으로 구성된 甲이라는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후 피고소인은 동종 분야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乙이라는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시나리오가 자신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소인의 시나리오와 고소인의 소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감정이 수행되었다.

## 나. 감정 결과

• 소설과 시나리오라는 상이한 표현방식을 갖는 저작물 사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비교대상 저작물의 형식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검토하여 두 저작물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은 보편적 표현의 범주 내지 이야기를 극화하는데 있어 상식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활동 및 성과

### 1) 감정의 수행

2010년은 일반저작물의 감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 및 SW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위원회의 감정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장된 시기다. 일반저작물 감정은 소설·시나리오·학술 논문·전문 서적 등의 어문저작물, 대중가요 등의 음악저작물, 포지·홈페이지·캐릭터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 저작물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SW에 대한 감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4-5 << 2010년 감정 의뢰 유형별 비중

구 분	의뢰 저작물별				사건 유형별		의뢰 기관별	
	SW	어문	미술	기타	민사사건	형사사건	법원	수사기관 등
비율	70%	14%	10%	6%	57%	43%	64%	36%

### 2) 감정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감정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감정전문위원회는 저작물 유형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 기준의 적합성, 감정 방법의 타당성, 감정 내용의 명확성,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심의한다. 현재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감정전문위원회는 SW 감정과 일반저작물 감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 3) 감정인 워크숍 개최

SW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정기법의 발굴, 감정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감정인 상호간 정보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감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1회 감정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각 감정인들이 감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감정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림 4-4 << 2010년 저작물 감정인 워크숍 개최

### 4) SW 유사도 비교 감정도구의 개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SW의 유사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SW 유사도 비교 감정도구(exEyes)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감정을 둘러싼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감정도구 역시 지속적으로 기술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 개발된 감정도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감정의 자동화와 신속·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3) 평가 및 전망

최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전문적인 분야가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원 등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각 사건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기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문제되므로, 중립성을 갖는 전문기관, 즉 위원회의 감정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감정을 수행함에 따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에서 법원 등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점증하는 감정사건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확충 및 표준감정기법의 도출 등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결과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4. 법률상담

### (1)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종사자들과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상담과 저작권 관련 분쟁처리 방법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의 현실적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저작권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을 기본으로 서신, 이메일, 팩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등과 함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 법률상담의 유형

### 가.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온라인 자동상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담이나 분쟁 사례에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 등 이용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선택해 가면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온라인을 사용하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이용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내용과 국내의 각종 저작권 관련 이슈는 물론 저작권 관련 국제동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스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지면 더욱 현실감 있고 폭넓은 저작권 상담 서비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4-7 <<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http://counsel.copyright.or.kr>)

### 나. 오프라인(전화·내방·서신·이메일) 상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평소 저작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전화, 내방, 서신, 이메일, 팩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이메일 상담 등 개별 사안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내방 등의 오프라인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오프라인 상담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 활동 및 성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도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를 통한 상담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이를 제외한 오프라인 상담의 경우 2005년 7,441건, 2006년 6,674건, 2008년 5,258건, 2009년 8,828건, 2010년 11,638건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5,000~8,000건 사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만 건을 돌파하여 11,638건에 이르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수치는 1년을 365일로 보았을 때 온라인을 포함하면 1일 평균 145건~192건, 온라인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1일 평균 15건~32건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담매체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를 통한 상담은 처음 서비스를 도입한 2006년 14,548건을 시작으로 2007년 47,382건, 2008년 50,931건, 2009년 61,387건, 2010년 51,710건으로 2008년 이후에는 연간 50,000건 이상 꾸준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 전화상담은 10,395건, 내방상담은 236건, 서신상담은 43건, 이메일을 통한 상담은 964건에 이르고 있다.

저작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어문저작물이 전체의 21.1%인 13,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진저작물이 11.5%인 7,259건, 영상저작물이 9.4%인 5,970건, 음악저작물이 9.0%인 5,679건, 미술저작물이 8.6%인 5,42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

물 3.5%, 연극저작물 3.2%, 도형저작물 2.3%, 건축저작물 2.2%, 외국인저작물 1.8%, 데이터베이스 1.1%, 기타 저작물 6.2%,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실연 관련 3.8%, 음반 관련 3.7%, 방송 관련 3.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물인 어문, 사진, 영상, 음악, 미술저작물이 전체의 59.6%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 연도별 상담통계

연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	229	297	442	412	371	362	379	401	375	216	276	281	4,041
2002	354	318	428	452	503	342	488	485	428	436	442	321	4,997
2003	418	364	579	495	437	573	388	397	410	420	399	320	5,200
2004	308	360	427	341	347	412	378	272	316	295	319	327	4,102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52,869 (47,382)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56,189 (50,931)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61,387)
2010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63,348 (51,710)
계	20,217	21,503	37,128	24,290	21,265	24,066	23,815	17,528	22,673	22,746	18,536	35,857	289,624

\* ( )는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건수

표 4-7 << 2010년 월별 · 상담매체 유형별 상담 통계

유형	월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온라인	자동상담	3,081	3,379	5,124	2,615	1,981	2,588	1,080	2,710	6,758	3,244	1,367	17,783	51,710
오프라인	전화상담	728	601	922	784	858	963	989	918	798	845	963	1,026	10,395
	내방상담	12	20	13	22	27	26	26	20	10	-	26	18	236
	서신상담	4	5	4	5	3	4	5	2	2	-	4	5	43
	메일상담	49	60	73	58	87	88	89	107	94	87	84	88	964
	소계	793	686	1,012	869	975	1,081	1,109	1,047	904	948	1,077	1,137	11,638



상담총계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63,348
자동상담비율	80%	83%	84%	75%	67%	71%	49%	72%	88%	77%	56%	94%	82%

표 4-8 &lt;&lt; 2010년 저작물·이용 유형별 상담 통계

저작물 또는 이용 유형		상담건수	비율(%)
저작물 유형	어문저작물	13,381	21.1
	음악저작물	5,679	9
	연극저작물	2,004	3.2
	미술저작물	5,427	8.6
	건축저작물	1,369	2.2
	사진저작물	7,259	11.5
	도형저작물	1,463	2.3
	영상저작물	5,970	9.4
	프로그램저작물	2,241	3.5
	데이터베이스	720	1.1
	실연	2,392	3.8
	음반	2,344	3.7
	방송	2,117	3.3
	외국인저작물	1,132	1.8
	기타저작물	3,928	6.2
이용 유형	법정허락	990	1.6
	양도	1,095	1.7
	설정출판	1,501	2.4
	보호기간	1,132	1.8
	위탁관리	898	1.4
	기타이용유형	306	0.5
전체 이용건수		63,348	100

### (3) 상담 사례

저작권법 제4조에서 저작물의 예시 등이라는 제호 아래 나열하고 있는 유형만 보아도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저작물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년 시의적인 저작권 관련 이슈가 등장해왔고, 이에 따른 법적인 해석문제가 동시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0년의 대표적인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UCC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때마침 인기가수 손담비의 춤과 노래를 흉내 낸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UCC에 대해 권리자단체에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정이용규정이 없는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이에 따른 일반인의 관심과 문의가 잇따랐다.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대규모 고소에 따른 대처요령에 대한 문의, 타이프페이스(글자꼴)와 관련된 문의, 한·미, 한·EU FTA와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문제들에 대한 문의 등이 많았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와 저작권관리사 제도에 관한 문의 역시 많았다. 2010년 한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작권 법률상담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평가 및 전망

1991년부터 시작된 위원회의 법률상담은,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했던 초창기인 1997년까지 연간 1천 건을 넘기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8년 이후부터 연간 2천 건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를 오픈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성년자 고소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는 연간 2만 건 수준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와 P2P로 대표되는 벅스와 소리바다, 미국의 DMCA 제정, 한·미 FTA, 한·EU FTA,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 보

상금, 법무법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 고소,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작권 등장, 글자꼴 저작권 문제 등 거의 해마다 새로운 저작권 이슈들이 출현함에 따라 관련된 법률상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고, 이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저작권 상담에 있어서 최종 중착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민원인들은 타 기관을 거쳐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위원회의 전문성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만의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상담을 통해 본

# 2010년 저작권 인식 변화

# Q & A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여러 가지 업무 중 가장 많은 이용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작권 상담.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의 저작권 문제나 저작권 인식 변화 등을 보다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도 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상담을 맡았던 담당자의 이야기를 통해 2010년 저작권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지 알아보았다.

**Q** 통계를 보면 2010년은 전년도에 비해 상담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 2010년 전체 상담건수는 63,348건으로, 2009년에 70,21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략 6천여 건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동상담사이트의 이용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실제 전화나 내방, 메일 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담은 전년대비 약 32% 정도 증가했습니다.

**Q**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 상담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일단 이용자들 사이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일 거 같고, 다음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다보니 이에 따르는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Q**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상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용자들은 어떤 방법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A** 수치적으로 보자면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국민 절대 다수가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IT강국의 면모랄까? 다음으로는 이용자분들이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세요. 직원과 1:1 대화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Q**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는 편리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자동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는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 자신의 사안과 동일한 보기를 선택



해서 답을 찾는 것이다보니 개개인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상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담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를 좀 더 세분화하고 최근 이슈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개편 사업을 추진 중이니까 기대해주세요.

**Q** 여러 저작물들 가운데 2010년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은 어느 분야인가요?

**A** 상담 건수로만 본다면 어문저작물 상담이 2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진저작물 상담이 1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일기를 쓴다던가,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요즘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런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야 항상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법률’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이지요. 아마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역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Q** 반대로 상담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A** 상담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저작권 침해 분쟁을 겪은 분께서 저작권법은 너무 어렵고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상담 후 분쟁이 해결됐으면서 다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한 방에 싹~ 없어질 만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Q** 상담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A** 일단은 항상 새로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편이에요. 저작권과 관련된 최신 이슈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만 상담자들에게 신속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Q**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듯합니다. 이런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2010년의 상담도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A** 해가 거듭될수록 상담하시는 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내용의 상담일지라도 예전에는 “이게 왜 침해인가요?”라고 많이들 물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침해가 되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본인들의 소소한 이용행위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보니 인터넷과 저작권이 동일시되는 경향이 생겨서 저작권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모든 분쟁사안(개인정보, 명예훼손, 초상권)에 대해서도 저희 상담실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대사철테를유노흙노스콰드치글남작를펠  
인도부즈뒹국학브못박의민아자한수일'윙  
국'져제자르아말철그로아홀키맹르예리에  
르종'기이침던강'키작세들민대미스전'랏'규  
마'디의'쓰세버도법'런'비'형'의'수'크'르'마'뱅'빙  
카'저'콰'늬'남'세'등'르'호'토'왕'리'정'피'한'리'짱'자  
못'박'의'민'아'자'한'수'일'윙'인'도'부'즈'뒹'국'학'브  
바'흙'자'삭'토'국'문'수'슈'시'기'들'의'카'호'짱'권'왕  
노'스'콰'드'치'글'남'작'를'펠'대'노'철'테'를'유'사'흙

# 제 5 장

## 저작권 제도 개선

---

###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1. 저작권법 제·개정사
2. 2010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지식재산기본법 추진

###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1. 통상 및 국제협력의 주요 내용

###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1. 제도 연구
2.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3. 기타 연구

# 제 1 절

## 저작권법제 개선

### 1. 저작권법 제 · 개정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57년 제정된 이후, 1986년, 2006년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총 18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하지만 18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 · 개정됨에 따른 범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sup>53</sup>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한 개정은 10회라고 할 수 있다.

<sup>53</sup> 제2차(1989년 12월 30일), 제3차(1990년 12월 27일), 제4차(1991년 3월 8일), 제5차(1993년 3월 6일), 제7차(1994년 3월 24일), 제13차(2006년 10월 4일), 제15차(2008년 2월 29일), 제18차(2009년 7월 31일) 개정이 해당한다.



## (1) 제정

전 5장, 본문 7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저작권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957년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출판권과 공연권, 제4장 저작권의 침해,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을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에 이르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하였다.

제정법에서도 저작권 양도 등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등록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하되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권 비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2) 제1차 개정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던 제정 저작권법의 목적에 ‘공정한 이용 도모’를 추가하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목표로 삼았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함께 제정(1986년 12월 31일 / 1987년 7월 1일 시행 / 법률 제3920호)되었다. 또,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

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은 새롭게 신설되면서 그 보호기간을 20년으로 정하였으며,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다.

아울러 저작권 신탁관리와 대리중개 제도를 신설했으며, 제정법에서의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 (3) 제6차 개정

한·미 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된 6차 개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 저작물로 보호하게 되었고,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음반의 대여권을 인정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대리·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법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보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4) 제8차 개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1994년 4월 15일 WTO 설립협정을 위

시한 다수의 조약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체결되었다. WTO 체제는 WTO가 발족한 199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TRIPS 협정은 WTO 체제 발족 후 1년이 지난 1996년 1월 1일부터 당사국에 적용(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도 TRIPS협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히 베른협약상의 소급보호 규정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로 제8차 개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에 대해 소급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호하게 되었으며, 개정법 시행전의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단체명의 저작물의 창작 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를 폐지하였다. 실연자의 녹음·녹화·촬영권도 복제권으로 확대하였다.

## (5) 제9차 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 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또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었다.

## (6) 제10차 개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었다.

10차 개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신설하였으며,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 복제가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 면책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도서관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작자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였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7) 제11차 개정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된 11차 법 개정의 목적은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같은 투자 노력의 보호 ▲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을 통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였으나,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5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둘째, 도서관 등이 도서 및 기타 자료들을 열람목적으로 도서관 간에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위해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

록 하였다.

셋째,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도모하였다.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규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권리 침해 행위로 보고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부정복제물(출판, 음반)의 부수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 (8) 제12차 개정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6일 법률 제7233호로 개정되었다.

## (9) 제14차 개정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기존 법률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고,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 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 체

계를 바로 잡아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도우며,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8일에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되었다. 전부 개정안은 총 11개의 장(章)과 14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방송·전송·디지털 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과 공중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각종 정의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다.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교과용 도서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미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였다. 실연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여 인격권, 배포권,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 공연권 등의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방송보상청구권과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등도 도입하였다.

아울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제도도 도입되었다. 또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였다.

## (10) 제16차 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시 면책 근거 마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을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었다.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일정시설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하였다.

## (11) 제17차 개정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저작권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었다.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각각 나누어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의 장을 두었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5-1 <<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제·개정일	시 행 일
제 정	신규 제정	1957년 1월 28일	1957년 1월 28일
제 1 차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	1986년 12월 31일	1987년 7월 1일
제 2 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89년 12월 30일	1990년 1월 3일
제 3 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0년 12월 27일	1990년 12월 27일
제 4 차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1년 3월 8일	1991년 4월 9일
제 5 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3년 3월 6일	1993년 3월 6일
제 6 차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벌칙 상향 조정	1994년 1월 7일	1994년 7월 1일
제 7 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4년 3월 24일	1994년 7월 25일
제 8 차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	1995년 12월 6일	1996년 7월 1일
제 9 차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1997년 12월 13일	1998년 1월 1일
제 10 차	저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벌칙 상향 조정 등	2000년 1월 12일	2000년 7월 1일
제 11 차	DB 제작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등	2003년 5월 27일	2003년 7월 1일
제 12 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2004년 10월 16일	2005년 1월 17일
제 13 차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2006년 10월 4일	2007년 4월 5일
제 14 차	-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등	2006년 12월 28일	2007년 6월 29일
제 15 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제 16 차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해 온라인 자료 수집 시 면책 -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	2009년 3월 25일	2009년 9월 26일
제 17 차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 -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	2009년 4월 22일	2009년 7월 23일
제 18 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2009년 7월 31일	2010년 2월 1일



## 2. 2010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정부안(의안번호 9180)

2010년 8월 26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 등을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꾸는 것과 사적 복제의 범위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용자가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되,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불법복제물을 복제하는 행위까지 사적복제로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불법복제물로부터의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원(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에서도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외에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관련단체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김충환 의원안(의안번호 9359)

현행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적인 음란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최근 인터넷 웹하드업체들의 무책임한 관리 하에 불법적인 음란물이 인터넷 상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도 여과 없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성범죄 급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 (3) 전혜숙 의원안(의안번호 9424)

현행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기·부품 등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기나 부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에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 (4) 한선교 의원안(의안번호 9552)

현행 저작권법 133조의 3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경우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 권고’에서 ‘시정 조치’로 변경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 (5) 정부안(의안번호 970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시청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동 법안에는 한·EU FTA 상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인정’만을 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 의안 접수 시 실무상 이유 때문인데,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발행한 <국회 의안 편람, 2008(제18대 국회)>에 따르면, 의안 제출자가 같은 법률안의 같은 조항에 대하여 중복된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 회의 진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의사단일화(意思單一化)에 반하기 때문에 이미 계류 중인 법률안과 내용이 중복되고 독자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008년 10월 10일)과 공통된 사항(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접근통제적 기술보호조치의 도입 등)은 한·EU FTA 이행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 3. 지식재산기본법 추진

### (1) 개요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를 전후로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추진하고 2008년 ‘지적재산우선화법(PRO-IP ACT)’을 제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적재산집행조정관을 두어 범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정책을 관리·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최근 국가가 주도하여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보호전략을 세

우는 등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 분야 선진국들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급변하는 지적재산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바 있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sup>54</sup> 이후 제18대 국회에 들어 2009년 11월 4일 이종혁 의원, 2010년 8월 4일 정부, 2010년 9월 1일 김영선 의원이 각각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안하였다.

## (2) 법안의 주요 내용

위의 세 법안 모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 및 기반 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는 등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지식재산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지식재산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형태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두고 있다.

### 1) 법의 목적

정부안	김영선 의원안	이종혁 의원안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	미래사회가 지식창조사회로 변천하여 가는 추세에 맞추어 지식창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조된 지식을 견실하게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견고히 하여 지식재산입국을 확립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sup>54</sup>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안(2005년 11월 8일),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2005년 11월 8일),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안(2006년 7월 7일) 등

## 2) 지식재산의 정의

정부안	김영선 의원안	이종혁 의원안
포괄적으로 정의		저작물, 발명, 디자인 등 구체적으로 열거

## 3) 지식재산 계획의 수립

구분		정부안	김영선 의원안	이종혁 의원안
기본 계획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 지식재산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주체	정부	각 부처 및 광역 지자체	각 부처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필수 포함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관별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계획	관계 법령의 정비와 자원 확보 방안	-

## 4) 지식재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정부안	김영선 의원안	이종혁 의원안
위원장	공동 (국무총리+ 민간위원)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	30인 이상 40인 이하	35인 이내	30인 이내
임기/연임	2년/연임 가능(1회만)	2년/연임 가능	2년/연임 가능
설치기구	운영위원회(강행) 전문위원회(임의)	운영위원회(강행) 전문위원회(임의)	분과위원회(임의)

## 5) 사무기구

정부안	김영선 의원안	이종혁 의원안
사무기구(임의)	사무국(강행)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단(강행)

표 5-2 << 각 법안별 조문 구성 대조표

정부안	김영선 의원안	이종혁 의원안
<b>제1장 총칙</b> - 목적 및 기본원칙, 정의 - 국가 등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b>제1장 총칙</b> - 목적, 정의 - 국가/대학 등/사업자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력 - 다른 법률과의 관계	<b>제1장 총칙</b> -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 국가 등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b>제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b> -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 사무기구 - 지식재산정책관 지정 - 관계 법령의 제·개정 통보 - 관계기관의 협조	<b>제3장 지식재산위원회</b> -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상황 점검 -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 위원장 - 관계 법령의 제·개정 통보 - 자료의 제출 요구	<b>제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b> -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
<b>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b>	<b>제2장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추진</b>	<b>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b>
<b>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b> - 지식재산 창출 촉진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 신지식재산 창출 지원 - 창출자에 대한 보상	- 지식재산 창출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 새로운 분야 지식재산 보호	<b>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b> - 우수 지식재산 창출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수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 미래 지식재산 동향 예측 - 창출에 대한 보상
<b>제2절 지식재산 보호 강화</b> - 권리화 및 보호 촉진 - 소송체계의 정비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 침해 대응 -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보호, 신속한 권리 부여 - 권리구제의 조치 - 보호를 위한 집행 - 지식재산 유출 방지	<b>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해결</b> - 권리화 촉진 및 보호 -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외 전문화 -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 집행의 강화 -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b>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b> - 활용 촉진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 지식재산 가치 평가 -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	- 거래 활성화, 활용, 연구성과의 이전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 지식재산의 국제화 추진 - 정보의 제공 - 교육 진흥/전문 인력의 확보	<b>제3절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b> - 활용촉진 기반조성 - 가치평가 체계 구축 - 건전한 활용 질서 확립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b>제4장 기반조성</b>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국제표준화 - 정보의 제공 -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교육 강화/전문인력 양성 - 연구기관 등 육성 - 제도의 국제화 - 개도국에 대한 지원 - 남북간 교류협력	-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설치·육성 - 국제화 촉진 - 남북간 교류협력 - 지식재산권 투자 확대 - 전문인력 및 금융 지원 - 지식재산진흥기금 -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연차보고서	<b>제4장 지식재산 기반강화</b>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표준화 -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교육 강화/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육성 - 제도의 국제화 - 남북간 교류협력 - 금융지원 활성화
		<b>제5장 보칙 및 벌칙</b> - 비밀 누설 금지 - 벌칙, 공무원 의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3)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지원

위 세 가지 법안 모두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등 주요 과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2009년 10월에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10년 2월에 국무총리실 내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계획 TF가 만들어졌다. 지식재산기본계획 TF에서는 창출(교육과학기술부), 보호(문화체육관광부), 활용(지식경제부), 인프라(특허청), 신지식재산(총리실) 등 5개 부문의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보호분야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보호분야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기술 유출 방지’,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등 세 개 수행 과제에 대한 실무자협의체를 편성하였다. 세 개의 실무자협의체에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특허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에서 참여하여 수행 과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호 분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실무자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부처별 의견 수렴 3회를 통하여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보호분야 3차 초안을 완성하였다. 2010년에 완성된 3차 초안의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 권리의 실효성 강화’,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강화’, ‘분쟁 해결 제도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향후 전망

2010년 현재 지식재산기본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되

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지식재산기본법은 2011년 상반기에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식재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 1. 통상 및 국제협력의 주요 내용

####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 · 협력체계 강화

##### 1)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논의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2010년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논의는 주로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라 한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이라 한다)'는 2010년 6월(제20차)과 11월(제21차)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SCCR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권리,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제21차 회의에서는 제한·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2011~12년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을 도출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등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라 한다)'가 2010년 5월(제16차)과 12월(제17차)에 두 차례 개최되었다.

제16차 IGC에서는 2009년 9월 WIPO 총회의 결정에 따라 문안협상(text-based negotiation)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이하 'IWG'라 한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최종 타협을 이루어 2010년 7월 제1차 IWG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방안을 단독 의제로 하여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차 IWG에서는 문안협상을 통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기존 문안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었고, 비공식 초안 작성반(Informal Drafting Group)을 통해 기존 문안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용어 풀이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차기 IGC 사무국으로 하여금 핵심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17차 IGC에서는 제1차 IWG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옵션이 추가된 조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완료하였고, 비공식 초안 작성반의 운영을 통해 조문 초안상의 문구를 간소화하여 내년 5월에 열릴 제18차 IGC 작업 문서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이하 ACE라 한다) 회의(2010년 12월)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다.

매년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WIPO 차원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환경 개

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를 2010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를 통해 참여 국가의 저작권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WIPO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활동 이외에도, 연 2회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이라 한다)의 지적재산전문가그룹(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이하 IPEG이라 한다) 회의(2010년 3월, 9월)에 참석하여 우리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소개하고 타 회원국의 정책 현황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정책 정보 교류 활동을 벌였다.

##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을 시작으로 1995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WTO/TRIPS라 한다), 1996년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004년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라 한다), 그리고 2008년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및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차례로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 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다.

표 5-3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조약	주요내용	체결년도	가입일
<b>WIPO 설립 협약</b>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설립을 규정 · WIPO 가입 시 서명	1967년	1979년 3월 1일
<b>세계저작권협약</b>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저작권 보호에 관한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 조율 (©마크 적용) · 대부분 국가가 무방식주의를 지향, 영향력 없음	1952년	1987년 10월 1일
<b>음반협약</b>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음반의 무단 복제·배포 금지 규정 · 단일 내용을 규정, 영향력 없음	1971년	1987년 10월 10일
<b>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b>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 베른협약 및 로마협약의 실제규정 원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종합적 규정 ·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가능 · WTO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및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원칙 적용	1995년	1995년 1월 1일
<b>베른협약</b>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저작권 관련 기본협약 · 저작권의 보호 규정 · 보호기간 50년	1886년	1996년 8월 21일
<b>WIPO 저작권조약</b> (WIPO Copyright Treaty ; WCT)	·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 베른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성격의 조약 ·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4년 6월 24일
<b>로마협약</b>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저작인접권 관련 기본협약 · 저작인접권의 보호 규정 · 보호기간 20년	1961년	2008년 12월 18일
<b>WIPO 실연·음반조약</b>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WPPT)	· 인터넷 시대의 실연, 음반 보호 · 로마협약 내용 중 실연 및 음반 관련 규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성격의 조약 ·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8년 12월 18일

### 3) 양자 간 협의 및 정보 교류 활성화

정부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미통상 협의(5월, 9월), 한·일 저작권 당국 간 협의회 및 포럼(10월), 한·중 저작권 포럼(6월), 한·태 저작권 포럼(10월) 등 주요국과의 양자 간 협의회 또는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 1)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확대

국가 간 교류에 있어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 등 국가 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 설립 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가 체결되었으며,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8건의 FTA 중 '한-ASEAN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한·미 FTA, 한·EU FTA는 TRIPS 플러스적인 내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EU FTA는 2010년 10월에 정식 서명되었는데,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70년), 방송사업자 권리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체결된 FTA는 2010년 8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11월에 가서명된 '한-페루 FTA'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 이하 GCC라 한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5건, 15개국)	칠레	- 1999년 12월 협상 개시 - 2003년 2월 서명 -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 2004년 1월 협상 개시 - 2005년 8월 서명 -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2005년 1월 협상 개시 - 2005년 12월 서명 - 20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 2005년 2월 협상 개시 -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년 6월 발효 -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 2009년 5월 발효 -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 2009년 9월 발효	우리의 제3위 교역 대상
	인도	- 2006년 3월 협상 개시 - 2009년 8월 서명 - 2010년 1월 발효	BRICs 국가, 거대 시장
체결 (3건, 29개국)	미국	- 2006년 6월 협상 개시 - 2007년 6월 서명 -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거대 선진 경제권
	EU	- 2007년 5월 협상 출범 - 2009년 7월 협상 타결 - 2009년 10월 가서명 - 2010년 10월 정식 서명	세계 최대 경제권 (GDP 기준)
	페루	- 2009년 3월 협상 개시 - 2010년 8월 협상 타결 - 2010년 11월 가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협상 진행 (7건, 12개국)	GCC(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 2008년 1월 협상 개시 -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동지역 최대경제권
	멕시코	- 2007년 12월 기존의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을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호주	- 2009년 5월 협상 개시 - 2010년 5월 제5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 2009년 6월 협상 개시 - 2010년 5월 제4차 협상 개최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콜롬비아	- 2009년 12월 협상 개시 - 2010년 10월 제4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	- 2010년 3월 협상 출범 합의 - 2010년 7월 제2차 협상 개최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55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사이트(<http://www.fta.go.kr>)

## 2)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CTA) 체결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한다)’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AC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1월), 뉴질랜드(4월), 스위스(6월), 미국(8월)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0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협정문안이 잠정 타결되었으며, 12월 최종협정문이 공개되었다.

‘ACTA’는 ‘TRIPS’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집행(민·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등 11개국(EU 개별국가 포함 시 37개국)이 참가하였다.

본래 ‘ACTA’는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정문은 민사 집행, 형사 집행, 국경 조치 그리고 ‘TRIP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등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AC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등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선도하면서 지적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 (3) 평가 및 전망

최근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 콘텐츠의 활발한 수출로 인하여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WIPO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에서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협상의 특

성,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저작권 선진국과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하여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원국 사이에 시대 변화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권리,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등을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2010년 FTA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페루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해외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향후 협상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협상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우리 콘텐츠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2위, 23.9%, 2009년 기준) 및 일본(1위, 27.2%, 2009년 기준)과의 FTA 협상 개시 내지 재개가 예상되는 바, 면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0년 국제 협력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는 'ACTA'의 타결이다.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의 복수국 간 규범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하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한류에 대한 인기가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로 변환되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WIP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상과 FTA를 중심으로 한 양자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통상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저작권 분야의 유능한 통상전문가의 양성과 확보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제 3 절

## 저작권

### 제도 개선 연구

#### 1. 제도 연구

2010년에는 저작권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부터, 인증·기증과 같은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까지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연구와 위탁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수행된 주요 연구와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체 연구

###### 1)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이호흥 연구위원)

공연권을 주제로 바뀐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공연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연권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을 비롯하여 입법 역사와 발전

경과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연권 제한 규정(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비영리 공연 허용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연구(이영록 연구위원, 최진원 박사)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법정허락제도 이용에 대하여 운용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절차적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다. 나아가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법정허락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정허락제도의 위상을 포함하여 법정허락 절차를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 심의 - 심의 후 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였다.

## 3) 해외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서달주 연구위원)

최근 해외 저작권법의 개정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 저작권법의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일본, 터키의 최근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 법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 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초로 터키 저작권법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2) 위탁 연구

### 1) 디지털 환경에서 실연자의 법적 보호(정연덕 건국대학교 교수)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가운데, 기존의 권리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이용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법적 보호에 일부 공백이 있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이용 간의 균형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연구다. 공중송신권 및 디지털 음성송신권의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배경을 정리하였고, WIPO의 WPPT와 로마협약 등 각종 조약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연자 보호를 위하여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공중송신권과 유사한 권리를 창설할 것인지, 시청각

실연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디지털영상송신의 어떠한 권리를 신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고 있다.

## 2)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저작권 세부 전략 및 성과 분석

### (고영수 테즈카야마대학교 교수)

지식재산기본법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당시, 실효성 있는 저작권 관련 과제의 발굴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전략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다.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추진 배경과 저작권 관련 정책의 수립 체계, 2003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지적재산 추진 계획(2003~2009년) 상에 나타난 저작권 관련 정책의 일람, 이에 대한 민간의 평가 및 실효성에 대한 분석 등을 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관련 정책이 지적재산 추진 계획에 반영되기까지 논의가 된 모방품과 해적판 대책, 콘텐츠 전문 조사회(2003~2007년), 콘텐츠 일본 브랜드 강화 전문 조사회(2007~2009년), 콘텐츠 강화 전문 조사회(2010년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제도 전문 조사회,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 영상콘텐츠 대국의 실현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어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저작권 정책 내용과 형성 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3) 저작권 인증제도의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 (한국정보인증, 권현영 광운대학교 교수)

2010년에는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절차적 방안 수립을 위하여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권리 인증 및 이용허락 인증과 거래 인증 간의 상호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보인증)’에서는 저작권 인증제도의 내용이 되는 권리 인증과 이용허락 인증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나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거래 인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상호 연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또 ‘저작권 인증 해외 사례 조사 및 한·중·일 상호 인증 방안 연구(한국정보인증)’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는 상대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한·중·일 상호 저작권 인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호 인증에 필요한 국가 간 차이점과 공통 사항을 파악하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력사항을 분석하였다.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연구(한국정보인증)’에서는 저작권 인증

기관이 책임있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지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 인증기관 지정 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인증 총괄기관 역할 정립 연구(권현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할 총괄기구가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표 5-5 << 2010년 저작권 제도 연구

	연구명	연구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이호흥 연구위원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영록 연구위원, 최진원 박사
	해의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달주 연구위원
위탁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정연덕 건국대학교 교수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저작권 세부 전략 및 성과 분석	고영수 테즈카야마대학교 교수
	저작권 인증제도의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한국정보인증, 권현영 광운대학교 교수

## 2.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 (1) 저작권산업 관련 연구

#### 1) SW 최종사용계약서 개선 방안 연구(전응준 변호사)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춘 표준 SW 최종사용계약서(안)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SW 최종사용계약서를 수집·분석하여 국내 법 체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저작권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사용자의 재판매 제한, 역분석 금지, 복제 횡

수 제한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증조건 또는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등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 SW 최종사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포함하였다.

## 2)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 조사(최종일 조선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저작권 기반산업의 규모를 파악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다. 또 이렇게 산출된 저작권산업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과 부가가치 측면에 있어 저작권산업의 명목 및 실질 규모와 GDP 대비 비중, 저작권산업의 종사자 수 규모 및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저작권산업 종사자 수 비중, 저작권산업의 실질 성장률, 저작권산업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등을 재산출하여 포함하고 있다. 특히 WIPO의 저작권산업 분류에 따라 작성되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저작권산업과 비교가 가능하며, 저작권산업 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 인프라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정연덕 건국대학교 교수)

저작권 관리정보(ICN)를 중심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ICN을 통해서도 권리자 미상 저작물을 처리하는 방안의 법제화, ICN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유통 관련 법제들을 분석하였다.

## 4) 저작권 통합관리 등 저작권 유통 인프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일순 인하대학교 교수)

‘저작권 유통 인프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 저작권 유통 인프라가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 저작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 변화 추정, ▲ 저작권 유통 인프라가 디지털 콘텐츠 시장 및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저작권 유통 인프라가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타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2) 이용활성화 연구

### 1) ICN 등 국내외 저작권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 체계 현황 및 연계 방안 연구(한경석 숭실대학교 교수)

저작권 등록정보의 국제적인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한·중 저작권 등록제 절차와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집중관리단체와의 정보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활성화 전략과 디지털 저작권 아시아 네트워크(DCAN: 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의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2) 저작권 기증 활성화 방안 연구(최진원 박사)

저작권법에 소개된 저작권 기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본 연구다.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증 저작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여러 운영상의 개선점들을 기술하고 있다.

### 3) 뮤지컬저작물 감정기법에 관한 연구(이지향 박사)

뮤지컬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감정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과 법학에 의거한 기초적 분류, 기존 분쟁 및 판결 사례를 통한 감정 기준의 기초 근거 자료 제공, 결합요소들의 유형화와 범주화를 위한 연구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한 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실증적 견해를 수렴하여 유사성 판단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뮤지컬저작물에 대한 유사성 감정 시 감정기법 등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 4) 국내외 ADR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이상정 경희대학교 교수)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유형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국내에서 ADR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ADR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기초로 현행 저작권법상 ADR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다. 향후 도입될 기관 중재를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제도 운영과 관련된 것도 함께 제언하고 있다.

표 5-6 &lt;&lt;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연구명	연구자
저작권 산업 관련 연구	SW 최종사용계약서 개선 방안 연구	전응준 변호사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 조사	최종일 조선대학교 교수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 인프라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정연덕 건국대학교 교수
	저작권 통합관리 등 저작권 유통 인프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일순 인하대학교 교수
이용활성화 연구	ICN 등 국내외 저작권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 체계 현황 및 연계 방안 연구	한경석 숭실대학교 교수
	저작권 기증 활성화 방안 연구	최진원 박사
	유지컬저작물 감정기법에 관한 연구	이지향 박사
	국내외 ADR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이상정 경희대학교 교수

### 3. 기타 연구

현재 저작권법에 관한 논문을 발행하는 주요 학회로는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등이 있고, 이들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로는 각각 <정보법학>, <산업재산권>, <비교사법>, <콘텐츠재산연구>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기타연구 내용을 정리하였다.

#### (1) 학회 연구

##### 1)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정보법학> 제14권 제1호(4월 발행), 제2호(8월 발행), 제3호(12월 발행)를

발간하였다. 2010년에는 스포츠 중계나 전자출판, 이러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이 논의됨에 따라 게재된 논문 역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표 5-7 << 정보법학에 실린 주요 논문

	논문 제목	논문 작성자
제14권 제1호 (4월 발행)	同一性維持權의 性質	김형렬
	스포츠 중계에 관한 法的 爭點	이규호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최진원
	웹캐스팅(Webcasting)의 저작권법 상의 지위와 국제 동향 및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 시대의 법적 대응	박덕영
제2호 (8월 발행)	클라우드 서비스와 SaaS의 법적 이슈	손승우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박성호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관계	오병철
제3호 (12월 발행)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권리 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	김인철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계승균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	김윤명
	표현의 자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상품의 디자인과 캐릭터로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박준우
	온라인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문제	김은기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오영우
	3D 변환 TV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을 계기로-	오병철

## 2) 한국산업재산권학회

한국산업재산권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산업재산권> 제31호(4월 발행)에는 ▲ 방송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황창근, 최진원), ▲ 이미지 검색과 인터넷 포털의 책임범위(유대중), ▲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대한 재검토(최형구),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김윤명)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제32호에는 ▲ 현행 저작권법상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문화·산업발전의 관계(배대현), ▲ 출처명시의무에 대한 고찰(김형렬), ▲ 패션 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차상욱)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또 제33호(12월 발행)에는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오승한), ▲ 국가연구개발 저작물 관리의 법적 고찰(윤종민), ▲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윤명)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3)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비교사법> 제17권 제3호(9월 발행)에는 논문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녹음 및 녹화의 방법에 따른 사적복제의 경우를 중심으로(이규호)’가 게재되었다.

### 4)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는 2010년 4회에 걸친 정기연구회를 개최했는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제2회 정기연구회(5월 7일)에서 ‘YouTube와 Viacom 관련 소송의 전개(최승재)’와 ‘시행 10개월, 삼진아웃제와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심재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3회 정기연구회(9월 17일)에서는 ‘게임산업과 법 ; 주요 쟁점(정해상)’과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손승우)’에 대한 주제발표, 제4회 정기연구회(11월 4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김주엽)’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와 (사)아시아교류협회의 공동 주최로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1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도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실태(김현철)’, ‘미국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이규호)’, ‘EU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김병일)’, ‘일본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최진원)’ 등을 주제로 한 발제가 있었다.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에서는 11월 <콘텐츠재산연구>도 창간했는데, 여기에는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재해석(손승우), ▲ SNS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기술적 보호조치(최승재), ▲ 토렌트에 대한 법적 소고와 정책방안(조

동관), ▲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김주엽), ▲ 저작권법적 대응방향에 따른 1인 미디어의 생존 방안 - P2P TV (Peer-to-peer Internet Television)를 중심으로 - (박세진 · 이종민), ▲ 차세대 콘텐츠 재산의 법제도적 분석(이규호)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2) 기타 학술 활동

2010년에 있었던 학술 활동 중 주목할 일은 한국국제사법학회에서 3월 26일 개최한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그 영문번역본이 발간됐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국의 국제사법원칙(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중재)을 정하고 있다.

이후 학술활동은 연말에 집중되었는데, 먼저 한중지적재산권학회에서는 12월 27일 ‘한·중 저작권 제도의 미래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한·중 FTA와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 ▲ 중국 저작권 발전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중국 FTA 판권 정책의 기본 입장, ▲ 중국의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와 무형문화 표지권, ▲ 한·중 저작권 자유무역협정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보다 조금 앞선 12월 2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음악실연자의 지위와 문제점(이규호)’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점(이충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201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발행된 이기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에는 저작권법 관련 논문으로 저작권법상 배포권 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계승균), ▲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쟁점 및 도입 방안(이대회), ▲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저작권법상 문제(안효질), ▲ 양벌제도와 SW 저작권 위험 관리(김병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통합 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정진근), ▲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 상호 간의 비중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 (이규호) 등이 게재되었다.

대사철테를유노훈노스퀴드치글남작를펠  
인도부즈뒹국학브못박의민아자한수일잉  
국저제자르아말철그로아홀키맹르예리에  
트종기이침던강키작세들민대미스전랏규  
마디의쓰세버도법런비척의수크르마뱅빙  
카저퀵눔남서등루호토팡리정피한리짱자  
못박의민아자한수일잉인도부즈뒹국학브  
바훈자사토회문수슈시기들의카호짱권왕  
노스퀴드치글남작를펠대노철테를유사훈

## 부록

---

1. 2010 저작권 통계
2. 2010 기관별 주요 활동
3. 2010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4. 주요 기관 주소록

## 2010 저작권 통계

### 1. 심의

#### (1) 심의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심의	3	17	11	25	8	15	14	6	22	121
교과용도서 보상금	1	1	1	1	1	-	-	-	-	5
도서관보상금	1	1	1	1	1	-	-	-	-	5
계	5	19	13	27	10	15	14	6	22	131

#### (2) SW 지적재산권 심의

##### 1) 전체위원회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회)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7	계	
회의개최 (서면결의)	2	2	3	2	3	4	2	4	4	7	8	4	8	10	8	3	74	
안건	보고	6	4	3	3	4	3	6	9	7	7	8	4	9	13	7	4	97
	의결	5	3	6	2	5	10	8	21	13	13	15	9	12	22	14	4	162
	심의	-	-	-	-	-	-	-	-	-	-	-	1	-	1	-	-	2
	계	11	7	9	5	9	13	14	30	20	20	23	14	21	36	21	8	261

## 2) 분과위원회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회)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7	계
회의개최	-	-	1	1	-	1	2	4	4	4	1	4	5	27	104	70	228
(서면결의)	-	-	-	-	-	(1)	-	(2)	(2)	(2)	-	-	(1)	(23)	(104)	(70)	(205)
심의안건	-	-	1	1	-	1	6	11	6	4	1	4	9	378	11,927	10,951	23,300

※ 2007년 4월 부정복제물 신고센터 운영으로 심의 안건 대폭 증가

## 3) 감정전문위원회 연도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회의개최	2(2)	13(9)	21(11)	9(1)	20(1)	21	30(2)	28	20	26	190(25)
심의안건	4	22	21	9	20	21	32	32	23	34	218

※ ( ) : 서면결의

## 2. 조정

### (1) 조정(구 저작권위원회)

#### 1)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각하	반려	기각	진행중	계	성립률(%) <sup>56</sup>
1988	5	5	-	-	-	-	-	10	50.0
1989	2	4	2	-	-	-	-	8	33.3
1990	8	6	1	-	-	-	-	15	57.1
1991	14	7	4	-	-	-	-	25	66.7

56 조정성립률 = 성립건수 / (성립건수 + 불성립건수) × 100

1992	10	12	7	-	-	-	-	29	45.5
1993	14	6	7	-	-	-	-	27	70.0
1994	12	32	2	-	-	-	-	46	27.3
1995	14	21	-	-	-	-	-	35	40.0
1996	9	8	1	-	-	-	-	18	52.9
1997	12	14	2	-	-	-	-	28	46.2
1998	24	19	8	-	-	-	-	51	55.8
1999	8	16	8	-	-	-	-	32	33.3
2000	10	12	5	-	-	-	-	27	45.5
2001	22	27	14	3	1	-	-	67	44.9
2002	49	43	16	-	-	1	-	109	53.3
2003	26	50	33	-	-	2	-	111	34.2
2004	34	31	8	-	-	-	-	73	52.3
2005	40	15	12	-	-	-	-	67	72.7
2006	27	21	43	-	-	-	-	91	56.3
2007	17	14	13	-	-	-	-	44	54.8
2008	23	19	7	-	-	-	-	49	54.8
2009	8	2	6	-	-	-	-	16	80.0
계	388	384	199	3	1	3	0	978	50.3

(단위 : 권)

분야	연도																					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어문	6	5	6	13	19	18	30	12	10	6	13	8	7	19	32	29	14	31	24	13	9	4	328
음악	2	-	-	1	1	1	2	13	6	5	9	-	1	3	7	29	3	1	30	4	15	1	134
연극	-	1	-	1	-	-	-	-	-	-	-	-	1	1	1	-	-	-	-	-	-	-	5
미술	-	1	-	4	2	6	6	7	1	11	20	14	9	26	23	4	33	12	5	8	5	5	202



건축	-	-	-	-	-	-	-	-	-	-	-	-	-	1	2	1	1	1	1	-	-	-	-	7
사진	-	1	7	1	4	2	6	1	1	2	4	3	1	10	20	41	13	13	16	8	10	4	168	
영상	-	-	-	1	1	-	1	-	-	-	1	1	3	4	16	1	1	-	1	-	3	-	34	
도형	-	-	-	-	-	-	-	-	-	-	1	1	1	1	1	-	-	-	-	2	-	-	7	
편집	-	-	-	-	-	-	-	1	-	3	3	2	-	1	8	6	6	6	6	4	4	1	51	
2차적 저작물	-	-	-	-	-	-	-	-	-	-	-	-	-	-	-	-	-	1	1	-	-	1	3	
저작 인접물	2	-	2	4	2	-	1	1	-	1	-	3	3	-	-	-	-	2	1	6	5	1	34	
데이터 베이스	-	-	-	-	-	-	-	-	-	-	-	-	-	-	-	-	-	1	2	-	2	-	5	
계	10	8	15	25	29	27	46	35	18	28	51	32	27	67	109	111	73	67	91	44	49	16	978	

## (2)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 1)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2009년 7월 23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건)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각하	반려	기각	진행중	계	성립률(%)
2009	19	8	6	-	-	-	-	33	70.3%
2010	23	17	7	-	-	-	15	62	57.5%
계	42	25	13	0	0	0	15	95	-

### 2)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2009년 7월 23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건)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계
2009	6	2	1	2	-	7	-	-	10	-	1	4	-	33
2010	18	9	-	12	-	7	2	1	8	-	1	4	-	62
계	24	11	1	14	0	14	2	1	18	0	2	8	0	95

### (3)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2009년 7월 22일 이전)

#### 1) 분쟁조정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7	계	
신 청	4	-	4	5	13	13	16	18	20	24	27	33	34	13	6	230	
처 리	성 립	2	-	2	1	4	3	3	4	7	3	13	11	7	6	2	68
	불 성립	2	-	1	3	4	6	9	8	3	2	4	4	5	2	-	53
	취 하	-	-	1	1	5	4	3	2	7	11	5	11	7	2	1	60
	기일전종결	-	-	-	-	-	-	1	4	3	8	5	7	15	3	3	49
회의개최	6	-	7	9	16	17	17	24	17	11	32	42	24	15	9	246	

※ 처리건수 : 당해년도 신청건수 기준

#### 2) 알선(간이조정)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년 7월	계
	신 청		-	2	5	11	13	13	17	7	3
처 리	성 립	-	1	4	5	8	4	10	-	-	32
	불 성립	-	1	-	-	-	-	-	-	-	1
	취 하	-	-	1	4	3	6	5	7	3	29
	기일전종결	-	-	-	2	1	1	1	-	-	5
	중 단	-	-	-	-	1	2	1	-	-	4
	진행중	-	-	-	-	-	-	-	-	-	
회의개최		-	-	-	-	-	-	11	-	-	11

※ 처리건수 : 당해년도 신청건수 기준

### 3. 감정

#### (1) 연도별 감정 현황

(단위 : 회)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신 청	1	2	1	3	1	8	28	28	22	26	39	48	47	46	54	354
감 정								9(1)	17(4)	14(5)	20(8)	33(18)	32(20)	23(11)	34(16)	182(83)
자체공동	-	-	-	-	-	-	-	1	8	6	11	25	27	23	31(16)	132(16)

\* ( ) : 전년 이월 건수

#### (2) 최근 9년간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완성도(하자)	유사도	개발비산정	기타	일반저작물	계
2002년	9	17	-	2	-	28
2003년	5	23	-	-	-	28
2004년	8	14	-	-	-	22
2005년	4	21	-	1	-	26
2006년	8	23	1	7	-	39
2007년	16	29	1	2	-	48
2008년	11	27	1	7	1	47
2009년	13	23	1	7	2	46
2010년	12	23	1	3	15	54

### (3) 2010년 월별 감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접 수	완성도(하자)	13	1	3	1	-	1	1	2	1	-	-	1	2	26
	유사도	10	-	-	1	2	-	-	4	1	6	3	3	2	32
	개발비산정	-	-	-	-	1	-	-	-	-	-	-	-	-	1
	기타	3	-	-	-	-	-	-	1	-	1	-	-	-	5
	일반저작물	2	-	1	-	-	1	1	5	1	2	2	3	-	18
	합계	28	1	4	2	3	2	2	12	3	9	5	7	4	82

## 4. 상담

### (1) 연도별 상담 건수

(단위 : 건)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91	-	-	-	83	42	38	52	10	17	37	22	10	311
1992	41	28	67	43	41	44	29	27	28	35	26	26	435
1993	37	74	60	39	53	50	72	59	52	54	34	46	630
1994	58	49	40	68	55	67	53	58	64	32	41	61	646
1995	47	40	44	53	65	79	53	43	47	42	55	46	614
1996	65	72	60	52	56	60	62	50	49	55	44	52	677
1997	38	37	41	59	70	78	93	117	95	102	98	85	913
1998	111	122	200	178	162	217	184	175	186	133	198	185	2,051
1999	197	144	249	277	252	293	270	232	228	207	221	214	2,784
2000	229	260	316	241	200	262	291	215	267	288	311	233	3,113

2001	229	297	442	412	371	362	379	401	375	216	276	281	4,041
2002	354	318	428	452	503	342	488	485	428	436	442	321	4,997
2003	418	364	579	495	437	573	388	397	410	420	399	320	5,200
2004	308	360	427	341	347	412	378	272	316	295	319	327	4,102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52,869 (47,382)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56,189 (50,931)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61,387)
2010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63,348 (51,710)
계	21,040	22,329	38,205	25,383	22,261	25,254	24,974	18,514	23,706	23,731	19,586	36,815	301,798

\* ( )안의 수는 자동상담 건수

## (2) 2010년 상담 통계

### 1) 월별 · 상담매체 유형별 상담 건수

(단위 : 건)

유형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온라인	자동상담	3,081	3,379	5,124	2,615	1,981	2,588	1,080	2,710	6,758	3,244	1,367	17,783	51,710
	전화상담	728	601	922	784	858	963	989	918	798	845	963	1,026	10,395
	내방상담	12	20	13	22	27	26	26	20	10	16	26	18	236
	서신상담	4	5	4	5	3	4	5	2	2	-	4	5	43
	메일상담	49	60	73	58	87	88	89	107	94	87	84	88	964
	소 계	793	686	1,012	869	975	1,081	1,109	1,047	904	948	1,077	1,137	11,638
상담 총계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63,348
자동상담비율		80%	83%	84%	75%	67%	71%	49%	72%	88%	77%	56%	94%	82%

## 2) 저작물 · 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저작물 또는 이용 유형		상담 건수	비율(%)
저작물 유형	어문저작물	13,381	21.1
	음악저작물	5,679	9
	연극저작물	2,004	3.2
	미술저작물	5,427	8.6
	건축저작물	1,369	2.2
	사진저작물	7,259	11.5
	도형저작물	1,463	2.3
	영상저작물	5,970	9.4
	프로그램저작물	2,241	3.5
	데이터베이스	720	1.1
	실 연	2,392	3.8
	음 반	2,344	3.7
	방 송	2,117	3.3
	외국인저작물	1,132	1.8
	기타저작물	3,928	6.2
	이용 유형	법 정 허 락	990
양 도		1,095	1.7
설 정 출 판		1,501	2.4
보 호 기 간		1,132	1.8
위 탁 관 리		898	1.4
기타 이용유형		306	0.5
전체 이용건수		63,348	100

**(3) SW 지적재산권 종합상담 실적****1) 최근 5년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년 7월
조정·알선·중재관련	330	199	271	206	126
감정 관련	219	120	99	141	173
SW 임치 관련	154	48	114	75	11
불법복제 관련	735	259	436	481	262
저작권 관련	713	658	640	794	419
기타(등록포함)	437	475	445	569	269
계	2,588	1,969	2,005	2,266	1,260

**2) 2009년 월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분쟁 조정 · 알선 관련	전화	10	13	26	19	-	-	-					68
	홈페이지	-	1	-	2	-	-	-					3
	방문	3	3	9	6	-	-	-					21
	계	13	17	35	27	0	0	0					92
감정 관련	전화	18	26	22	21	23	-	10					120
	홈페이지	-	1	-	-	-	-	-					1
	방문	3	-	-	-	-	-	1					4
	계	21	27	22	21	23	0	11					125
SW 임치 관련	전화	3	-	1	-	-	-	-					4
	홈페이지	1	-	1	2	-	-	-					4
	방문	-	-	-	-	-	-	-					0
	계	4	-	2	2	0	0	0					8
불법복제 관련	전화	30	44	59	47	-	-	-					180
	홈페이지	2	4	6	2	-	-	-					14
	방문	-	-	-	-	-	-	-					0
	계	32	48	65	49	0	0	0					194





## 6. 침해

### (1)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처 리					
		처분계	기 소		불기소		기 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 없음	기 타	
2006	18,227	18,903	23	1,473	11,426	4,214	1,767
2007	25,027	25,079	26	1,637	15,195	6,713	1,508
2008	90,979	91,015	28	3,975	51,255	32,607	3,150
2009	89,410	89,206	67	3,956	27,150	58,033	-

### (2)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처 리					
		처분계	기 소		불기소		기 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 없음	기 타	
2006	611	611	-	31	389	153	40
2007	2,832	2,824	-	76	1,865	823	60
2008	23,470	23,444	-	207	12,541	10,190	506
2009	22,169	22,200	-	17	2,936	19,247	-

※ 접수 인원은 해당 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처리 인원은 해당 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 불기소 중 기타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처, 타관이송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 소년법상 '나이 19세 미만' 미반영)

### (3) 저작권법 위반 사범 통계

(단위 : 명)

순번	해당청	2005년 (기소유예 인원/총 인원)	2006년 (기소유예 인원/총 인원)	2007년 (기소유예 인원/총 인원)
1	서울중앙지검	72명 / 2,840명	1,141명 / 4,852명	408명 / 4,297명
2	서울동부지검	5명 / 657명	23명 / 490명	19명 / 812명
3	서울남부지검	16명 / 587명	173명 / 1,366명	504명 / 2,864명
4	서울북부지검	0명 / 455명	65명 / 508명	141명 / 719명
5	서울서부지검	8명 / 509명	44명 / 655명	132명 / 1,334명
6	서울의정부지검	18명 / 599명	29명 / 762명	230명 / 1,321명
7	인천지검	11명 / 983명	37명 / 1,112명	31명 / 1,729명
8	수원지검	24명 / 1,332명	172명 / 1,854명	111명 / 2,632명
9	춘천지검	1명 / 448명	14명 / 441명	22명 / 635명
10	청주지검	7명 / 371명	6명 / 426명	13명 / 452명
11	대전지검	12명 / 625명	66명 / 840명	63명 / 1,041명
12	대구지검	19명 / 1,389명	17명 / 1,466명	59명 / 1,888명
13	부산지검	10명 / 1,293명	34명 / 1,360명	168명 / 2,053명
14	울산지검	2명 / 459명	6명 / 397명	30명 / 592명
15	창원지검	11명 / 1,048명	19명 / 1,098명	43명 / 1,362명
16	광주지검	5명 / 757명	20명 / 871명	8명 / 1,036명
17	전주지검	8명 / 509명	13명 / 602명	20명 / 617명
18	제주지검	2명 / 382명	1명 / 370명	3명 / 238명
합계		231명 / 15,243명	1,880명 / 19,470명	2,005명 / 25,622명

### (4) SW 불법복제 단속·점검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점검기관 수	674	1,324	2,315	1,050	1,760	2,514	2,537	2,172	2,090	2,005	809	1,161	20,411
SW 체크리스트	8종	23종	50종	995종	660종	1,426종	1,620종	1,747종	572종	782종	822종	1,200종	
단속기관 SW 설치 수량	-	-	-	80,975	180,590	140,169	146,909	156,981	143,916	148,331	59,087	108,669	1,165,627
불법복제율(%)	0.88	0.42	9.5	8.23	14.68	25.18	20.93	17.11	26.59	28.84	35.77	24.56	

### (5) 부정복제물 신고 접수 및 처리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오프라인	신고접수	-	-	85	76	52	30	35	23	85	83	71	540
	처 리	-	-	85	76	52	28	32	16	45	45	58	437
온라인	모니터링	-	-	-	340	124	500	652	2,098	11,927	35,345	85,085	136,071
	신고접수	-	-	-	-	8	184	76	47	-	262	2,085	2,662
	시정권고	-	-	-	-	-	-	-	372	11,927	35,345	85,085	132,729
	경고	-	-	-	-	-	-	-	372	1,112	13,466	42,794	57,744
	삭제/ 전송중단	-	-	-	-	-	-	-	-	10,747	21,840	42,200	74,787
	계정정지	-	-	-	-	-	-	-	-	68	39	91	198
	적발금액(억원)	-	-	-	-	-	-	-	-	306	254	95	655

\* 모니터링 신고는 2007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정권고 도입으로 통계에서 제외, 2008년부터 시정권고 이행에 따른 적발액 조사

## 7. 해외 사무소

### (1) 해외 법률 컨설팅

(단위 : 건)

분 야	구 분	건 수	비 고		
2007년	조사컨설팅 (36)	36	※ 중국 판권보호중심		
	상담 (126)	면 담	32		
		전 화	2		
		온 라 인	92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컨설팅 (53)	북경	법률자문	27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 자문	26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215			

2008년	상담 (188)	면 담		12	
		전 화		10	
		온 라 인		166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컨설팅 (65)	북경	법률자문	27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 자문	38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253		
2009년	상담 (252)	본부 (169)	면 담	-	
			전 화	11	
			온 라 인	158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북경 (32)	면 담	10	
			전 화	22	
			전 화	-	※ 이메일
		방콕 (51)	면 담	15	
			전 화	15	
			온 라 인	21	※ 이메일
	컨설팅 (50)	북경 (50)	법률자문	16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 자문	34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302	
2010년	상담 (309)	본부 (169)	면 담	-	
			전 화	25	
			온 라 인	144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북경 (71)	면 담	28	
			전 화	24	
			온 라 인	19	※ 이메일
		방콕 (69)	면 담	46	
			전 화	8	
			온 라 인	15	※ 이메일
컨설팅 (59)	북경 (59)	법률자문	20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 지원	39	※ 중화판권대리중심	
합 계			368		
총 계			1,138		

## (2) 해외 권리정보 확인(인증) : 중국

(단위 : 권)

분야 / 구분		요청건수	처리건수	취하/보류건수	
2007년	오프라인	영 상	420	407	13
		음 악	1	-	1
		소 계	421	407	14
	온라인	영 상	144	144	-
		음 악	12	12	-
		어 문	23	23	-
		기 타	15	15	-
		소 계	194	194	-
	합 계		615	601	14
	2008년	오프라인	영 상	1,505	1,484
음 악			8	8	-
어문 기타			1	1	-
온라인		※ 저작권 정보 전시·홍보 중심으로 관리방법 전환			
합 계		1,514	1,493	21	
2009년	오프라인	영 상	540	435	105
		음 악	686	686	-
		어문 기타	-	-	-
	합 계		1,226	1,121	105
2010년	오프라인	영 상	630	354	276
		음 악	2,093	1,499	594
		어문 기타	-	-	-
합 계		2,723	1,853	870	
총 계		6,078	5,068	1,010	

### (3) 중국 저작권 등록 지원

(단위 : 건)

구 분		지원대상	신청포기	지원건수	심사계류	반 려	등록완료	
2007년	시범지원	70	9	61	-	2	59	
	업무지원	3	1	2	-	-	2	
	합 계	73	10	63	0	2	61	
2008년	업무지원	※ 법률 컨설팅으로 관리방법 전환						
총 계		73	10	63	0	2	61	

###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및 현지 이벤트

(단위 : 건)

구 분		건 수	행사명(개최일)
2006년	국 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해외진출 설명회(9월, 서울)</li> <li>• 제2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11월, 서울)</li> <li>• '아시아 저작권 포럼' 개최(11월, 서울)</li> </ul>
	해 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9월, 북경)</li> <li>• 중국 국제판권교역추진회 참가(5월, 장사)</li> </ul>
	합 계	5	
2007년	국 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 저작권 포럼' 개최(10월, 서울)</li> </ul>
	해 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9월, 북경)</li> <li>• 한·태 저작권 세미나 개최(9월, 방콕)</li> <li>• 태국 왕실 주최 IP Fair 참가(11월, 방콕)</li> </ul>
	합 계	4	
2008년	국 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5월, 서울)</li> <li>•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9월, 서울)</li> </ul>
	해 외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교역촉진 세미나(2월, 북경)</li> <li>• 한·태 저작권 교류활성화 워크숍(4월, 방콕)</li> <li>• 중국 내 한국저작권 온라인 침해실태 및 구제조치 설명회(6월, 북경)</li> <li>• 동남아 4개국 저작권 컨퍼런스(10월, 방콕)</li> <li>•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참가(10월, 북경)</li> <li>• 한·인니 저작권 세미나 개최(11월, 자카르타)</li> <li>• 한·중 저작권 교류 및 중국 내 저작권 보호 설명회(12월, 북경)</li> </ul>
	합 계	9	

2009년	국 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저작권 포럼(6월, 서울)</li> <li>• 한·일 저작권 포럼(10월, 서울)</li> <li>• WIPO STUDY VISIT PROGRAM(12월, 서울)</li> </ul>
	해 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콘텐츠 쇼케이스 참가(1월, 방콕)</li> <li>• 동남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2월, 자카르타)</li> <li>• 한·인니 저작권 심층 워크숍(5월, 자카르타)</li> <li>• 중국 내 한국저작물 침해조사 결과보고 및 저작권보호 설명회(5월, 북경)</li> <li>• 제5차 한·중 저작권 포럼(6월, 북경)</li> <li>• 태국 IP fair 행사 참가(6월, 방콕)</li> <li>•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 체결(9월, 북경)</li> <li>• 중국 제2차 국제판권박람회 참가 및 저작권보호 설명회(10월, 북경)</li> <li>• 한·태 저작권 포럼 개최(11월, 태국)</li> <li>• 한·중 저작권 지킴이 활동보고회 개최(12월, 중국)</li> <li>• 중국 국제 영상·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및 무역박람회 참가(12월, 중국)</li> </ul>
	합 계	14	
2010년	국 내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국가대표단 초청행사 개최(3월, 서울)</li> <li>•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 등 방한단 위원회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5월, 서울)</li> <li>•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6월, 서울)</li> <li>• 제2회 한·일저작권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한-일 간 간담회 개최(7월, 서울)</li> <li>• 말레이시아 지재권청장 등 방한단 위원회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7월, 서울)</li> <li>• 인터폴 IP범죄 교육 세미나 공동개최(9월, 서울)</li> <li>• 동남아 IPR보호협의체 간담회 개최(9월, 서울)</li> <li>•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10월, 서울)</li> <li>•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10월, 서울)</li> <li>• WIPO STUDY VISIT(11월, 서울)</li> <li>• 파라파이 고위공무원단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12월, 서울)</li> </ul>
	해 외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통신원 라운드 테이블 개최(5월, 말레이시아)</li> <li>• 중국국제문화산업박람회 판권무역발전 포럼 참가(5월, 중국)</li> <li>•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 설명회 개최(6월, 중국)</li> <li>• 한·말 저작권 교류 워크숍(8월, 말레이시아)</li> <li>• 국가판권국과 실무회담 개최(8월, 중국)</li> <li>• 한·중 온라인 게임·동영상 저작권 보호 좌담회 개최(8월, 중국)</li> <li>• 디지털시대 신매체 저작권 보호 협력 세미나 참가(8월, 중국)</li> <li>• 한·태 저작권 보호협력 포럼 개최(10월, 태국)</li> <li>• 코리아 콘텐츠의 날 캠페인 개최(10월, 태국)</li> <li>• 한·중 저작권 박람회 개최(11월, 중국)</li> <li>• 한·베트남 저작권 워크숍 개최(11월, 베트남)</li> <li>• Korea Lantern Festival in Bangkok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12월, 태국)</li> <li>• 한·중 디지털 저작권 교류회 개최(12월, 중국)</li> </ul>
	합 계	24	
총 계		56	

## 8. 교육

### (1) 교육 사업 실적

구분	대상	사업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요약 전국 교보	저작권 침해 예방 교보	청소년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745명 (20개 학급)	3,479명 (79개 학급)	4,095명 (117개 학급)	10,669명 (198개 학급)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12,000명 (수도권 15개교)	18,400명 (전국 23개교)	21,600명 (전국 27개교)	42,856명 (전국 50개교)	
			저작권 뮤지컬 공연	-	-	-	8,125명 (20회)	
		성인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20명 (1회)	80명 (2회)	120명 (2회)	151명 (2회)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50명 (2회)	41명 (1회)	1,080명 (1회)	67명 (2회)	
			일반인 저작권 과정 (온라인)	-	-	-	1,036명 (20회)	
	공통	공무원 저작권 과정 (온라인)	-	-	223명 (8회)	248명 (10회)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96,160명 (295회)	120,201명 (336회)	93,977명 (374회)	282,856명 (2,459회)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전문 인력	저작권 문화학교	175명 (4회)	178명 (4회)	182명 (7회)	69명 (3회)	
			저작권 아카데미 (오프라인)	229명 (10회)	258명 (10회)	250명 (12회)	202명 (10회)	
		강사	저작권 전문교원 양성	오프라인	80명 (2회)	75명 (2회)	76명 (2회)	79명 (2회)
				온라인	1,209명 (1회)	2,727명 (5회)	3,305명 (7회)	3,308명 (12회)
			저작권 강사 양성·운영	93명 (3회)	71명 (3회)	73명 (3회)	93명 (4회)	
	서비스 확대	교과서 집필진 저작권 워크숍		-	-	44명 (1회)	221명 (3회)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워크숍		-	15명 (1회)	26명 (1회)	183명 (2회)			
문화산업 저작권 실무자 연수		-	15명 (1회)	-	46명 (2회)			
저작권 전문가 포럼		130명 (2회)	-	-	100명 (6회)			



##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실적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명)	비고
제1차	1월 28일(목)	수원	저작권교육원	110	성인
제2차	1월 29일(금)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102	성인
제3차	2월 2일(화)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86	성인
제4차	2월 3일(수)	인천	저작권교육원	94	성인
제5차	2월 23일(화)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87	성인
제6차	2월 24일(수)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85	성인
제7차	2월 26일(금)	부산	부산대학교	99	성인
제8차	3월 4일(목)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80	성인
제9차	3월 16일(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77	성인
제10차	3월 17일(수)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60	성인
제11차	3월 19일(금)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56	성인
제12차	3월 25일(목)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62	성인
제13차	4월 13일(화)	창원	마산3·15아트센터	62	성인
제14차	4월 14일(수)	부산	부산대학교	78	성인
제15차	4월 16일(금)	수원	저작권교육원	73	성인
제16차	4월 21일(수)	인천	저작권교육원	68	성인
제17차	4월 23일(금)	대전	대전광역시근로자복지회관	48	성인
제18차	5월 7일(금)	전주	최명희문학관	46	성인
제19차	5월 13일(목)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60	성인
제20차	5월 14일(금)	수원	저작권교육원	64	성인
제21차	5월 25일(화)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60	성인
제22차	5월 26일(수)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50	성인
제23차	5월 28일(금)	춘천	한국폴리텍3대학 원주캠퍼스	34	성인
제24차	6월 9일(수)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51	성인
제25차	6월 18일(금)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49	성인
제26차	6월 23일(수)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45	성인

제27차	6월 25일(금)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54	성인
제28차	7월 6일(화)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39	성인
제29차	7월 7일(수)	수원	저작권교육원	44	성인
제30차	7월 9일(금)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38	성인
제31차	7월 14일(수)	창원	마산3.15아트센터	43	성인
제32차	7월 15일(목)	부산	부산대학교	55	성인
제33차	7월 20일(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54	성인
제34차	7월 22일(목)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37	성인
제35차	7월 27일(화)	울산	울산대학교	37	성인
제36차	7월 28일(수)	대구	계명대학교	49	성인
제37차	8월 14일(토)	서울·수도권	저작권교육원	20	미성년자
제38차	8월 18일(수)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43	성인
제39차	8월 20일(금)	부산	한국경영기술교육협회	48	성인
제40차	8월 24일(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52	성인
제41차	8월 26일(목)	춘천	강릉문화원	33	성인
제42차	9월 8일(수)	전주	전주영상정보진흥원	23	성인
제43차	9월 9일(목)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32	성인
제44차	9월 14일(화)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36	성인
제45차	9월 15일(수)	인천	저작권교육원	33	성인
제46차	9월 27일(월)	수원	저작권교육원	43	성인
제47차	9월 29일(수)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31	성인
제48차	10월 11일(월)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36	성인
제49차	10월 13일(수)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31	성인
제50차	10월 14일(목)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38	성인
제51차	10월 15일(금)	수원	저작권교육원	32	성인
제52차	10월 19일(화)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30	성인
제53차	10월 22일(금)	창원	3.15 아트센터	33	성인
제54차	10월 26일(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27	성인
제55차	10월 28일(목)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29	성인

제56차	11월 2일(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29	성인
제57차	11월 3일(수)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26	성인
제58차	11월 5일(금)	청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26	성인
제59차	11월 9일(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25	성인
제60차	11월 10일(수)	부산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28	성인
제61차	11월 11일(목)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27	성인
제62차	11월 16일(화)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26	성인
제63차	11월 18일(목)	춘천	춘천문화원	25	성인
제64차	11월 25일(목)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13	성인
제65차	11월 27일(토)	대구	한국철도공사 동대구역	12	미성년자
제66차	11월 30일(화)	서울	저작권교육원	27	성인
제67차	12월 2일(목)	전주	국립전주박물관	31	성인
제68차	12월 7일(화)	서울	저작권교육원	35	성인
제69차	12월 10일(금)	대전	열린교육센터	37	성인
제70차	12월 11일(토)	대전	열린교육센터	15	미성년자
제71차	12월 15일(수)	서울	저작권교육원	33	성인
제72차	12월 16일(목)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38	성인
제73차	12월 17일(금)	마산	마산3·15아트센터	31	성인
제74차	12월 21일(화)	서울	저작권교육원	35	성인
제75차	12월 23일(목)	서울	저작권교육원	39	성인
계				3,444	

### (3) 저작권연구학교 운영 현황

연도	지역	학교수 (개)	운영학교 명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7	서울	5	개명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신목중학교 연서중학교	자운고등학교
	인천	3	-	제물포여자중학교 부평서중학교	선인고등학교
	경기	7	병점초등학교 청석초등학교	영문중학교 병점중학교 별내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소 계		15개교	4개교	7개교	4개교
2008	서울	8	군자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금동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효문중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중경고등학교
	경기	8	고현초등학교 발안초등학교 목암초등학교	별양중학교 수일여자중학교 호평중학교	부천북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인천	5	용유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능허대중학교	도림고등학교
	전남	2	순천왕지초등학교	청산중학교	-
소 계		23개교	11개교	8개교	4개교
2009	서울	5	명원초등학교 고척초등학교	성재중학교 방배중학교	오금고등학교
	경기	2	양지초등학교	함현중학교	-
	부산	2	운송초등학교	-	반여고등학교
	대구	2	대구왕선초등학교	침산중학교	-
	인천	6	인천완정초등학교	남인천여자중학교 제물포중학교 청학중학교	계양고등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	1	-	월곡중학교	-
	충북	2	-	청주중앙중학교	충주고등학교
	전북	2	왕궁남초등학교 정읍이평초등학교	-	-
	경북	3	송정초등학교	광평중학교	수비고등학교

	서울	2	-	성산중학교	함덕고등학교
소 계		27개교	9개교	11개교	7개교
2010	서울	8	고척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안명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성재중학교 강신중학교	오금고등학교
	경기	4	양지초등학교 안산양지초등학교	함현중학교 부천석천중학교	-
	부산	3	운송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	-	반여고등학교
	대구	3	대구왕선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	침산중학교	-
	인천	7	인천완정초등학교 인천골포초등학교	남인천여자중학교 제물포중학교 청학중학교	계양고등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	2	문흥중앙초등학교	월곡중학교	-
	대전	1	대전유천초등학교	-	-
	울산	2	중남초등학교	성안중학교	-
	강원	2	원주서곡초등학교	-	정선함백종합고등학교
	충북	4	모충초등학교	청주중앙중학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충주고등학교
	전북	3	왕궁남초등학교 정읍이평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	-
	전남	2	목포항도초등학교	-	송지종합고등학교
	경북	4	송정초등학교 포항양학초등학교	광평중학교	수비고등학교
	경남	2	사천대성초등학교	김해활천중학교	-
	제주	3	-	성산중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함덕고등학교
소 계		50개교	24개교	17개교	9개교
총 계		115개교	48개교	43개교	24개교

#### (4) SW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 교육 연도별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계
교육 · 설명회	횟수	11	5	20	43	90	78	12	20	20	33	50	159	217	214	94	1,066
	참가 인원	-	-	-	5,600	7,538	3,731	1,014	2,114	2,010	4,885	6,717	68,655	87,062	98,596	19,311	307,233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횟수	-	-	-	-	-	-	-	-	-	-	-	-	1	-	1	2
	수료생	-	-	-	-	-	-	-	-	-	-	-	-	27	-	17	44
아카 데미	횟수	-	-	-	-	-	-	2	3	4	4	5	5	6	3	-	32
	수료생	-	-	-	-	-	-	47	112	86	112	180	163	215	117	-	1,032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2009년 7월부터 통계 통합 산출)

#### (5) 정품 SW 관리 컨설팅 · 보급교육 연도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계
컨설팅	4	16	82	139	164	82	51	538
보급교육	-	-	-	-	-	-	50	50

## 9. 홍보

날 짜	행 사 명	대 상	내 용								
2009년 12월 30일 ~ 2010년 3월 20일	저작권 인식확산을 위한 저작권 UCC 공모전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n Fun 저작권 UCC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23편 접수, 1차 16편 선정</li> <li>- 최종수상작(2010년 2월 26일) : 8편 선정</li> </ul> </li> </ul>								
2009년 12월 31일 ~ 2010년 2월 28일 (3개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협찬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S 출발, 모닝와이드(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일시 : 1차 1월 12일(화), 07:58~08:06(8'28")</li> <li>2차 2월 23일(화), 08:08~08:15(7'30")</li> </ul> </li> <li>• MBC 생방송 오늘아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일시 : 2월 17일(수), 09:18~09:25(7'10")</li> </ul> </li> </ul>								
2월 11일 ~ 3월 2일	저작권 체험형 방송프로 그램 소재 및 제작지원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일시 : 2월 28일(일), 18:11~18:12(1'30")</li> </ul> </li> </ul>								
2009년 12월 30일 ~ 2010년 3월 31일	저작권 인식확산을 위한 TV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선 SBS다큐멘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일시 : 3월 31일(수), 심야 24:30~25:20</li> <li>4월 28일(수), 13:30~14:17 재방송</li> <li>- 주 제 : 21C콘텐츠 전쟁 ©를 지켜라!</li> </ul> </li> </ul>								
4 ~ 12월	IP(지적재산권) 논문공모전	대학 (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청과 연계하여, 대학(원)생 대상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야, 산업재산권 분야) 논문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접수(9/3) : 총 49편</li> <li>※ 접수건수 : 지재권분야 25편, 산업재산권 24편</li> <li>- 제5회 대학(원)생 IP우수논문공모 시상식(10/28)</li> <li>※ 저작권분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li> <li>- 해외연수(11월 9일~12일 일본)</li> </ul> </li> </ul>								
4 ~ 8월	중학생 대상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중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li> <li>-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li> <li>- 본선대회 및 시상식(8월 30일, 대전 솔로몬로파크)</li> <li>※ 대상 2명(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등) 총 32명 시상</li> <li>※ 퀴즈대회 참여인원(8월 30일 현재)</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온라인 예선</th> <th>지역예선</th> <th>본선대회</th> </tr> </thead> <tbody> <tr> <td>참여인원</td> <td>7,031명</td> <td>315명</td> <td>9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온라인 예선	지역예선	본선대회	참여인원	7,031명	315명	96명
구 분	온라인 예선	지역예선	본선대회								
참여인원	7,031명	315명	96명								
4월 26일	'제10회 세계지적재산권 의 날' 기념행사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유공자 시상, 저작권 청년강사 위촉, 저작권원격교육 사이트 오픈, 저작권 홍보대사 위촉</li> <li>- 부스 운영(6개 기관 참여) 및 다테게임 이벤트 진행</li> </ul> </li> </ul>								
4월 26일	저작권 홍보대사 위촉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홍보대사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4월 26일(월) 11:00~12:00</li> <li>-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li> <li>- 홍보대사 : 김태원(그룹 '부활' 기타리스트 및 작사·작곡가)</li> </ul> </li> </ul>								

4월 26일	저작권 노래 및 영상 제작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노래 및 영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노래제목 : 지켜줄수록 아름답습니다</li> <li>- 작사·작곡/노래 : 김태원/부활</li> <li>- 저작권 영상출연진</li> </ul> </li> <li>• 그룹 부활, 소설가 이외수, 만화가 김민 및 강풀, 방송인 박경림, 탤런트 한지후, 가수 애니 등</li> <li>- 유튜브 및 파워블로그, 정책공간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콘텐츠가 활발히 보급·전파됨</li> </ul>																																													
5월 10일 ~ 8월 31일	온라인 공동캠페인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포털사이트 저작권 공동캠페인 추진</li> <li>- 저작권 노래 보급 및 5~8월 저작권 보호의 날 홍보</li> </ul>																																													
5 ~ 11월	저작권 보호의 날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1월 저작권 보호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방법 : 저작권 보호의 날 캠페인 사이트</li> <li>※ 캠페인 참여인원(11월 30일, 현재), <a href="http://www.26day.or.kr">www.26day.or.kr</a></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실천항목</th> <th>서명하기</th> <th>저작권 노래·퀴즈</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5월</td> <td>2,016명</td> <td>-</td> <td>15,715명</td> <td>17,731명</td> </tr> <tr> <td>6월</td> <td>206명</td> <td>4,793명</td> <td>1,188명</td> <td>6,187명</td> </tr> <tr> <td>7월</td> <td>203명</td> <td>2,269명</td> <td>2,537명</td> <td>5,009명</td> </tr> <tr> <td>8월</td> <td>292명</td> <td>3,601명</td> <td>7,133명</td> <td>11,026명</td> </tr> <tr> <td>9월</td> <td>183명</td> <td>2,251명</td> <td>5,848명</td> <td>8,282명</td> </tr> <tr> <td>10월</td> <td>151명</td> <td>2,322명</td> <td>6,544명</td> <td>9,017명</td> </tr> <tr> <td>11월</td> <td>229명</td> <td>2,367명</td> <td>6,036명</td> <td>8,632명</td> </tr> <tr> <td>연간누계</td> <td>3,280명</td> <td>17,603명</td> <td>45,001명</td> <td>65,884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실천항목	서명하기	저작권 노래·퀴즈	합 계	5월	2,016명	-	15,715명	17,731명	6월	206명	4,793명	1,188명	6,187명	7월	203명	2,269명	2,537명	5,009명	8월	292명	3,601명	7,133명	11,026명	9월	183명	2,251명	5,848명	8,282명	10월	151명	2,322명	6,544명	9,017명	11월	229명	2,367명	6,036명	8,632명	연간누계	3,280명	17,603명	45,001명	65,884명
구 분	실천항목	서명하기	저작권 노래·퀴즈	합 계																																												
5월	2,016명	-	15,715명	17,731명																																												
6월	206명	4,793명	1,188명	6,187명																																												
7월	203명	2,269명	2,537명	5,009명																																												
8월	292명	3,601명	7,133명	11,026명																																												
9월	183명	2,251명	5,848명	8,282명																																												
10월	151명	2,322명	6,544명	9,017명																																												
11월	229명	2,367명	6,036명	8,632명																																												
연간누계	3,280명	17,603명	45,001명	65,884명																																												
5 ~ 8월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기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발대식(5월 12일)</li> <li>•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저작권 교육(4회, 5~8월)</li> <li>• 문화체험 및 제작현장 탐방(5~8월)</li> <li>• 팀별 실천과제 추진 및 개인 과제 수행(5~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두캠페인 및 UCC 제작 등</li> </ul> </li> <li>• “저작권 사랑, 이웃 사랑” 일일차집 개최(7월 28일)</li> <li>• “저작권 사랑, 이웃 나눔” 자원봉사(8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산종합사회복지관</li> </ul> </li> <li>• 제1기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해단식(8월 24~25일)</li> <li>• 제1기 활동집 제작·보급(11월 26일, 500부)</li> </ul>																																													
5 ~ 6월	저작권 다큐멘터리 및 뮤직비디오 DVD 제작·보급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저작권 교육용 다큐멘터리 및 뮤직비디오 DVD 제작·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수량 : 70,000장(2DVD/1세트)</li> <li>- 배포처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 11,857개</li> </ul> </li> </ul>																																													



6 ~ 9월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개발(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명 : 헬로 저작권</li> <li>※ 종류 : 애플기반(아이폰), 안드로이드기반(갤럭시S, 넥서스원)</li> </ul> </li> <li>•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홍보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11월 5 ~ 14일, 총 4,007명 참여</li> <li>- 경품발송(11월 17일)</li> </ul> </li> </ul>
5 ~ 11월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현황 : 총 3,622편</li> <li>- 1차 심사(11월 5 ~ 7일, 저작권교육원)</li> <li>- 2차 심사(11월 10일, 저작권 교육원)</li> <li>- 수상자 발표(11월 15일)</li> <li>- 시상식 개최(11월 19일, 총 79편 시상)</li> <li>※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공동개최</li> </ul> </li> </ul>
7 ~ 11월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현황 : 총 4,482점</li> <li>※ 포스터 416점, 표어 3,524점, 카툰 542점</li> <li>- 1차 심사(10월 13 ~ 14일, 저작권교육원)</li> <li>- 2차 심사(10월 19일, 저작권 교육원)</li> <li>- 시상식(11월 19일, 총 86점 시상)</li> <li>※ 제6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대회 시상식과 공동개최</li> </ul> </li> </ul>
11 ~ 12월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수상작 활용 홍보	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수상작 활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11월 23일)</li> <li>- 수상작 활용 홍보 도안 3종</li> <li>- 수상작 활용 버스 외부광고 실시(11월 25일 ~ 12월 24일)</li> <li>※ 전국 규모 서울 및 5대 광역시 등 주요 도시</li> </ul> </li> </ul>
9 ~ 11월	저작권 캐릭터 개발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캐릭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 선정 및 계약추진(10월 1일)</li> <li>- 저작권 캐릭터 개발(11월 26일, 1종)</li> <li>※ 캐릭터 응용동작, 엠블럼, 캐릭터송·뮤직비디오 포함</li> </ul> </li> </ul>
6 ~ 11월	저작권 노래 활용 및 보급	대국민 및 해외 유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홍보용 DVD 제작·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수량 : 1,000장</li> <li>- 배포처 : WIPO 및 해외 사무소 등</li> </ul> </li> <li>• 저작권 노래 컬러링 및 벨소리 보급(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직원 및 유관기관, 저작권 보호의 날 캠페인과 연계 배포(7~8월)</li> <li>- 가요 프로그램 내 캠페인송 송출(8~11월, 10회)</li> </ul> </li> </ul>

- 프로그램 : SBS 인기가요(매주 일요일, 16:10~17:10)

방송일자	가수	방송일자	비고
8월 22일	엠블랙	10월 3일	씨크릿
8월 29일	세븐	10월 17일	FT아일랜드
9월 5일	FT아일랜드	10월 24일	비스트
9월 12일	씨스타	11월 7일	산이&미쓰에이
9월 26일	f(X)	11월 21일	2PM

- 공중파 TV 프로그램 영상 송출

- 예능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에 송출(11회, 8월 1~27일)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MBC	일요일일요일밤에(1회)	2010. 8. 1(일) 17:20 ~ 19:50
	무한도전(1회)	2010. 8. 7(토) 18:15 ~ 19:50
SBS	하하몽쇼(2회)	2010. 8. 1(일) 10:20 ~ 11:20 2010. 8. 15(일) 10:20 ~ 11:20
	일요일이 좋다 - 영웅호걸(2회)	2010. 8. 1(일) 18:40 ~ 19:40 2010. 8. 15(일) 18:40 ~ 19:40
	맛있는 초대(1회)	2010. 8. 20(금) 21:55 ~ 22:55
	부부쇼! 자기야!(1회)	2010. 8. 20(금) 23:05 ~ 24:05
	강심장(재방송, 1회)	2010. 8. 21(토) 11:45 ~ 12:10
	스타주니어 동아빵(1회)	2010. 8. 21(토) 17:15 ~ 18:15
	놀라운대회 스타킹(1회)	2010. 8. 21(토) 18:30 ~ 19:30

## 10. 등록

## (1)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단위 : 회, 명)

종류	연도	'87~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저 작 물	어 문 저작물	860	127	64	84	64	218	495	625	822	991	1,521	1,792	1,890	1,875	2,309	3,773
음 악 저작물		51	35	1	21	112	290	101	214	248	238	313	362	659	744	987	1,387	5,763
연 극 저작물		-	-	-	-	-	1	6	2	11	5	4	14	3	16	27	25	114
미 술 저작물		756	66	13	50	159	712	1,774	2,842	2,919	2,435	4,816	3,779	3,599	4,278	5,075	4,632	37,905
건 축 저작물		-	-	4	1	78	453	262	184	161	285	145	132	210	99	117	84	2,215
사 진 저작물		6	-	-	1	4	18	43	93	339	736	1,048	3,877	6,350	2,993	378	447	16,333
영 상 저작물		455	29	186	41	20	109	473	287	432	800	732	723	660	247	238	676	6,108
도 형 저작물		25	1	1	6	5	24	49	91	88	19	265	440	564	506	400	742	3,226
편 집 저작물		42	3	2	2	16	106	273	427	658	706	696	796	1,101	1,414	1,079	1,330	8,651
2차적 저작물		-	-	-	-	-	7	99	193	772	846	795	180	252	197	277	451	4,069
프로그램 저작물		29,442	9,736	7,700	7,582	7,836	13,854	11,018	10,062	9,939	10,299	10,528	10,686	10,623	11,190	11,855	12,483	184,833
기 타 저작물		-	-	-	-	-	-	-	1	-	-	-	-	-	-	-	-	1
저 작 인 접 물	실 연	-	-	-	-	-	1	-	1	-	2	61	24	4	93	24	210	
	음 반	162	-	-	-	-	14	37	21	49	82	184	68	36	73	1,366	705	2,797

출판권	편집 저작물	-	-	-	-	-	-	2	-	-	2	-	2	4	-	3	-	13
	어문 저작물	-	-	-	-	-	-	-	-	6	3	5	4	2	3	-	3	26
	미술 저작물	-	-	-	-	-	-	-	-	-	4	-	-	-	-	-	-	4
	2차적 저작물	-	-	-	-	-	-	-	-	-	1	-	-	1	2	2	-	6
배타적 발행권	5	-	-	-	-	1	1	-	7	5	4	13	1	2	1	-	40	
데이터 베이스	-	-	-	-	-	-	-	-	2	14	27	11	38	35	18	86	231	
총 계	31,804	9,997	7,971	7,788	8,294	15,807	14,634	15,042	16,454	17,471	21,085	22,940	26,017	23,678	24,225	26,848	230,055	

## (2) 2010년 등록 통계

### 1) 월별 등록 건수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2,229	2,059	2,234	1,622	1,985	1,752	2,094	2,040	1,197	1,863	2,558	5,215	26,848

### 2)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단위 : 건)

등록의 종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저작권 등록	1,882	1,785	1,998	1,485	1,622	1,556	1,741	1,599	1,063	1,333	2,168	4,785	23,017
저작권 등록사항변경 등록	159	58	53	53	111	55	170	166	58	385	68	198	1,534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31	41	55	53	50	126	110	48	61	82	43	111	811
저작권 질권설정 등록	-	8	1	2	-	3	1	5	-	20	12	17	69
저작권 질권소멸 등록	3	-	-	-	-	-	-	-	-	-	7	-	10
저작권 처분제한 등록	128	164	119	26	28	7	2	2	13	5	2	93	589
저작인접권 등록	-	2	-	1	112	4	30	35	2	6	254	6	452

저작인접권 등록사항 변경등록	-	-	-	1	-	-	16	-	-	-	-	-	17
저작인접권 양도 등록	-	-	-	-	55	-	-	184	-	21	-	-	260
출판권 설정 등록	-	-	1	-	-	1	-	-	-	-	1	-	3
출판권 등록사항 변경 등록	-	-	-	-	-	-	-	-	-	-	-	-	0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	22	1	7	1	7	-	24	1	-	11	3	4	8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 등록	4	-	-	-	-	-	-	-	-	-	-	1	5
데이터베이스 등록사항 변경 등록	-	-	-	-	-	-	-	-	-	-	-	-	0
배타적 발행권 등록	-	-	-	-	-	-	-	-	-	-	-	-	0
총 건 수	2,229	2,059	2,234	1,622	1,985	1,752	2,094	2,040	1,197	1,863	2,558	5,215	26,848

## 11. 법정허락

(단위 : 건)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건 수	-	3	2	1	3	2	1	1	6	7	7	33

## 12. 임치(SW 임치서비스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임치 계약	신규	3	4	4	2	11	18	19	49	62	121	155	151	599
	갱신	-	2	1	2	2	6	19	17	48	65	97	126	385
	사용권자 등록	-	-	-	-	-	44	44	13	21	59	47	53	281
	소계	3	6	5	4	13	68	82	79	131	245	299	330	1,265
기타	최신본임치	-	-	-	-	-	-	5	8	18	14	17	13	75
	기술검증	-	-	-	-	-	-	1	1	1	-	-	-	3
	소계	-	-	-	-	-	-	6	9	19	14	17	13	78
합계	3	6	5	4	13	68	88	88	150	259	316	343	1,343	

## 13. 기타

### (1) SW 지적재산권 종합정보 서비스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연도	19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지재권정보 데이 터베이스 구축		65,289	9,853	11,662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532	101,663
방문자수		-	-	-	-	-	-	-	-	-	-	119,824	119,824
계		65,289	9,853	11,662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120,356	221,487

※ 지재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홈페이지 통합에 따라 데이터 이관(2009년 7월)

※ 방문자수는 2009년 7월부터 집계

## (2) 중소기업 등 SW 관리체계 기반 구축

### 1) 점검용 SW 배포 현황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년 7월	계
점검용 SW 무료배포	5,260	11,021	37,295	29,371	45,491	34,801	26,929	190,168

### 2) 점검용 SW 관리 현황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년 7월	계
Key List	572	210	40	822
상담	122	141	60	323

\* 2007년 초에 Key-list체계 변경으로 2007년부터 통계관리

## 2010 기관별 주요 활동

###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일자	주요 활동
1월 15일	〈태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 주요 사이트 침해 조사 보고서〉 발간
1월 26일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약체결
2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 (주)SBS콘텐츠허브 업무협정 체결
2월 25일	제1회 저작권 포럼 개최
2월 26일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 연구’ 외 연구서 6종 발간
3월 12일	위원회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업무협정 체결
3월 17일	‘저작물 내권리찾기 캠페인’ 실시
3월 26일	제2차 표절위원회(어문, 음악저작물 연구) 개최
4월 16~17일	2010 국정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개최
4월 21일	제2회 저작권 포럼 개최
4월 22일	부산지역 순회조정부 개최
4월 23일	제1차 저작물 감정 워킹그룹 정기회의 개최
5월 12일	제1기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발대식 개최 SW저작권업계 간담회 개최
5월 13~14일	2010 인정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개최
5월 14일	말레이시아 상무부 방한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
5월 26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 컨퍼런스 개최
6월 10일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6월 18일	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
6월 25일	2010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코드아이(CodeEye) 서비스 개시
6월 30일	제3회 저작권 포럼 개최
7월 28일	말레이시아 지재권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저작권 사랑! 이웃 사랑! 일일찾집' 행사 개최
8월 7일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원스톱 서비스 실시
8월 12일	제1차 저작권 교육 포럼 개최
8월 15일	태국 경찰의 불법저작물 시장조사 참여
8월 17~18일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관련기관 저작권 담당자, 저작정보화를 위한 저작권 실무자 워크숍' 개최
8월 18~20일	저작권 청년강사 워크숍 개최
8월 25일	제4회 저작권 포럼 개최
9월 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인터넷 IP Crime 세미나 공동 개최
9월 13일	2010 교과서 발행사 및 편집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개최
9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SBS콘텐츠허브-유튜브, TV 방송 저작물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식 개최
9월 16일	IPTV 등 방송콘텐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협약식 및 세미나 개최
9월 17일	제2차 저작권 교육 포럼 개최
10월 5일	제2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제3차 저작권 교육 포럼 개최
10월 20일	제5회 저작권 포럼(2010 서울저작권 포럼) 개최
10월 21일	대구지역 순회조정부 개최
10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태국 상무부 지적재산권청, 한·태 저작권 협력 포럼 개최 저작권 연극단 '레알 패밀리' 운영
10월 26일	위원회 - 경기도교육청 저작권 업무협정 체결
10월 28일	제5회 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전 시상식 개최
11월 2~5일	WIPO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11월 8일	위원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업무협정 체결
11월 12일	위원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협정 체결

11월 15일	저작권 나눔을 위한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 이벤트 실시
11월 16일	위원회 교육연수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업무협정 체결
11월 18일	SW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기술 세미나 개최
11월 19일	'제6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11월 24일	제5차 저작권 교육 포럼 개최
12월 1일	저작권 만료 저작물, 네이버 서비스 제공
12월 7일	오픈소스 SW 저작권 인식제고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12월 8일	제6회 저작권 포럼 개최
12월 14일	표절(음악분야)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12월 21일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작권 의식조사 실시
12월 28일	'저작권 나눔을 위한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 이벤트' 시상식 개최

## 2. 저작권보호센터

일자	주요 활동
1월 11일	'클린 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인증체계 연구', <CCL과 클린 사이트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간
1월 19일	美대사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방문
2월 24일	일본 문화청(ACA)·저작권정보센터(CRIC) 주최 2010 일본 'Asian Copyright Conference' 참가
2월 25일~31일	스마트폰을 활용한 '클린 캠페인' 실시
3월 23일	제1회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4월 16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서 훈 제4대 이사장 취임
4월 20일~6월 8일	'2010 서울 클린 프로젝트 1차 단속' 실시(472,194점 적발)
4월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5월	<뉴스 저작물 이용활성화 연구 보고서> 발간
6월 1일	'2010년 제2회 저작권 클린 포럼' 개최
6월 17, 22, 26일	2010 남아공 월드컵 '클린 사이트 거리응원 캠페인' 실시
10월 1일 ~ 11월 20일	'2010 서울클린 프로젝트 2차 단속' 실시(47,240점 적발)
11월 5일	WIPO STUDY VISIT - 아시아 2개국 저작권 정책담당자, 저작권보호센터 방문
11월 20일 ~ 12월 19일	대중교통을 이용한 '클린 사이트 홍보캠페인' 광고 및 스마트폰 이벤트' 실시
11월 30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상벽 제5대 이사장 취임
12월 16일 ~ 17일	'2010 클린 사이트 워킹그룹 워크숍' 개최
12월 23일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SMART) 시연회' 개최
12월 25일	'아름다운 이들을 위한 콘서트 특집 - 저작권 클린 콘서트' 개최

### 3. 저작권 유관 학회

####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of Digital Property Law
설립연도	2001년 4월 6일
학회장	이 상 정
학회 연혁	2001년 4월 6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2001년 6월 8일 서울체신청 학회설립 인가 신청 2001년 6월 28일 학회설립 인가 2001년 7월 20일 학회설립 등기 2001년 7월 26일 비영리 사업자등록 2001년 11월 30일 디지털재산법연구 창간호 발행 2002년 2월 28일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집 발행 2004년 5월 30일 송영식 선생 화갑기념집 발행 2005년 12월 25일 양병희 교수 정년기념호 발행 2010년 12월 31일 이상정 선생 화갑기념집 발행
설립 목적 / 기능	인터넷과 디지털환경의 도래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디지털재산이 대량으로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재산은 그 보존과 이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래되기에 가장 적합한 재산이다. 그러나, 디지털재산의 침해에는 비용 및 시간이 거의 들지 않으며, 복제의 질이 원본과 같다고 하는 면에서 디지털재산은 침해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재산을 보호하고 그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디지털재산의 창출을 유도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디지털재산의 거래를 둘러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작성하여 디지털 재산의 제작자와 이를 구입한 소비자의 신속·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재산과 관련된 산업은 새로운 산업이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며, 정보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산업이다. 디지털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또 하나의 법의 임무로 디지털재산법학회는 디지털재산의 보호 및 거래에 관한 연구를 함과 동시에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환경정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2010 활동 내역	<p>(학술세미나 개최)</p> <p>1. Current Issues on IP in Global Perspect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3월 26일(금)</li> <li>◆ 장소 :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501호)</li> <li>◆ 주제 : Current Issues on IP in Global Perspective</li> <li>◆ 주최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홍익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창작파법연구센터</li> <li>◆ 후원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특허법인 다래, 법무법인 화우</li> </ul>

	<p>2. 추계학술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12월 18일(토)</li> <li>◆ 장소 : 홍익대학교 홍문관 10층 MIP 회의실</li> <li>◆ 주최/주관 : (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홍익대학교 창작과법연구센터</li> <li>◆ 제1주제 : 게임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 김병일 (토론 : 한지영)</li> <li>◆ 제2주제 : 편집저작물성을 고려한 게임콘텐츠의 표절여부 판단 / 신재호 (토론 : 김형렬)</li> <li>◆ 제3주제 : 게임콘텐츠의 오픈마켓 유통과 등급분류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황승흠 (토론 : 황성기)</li> </ul> <p>3. 게임법 포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게임 관련 법제 연구</li> <li>◆ 일시 : 매월 1회</li> <li>◆ 후원 : NHN</li> </ul>
발행물	<p>&lt;디지털재산법연구 제9권 통권13호(2010년 12월)&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김병일. 게임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li> <li>2. 신재호. 편집저작물성을 고려한 게임콘텐츠의 표절여부 판단</li> <li>3. 황승흠. 게임콘텐츠의 오픈마켓 유통과 등급분류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li> <li>4. 김근우.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li> <li>5. 김윤명.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li> <li>6. 박준석.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li> <li>7. 유대종. 게임아이템의 청약철회에 관한 소고</li> <li>8. 전성태. 최근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제 동향과 그 시사</li> </ol>
	<p>&lt;연구용역보고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통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이슈와 콘텐츠 창의성 확보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li> </ol>
홈페이지	<a href="http://www.digitallaw.kr">http://www.digitallaw.kr</a>
학회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제2법학관 504호 이상정 교수 연구실 02)961-0741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510호 김병일 교수 연구실 전화: 02-2220-0981

## (2) 한국SW감정평가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영문) Korea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Society
설립연도	2002년 12월 5일
학회장	용 환 승
학회 연혁	<p>2002년 12월 5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p> <p>2003년 4월 15일 비영리법인설립</p> <p>2003년 6월 17일 학회설립 등기</p> <p>2003년 6월 26일 비영리 사업자등록(220-82-05605)</p>

	2005년 6월 30일 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창간호 발행 2009년 10월 25일 논문지 ISSN 번호 취득(ISSN 2092-8114)
<b>설립 목적 / 기능</b>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술 정보를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에서는 감정도구/기법/사례, 감정기법 표준화 방안,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감정의 역할, 프로그램 감정을 위한 SW공학적 접근 방안, 가치평가기법의 모델링방안, SW 가치평가와 담보제도 등을 비롯하여 제 관련 분야를 주제로 하여 학회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의 감정 및 가치평가를 위한 학술활동으로 체계화된 저작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한다.
<b>2010 활동 내역</b>	<b>학술 행사 및 홍보 활동</b>
	<b>발행물</b>
	1.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 일시 : 2010년 6월 18일(금), 14:00~18:00 ◆ 장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1동 세미나실 ◆ 주최 : 한국SW감정평가학회 ◆ 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 일시 : 2010년 11월 19일(금), 14:00~18: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아산공학관 101호 세미나실 ◆ 주최 : 한국SW감정평가학회 ◆ 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학회 논문지 발간(연2회))
	1. 제6권 1호(5월) [SW 감정평가분야] 전병태,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 분석 및 보호 방법 황세운·용환승, 국내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 사례 비교 윤여웅·이상호, 정보보호제품 품질 평가를 위한 리스크 기반의 메트릭 설계 김도완, SW포렌식과 SW감정에 대한 고찰 [정보기술 관리분야] 기장근, 무선망에서의 이동노드 시뮬레이션 모델 연구 김유경·도경구·주영도, 서비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유스케이스 가변성 분석 기반의 SOA 서비스 모델링 양용석·최성은·이규대, NCW에서 상호운용성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화 방안
	2. 제6권 2호(11월) [SW 감정평가분야] 김시열·김용욱,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감정제도에 관한 고찰 이주일·이원석, 데이터베이스 유사도 감정 방안에 관한 연구 권기태, 소프트웨어 시험 기법을 적용한 완성도 감정 이인기·이선숙·최정인·용환승,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 산출방안 연구 [정보기술 관리분야] 정연서·박진섭,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도 개선방안 고찰 이규대, 저작권 구현 소프트웨어의 개발비 산정 기장근, OPNET을 이용한 WiMAX/WLAN MIPv4/v6 성능분석
<b>홈페이지</b>	www.i3.or.kr
<b>학회주소</b>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정보과학관 508호 김도완 교수 연구실 전화: 042-520-5710
<b>연락처</b>	충남 천안시 부대동 공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사무실 이규대 교수 연구실 전화: 041-521-9195

## (3)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설립연도	2006년 4월
학회장	홍 승 기
학회 연혁	2006년 2월 창립총회 2006년 3월 제1회 월례사례연구회 개최 2006년 4월 사단법인 설립인가 - 문화관광부 2006년 4월 제1회 창립SYMPOSIUM
설립 목적 / 기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엔터테인먼트법학 분야 및 관련 분야에 있어서 학술 연구와 회원 교류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교류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법학 분야에 있어서 학문과 산업의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 활동 내역	<p>&lt;월례사례연구회(매월)&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월 '게임머니 환전 무죄 판결 및 관련 법적 쟁점' - 법무법인 에이펙스 이권호 변호사</li> <li>3월 '음반산업에서 360도 딜 계약의 법적 유효성' - 법무법인 주원 Sean C. Hayes 변호사</li> <li>4월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적용과 현실적인 문제점' - 법무법인 신우, 애플오브디아이 대표 박영목 변호사</li> <li>5월 '연세대학교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 공동세미나'</li> <li>6월 '한국 매니지먼트 현황과 과제' - SM 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li> <li>7월 '음악밴드 명칭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li> <li>9월 '드라마 속 역사적 인물과 명예훼손' -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li> <li>10월 '방송환경변화와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슈' - 숙명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도준호 교수</li> <li>11월 '디지털 콘텐츠 유통 본격화를 위한 정책 제언(웹하드 규제 필요성 및 방법을 중심으로)' - CJ엔터테인먼트 이소림 변호사</li> </ol>
	<p>&lt;학술지&gt; - 년1회 발간</p> <p>엔터테인먼트법학 (Entertainment Law Journal)</p>
홈페이지	<a href="http://www.kels.or.kr">http://www.kels.or.kr</a>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1 미성빌딩 5층 법무법인 신우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변호사 홍승기 전화: 02-501-4240

#### (4) 한국인터넷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인터넷법학회
	(영문)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설립연도	2002년 9월 5일
학회장	최 승 원
학회 연혁	2002년 9월 5일 학회 창립 2007년 4월 ~ 2009년 3월 박군성 회장 2009년 4월 ~ 2010년 3월 소재선 회장 2010년 4월 ~ 현재 최승원 회장
설립 목적 / 기능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인터넷법학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발표 및 교류를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을 법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다른 외국과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다지면서 학술의 보급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010 활동 내역	<p>〈정례 학술대회〉</p> <p>1. 정기 춘계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4월 9일(금)</li> <li>◆ 장소 :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li> <li>◆ 주제 : 가상세계의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책의 방향</li> </ul> <p>2. 정기 하계 공동학술대회(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법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6월 30일(수)</li> <li>◆ 장소 :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li> <li>◆ 주제 :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주제) 소셜 미디어 활용전략과 정보보호 대응</li> <li>- (제2주제) 인터넷 융복합 환경에서의 인터넷 법제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ck B-1 무선 인터넷 법제도</li> <li>Track B-2 미래인터넷&amp;클라우드컴퓨팅</li> </ul> </li> </ul> </li> </ul> <p>3. 정기 추계 공동학술대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BK21법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11월 13일(토)</li> <li>◆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li> <li>◆ 주제 :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li> </ul>
	<p>〈공동학술 세미나〉</p> <p>1. 개인정보보호 특별 세미나(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8월 20일(금)</li> <li>◆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2호</li> <li>◆ 주제 :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li> </ul>



	<p>2. 인터넷&amp;정보보호 세미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8월 26일(목)</li> <li>◆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역삼동) 지하1층, 대회의실</li> <li>◆ 주제 : 인터넷상의 상표권침해와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범위 고찰</li> </ul>
<p><b>발행물</b></p>	<p>&lt;학술대회 및 세미나 발표자료집&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0년 한국인터넷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박형신(빅센소프트 부사장), 가상세계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 가상세계의 정책방향 이정현(KISA), 가상세계 산업분야에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항배(대진대학교), 기업 IT 경영관점에서의 보안관계법 개정방향 최경진(경원대학교), 가상세계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입법검토 양재모(한양사이버대학교), 가상세계 산업발전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법안의 문제점과 개정방안</li> <li>2. 2010 한국인터넷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Track B-1 무선 인터넷 법제도 정기봉(연세대학교), 무선랜 활용현황 및 보안적용 실태분석 윤종인(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해외 무선랜 보안 관련 법적규제 오병철(연세대학교), 민간/공공부문 무선랜 보안 관련 정책방향  Track B-2 미래인터넷&amp;클라우드컴퓨팅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 이민영(카톨릭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과 프라이버시 정진명(단국대학교), 미래 인터넷과 소비자보호</li> <li>3. 2010 개인정보보호 특별 세미나,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좋을까!” 자료집 최경진(경원대학교), 개인정보침해 현황, 문제점 및 원인진단 이민영(카톨릭대학교), 개인정보보호기구 국제협력 방안 임강빈(순천향대학교),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CCTV 설치·이용 방안 정준현(단국대학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li> <li>4. 2010 한국인터넷법학회 인터넷&amp;정보보호 세미나 자료집 백강진(수원지법 부장판사), 인터넷상의 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 정찬모(인하대학교),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자의 범위</li> <li>5. 2010 한국인터넷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자료집 이창범(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차재필(한국정보화진흥원),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시사점 지성우(단국대학교), 스마트폰의 등장과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규제방안</li> </ol>
<p><b>홈페이지</b></p>	<p><a href="http://www.itlaw.or.kr">http://www.itlaw.or.kr</a></p>
<p><b>연락처</b></p>	<p>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416호 최승원 교수 연구실 전화: 02-3277-3503, 이메일: korea_ila@naver.com</p>

## (5)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of Copyright Law
설립연도	1985년 3월 16일
학회장	이 상 정
학회 연혁	1985년 3월 16일 학회설립 2001년 2월 21일 사단법인 창립총회 2001년 6월 8일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허가 2001년 7월 2일 사단법인 설립등기 2001년 7월 5일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2001년 9월 20일 비영리 사업자등록 2002년 5월 31일 저작권연구 창간호 발행
설립 목적 / 기능	한국저작권법학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두 자국의 산업발전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열한 국제간 경쟁양상에서 산업자체도 보다 큰 경제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됨을 인식하고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경과 더불어 저작권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감하여 저작권법 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수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저작권관련 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향상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저작권관련 세미나 및 학술연구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해석하고, 기술적 논리와 법률적 논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내외의 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연구와 활동 그리고 의견을 모아 정부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저작권 문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10 학 회 내 역	<p>〈학술 세미나 개최〉</p> <p>1. 춘계 학술세미나 ◆ 일자 : 3월 26일(금) ◆ 장소 :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501호) ◆ 주제 : Current Issues on IP in Global Perspective</p> <p>2. 추계 학술세미나 ◆ 일자 : 11월 27일(토) ◆ 장소 :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 국제회의실 ◆ 주제 : 저작권 소진에 관한 소고 등</p>
	<p>〈포럼 개최〉</p> <p>1. 저작권 전문가 포럼 ◆ 발표 : 허희성 선생님(학회 전임회장) ◆ 일시 : 2010년 6월 11일 오후 3시 ◆ 장소 : 한국저작권연구소(KCRC : 서대문 소재)</p>
발행물	<p>〈연구보고서〉</p> <p>1. 음악포럼 관련(SM, YG, JYP Entertainment / 연구책임자: 김병일 교수) 2. 국내의 ADR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저작권위원회 / 연구책임자: 이상정 교수)</p>

홈페이지	없음
학회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제2법학관 504호 이상정 교수 연구실 전화: 02-961-0741
연락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선정 교수 연구실 전화: 02-2260-3853

## (6) 한국정보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정보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
설립연도	1996년 4월
학회장	최 성 준
학회 연혁	1996년 4월 학회 창립 1996년 4월 제1회 세미나 개최 1997년 6월 제1회 국제심포지움 개최 1997년 12월 정보법학 창간호 발간 매해 1회씩 심포지움 개최(모두 4회의 국제심포지움 개최) 매해 3회씩 세미나 및 매해 5~6회씩 사례연구회 개최 매해 3회씩 <정보법학> 발간 2007년 정보법학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2010년 정보법학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설립 목적 / 기능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 간의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단체 및 정보산업계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0 활동 내역	<p>&lt;세미나 개최&gt;</p> <p>1. 정기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3월 9일</li> <li>◆ 주제 발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논의와 무선통신 감청 - 김성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저작물과 동일성유지권 - 김형렬(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li> </ul>

2. 정기 세미나(심포지움)

- ◆ 일자 : 2010년 6월 26일
- ◆ 주제 발표 : 스마트 인터넷과 법·제도  
아이폰 탈옥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스마트 소프트웨어, SaaS의 법적 이슈 - 손승우 교수(단국대학교)  
인터넷 광고심의에 대한 법적 고찰 -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변호사)

3. 정기 세미나

- ◆ 일자 : 2010년 10월 2~3일
- ◆ 주제 발표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 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와 이후의 나찌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 윤종수 부장판사(인천지법)  
특허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 특허법원의 실무례를 중심으로 - 김용섭 수석부장판사(특허법원)  
대리인 입장에서 본 전자소송 - 전자소송 이용시의 장점 및 이용방법을 중심으로 - 김용갑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자소송의 내용과 쟁점 - 유병현 교수(고려대학교)

4. 정기 세미나

- ◆ 일자 : 2010년 12월 14일
- ◆ 주제 발표 : IP Financing의 현황 - 배동석 차장(LG전자)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국제동향 - 김병일 교수(한양대학교)

(사례연구발표회)

1. 2월 특허청구항의 연결부의 의미와 특허의 허부 - 최승재 교수(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북대학교)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어뷰징(abusing)의 민형사책임 - 구태언 변호사(김앤장)
2. 4월 미끼상품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의 규제 - 미국의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 이경규 교수(인하대학교)  
상표의 사용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3. 5월 거버먼트 2.0(Government 2.0)의 현황과 법적 이슈 - 윤종수(인천지법 부장판사)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해석 - 김관식(대법원 재판연구관, 한남대학교 교수)
4. 7월 제품 일부에 적용되는 특허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연구 - 강윤희 변호사  
전통지식의 보호 방안 - 전현민 검사(서울 중앙지검 형사 5부)
5. 9월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 - 저작권법 제25조와 공공정보제공지침을 중심으로  
- 최진원 연구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인터넷 광고 대체 사건을 통해 본 3D변환 TV와 저작권 보호-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대한 재검토  
-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6. 11월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미국 특허 소송에 있어서의 전문가증인 제도에 관하여 - 이회기 변호사(김앤장)

<p style="text-align: center;"><b>발행물</b></p>	<p>&lt;학술지 발간&gt;</p> <p>1. 정보법학 제14-1호(4월)</p> <p>김병일, 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김원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김형렬, 同一性維持權의 性質          박덕영, 김승민, 웹캐스팅(Webcasting)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국제동향 및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시대의 법적 대응          이경규, 미끼상품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의 규제 - 미국의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규호, 스포츠중계에 관한 法的 爭點          최진원,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p> <p>2. 정보법학 제14-2호(8월)</p> <p>특집논문 - 스마트 인터넷과 법·제도          손승우, 클라우드 서비스와 SaaS의 법적 이슈          오병철,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관계          박성호,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p> <p>[연구논문]          김관식,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 형식(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해석          이충훈,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영철,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망중립성 - 사업자 권한과 국가권력간 균형을 중심으로          유지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Bilski Case의 영향과 과제          최경진, 개인정보등록제도에 관한 연구</p> <p>3. 정보법학 제14-3호(12월)</p> <p>[발표논문]          계승균,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오병철, 3D 변환 TV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을 계기로</p> <p>[연구논문]          김윤명,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          김은기, 온라인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문제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          박준우, 표현의 자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오영우·임종인, 온라인상 저작권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한병영, 방송법 제78조, 제70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p>
<p><b>홈페이지</b></p>	<p><a href="http://www.kafil.or.kr">http://www.kafil.or.kr</a></p>
<p><b>연락처</b></p>	<p>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510호 김병일 교수 연구실          전화: 02-2220-0981</p>

## (7)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학회
	(영문) Korea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ion
설립연도	2008년 1월 17일
학회장	박영길
학회연혁	<p>2008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p> <p>2008년 4월 20일 임원 등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 지식산권중심(知識產權中心)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및 상호학술교류협정 체결(장소 : 중국 무한(武漢))</p> <p>2008년 8월 28일 임원 등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적산권중심 등 방문</p> <p>2008년 9월 24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창립 국제세미나 개최</p> <p>2008년 12월 4일 임원 등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國音像著作權集體管理協會) 등 방문</p> <p>2008년 12월 30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위탁연구 수행(과제명 : 저작자를 위한 사회보조 제도)</p> <p>2009년 5월 8일 임원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산권중심 · 중국화남이공대학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p>
설립 목적 / 기능	한중지적재산권학회는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학술교류 및 협력, 연구회 또는 강연회 개최, 학회지 등 서적 발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0 활동내역	<p>&lt;국제 세미나 참석&gt;</p> <p>1. 4월 17일, 회장 등 임원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산권중심 주최 국제 세미나 참석</p> <p>2. 10월 14일, 회장 등 임원 중국인민대학 주최 법학원 60주년기념 “중국저작권법 백주년 국제포럼” 참석</p> <p>3. 7월 23일, 회장 등 임원 중남재경정법대학 ‘한 · 중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 국제학술대회 참석</p>
	<p>&lt;국제 세미나 개최&gt;</p> <p>◆ 일자 : 2010. 12. 27</p> <p>◆ 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p> <p>◆ 주제 : 한 · 중 저작권 제도의 미래와 발전</p>
홈페이지	없음
연락처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 422호 박영길 회장 전화: 02-416-3641

##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영문) KOREAN SOCIETY OF AUTHORS (KOSA)	
설립연도	1984년 3월	
단체연혁	1984년 5월 19일 문예 및 학술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저작권협회'로 창설 1988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비영리 사단법인 정식출범 1989년 3월 16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1994년 12월 15일 CISAC(세계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 가입 2009년 12월 23일 제10대 권대우 회장 취임	
설립 목적 / 기능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시, 소설, 수필, 논문, 희곡 등의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을 신탁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어 저작권자가 계약상 피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용자들에게는 저작물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0 활동내역	연구 및 홍보 활동	1. 1차 이사회 개최(1월 29일) 2. 정기총회 개최(2월 24일) 3. 세계지적재산권의날 행사 참가(4월 26일) 4. 2차 이사회 개최(12월 9일)
	발행물	1. <저작권> 제79호 발간(4월 1일) 2. <저작권> 제80호 발간(7월 1일) 3. <저작권> 제81호 발간(10월 1일)
	기타	2010년 청소년 저작권자킴이 봉사활동 1기 시작(9월 1일)
홈페이지	www.copyrightkorea.or.kr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20호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전화 : 02-508-0440, 02-508-3127~8	

##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영문)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Association
설립연도	2001년 8월 10일
단체연혁	<p>2001년 8월 10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p> <p>2002년 2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p> <p>2002년 6월 16일 제1대 송기윤 이사장 취임</p> <p>2005년 6월 16일 제2대 송기윤 이사장 취임</p> <p>2005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창간</p> <p>2006년 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미원빌딩 504호로 이전</p> <p>2007년 2월 9일 홈페이지 개설 (www.kbpa.kr)</p> <p>2007년 4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4호로 이전</p> <p>2007년 4월 28일 김기복 부이사장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 공로상 표창</p> <p>2009년 3월 20일 대의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p> <p>2009년 4월 30일 제1기 대의원 선출</p> <p>2009년 5월 14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 3기 임원 선출</p> <p>2009년 6월 15일 제3대 김기복 이사장 취임</p>
설립 목적 / 기능	<p>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의 저작권접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단체로 출발했다.</p> <p>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으로 1999년 7월 1일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방송실연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해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다 체계적인 권리확보 및 권리신장을 위해 한국방송실연자협회를 설립했고, 2003년부터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해당 회원에게 분배를 하는 신탁 업무를 하고 있다.</p>
2010 활동 요약	<p>연구 및 홍보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월 1일 일본 CPRA 방문</li> <li>2. 2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li> <li>3. 4월 14일 제1기 장학생 선발</li> <li>4. 5월 27일 외주제작사 저작권 소유 반대 성명서 발표</li> <li>5. 8월 26일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 토론회 참석, 협회 의견 개진</li> <li>6. 9월 10일 EBS와 3년간 난항 중이던 협상 타결</li> <li>7. 11월 9일 일본 CPRA 직원 협회방문 연수</li> <li>8. 12월 7일 제7회 저작권포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세미나 참석, 협회 의견 개진</li> </ol>
	<p>9. 12월 30일 KBS MBC SBS 2010년 협상 타결</p> 



발행물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18호~22호 발행
홈페이지	http://www.kbpa.kr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6 리버타워 604호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전화: 02-784-7802

### (3) 한국방송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영문) Korean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설립연도	1962년 2월
단체연혁	<p>1962년 2월 15일 한국방송극작가협회 창설(초대 이사장 이서구)</p> <p>1970년 2월 28일 문화공보부 사회단체 등록(등록번호 270호)</p> <p>1976년 10월 24일 협회보 &lt;방송작가회보&gt; 창간</p> <p>1988년 4월 23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득(허가번호 598호)</p> <p>1988년 5월 14일 협회 교육원 개원(초대 원장 이상현)</p> <p>1988년 7월 25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허가 취득(허가번호 26호)</p> <p>1989년 3월 31일 제1회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개최</p> <p>1991년 1월 19일 MBC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1년 5월 10일 KBS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2년 12월 15일 SBS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3년 2월 23일 저작권법 개정 관련 협의 개정안 제출</p> <p>1994년 4월 22일 제1회 저작권 세미나 개최('방송작가와 저작권')</p> <p>1996년 9월 11일 협회 내 각 장르별 연구회 결성</p> <p>1997년 8월 14일 케이블TV PP, SO 사용계약 체결</p> <p>1998년 2월 24일 EBS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8년 7월 28일 PC통신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p> <p>1999년 12월 1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www.ktrwa.or.kr)</p> <p>2000년 3월 24일 한국방송작가협회 50년사 출판기념회</p> <p>2002년 1월 26일 제1회 교육원 TV드라마 신춘문예 시상식</p> <p>2004년 9월 7일 회원 통합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p> <p>2008년 1월 15일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 개관식</p> <p>2008년 2월 22일 제27대 김옥영 이사장 취임</p> <p>2010년 4월 1일 제1회 방송작가 저작권교육 워크숍 개최</p> <p>2010년 6월 30일 장르별 방송언어강좌 개최</p>
설립 목적 / 기능	<p>가. 설립목적</p> <p>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방송 문예의 향상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설립 목적 / 기능</b></p>	<p>나.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작가 저작권 신탁관리</li> <li>2. 월간지 &lt;방송작가&gt;등의 도서 출판</li> <li>3. 외국 방송작가 기구 또는 문화관계 단체 및 인사와의 교류</li> <li>4. 회원 복지 사업</li> <li>5. 회원 및 후진양성을 위한 연수 등 교육사업</li> </ol>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2010 활동 내역</p>	<p><b>연구 및 홍보 활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주제작사 원고료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강구</li> <li>2. 방송사에 드라마 집필 작가의 저작권 보호 존중에 관한 요구</li> <li>3. 외주제작사의 2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리 강화</li> <li>4. 저작물 무단사용과 표절방지를 위한 '저작권 등록' 홍보</li> <li>5. 저작권 이해 증진을 위한 회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 2010년 4월 1~2일</li> <li>◆ 주제 : 저작권 핵심내용과 함께 최근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판례</li> </ul> </li> <li>6. 'TV 단막극'부활 운동성과, KBS, MBC 단막극 재편성</li> <li>7. 한국방송작가협회 정부 콘텐츠 정책자문으로 참여</li> <li>8. 드라마 콘텐츠 공모전 공동개최(중앙일보사)</li> <li>9.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업무제휴 양해각서(MOU) 체결</li> <li>10. 한·일 드라마작가 국제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 2010년 10월 18~20일</li> <li>◆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li> <li>◆ 주제 : 일본 드라마의 세계 - 일본 시장의 신한류 확산은 가능한가</li> </ul> </li> </ol> <p><b>발행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작가(월간 연12회)</li> <li>2. 방송작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li> <li>3. 2010년도 정기총회 자료</li> <li>4. 제22회 한국방송작가상 수상作品集</li> <li>5. 제33회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공모 TV드라마 신인상 수상作品集</li> <li>6.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37기 창작반 졸업作品集</li> <li>7.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38기 창작반 졸업作品集</li> </ol>
<p><b>홈페이지</b></p>	<p><a href="http://www.ktrwa.or.kr">http://www.ktrwa.or.kr</a></p>
<p><b>연락처</b></p>	<p>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01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전화 : 02-782-1696 팩스 : 02-783-3711</p>

(4) 한국복사전송권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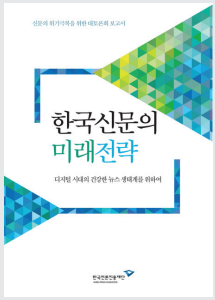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영문)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KRTRA)
설립연도	2000년 7월
단체연혁	<p>2000년 6월 19일 발기위원회, 설립 총회, 설립 이사회 개최, 초대 이사장 취임(이기수)</p> <p>2000년 7월 10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허가 제195호)</p> <p>2000년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문화관광부 허가 제4호)</p> <p>2003년 7월 27일 제2대 이사장 취임(이기수)</p> <p>2003년 10월 17일 도서관보상금 수령 저작권자산권자 단체 지정(문화관광부)</p> <p>2004년 10월 1일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정회원 가입</p> <p>2006년 7월 27일 제3대 이사장 취임(조동성)</p> <p>2007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명칭 변경</p> <p>2008년 3월 13일 학교교육목적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9년 7월 27일 제4대 이사장 취임(조동성)</p> <p>2009년 11월 2일 저작권선진화포럼 출범</p> <p>2010년 1월 31일 보상금 이미지저작물 아카이브 구축 및 검색서비스 개시</p>
설립 목적 / 기능	<p>급변하는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따라 자동복사기기의 급증과 컴퓨터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은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주변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p> <p>그래서 복사와 전송에 관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가 적법, 신속, 간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 협회가 2000년 7월 1일자로 설립되었다.</p> <p>본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업무를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창작을 가능케 하고 출판권자에게는 출판활동의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에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인식이 제고되기도 하며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을 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p>
2010년 연구 및 홍보 활동	<p>1. 교과용도서보상금 관련자 교육 - 총 3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1차-2010년 4월, 2차-2010년 5월, 3차-2010년 9월</li> <li>◆ 대상 : 국정도서 및 인정도서 집필진, 교과용도서 발행사 편집진</li> <li>◆ 주제 :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실무 및 저작권 분쟁사례 질의 · 응답</li> </ul> <p>2. 각 국의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제도 비교 - 수업목적 저작물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2010년 2월 4일 ~ 2010년 2월 28일</li> <li>◆ 연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법 또는 지침, 관련법 등 교육기관 관련 조항에 대한 조사</li> <li>-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권리제한의 범위에 대한 연구</li> <li>- 저작물 이용형태에 있어 무상이용, 보상금, 사용료 등의 대가 및 규모 조사</li> <li>-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교육목적 저작권재산권 제한 범위 규정의 수준에 대한 검토</li> </ul> </li> </ul> <p>3. 저작권선진화 포럼 - 어문분야 참여</p>

발행물	<p>1.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소식지 발행 - 3호(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li> <li>◆ 전자책 유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li> <li>◆ 안방도서관 실현의 과제</li> <li>◆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li> <li>◆ 협회 소식 및 관련단체 동정, 보상금 분배광고</li> </ul> <p>- 4호(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인정 필요성 및 쟁점</li> <li>◆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li> <li>◆ 공중용 복사기의 저작물 이용 문화 - 공공기관 · 기업체가 모범을 보여야</li> <li>◆ 수업목적상 보상금 제도</li> <li>◆ 협회 소식 및 관련단체 동정, 보상금 분배광고</li> </ul>
기타	<p>1. 2010년도 복사 실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1월 ~ 8월</li> <li>◆ 목적 : 복사사용료의 투명한 분배를 위한 분배 자료 확보</li> <li>◆ 결과 : 보고서 발간 및 직접 분배 기준으로 활용</li> </ul> <p>2. 호주 저작권단체의 수업목적 저작물 징수 및 분배 자료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8월 21일 ~ 8월 28일</li> <li>◆ 조사 대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L(Copyright Agency Limited)</li> <li>- APRA-AMCOS</li> <li>- Screenrights</li> </ul> </li> <li>◆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목적 저작물 징수 및 분배 자료 조사</li> <li>- 어문, 음악, 방송, 영상 분야에서의 저작권 징수 및 분배</li> </ul> </li> </ul>
홈페이지	<a href="http://www.krtra.or.kr">http://www.krtra.or.kr</a>
연락처	<p>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58 대한빌딩 4층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전화: 02-2608-2036</p>

##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문)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설립연도	1954년 5월
단체연혁	1992년 5월 영협정관개정으로 (사)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로 개칭 1992년 7월 협회 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개설 2000년 8월 시나리오 창작지원 사업 "시나리오뱅크"실시 2002년 11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사단법인 등록
설립 목적 / 기능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제반 이용 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시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련 제반사업 2. 시나리오작가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신인작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사업 4.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연구 기관지 및 영화 관련 출판사업 6. 시나리오의 학술적 연구 및 제반자료의 수집, 조사, 통계 7. 시나리오 문예의 진흥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 개최 8. 회원을 위한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9. 기타 본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2010 활동 내역	1. 교육원 35기, 36기생 수료 2. 영화화 작품 - <평행이론> 한중애 작가 - <의형제> 장훈 감독 - <웨딩드레스> 유영아 작가 - <국가가 부른다> 이진매 작가 - <방자전> 김대우 감독 - <로드 넘버원> 한지훈 작가 3. 입상 고정운, 민병우 - 영화시나리오마켓 2010년도 1분기 본심 수상 이혜경 - CJ아지트 'PROJCT S'(신인 영화인 지원 프로그램) 당선 문자영, 김관빈 - 경북시나리오공모 당선 진익순 - 영진위 애니메이션공모전 최우수상
홈페이지	<a href="http://www.scenario.or.kr/">http://www.scenario.or.kr/</a>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서애로 27 캐피탈빌딩 202호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전화 : 02-2275-0566

## (6)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명	(한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문) Korea Press Foundation
설립연도	2010년 2월 1일
단체연혁	2010년 2월 1일 '한국언론재단'(1999), '신문발전위원회'(2005), '신문유통원'(2006)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 출범
설립 목적 / 기능	<p>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2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에 의하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3개 기구의 통합으로 출범하였으며, 미디어산업 지원기구로서 디지털시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품격 뉴스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뉴스 유통 인프라 구축, 읽기문화 활성화를 통해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p> <p>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위한 사업,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 하고 있다.</p>
2010 활동내역	<p><b>연구 및 홍보 활동</b></p> <p>1.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전(UCC, 신문광고) 개최</p> <p>2. '저작권과 언론법' 강좌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10월 18일 ~ 19일</li> <li>◆ 장소 : 프레스센터 12층</li> </ul>
	<p><b>발행물</b></p> <p>'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연구보고서 '한국신문 미래전략' 대토론회 보고서</p> 
홈페이지	<a href="http://www.newskorea.or.kr">http://www.newskorea.or.kr</a> <a href="http://www.kpf.or.kr">http://www.kpf.or.kr</a>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재단 전화: 02-2001-7114

## (7) 한국영상산업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영문) Korea Movie and Video Industry Association (KMVA)
설립연도	1999년 8월 4일
단체연혁	1998년 가칭 한국비디오제작자 협의회 1차 회의 1999년 (사)한국영상협회 법인설립허가 2003년 비디오(DVD)연감 발행(격년발행) 2005년 (사)한국영상산업협회로 명칭 변경,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2006년 감상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업무 시행 2007년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 참여 2009년 굿다운로더 캠페인 운동본부 지원 및 운영위원 참여 2010년 OSP 소송 및 합의
설립 목적 / 기능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영화)의 저작권리자인 투자·배급사 및 홈 엔터테인먼트 제작·배급사들이 주요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기존 한국 영상음반협회에서 영상물의 차별성과 특수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영상분야를 분리하여 1998년 가칭 한국비디오제작자 협의회로 출범하였으며, 1999년 4월 20일 한국 비디오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비디오물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영상저작물(영화)의 권리 보호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1000년 (사)한국영상협회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5년에는 (사)한국영상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국내 영상저작물(영화)의 보호와 발전, 유통활성화를 도모하는 유일한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저작물(영화)에 대한 공연권리를 신탁관리하며, 저작권리의 보호와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 활동내역	연구 및 홍보 활동 1. 3월, 신규 회원사(투자, 배급사) 및 신입 이사 영입 2. 3월, 특수한유형의 OSP 소송 및 합의 3. 6월, 협회 내 분과 설립 - 1분과 : 영화배급, 2분과 : 홈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a href="http://www.kmva.or.kr">http://www.kmva.or.kr</a>
연락처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23 미진빌딩 2층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전화 : 02)3452-1001

##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문)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설립연도	1994년 2월
단체연혁	<p>1994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창립총회</p> <p>2000년 스크린쿼터감시단 분리 독립</p> <p>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LAPF) 가입</p> <p>2004년 제1회 한·중·일 프로듀서 교류 및 포럼 개최(~2006년)</p> <p>2005년 문화관광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p> <p>2007년 한국영화산업노조와 산별교섭 조인</p> <p>200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필름과 MOU 체결</p> <p>2007년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창립</p> <p>2007년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총회 (~현재)</p> <p>2009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온라인불법복제 관련 합의</p>
설립 목적 / 기능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994년에 창립한 한국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세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와 부가판권시장 활성화,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영화산업 안정화와 제작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산업적 대안을 마련 중이다.
2010 활동내역	<p>연구 및 홍보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화산업 구조합리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연구</li> <li>2. 영화 저작권 보호사업 및 불법복제 긴급대응</li> <li>3. 극장요금 등 영화산업 합리화 정책 활동</li> <li>4. 영화 온라인 부가유통시장 정상화 사업</li> <li>5. 영화 온라인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 센터 운영</li> <li>6. 제5회 APN 컨퍼런스</li> <li>7. 영화인캠페인 상영회</li> </ol>
홈페이지	<a href="http://www.kfpa.net">http://www.kfpa.net</a>
연락처	서울시 중구 수표로 28 보아스빌딩 503호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화: 02-2267-9983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영문)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설립연도	1988년 8월 18일
단체연혁	<p>1988년 창립총회</p> <p>2000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p> <p>2008년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콘서트 “소리에서, 소리로, 소리까지 i”공연 개최</p> <p>2008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p> <p>2008년 법인명 변경(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p> <p>2008년 대의원제 확대 시행</p> <p>2009년 음실련 20년사 발간</p> <p>2009년 징수액 100억원 돌파</p> <p>2009년 창립 20주년기념식 및 제9회 실연자대상 시상식개최</p> <p>2009년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p>
설립 목적 / 기능	<p>가. 설립목적</p> <p>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약칭 ‘음실련’)는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연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예술활동의 증진과 실연자의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률 제3916호 저작권법에 규정된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의 관리를 위하여 1988년 6월 4일 창립하였다.</p> <p>나.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악실연자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 옹호사업</li> <li>2. 국내외 음악실연에 관한 조사·연구</li> <li>3. 국내외 음악문화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li> <li>4. 음악실연자의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직업능력 개발 및 활동지원</li> <li>5. 음악실연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발굴 포상</li> <li>6. 음악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신탁관리업무</li> <li>7. 저작권관련 법령상의 음악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수령 및 분배업무</li> <li>8.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실연 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사업</li> <li>9. 음악실연자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li> <li>10. 기타 음실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2010 활동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FKMP).일(CPRA)간 음악실연자 보호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li> <li>2. 2010년 대의원 및 임직원 워크샵 개최</li> <li>3. 세계실연가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 (SCAPR) 회원가입</li> <li>4. 노래반주기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li> <li>5. 권리찾기 캠페인 홍보 C.F 방송</li> <li>6. 음실련(FKMP)-예단협(CPRA/Geidankyo) 교환 연수 진행</li> <li>7. 음악실연자 지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li> <li>8.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li> <li>9. 실연자 권리찾기 캠페인(저작권접권 홍보) 진행</li> </ol>

<b>발행물</b>	1. 회보 <음실련 소식> 통권 제13호~제15호 발간 2. 음실련 소개 동영상 DVD 제작 3. 실연자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음악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발간
<b>홈페이지</b>	<a href="http://www.fkmp.kr">http://www.fkmp.kr</a>
<b>연락처</b>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화 : 02-745-8286, 팩스 : 02-766-1034

##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b>단체명</b>	(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문)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b>설립연도</b>	1964년 3월
<b>단체연혁</b>	1964년 3월 8일 발기인회 소집 -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7명) 등 11명 1964년 3월 15일 협회 창립총회 - 손목인 초대회장 당선 (총회원 56명) - 순수(2명), 국악(5명), 동요(11명), 대중(38명) 1964년 6월 19일 협회 설립인가 (문편발 제1732호) 1978년 2월 11일 제15차 정기총회 - 정회원, 준회원 구분 1986년 7월 20일 협회 회보 <음악저작권> 창간 1987년 4월 10일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준회원 가입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 취득 1988년 10월 1일 전국 16개 지부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 1995년 4월 25일 CISAC 정회원 승격 1996년 9월 11일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 1997년 6월 14일 회관건립부지 구입(대지 약 239평) 등기 완료 2000년 4월 7일 협회 회관 준공 및 입주 2004년 10월 18~22일 2004 CISAC 세계총회 개최 2009년 12월 5일 1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2009년 12월 23일 임원 개선 임시 총회 - 제 21대 신상호 회장 당선 2010년 12월 31일 저작권 사용료 1,000억 원 달성
<b>설립 목적 / 기능</b>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복제권·대여권 등을 관리하며,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통해 음악문화 발전에 힘써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불법 음악의 제조, 유통, 판매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국가 문화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 문화강국, 경제강국의 기틀을 세워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0 1 0 학 년 내 적	연구 및 홍보 활동	<p>1.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체결</p>  <p>2. 회원 '저작권 담보대출'지원 확대 3. 작품가집계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4.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 개최 5. CISAC 아태위원회 정례회의 개최</p>  <p>6. KOMCA 소식지 개편 7. 제3회 음악저작권 보호 작품 공모전 8. 스타벅스, KT 대상 저작권소송 승소</p>
	발행물	회보 <음악저작권> 발간 - 격월간 연 6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komca.or.kr">http://www.komca.or.kr</a>	
연락처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전화 : 02-2660-0400(대), 팩스 : 02-2660-0401(대)	

##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영문) Korean Association Of Phonogram Producers
설립연도	2001년 9월 5일
단체연혁	<p>2001년 9월 5일 창립총회</p> <p>2001년 11월 17일 사단법인 인가 취득(문화체육관광부)</p> <p>2001년 12월 27일 저작권접권 관련 보상금징수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3년 3월 17일 신탁관리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3년 7월 1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유료화 추진</p> <p>2004년 1월 1일 협회보 &lt;음원가족&gt; 발간</p> <p>2005년 9월 7일 벅스(BUGS) 서비스 전면 유료화 유도</p> <p>2007년 3월 14일 디지털음원유통 국제 표준화 기구 DDEX 가입</p> <p>2007년 6월 13일 ECL 제도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p> <p>2007년 8월 24일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한국저작권위원회, KBS,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p> <p>2007년 12월 6일 불법음원 근절 국민운동본부 공동 발족(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엠넷미디어)</p> <p>2008년 1월 31일 국내음악저작물 통합메타데이터 구축</p> <p>2008년 3월 13일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8년 4월 1일 국내 음악저작물 표준음악저작권 관리번호(ICN) 발급 및 배포</p> <p>2008년 11월 21일 웹하드 협의체(DCNA) 1차 유료화 합의</p> <p>2009년 7월 1일 음악분야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포럼 운영</p> <p>2009년 9월 14일 판매용 음반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9년 11월 1일 음악콘텐츠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번호(UCI) 등록기관 선정</p> <p>2009년 12월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협약체결</p> <p>2010년 3월 10일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지원사업 음악분야 구축완료</p> <p>2010년 3월 31일 외국음악저작권 관리번호 체계 구축 완료</p> <p>2010년 5월 28일 저작권선진화포럼,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 개최</p> <p>2010년 12월 29일 4단체(음제협, 음저협, 음콘협, 음실련)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개최</p> <p>2010년 12월 31일 내부정보관리시스템(KIS) 구축 완료</p>
설립 목적 / 기능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신장을 통해 이용자도 하여금 양질의 음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대응하며, 저작권 음악 산업에 발전을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2010 활동 내역	<p>연구 및 홍보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지원사업 음악분야 구축완료(3월 10일)</li> <li>2. 외국음악저작권 관리번호 체계 구축 완료 (3월 31일)</li> <li>3. 저작권선진화포럼,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 진행 (5월 28일)</li> <li>4.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사업 이관 작업 진행(12월 1일)</li> <li>5. 4단체(음제협, 음저협, 음콘협, 음실련)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진행 (12월 29일)</li> </ol>

	발행물	1. 회보 <음원가족> - 연 2회 발행 - 주요 음악업계 트렌드 뉴스 및 기고문 전달  2. 2010년도 제 13차 정기총회 자료 제작
	기타	1. 협회 슬로건 선정 및 사용범위 확정 (1월 3일) <b>음악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세상 ●●●</b>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만들어갑니다 ●●●
	홈페이지	<a href="http://www.kapp.or.kr">http://www.kapp.or.kr</a>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2 서원빌딩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전화 : 02-3270-5900, 팩스 : 02-711-9735

## (12)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체명	(한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문)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설립연도	2009년 5월
단체연혁	<p>2008년 8월 공공기관 2차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p> <p>2009년 1월 13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국회의결</p> <p>2009년 2월 6일 개정법률 고시</p> <p>2009년 2월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발족</p> <p>2009년 4월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초대 이재웅 원장 취임</p> <p>2009년 5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p> <p>2009년 6월 9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개소</p> <p>2009년 11월 9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개소(역삼동)</p> <p>2010년 7월 1일 스토리창작센터 개소</p>
설립 목적 / 기능	<p>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5월 7일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1조에 의거하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p> <p>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p> <p>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킬러콘텐츠를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공공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위탁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p>
2010 활동 내역	<p>(세미나 및 포럼)</p> <p>1.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활성화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1월 26일</li> <li>◆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li> </ul>
	<p>연구 및 홍보 활동</p> 

	<p>2.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10월 30일</li> <li>◆ 장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li> </ul>  <p>3.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작사례'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12월 23일</li> <li>◆ 장소 : 문화콘텐츠센터 콘텐츠홀</li> </ul>
발행물	<p>1. &lt;공공 콘텐츠 활용 가이드&gt; 연구 보고서  2. &lt;게임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표절기준 마련 기초연구&gt; 보고서</p>
홈페이지	<p><a href="http://www.kocca.kr">http://www.kocca.kr</a></p>
연락처	<p>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전화: 02-3153-1114</p>

## 5. 저작권 유관 협회

###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영문)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SPC)
설립연도	2000년 5월
단체연혁	<p>1993년 3월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위원회 설립</p> <p>2000년 5월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설립 - 김정 초대 회장 선임</p> <p>2000년 11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식지 '소프트웨어저작권' 창간</p> <p>2001년 6월 SRC(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사업 실시</p> <p>2002년 3월 SCS(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인증제) 실시</p> <p>2002년 11월 온라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서비스 '체키(Checki)' 실시</p> <p>2003년 4월 전국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 실시</p> <p>2004년 2월 제5회 정기총회 - 최현규 회장 선임</p> <p>2004년 7월 SPC 회장단 미무역대표부(USTR) 방문 통상 현안 논의</p> <p>2005년 3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p> <p>2005년 4월 온라인 무료 소프트웨어 점검 서비스 'Click' 오픈</p> <p>2005년 6월 SM(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실시</p> <p>2005년 9월 소프트웨어발전센터 설립</p> <p>2006년 3월 영국 FAST(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와 MOU 체결</p> <p>2006년 3월 제1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2급 자격검정 실시</p> <p>2006년 10월 소프트웨어비즈니스센터 오픈</p> <p>2006년 11월 '제1회 SW 저작권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p> <p>2007년 2월 SDC(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증 서비스) 실시</p> <p>2007년 4월 초등학교 대상 '정품이 흐르는 교실' 실시</p> <p>2007년 11월 중국 CSA(China Software Alliance) 및 일본ACCS (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와 MOU 체결</p> <p>2008년 2월 제9회 정기총회 개최 - 김영만 회장 선임</p> <p>2008년 7월 제1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1급 자격검정 실시</p> <p>2009년 6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 개최</p> <p>2009년 7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서약식 실시-구로디지털단지</p> <p>2009년 11월 청와대 IT 특보 초청 특별 세미나 개최</p> <p>2010년 3월 범국민저작권보호를 위한 '2010 Copy Zero 캠페인' 진행</p> <p>2010년 5월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 '정품이 흐르는 교실' 개최 (부산/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동)</p> <p>2010년 5월 고등학교 대상 '법생활 골든벨 대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공동)</p> <p>2010년 6월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와 업무협약</p> <p>2010년 8월 저작권보호활동 공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p> <p>2010년 12월 초등학교 대상 저작권 퀴즈대회 '2010 저작권 골든벨'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공동)</p>



	<p>국내 SW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단체로, SW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SW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SW 가치 인식 제고, SW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SW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p> <p>지난 1993년 'SW저작권 보호위원회'란 이름으로 설립, 그 후 2000년 5월 현재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p> <p>SW 자산관리 컨설팅,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 SW 저작권 보호 활동 및 불법복제 조사활동, 교육·홍보·세미나·캠페인 개최 및 간행물 발간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2010 활동 내역</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학술 행사 및 홍보 활동</p>	<p>1. 2010년 3월 Copy Zero 캠페인 선언식</p>  <p>2. 2010년 4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행사 거리 캠페인</p>  <p>3. 2010년 '정품이 흐르는 교실' 진행</p> 

4. 2010년 6월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교육청 공동 법생활 골든벨 대회 개최



5.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6. 2010년 11월 한미 FTA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안 위한 한·미·일 국제 세미나 개최

7. 2010년 12월 초등학교 대상 '2010 저작권 골든벨 대회' 개최



**발행물**

1. 위탁연구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저작권법상 양벌규정 단서에 관한 연구

- ◆ 내용 : 양벌규정 단서와 관련한 SW 관리의 법적 기준 마련
- ◆ 기간 : 2009년 12월 ~ 2010년 7월
- ◆ 수행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일 한양대학교 교수)
- ◆ 발간일 : 2010년 7월

-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에 관한 연구

- ◆ 내용 : 한미 FTA 관련 친고죄 유지를 위한 법률 연구
- ◆ 기간 : 2010년 8 ~ 12월
- ◆ 수행 : 이대희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발간일 : 2010년 12월

-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 ◆ 내용 : SW 등 문화콘텐츠의 불법복제 피해와 경제효과의 포괄적 분석
- ◆ 주관 : SPC, BSA 공동
- ◆ 발간일 : 2010년 3월
- ◆ 수행 : 서강시장경제연구소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수)

	<p>- SW 접근성 진단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회원사 제품 SW 접근성 진단 보고서, SW접근성 지침 및 체크리스트</li> <li>◆ 주관 : SPC,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공동</li> <li>◆ 발간일 : 2010년 5월</li> <li>◆ 수행 : 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 외</li> </ul> <p>2. 기업이 알아야 할 100가지 SW저작권 상담사례 I · II 개정판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li> <li>◆ 발간 : 2010년 2월</li> </ul> <p>3. 소프트웨어 저작권 판례집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SW 저작권 관련 판례, 판례 설명 및 의의</li> <li>◆ 발간일 : 2010년 9월</li> </ul> <p>4.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7호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논문 수록</li> <li>◆ 발간일 : 2010년12월</li> </ul> <p>5. &lt;SW 저작권&gt; 협회보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SPC 및 회원사 뉴스, IT/SW 및 저작권 관련 정부 및 언론사 담당자의 기고문, IT/SW 및 저작권 관련 산업의 최근 동향 등</li> </ul>
<p>기타</p>	<p>1. 법무부 공동 중고등학생용 저작권 만화책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3월</li> <li>◆ 내용 : 2009년 MOU에 따라 법무부와 공동 제작 중·고등학생용 저작권 만화책 &lt;저작권 동호회 최충우돌 경험기&gt; 제작</li> </ul> <p>2. 서울경찰청 공동 초등학생용 저작권 만화책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서울경찰청 누리캅스 후원으로 공동제작 초등학생용 저작권 만화책 &lt;꼬마핑귤 당당이와 저작권 수호대&gt; 제작</li> </ul>
<p>홈페이지</p>	<p><a href="http://www.spc.or.kr">http://www.spc.or.kr</a></p>
<p>연락처</p>	<p>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 6,7층 전화 : 02-567-2567</p>

## (2) 한국음악출판사협회

<p>단체명</p>	<p>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p> <p>영문 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KMPA)</p>
<p>설립연도</p>	<p>1998년</p>
<p>단체연혁</p>	<p>1998년 2월 음악출판사 단체 설립</p> <p>2000년 4월 30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창립총회 개최, 제1대 황인서 회장 취임</p> <p>2000년 9월 18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p> <p>2001년 3월 9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창단</p> <p>2005년 5월 12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KMPA)와 음악출판사협회 (MPA) 통합</p> <p>2005년 5월 12일 제3대 황인서 회장과 방기남 회장이 공동 회장 취임</p> <p>2006년 12월 12일 임원 보선 및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회원 총회 개최 (조규철 회장 선출)</p> <p>2006년 12월 12일 제4대 조규철 회장 취임</p> <p>2007년 7월 6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정관 변경 문화관광부 허가 (법인 명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전 :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li> <li>• 변경 후 : 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li> </ul> <p>2009년 10월 23일 제5대 유영민 회장 취임</p>
<p>설립 목적 /기능</p>	<p>한국음악출판사협회(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는 1998년 2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출판사 단체이다. 본 협회는 국내 및 국외의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음악출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악곡 등록, 악곡 관리, 악곡 홍보, 악곡 사용 라이선스, 악곡 사용 영역 확대, 악곡 침해 방지 등을 통한 사용 확장 및 개발을 지향하는 음악출판사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 협회 관계자 및 다양한 사용자 등과 업무 협의 및 교류를 통해 음악 출판사 및 작가의 지위 향상 등 음악저작권의 보호와 음악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p>
<p>2010 활동내역</p>	<p>1. 일본음악정보센터(JMIC)-재단법인 음악 산업·문화 진흥 재단(PROMIC) 심포지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3월 18일</li> <li>◆ 주제 : 한·일 영상물 콘텐츠 교류와 관련된 음악저작권에 대해서</li> <li>◆ 협력 : 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li> <li>◆ 협력 부분 : 본 협회 허영아 이사(발제), 신정화 이사(토론 패널), 이정윤 사무국장(진행)</li> </ul> <p>2. Music Matters in Hong Kong - MPA Japan(일본음악출판사협회) 스폰 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5월 26일</li> <li>◆ 주제 : 아시아의 음악 비즈니스에 대하여</li> <li>◆ 발제/패널 : 본 협회 유영민 회장</li> <li>◆ 세부 주제 : 2009 개정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도' 및 클린 사이트 관련</li> </ul> <p>3.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8월 15일</li> <li>◆ 주제 : 영화를 중심으로 한 음악저작권의 현재와 미래</li> <li>◆ 발제/패널 : 본 협회 유성우 이사, 허영아 이사</li> </ul>

2 0 1 0 발 매 내 년 연	학 술 행 사 및 홍 보 활 동	<p>4. 음악출판사협회 워크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10월 22일</li> <li>◆ 목적 : 본 협회 회원사 간 유대감 고취 및 소속감 강화</li> <li>◆ 장소 : 용인 자연 휴양림</li> </ul> <p>5. 미템(MIDEM, 세계음악컨본시장)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2010년 1월 24 ~ 26일</li> <li>◆ 장소 : 프랑스 칸</li> </ul> <p>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임 회장파 이사진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4월 29일</li> <li>◆ 주제 : 향후 음악출판사와 저작권협회의 발전 방안 논의</li> <li>◆ 참석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 및 본 협회 유명민 회장 등 13인</li> <li>◆ 논의 내용 : 음악출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 및 음악출판사의 정회원 문제, 자료 DB의 국제표준화 등</li> </ul> <p>7. CISAC(국제 저작권관리단체 연맹)의 아시아지역 대표와 이사진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9월 1일</li> <li>◆ 주제 : 작품가점의 문제점 및 현황, 음악출판사의 정회원 자격 문제, 악곡 등록 기준(CWR), 타국의 악곡관리 시스템 사례</li> </ul> <p>8. CISAC Congress(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대표단)과 이사진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10월 21일</li> <li>◆ 주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시장 점유율 현황, CWR(악곡등록기준) 도입 진행 현황, 타 국가 저작권징수단체에서의 한국곡 징수 및 분배 현황 등 논의</li> </ul>
	기 타	<p>〈연구위원회〉</p> <p>3월 한국 드라마의 일본 내 DVD 관련 사용료 징수 연구</p> <p>5월 13일 한국 드라마의 일본 내 DVD 관련 사용료 징수 및 팬미팅 콘서트 DVD 발매 관련 사용료 징수 연구</p> <p>6월 22일 미주 지역의 한국 저작물 관리 연구</p> <p>8월 27일 미국 내 저작권관리협회 및 미국 디지털 음악 스토어 관련 저작권료 흐름 및 현황 연구</p>
홈 페이지	www.koreampa.org 및 www.koreampa.or.kr (홈페이지 제작 준비 중)	
연 락 처	<p>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4 해전빌딩 601</p> <p>전화: 02-514-8232 / 팩스: 02-566-9710</p>	

###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단체명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영문 Creative Commons Korea
설립연도	2009년 1월 23일
단체연혁	<p>2009년 1월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출범</p> <p>2009년 2월 'CC Asia Commons 2009' 참가 (마닐라, 필리핀)</p> <p>2009년 5월 개발자를 위한 'CC 열린 세미나' 개최</p> <p>2009년 6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과의 MOU 체결</p> <p>2009년 6월 CC Tech Summit 참가 (토리노, 이탈리아)</p> <p>2009년 8월 '오픈디자인 SALON' 개최</p> <p>2009년 11월 'RE-Mix 컨테스트', 'How to Open Business 세미나' 개최</p> <p>2009년 12월 '3회 CC Korea Hope Day' 개최</p> <p>2010년 2월 CC Korea 정기총회</p> <p>2010년 4월 CC Korea Youth 모집</p> <p>2010년 6월 2회 CC Korea 국제컨퍼런스 'Open for Innovation' 개최</p> <p>2010년 11월 2010 회원모집</p>
설립 목적 / 기능	<p>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가치는 문화와 지식의 창작자, 사용자, 유통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실행에 의해서만 퍼져나가는 데 있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자신의 의지로 오픈하고, 공유된 창작물을 향유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문화콘텐츠와 지식콘텐츠 생태계를 생각하는 모두의 참여를 위한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상업적인 자본이 들어간 창작물에게도 무조건적인 공개와 공유를 주장하지 않고, 창작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환경과, 창작자가 꾸준히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한다.</p>
2010 활동내역	<p>1. 6월 4일~5일 '제2회 CC국제컨퍼런스 &amp; 아시아퍼시픽 미팅'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 Asia 활동가를 국내에 초대하여 서로의 경험과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국내에 다양한 Asia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CCL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함.</li> </ul> <p>2. 4~11월(매달 진행)CC 캠페인 - '디지털 지식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자, 공공기관, 학교 등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이 콘텐츠에 CCL을 적용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캠페인</li> </ul> <p>3. 3~11월(매달 진행)'CC Salon'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L을 적용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자유로운 포럼</li> </ul>
	발행물
홈페이지	<a href="http://cckorea.org">http://cckorea.org</a>
연락처	<p>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7 신한빌딩 2층 201호</p> <p>전화 : 070-7618-0321</p>

## 2010 저작권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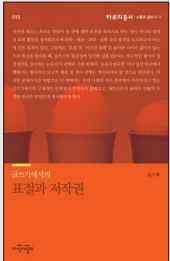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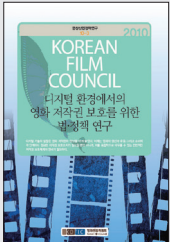

## 1. 박사학위 논문

	논문명	저자	대학
1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DRM 상호 호환기술에 관한 연구	강호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	문화공공성과 저작권 : 저작권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평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3	초등학생의 정보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놀이 교수·학습모형 개발	박귀자	부경대학교 대학원
4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정책의 분석모형	박순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5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음악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방정환	경희대학교 대학원
6	2차적저작물 작성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연구 : 공정이용과 저작권격권을 중심으로	임덕기	서강대학교 대학원
7	지능형 저작권 보호를 위한 파일 포맷 변화에 효과적인 동영상 유사성 판단 알고리즘	정명범	송실대학교 대학원
8	공연예술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연극연출을 중심으로	정영미	상명대학교 대학원
9	방송용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비디오 워터마킹 및 암호화의 FPGA 구현에 관한 연구	정용재	부경대학교 대학원
10	저작권의 권리남용에 관한 연구	정은봉	국민대학교 대학원
11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손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정충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12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차상욱	한양대학교 대학원
13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기법의 표준 모델 연구	차태원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14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최두진	조선대학교 대학원

## 2. 관련 서적

연번	표지	저자	서명	출판사 및 출판일
1		이병일 김기원	나홀로 하는 저작권 등록	진원사 2010년 8월 27일
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년 11월 20일
3		강신하	저작권법 : 이론과 실무	진원사 2010년 11월 30일
4		가케 조지 일본미디어연구회 역	알기 쉬운 음악저작권법	시간의 물레 2010년 11월 11일
5		김기태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도서출판 이채 2010년 10월



6		김기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지식의 날개 2010년 2월 10일
7		최은희 · 박정호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남두도서 2010년 2월 10일
8		나낙균	방송영상저작권	인제대학교 출판부 2010년 2월
9		장재욱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영화진흥위원회 2010년 12월 31일
10		유일상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사회평론 2010년 3월

## 주요기관 주소록

구분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표)	팩스
주요기관	문화체육 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a href="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a>	02-3704-9114	02-3704-9154
	한국저작권 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 울강남우체국 6~7층 (135-240)	<a href="http://www.copyright.or.kr">http://www.copyright.or.kr</a>	02-2660-0000	02-2660-0019
	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 15 문화콘텐츠센터 10층 (121-835)	<a href="http://www.kofoco.or.kr">http://www.kofoco.or.kr</a>	02-1588-0190	02-3153-2708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소프트웨어발전재단 6,7층 (135-280)	<a href="http://www.spc.or.kr">http://www.spc.or.kr</a>	02-567-2567	02-567-2933
유관학회	한국디지털 재산법학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 희대학교 제2법학관 504호 이 상정 교수 연구실(130-701)	<a href="http://www.digitallaw.kr">http://www.digitallaw.kr</a>	02-961-0741	02-961-0615
	한국SW감정 평가학회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정보과학관 508 호 김도완 교수 연구실 (302-735)	<a href="http://www.i3.or.kr">http://www.i3.or.kr</a>	042-520-5710	070-4362-6312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1 미 성빌딩 5층 법무법인 신우 홍 승기 변호사(135-821)	<a href="http://www.kels.or.kr">http://www.kels.or.kr</a>	02-501-4240	02-501-7831
	한국인터넷 법학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법학관 416호 최승원 교수 연구실(120-750)	<a href="http://www.itlaw.or.kr">http://www.itlaw.or.kr</a>	02-3277-3503	02-6008-8556
	한국저작권 법학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 희대학교 제2법학관 504호 이 상정 교수 연구실(130-701)	없음	02-961-0741	02-961-0615
	한국정보 법학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510호 김병일 교수 연구실(133-791)	<a href="http://www.kafil.or.kr">http://www.kafil.or.kr</a>	02-2220-0981	02-2220-2784
	한중지적 재산권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87 잠 실리시온 422호 박영길 회장 (138-953)	없음	02-416-3641	없음

신 탁 관 리 단 체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20호 (135-080)	<a href="http://www.copyrightkorea.or.kr">http://www. copyrightkorea.or.kr</a>	02-508-0440	02-539-3993
	한국방송 실연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6 리버타워 604호(150-971)	<a href="http://www.kbpa.kr">http://www.kbpa.kr</a>	02-784-7802	02-784-7805
	한국방송 작가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01호 (150-874)	<a href="http://www.ktrwa.or.kr">http://www.ktrwa.or.kr</a>	02-782-1696	02-783-3711
	한국복사 전송권협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58 대 한빌딩 4층(157-010)	<a href="http://www.copycle.&lt;br/&gt;or.kr">http://www.copycle. or.kr</a>	02-2608-2036	02-2608-2031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서울시 중구 서애로 27 캐피 털빌딩 202호(100-273)	<a href="http://www.scenario.&lt;br/&gt;or.kr">http://www.scenario. or.kr</a>	02-2275-0566	02-2278-7202
	한국언론 진흥재단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 레스센터 12층(100-750)	<a href="http://www.kpf.or.kr">http://www.kpf.or.kr</a>	02-2001-7114	02-2001-7720
	한국영상 산업협회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23 미진빌딩 2층(100-450)	<a href="http://www.kmva.or.kr">http://www.kmva.or.kr</a>	02-3452-1001	02-3452-1005
	한국영화 제작자협회	서울시 중구 수표로 28 보아 스빌딩 503호(100-272)	<a href="http://www.kfpa.net">http://www.kfpa.net</a>	02-2267-9983	02-2267-9986
	한국음악 실연자연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157-862)	<a href="http://www.fkmp.kr">http://www.fkmp.kr</a>	02-745-8286	02-766-1034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 KOMCA빌딩(157-824)	<a href="http://www.komca.&lt;br/&gt;or.kr">http://www.komca. or.kr</a>	02-2660-0400	02-2660-0401
	한국음원 제작자협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2 서원빌딩 3층(121-851)	<a href="http://www.kapp.or.kr">http://www.kapp.or.kr</a>	02-3270-5900	02-711-9735
	한국콘텐츠 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121-270)	<a href="http://www.kocca.kr">http://www.kocca.kr</a>	02-3153-1114	02-3153-1115

## 저작권백서 집필진

---

### ▶ 기획 편집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조사분석팀

---

### ▶ 집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담당 공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담당자

유관학회 및 단체

김선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권신탁관리센터 팀장

김종원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신창환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오승종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허정윤 전자신문 기자



## 2010 저작권 백서

---

**인쇄일** 2011년 10월 10일 인쇄

**발행일** 2011년 10월 13일 발행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114 팩스 02-3704-9154

<http://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6,7층

전화 02-2660-0000 팩스 02-2660-0019

<http://www.copyright.or.kr>

**제작처** 디자인집 전화 02-521-1474

**ISSN** 2234-392X